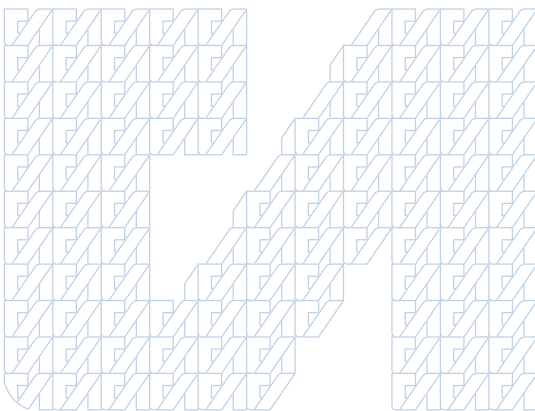


세종형 여성친화기업인증제 도입에 관한 연구

최성은 외



연구책임	• 최성은 / 세종연구실 책임연구위원
공동연구	• 주혜진 / 경제사회연구실 책임연구위원 • 양준석 / 경제사회연구실 책임연구위원
연구지원	• 박지현, 안제현 / 세종연구실 조사원

정책연구 2023-36

세종형 여성친화기업인증제 도입에 관한 연구

발행인 김 영 진

발행일 2023년 10월

34051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로37(문자동)

전화 : 042-530-3500 팩스 : 042-530-3528

홈페이지 : <http://www.dsi.re.kr>

인쇄처 국보문화사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

요약 및 정책 제언

■ 연구 배경과 목적

- (대외적 환경 변화의 요구) 여성가족부 지정 여성친화도시 세종특별자치시의 성숙을 위한 조치
 - 세종시는 2021년 여성가족부 지정 2단계 여성친화도시로서, ‘여성의 경제·사회참여 확대 및 가족친화환경 조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해야 함
 - 세종시는 2023년 수립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행계획의 원활한 이행과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하여 여성친화기업인증제의 설계와 도입을 위한 준비가 필요함

- (대내적 환경의 요구) 세종시 경제·산업 특성을 고려한 여성 친화적 제도 설계의 필요
 - 세종시의 사업체 현황 및 고용 동향, 그리고 여성 경제활동의 특성을 고려한 여성 친화적 제도 설계가 필요함
 - 세종시 소재 사업체 중 50인 미만 사업체 수의 경우, 전체 사업체 수의 98.41%, 종사자 비율 54.23%를 차지함(2020년 기준)
 - 세종시는 경력단절여성 비율이 전국 평균 17.4%보다 높은 21.5%(2021년 기준) 수준으로 여성의 경력 유지와 신규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함

- (정책연구의 필요성) 기존 유사 제도와의 중복성, 중첩성을 고려하여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전략 모색
 -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서 요구하는 ‘여성친화기업’과 정책목표가 일부 중첩되어 시행 중인 제도(가족친화기업인증제 등)들을 검토하여,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세종형 여성친화기업인증제’ 신설 및 시행에 대한 타당성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 기존 유사 제도와의 중복성, 중첩성을 고려한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 개선을 위한 제도 모델이 요구됨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여성친화도시 세종특별자치시의 성숙을 위하여,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사업체(기업)를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세종형 여성친화기업인증 도입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세부 연구 질문별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① (사업 신설·운영의 타당성 도출: 정책환경 진단) 왜 세종형 여성친화기업 인증제가 필요한가?
 - ② (사업 신설·운영의 타당성 도출: 기존 제도와의 관계) 유사 제도와의 중복·중첩된 부분은 무엇이며, 어떻게 차별화된 모델을 만들 것인가?
 - ③ (제도 설계를 위한 사례분석)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친화기업인증제도 운영 방식과 애로사항은 무엇인가?
 - ④ (정책 제안) 세종형 여성친화기업인증제 모델(안)과 그 신설에 따른 정책과제는 무엇인가?

‘세종형 여성친화기업’에 대한 개념정의

- ‘세종형 여성친화기업이란, 여성의 고용 안정성 제고와 유리천장 해소를 위한 기업 차원의 제도적 노력이 지속성을 가지며,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속에서 일·생활 균형을 위한 기업문화 및 환경 조성에 힘쓰는 기업’

세종시의 ‘세종형 여성친화기업인증제’ 신설 및 운영의 사업 목적

- ① 차별 없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② 경력단절 예방이 가능한 근무환경과 ③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기업문화 및 환경 조성에 선도적인 지역 내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그 사례를 확산하여, 지속 가능한 여성친화도시 세종의 제도적 성숙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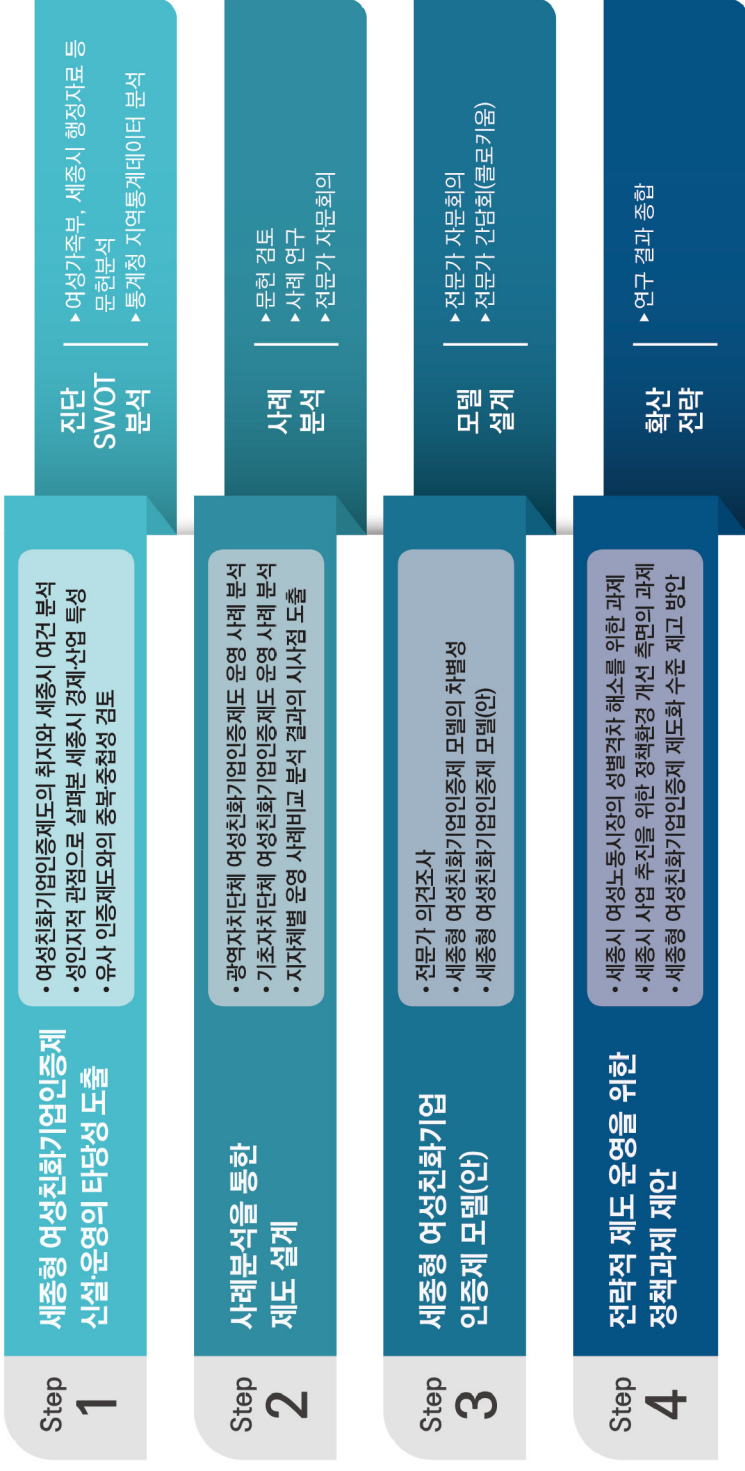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 제안한 세종형 여성친화기업인증제 모델의 차별성

- 첫째, (함목적성 측면)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조성 차원에서 강조하는 여성친화기업 인증 취지에 부합하는 인증 모델 구현

-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여성가족부의 컨설팅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인증제도의 목적 및 여성친화도 점검 기준으로 활용
- 유사 제도와의 중복·중첩성을 검토한 결과, 비교 대상 중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정책 목표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사업은 부재함
- 둘째, (협력적 거버넌스 측면) 여성친화도시 조성 거버넌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추진체계를 구성함
 - 세종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민참여단의 적극적인 참여 기회
 - 세종시 관내 여성정책 거버넌스의 연계와 협력을 기초로 추진체계를 마련함
- 셋째, (세종형 여성친화기업 컨설턴트단 운영) 여성친화기업인증제의 목적과 취지, 그리고 확산과 더불어 여성의 경제·사회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세종형 여성친화기업 컨설턴트단을 운영함
 - 여성친화기업인증 과정에서 해당 사업체 근로자의 경력유지, 고용평등 개선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재교육, 그리고 사회참여가 연결될 수 있는 여성친화적 경제·사회활동 참여 생태계 조성
- 넷째, (인증을 위한 지표체계) 차별 없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제고하고, 경력단절 예방이 가능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세종시만의 지표 발굴
 - 세종시 생활임금 준수 여부: 성별임금공시제 추진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체의 운영 현실을 고려하여, 대리 지표로 선정함
 - 최근 3년간 경력단절 유경험 여성 채용 현황: 경력보유 여성의 채용에 적극성을 가진 사업체를 발굴하고, 사례의 확산을 위해 대리 지표로 선정함
 - 직장맘을 위한 연계협력사업 추진 여부(직장맘 지원센터와의 업무협약): 세종시 시정 4기 단체장 공약으로 추진되고 있는 직장맘 지원센터와의 적극적 협력 체계 마련을 위한 대리 지표임

■ 연구 방법 및 내용

□ 연구의 주요 내용별 방법



[연구의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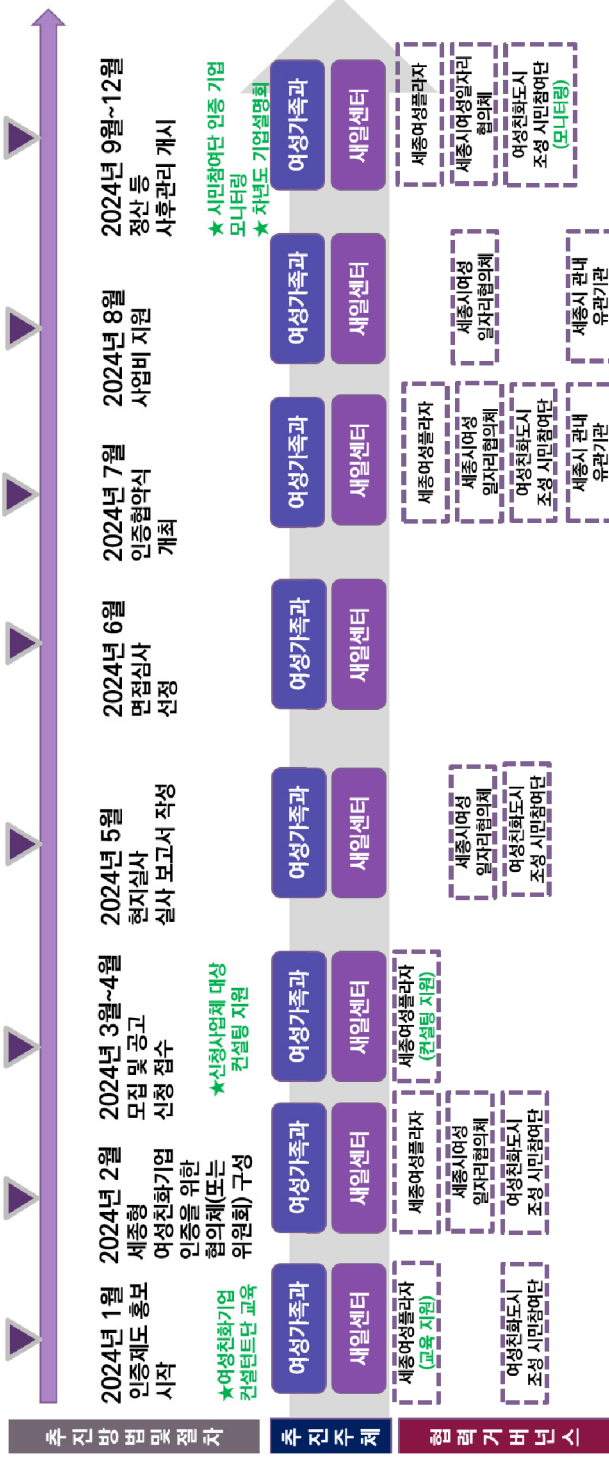
■ 연구 주요 결과①: 세종형 여성친화기업인증제 모델(안)

[세종형 여성친화기업 인증제(안) 개요]

구 분	내 용
사업명	■ 세종형 여성친화기업 인증제
사업기간	■ 2024.2.~2024.12.
인증방식	■ 공모방식
추진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 10월 차년도 사업 추진 계획 수립 및 정책 홍보 시작, 세종형 여성친화기업 인증을 위한 협의체(또는 위원회) 구성 ⇒ 2024년 1월 세종형 여성친화기업 인증제도 홍보, 여성친화기업 컨설팅단 교육 실시 ⇒ 2024년 3월~4월 모집 및 공고, 신청 접수 ⇒ 현지실사 및 보고서 작성(5월) ⇒ 면접심사 및 선정 (6월) ⇒ 인증 및 협약식 개최(7월) ⇒ 사업비 지원(8월) ⇒ 정산 등 사후관리 개시(9월~12월)
심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종형 여성친화기업인증 심사위원회 구성 후 심사 - 서류평가, 현장실사(현장실사평가표, 실사보고서), 인증기업 선정을 위한 최종심의
기업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개 이내 기업 선정 - 관내 기업 등록 후 3년 이상 운영을 한 10인 미만 사업체 중 여성 근로자 30% 이상인 기업 - 관내 기업 등록 후 3년 이상 운영을 한 10인 이상 사업체 중 여성 근로자 30% 이상인 기업 * 자격제한 요건: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사업장(예: 퇴직금 미지급, 중대재해 사업장, 산재사고, 임금체불 등), 사회적·윤리적 문제를 일으킨 기업, 소비 향탁업체, 근로자파견·용역업체, 보조금 운영 사업장, 여성친화기업으로 선정된 후 사회적 불의를 일으킨 기업 * (시범사업 단계 제한) 제도 시행 초기에는 새일센터의 여성친화일촌협약 체결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정하여 모집 및 선정을 추진해 볼 것을 제안함
혜택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여성가족과의 직접 추진으로 가능한 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친화기업 인증 후 인증현판 수여 ■ 여성친화기업 인증 사업체 홍보 ■ 기업환경개선 사업비(시비 100%, 지방보조금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환경개선의 범주: 중장기적으로 다양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음 - (예시) 복리후생을 위한 물품 및 예술문화 향유 기회 지원, (가칭) 실내형 정원사업 추진을 통해 실내공기정화식물 등을 제공하고, 찾아가는 가드닝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혜택 ※ 제공 혜택 중 일부만을 원하는 사업체의 경우, 혜택 포기에 대한 양해각서를 작성하도록 조치해야 함 - 기업환경개선사업비에 대한 자부담율 적용: 20% ※ 단, 기업환경개선사업비 지원 거부 사업체의 경우, 별도의 지침을 만들어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중·장기적) 육아휴직 업무대행자 수당 지원 2. 타 부서와 협업 추진으로 가능한 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기업지원과 협의 필요) ■ 인력 지원(기업지원과 협의 필요) ■ 자금 지원(기업지원과 협의 필요) ■ 세종시공정일터인증제 신청 시 가점(기업지원과 협의 필요)

구 분	내 용
<p>소요예산</p>	<p>■ 단계적 예산 증액이 필요함</p> <p>[1단계] 시범사업 단계: 1,600만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증현판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5만원×4개 = 220만원 2. 기업환경개선 사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0만원×4개 사업체 = 1,200만원 3. 타 부서와 협업 추진으로 가능한 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요예산 산출 불가 4. 사업 운영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판식, 심사비 등 운영비 180만원 <p>[2단계] 안정화 단계: 2,800만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증현판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0만원×6개 = 360만원 2. 기업환경개선 사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0만원×6개 사업체 = 1,800만원 3. 타 부서와 협업 추진으로 가능한 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요예산 산출 불가 4. 사업 운영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판식, 심사비, 인증 기업 사후관리 등 운영비 400만원 ▪ 제도 확산을 위한 인증 기업 네트워크 구축 사업 240만원

□ 세부사업 추진계획 제안: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의 작동이 가능한 모델이 되어야 함



[세종형 여성친화기업인증제 추진을 위한 추진주체 및 협력거버넌스 체계]

[제도 시행을 위한 주요 구성원별 역할]

부서 및 기관		역할(제안 예시)	
세 중 시	여성가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 주체 - 여성친화기업 인증 제도 시행계획 수립 - 공고 및 홍보 - 여성근로자 근로환경개선사업 추진 - 여성친화기업 지원 - 언론매체 홍보로 인증기업 이미지 향상 	
	기업 지원과	기업지원 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애로사항 지원, 중소기업육성기금 ▪ 대상 중소기업 현황 제공 및 발굴 지원
		노사협력 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종형 공정일터 인증제도 연계
		사회적경제 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 현황 제공 및 발굴 지원
세종여성새로일하기 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 및 접수, 인증기업 관리 등 중간거점조직 	
가칭 세종형 여성친화기업 컨설턴트단(세종여성플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종형 여성친화기업 컨설팅 지원(공모지원, 운영 지원 등) ▪ 역량강화교육기관: 세종여성플라자 	
여성친화도시 컨설턴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친화기업 인증 제도 설계 및 운영 전반에 걸친 자문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친화인증 기업 모니터링 	
세종시 여성 일자리 협의체 9명(당연직 2명, 위촉직 7명/ 남 4명, 여 5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친화기업 인증 제도 설계 자문 및 현장실사, 모니터링, 인센티브 발굴 및 연계 ▪ 우수기업 추천 및 홍보 - 세종시 여성가족과장 및 여성정책담당, 기업지원과 기업정책담당,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여성플라자, 세종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일·생활균형 대전·세종지역 추진단, 사회적협동조합 대표로 구성 	

○ <서식2. 세종형 여성친화기업 인증을 위한 기업의 여성친화도 점검표(안)>

[서식2. 세종형 여성친화기업 인증을 위한 기업의 여성친화도 점검표(안)]

구 분	지 표	점 검 항 목				
기본사항	재직자 현황 (2023년 12월 말 기준)	여성 근로자 수		(명)		
		남성 근로자 수		(명)		
		전체 근로자 수		(명)		
		관리자 현황	임원급 이상	소계	(명)	
			여성	(명)		
	팀장급 이상	소계	(명)			
	여성	(명)				
	전체근로자 중 여성근로자 비율	30%이상 <input type="checkbox"/>		30%미만 <input type="checkbox"/>		
	전체 여성근로자 중 정규직 비율	20%이상 <input type="checkbox"/>	15%이상 <input type="checkbox"/>	10%이상 <input type="checkbox"/>	5%이상 <input type="checkbox"/>	5%미만 <input type="checkbox"/>
차별 없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고용평등을 위한 사내 운영 규정 유무	있다 <input type="checkbox"/>		없다 <input type="checkbox"/>		
	세종시 생활임금* 준수 여부	100% <input type="checkbox"/>	95%이상 <input type="checkbox"/>	90%이상 <input type="checkbox"/>	85%이상 <input type="checkbox"/>	85%미만 <input type="checkbox"/>
	최근 3년간 경력단절** 유경험 여성 채용 현황	있다 <input type="checkbox"/>		없다 <input type="checkbox"/>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예방지침 및 교육 시행	지침 및 교육 운영(둘 다) <input type="checkbox"/> 지침 또는 교육 운영(둘 중 하나) <input type="checkbox"/> 미운영 <input type="checkbox"/>				
	최근 3년간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있다 <input type="checkbox"/> 없다 <input type="checkbox"/>	전체	(명)		
경력단절 예방이 가능한 근무환경	최근 3년간 출산 및 양육 지원 제도 운영	출산휴가제 및 배우자 출산휴가제 운영	전부운영 <input type="checkbox"/>	전체	(명)	
			일부운영 <input type="checkbox"/>	여성	(명)	
		미운영 <input type="checkbox"/>				
	육아휴직	전부운영 <input type="checkbox"/>	전체	(명)		
		일부운영 <input type="checkbox"/>	여성	(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부운영 <input type="checkbox"/>	전체	(명)		
		일부운영 <input type="checkbox"/>	여성	(명)		
	미운영 <input type="checkbox"/>					
	여성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추진 여부(교육기회 부여)	운영 <input type="checkbox"/>		미운영 <input type="checkbox"/>		
	직장밖을 위한 연계협력사업 추진 여부	직장밖 지원센터, 새일센터와의 업무협약	있다 <input type="checkbox"/>		없다 <input type="checkbox"/>	

구 분	지 표		점 검 항 목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기업문화 및 환경 조성	최근 3년간 유연 근무 제도 운영 현황	시간선택제	운영 <input type="checkbox"/> 미운영 <input type="checkbox"/>			
		시차출퇴근제	운영 <input type="checkbox"/> 미운영 <input type="checkbox"/>			
		선택근무제	운영 <input type="checkbox"/> 미운영 <input type="checkbox"/>			
		재량근무제	운영 <input type="checkbox"/> 미운영 <input type="checkbox"/>			
		재택근무제	운영 <input type="checkbox"/> 미운영 <input type="checkbox"/>			
		근로자의 성별 유연근무제 활용률	유연근무제 이용자 중 남성 비율	%	유연근무제 이용자 중 여성 비율	%
	가족 문화체육행사, 여가활동 등 지원에 관한 프로그램 운영	운영 <input type="checkbox"/> 미운영 <input type="checkbox"/>				

주*: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임

주**: 육아휴직 후 복귀자, 새일센터 새일인턴 채용 후 지속고용인 신규채용이나 이전 직장에서 경력 단절 유경험자 모두 포함

○ <서식3. 세종형 여성친화기업 인증을 위한 현장실사 평가지표(안)>

<서식3-1. 세종형 여성친화기업 인증 현장실사 평가 지표(10인 이상)>

구 분	항 목	배점
사업체 기본현황	■ 경제활동현황: 재직자현황(성별 근로자 및 관리자 현황), 전체근로자 중 여성근로자 비율, 전체여성 근로자 중 정규직 비율	없음
① 차별 없는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40점)	■ 여성임원 유무 20%이상 <input type="checkbox"/> 10%이상 <input type="checkbox"/> 10%미만 <input type="checkbox"/>	5점
	■ 고용평등을 위한 사내 운영 규정 유무	5점
	■ 세종시 생활임금 준수 여부	5점
	■ 최근 3년간 경력단절 유경험 여성 채용 현황	10점
	■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예방지침 및 교육 시행	5점
	■ 최근 3년간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 있음: 5점 - 정규직 전환 여성비율: 50%이상 5점, 40%이상 4점, 30%이상 3점, 20%이상 2점, 20%미만 1점	10점
② 경력단절 예방이 가능한 근무환경(30점)	■ 출산 및 양육지원제도 운영 ① 출산휴가제 및 배우자 출산휴가제 운영 ② 육아휴직 ③ 육아기근로시간단축 ④ 그 외 사업체 개별 지원 제도 유무 * ①~③의 경우, 대상자 부재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점수 배정하지 않음	5점

구 분	항 목	배점
	■ 여성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추진 여부	10점
	■ 직장만을 위한 연계협력사업 추진 여부	5점
	■ 여성친화도시 공공시설 가이드라인을 고려한 근무환경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CCTV (CPTED) 설치(3점) • 여성휴게실 설치(3점) • 화장실 내 여성편의시설 및 안심벨 설치(4) 	10점
④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기업문화 및 환경 조성(30점)	■ 최근 3년간 유연근무제도 운영현황 ① 시간선택제 ② 시차출퇴근제 ③ 선택근무제 ④ 재량근무제 ⑤ 재택근무제 ⑥ 근로자의 성별 유연근무제 활용률(남녀의 균형있는 유연근무제 활용정도를 평가하여 점수평가) * ①~⑤의 경우, 대상자 부재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점수 배정하지 않음	10점
	■ 가족 문화체육행사, 여가활동 등 지원에 관한 프로그램 운영 여부	10점
	■ 경영진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기업경영 인식도	10점

〔서식3-2. 세종형 여성친화기업 인증 현장실사 평가 지표(10인 미만)〕

구 분	항 목	배점
사업체 기본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활동현황: 재직자현황(성별 근로자 및 관리자 현황), 전체근로자 중 여성근로자 비율, 전체여성 근로자 중 정규직 비율 	없음
① 차별 없는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4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종시 생활임금 준수 여부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간 경력단절 유경험 여성 채용 현황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예방지침 및 교육 시행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간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 있음: 5점 - 정규직 전환 여성비율: 50%이상 5점, 40%이상 4점, 30%이상 3점, 20%이상 2점, 20%미만 1점 	10점
② 경력단절 예방이 가능한 근무환경(3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 및 양육지원제도 운영 ① 출산휴가제 및 배우자 출산휴가제 운영 ② 육아휴직 ③ 육아기근로시간단축 ④ 그 외 사업체 개별 지원 제도 유무 * ①~③의 경우, 대상자 부재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점수 배정하지 않음 	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추진 여부 	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만을 위한 연계협력사업 추진 여부 	10점
③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기업문화 및 환경 조성(3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간 유연근무제도 운영현황 ① 시간선택제 ② 시차출퇴근제 ③ 선택근무제 ④ 재량근무제 ⑤ 재택근무제 ⑥ 근로자의 성별 유연근무제 활용률(남녀의 균형있는 유연근무제 활용정도를 평가하여 점수평가) * ①~⑤의 경우, 대상자 부재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점수 배정하지 않음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문화체육행사, 여가활동 등 지원에 관한 프로그램 운영 여부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진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기업경영 인식도 	10점

- <서식4. 세종형 여성친화기업 인증을 위한 여성친화적 기업문화 및 환경조성을 위한 계획서>

[<서식4. 세종형 여성친화기업 인증을 위한 여성친화적 기업문화 및 환경조성을 위한 계획서>]

여성친화적 기업문화 및 환경조성을 위한 계획서	
(○○○○회사)	
1. 세종형 여성친화기업 인증을 위한 기업의 여성친화도 점검표(정량) 결과에 따른 개선 계획	
구 분	진단결과에 따른 개선 계획
① 차별없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진단(문제점) ■
	개선 계획 ■
② 경력단절 예방이 가능한 근무환경	진단(문제점) ■
	개선 계획 ■
③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기업문화 및 환경 조성	진단(문제점) ■
	개선 계획 ■
2. 여성친화기업 인증에 따른 기업문화 및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 계획 또는 물품 설치에 따른 활용계획	
1. 주요사업 내용	
○	
○	
2. 소요사업비: 원 · 견적서 첨부 ※ 자부담 비율: 사업비의 20%이상	
○ 총금액: 원(보조금 원, 자부담 원)	
3.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	
4. 사업대상 사진	

■ 연구 주요 결과②: 세종시 여성노동시장의 성별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

□ 세종시의 지역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성별격차의 특성에 따른 시사점

- (총평) 양성평등한 일자리 확대, 여성의 경력유지 및 재취업 확보를 위한 세종시의 정책적 의지를 담아낼 정책설계가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됨. 따라서 세종형 여성친화기업인증제 추진의 타당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됨
- 남성에 비하여 낮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 마련이 요구됨
- 특히, 성별 임금 격차의 수준이 전국에 비하여 크게 나타나고 있어 성별임금격차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됨
 -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50번.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의 실현을 위하여 단계적인 '성별근로공시제'를 내세워 양성평등 일자리 기반 조성을 추진할 계획에 있음
 - 따라서 세종시 차원에서도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세종시의 경력단절여성 비율은 이미 전국 평균 수준을 상회하며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어 여성의 경력유지와 재취업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비율과 여성 집중도를 고려한 정책 과제

- 세종시의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비율과 여성 집중도를 고려할 때, 소규모 사업체 중심의 여성친화기업인증제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짐. 이러한 운영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시의회와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정책적 관심이 요구됨
- 세종시 산업분류별 종사자 집중도를 검토한 결과를 보면, 10인 미만의 사업체에 여성이 집중되어있는 경향이 나타남

□ 산업단지 현황 및 관내 여성기업 현황에 따른 시사점

- 세종시 산업단지 조성 계획 및 지원 정책과의 연계 필요
 - 일반산업단지 중에서도 첨단산업단지의 여성 고용률이 높게 나타난 것은

세종시에 조성 중인 ‘도시첨단산업단지’를 통해 매력적인 여성 일자리 공급의 기회를 준비할 수 있음을 시사함(최성은, 2023)

- 직업훈련프로그램 마련 시 산업단지 입주 기업이 요구하는 사항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마련이 필요하며, 동시에 일자리 정보 제공을 위한 홍보를 확대·강화할 필요가 있겠음

○ 세종시 여성기업 지원제도와 연계 강화 필요

- 법률적 제도 기반이 튼튼한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과 상대적으로 법률적인 제도적 기반이 미약한 여성친화기업인증제의 연계를 도모한다면, 인력난 해소와 여성창업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제도 간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갈 것으로 기대됨
- 예시: 여성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연계 활성화,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및 연속 고용 시 여성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여성기업의 여성친화기업인증 활성화 추진을 통해 특화된 근무환경(예: 실내 정원 조성) 제공 등
- 예시: 여성벤처협회 및 여성경제인협회 세종지회 등과의 연계를 통해 여성기업인 간담회 지속 추진, ‘선배’ 여성기업의 ‘후배’ 여성기업 지원이 가능한 사회공헌 기회 제공 등

■ 연구 주요 결과③: 세종시 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환경 개선 측면

□ 세종시 조례 개정안 제안

-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제11조의2(여성친화 기업인증제 실시) 조문을 추가할 것을 제안함

[세종시 여성친화기업인증제 운영을 위한 조례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p>*세종시의 경우, 여성친화기업 인증에 관한 사항은 부재함</p> <p>제11조(여성능력개발의 효율화)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여성 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들을 서로 연계하여 생활권별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역량 강화 사업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정 및 직장과 사회교육기관 간 연계를 통한 여성일자리 창출·창업 지원 2. 시설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생활 근접형 교육훈련 지원 3. 사회교육 정보의 제공과 상담 4. 직장인의 학습 기회 확충 5. 여성친화기업의 증대 	<p>좌동</p>
<p>신설</p>	<p>제11조의2(여성친화기업인증제 실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시장은 차별 없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증진하고, 경력단절 예방이 가능한 근무 환경 조성 및 일·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기업문화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여성친화기업 인증제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증된 여성친화기업이 여성친화적인 기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생산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세종시 여성친화기업인증제 운영을 위한 조직·인력 활용 방안

-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성별영향평가제도 등의 운영도 함께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시 직영으로 여성친화기업인증제를 추진할 경우,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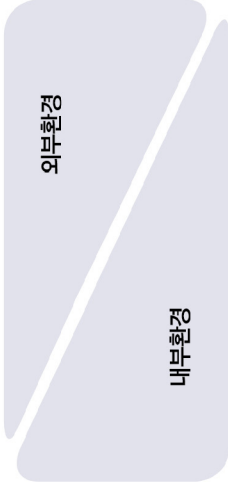
- 따라서 세종시의 여성친화기업인증제의 홍보를 활성화하고 추진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사회 네트워크와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함
 - (인력 측면에서의 보충적 자원으로 활용) 세종시 주무부서의 부족한 인력 보완을 위하여 유관 기관 중 중간거점조직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예산 측면에서의 보충적 자원으로 활용) 세종시 여성친화기업인증제 사업예산 편성이 건전재정 기조로 인하여 최소화될 경우, 유관 기관의 사업과 연계 추진을 통해 보완 시도한다면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홍보 및 참여도 제고를 위한 보충적 자원으로 활용) 홍보 및 참여도 제고를 위하여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세종시 여성친화기업인증제 운영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 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종류: 양성평등기금, 일반회계임
- 세종시의 2023년 재정기조를 고려하고, 양성평등기금사업이 이자분에 한하여 공모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반회계를 활용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여겨짐
 - 예산편성액의 수준을 정할 때, 세종시 재정기조 및 경제·산업적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타 지역 사례를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세종형 여성친화기업인증제 신설·운영을 위한 전략적 방향 제시

Cross-SWOT분석을 통한 전략적 방향 제시



외부기회(Opportunities)

- 여성가족부 지정 여성친화도시 2단계 진원에 따른 시행 조치
- 중앙정부는 양성평등 일자리 기반 조성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정과제 50번,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의 일환으로 단계적인 성별근로공시제 추진을 계획함
- 세종스마트국가산단 조성 등 산업단지 조성 활성화

외부위협(Threats)

- 국가 재정 기초가 '간접재정'을 강조하여 세종시 역시, 재정 간편성을 위한 사업예산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
- 가족친화기업인증 등 기존 유사한 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높아, 여성친화기업인증제도의 추진탄력성이 위협받을 수 있음
- 정책 또는 중목성이 높은 인증제도로 인식될 수 있으며, 제도의 취지 등에 따른 혼동으로 인해 기업주의 관심과 참여율이 낮아질 수도 있음

내부강점(Strength)

- 단체장의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경제활동참여에 대한 강력한 의지: 직장면지원센터, 설치·운영, 세종여성플라자·설치·운영
- (인력 측면의 강점)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전담 인력 배치로 정책 추진의 전문성과 안정성 제고
- (지역사회 네트워크)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구성점으로 활동 중인 세종여성플라자와 여성친화일촌협약 등 유사 사업을 추진해 온 여성새일센터, 장년센터 등과의 협업 활성화

지속성장(SO전략)

- SO전략1. 여성친화기업인증제도의 인센티브의 일환으로 세종시 직장면지원센터 프로그램을 활용
- SO전략2. 세종여성플라자의 여성경제활동지원 기능을 활용하여 기업의 성별임금격차를 개선하기 위한 캠페인 추진
- SO전략3.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여성친화기업인증제도 특성화 전략 마련(충상기적 과제)

우회전략(ST전략)

- ST 전략 1. 세 초 여성플라자의 기능 중 교육 기능을 여성친화기업인증제도와 연계하여 여성친화기업인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컨설팅(상담사) 육성 후 여성친화기업 지원을 위한 인력으로 배치
- ST전략2. 여성친화기업인증제도의 홍보를 위해 세종새일센터와 세종여성플라자, 장년센터 등과의 업무협약 체결

내부약점(Weakness)

- (여성의 경제활동 실태)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경력단절여성 비율과 지속적인 증가세, 생활임금격차, 긴 노동시간
- (경제·산업 특성) 소규모 사업체가 다수를 점함. 여성 종사자의 집중도가 높게 나타나는 사업체는 10인 미만 종사자 규모의 사업체
- (자격면허) 여성친화기업인증을 위한 조문을 포함하여 조제개강 필요
- (인력축면) 시의 전담 인력 1명에 그쳐 여성친화기업인증제도 운영인력 보강 필요
- (예산의 충분성 부족) 세종시의 간접재정 기초로 충분한 사업예산 편성 여력을 전담임

역량강화(WO전략)

- WO전략1. 7세 초 특 별차지 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여성친화기업인증제도에 대한 제도화 수준을 제고(사후관리 강화 및 인증제도에 대한 공신력 높이기 전략 마련)
- WO전략2. 신규 조성된 산업단지 내 사업체의 여성친화기업 인증을 활성화하며, 비경제활동상태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기업홍보 강화
- WO전략3. 여성친화기업인증 대상 기업들을 대상으로 인센티브 수요 조사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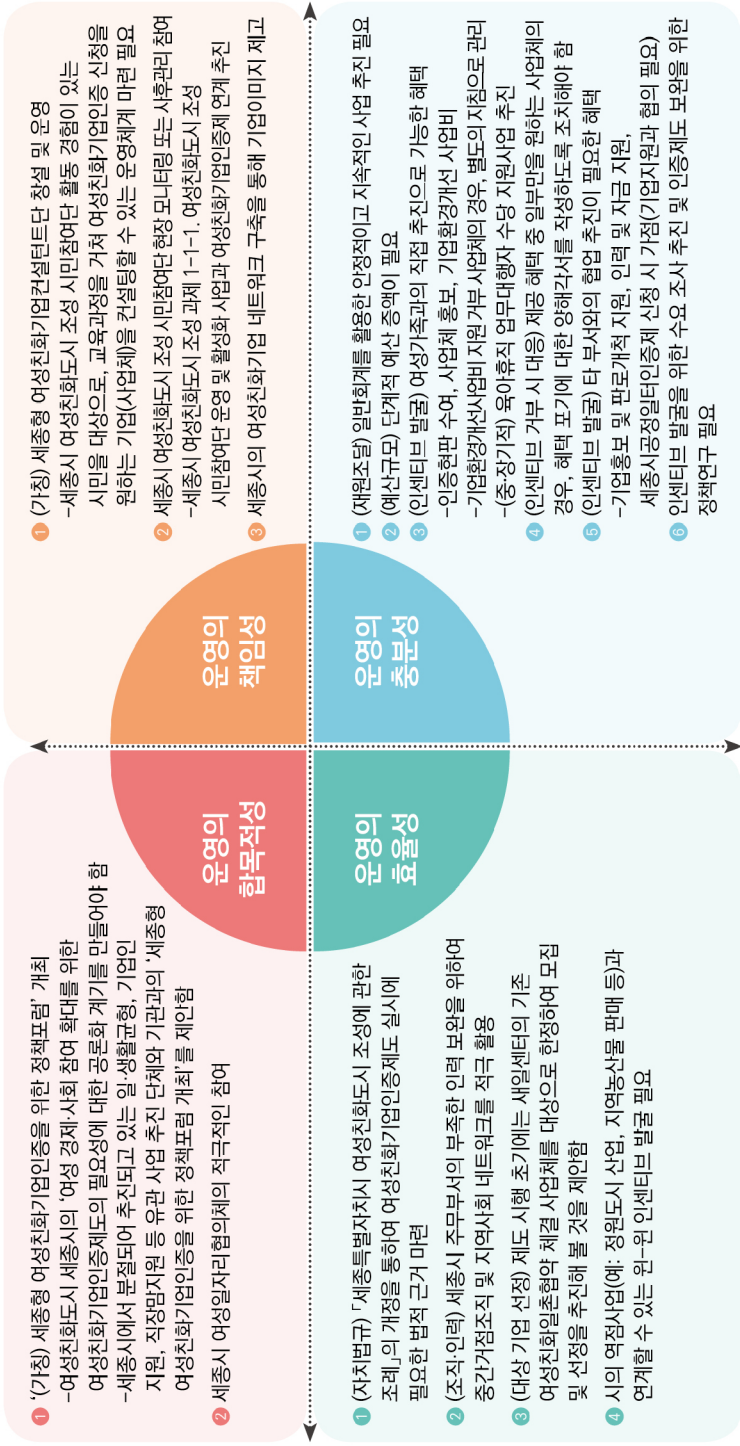
방어전략(WT전략)

- WT전략1. 여성친화기업인증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경영주에 대한 지역사회 내 공헌활동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WT전략2. 사후관리의 지속성을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민참여단과의 협업체계 마련
- WT전략3. 시의 역점사업(예: 장원도시 산업, 지역농산물 판매 등)과 연계할 수 있는 권·관 인센티브 발굴
- 예시: 인증기업 대상 실내 정원 조성 및 가드닝 서비스 제공
- 예시: 인증기업 대상 지역농산물 간식 제공

[세종형 여성친화기업인증제 신설·운영을 위한 전략적 방향 제시]

■ 연구 주요 결과④: 세종형 여성친화기업인증제 제도화 수준 제고 방안

세종형 여성친화기업인증제 제도화 수준 제고 방안



[세종형 여성친화기업인증제 제도화 수준 제고 방안]

차 례

1장 서론	3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
2. 연구의 목적	5
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6
1. 연구의 범위	6
2. 연구의 방법	8
3. 연구 결과의 활용 및 기대효과	9
2장 여성친화기업인증제 신설·운영의 타당성 도출	13
1절 여성친화기업인증제의 취지와 세종시 여건 분석	13
1. 여성가족부의 안내 사항	13
2. 세종시 여건 분석	16
3. 여성친화기업인증제 추진을 위한 정책환경 분석(SWOT) 결과	24
2절 성인지적 관점으로 본 세종시 경제·산업 특성	29
1. 세종시 경제활동인구의 성별격차 특성	29
2. 성인지적 관점으로 본 세종시 경제·산업 특성(시사점)	62
3절 유사 인증제도 운영 현황과 한계	65
1. 검토 개요	65
2.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	66
3. 여성가족부 새일센터 사업 중 유사 제도	78
4. 세종시 여성친화일촌협약 체결 현황	91
5. 세종시 공정일터인증제도	93
6. 제도 간 비교 시사점	97

3장 사례분석을 통한 제도 설계	107
1절 광역자치단체 여성친화기업인증제도 운영 사례	107
1. 대전광역시 사례	107
2. 인천광역시 사례	112
2절 기초자치단체 여성친화기업인증제도 운영 사례	117
1. 충청북도 청주시 사례	117
2. 광주광역시 서구 사례	124
3절 세종시 적용 가능성 검토	134
1. 4개 사례 비교 분석 개요	134
2. 세부 기준별 비교 분석의 시사점	134
4장 세종형 여성친화기업인증제 모델(안)	147
1절 전문가 의견조사	147
1. 전문가 의견조사 개요	147
2. 전문가 의견조사 추진 결과	148
2절 세종형 여성친화기업인증제 모델(안)(최종)	170
1. 세종형 여성친화기업인증제 모델의 차별성	170
2. 연구진 제안 모델	171
5장 결 론	187
1절 연구요약	187
1. 연구요약	187
2. 세종형 여성친화기업인증제 모델(안)	188
2절 정책 제언	203
1. 세종시 여성노동시장의 성별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	203
2. 세종시 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환경 개선 측면	205
3. 세종형 여성친화기업인증제 제도화 수준 제고 방안	208
참고문헌	213
부록	214

표 차례

[표 1-1] 연구의 흐름	8
[표 2-1]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대표사업 분야 평가지표	13
[표 2-2] 여성친화기업 관련 자치법규 운영 사례(세종시와의 비교)	17
[표 2-3] 세종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세부 추진과제 목록	18
[표 2-4] (과제번호 3-1-2.) 세종형 여성친화기업 인증제 사업 내용	20
[표 2-5] 세종시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 인력 현황	21
[표 2-6] 세종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항목 및 예산 내역	22
[표 2-7] 2022년 상반기 성별 경제활동인구 특징(전국 vs. 세종시)	29
[표 2-8] 성별 고용률 격차 특징(2017년 상반기 vs. 2022년 상반기)	30
[표 2-9] 성별 고용률 격차 연도별 특징(2017년~ 2022년 상반기)	31
[표 2-10] 성별 임금 격차 수준 비교(전국 vs. 세종)	32
[표 2-11] 성별 주당 평균 근로시간 비교(전국 vs. 세종)	33
[표 2-12] 2020년 하반기 시도별 주당 평균 근로시간(성별 구분)	34
[표 2-13] 2021년 하반기 시도별 주당 평균 근로시간(성별 구분)	35
[표 2-14] 2022년 하반기 시도별 주당 평균 근로시간(성별 구분)	36
[표 2-15] 경력단절여성 규모 비교(전국 vs. 세종)	37
[표 2-16] 세종시 남녀 학력수준 별 취업자 수 비교	38
[표 2-17] 세종시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현황(2020년 기준) ..	39
[표 2-18] 2014년 대비 2020년 세종시 사업체 규모별 사업체 및 종사자 증감률	42
[표 2-19] 세종시 산업분류별 남녀 종사자 차이 및 성비(2020년 기준) ..	46
[표 2-20] 2020년 기준, 세종시 남자 집중 산업 순위	47
[표 2-21] 2020년 기준, 세종시 여자 집중 산업 순위	48
[표 2-22] 2022년 2분기 전국산업단지 현황통계	55
[표 2-23] 세종시 산업단지 현황	56

[표 2-24]	세종시 조성 중/조성 예정 산업단지 현황	56
[표 2-25]	세종시 산업단지별 남녀 직원 현황	57
[표 2-26]	여성기업 역량강화사업 추진 절차	59
[표 2-27]	추진 실적(2020~2022)	59
[표 2-28]	세종시 산업별 여성대표 사업체 수	61
[표 2-29]	세종시 여성기업 사업체 현황	62
[표 2-30]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	69
[표 2-31]	공공기관 대상 인센티브(10개)	72
[표 2-32]	가족친화기업 신규 인증 평가 항목	75
[표 2-33]	가족친화기업 신규인증, 연장 및 재인증 접수와 기준	77
[표 2-34]	시·도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 현황	79
[표 2-35]	여성친화 일촌 기업 협약서 예시	83
[표 2-36]	새일센터 기업환경개선 사업 신청서- 일반 기업용	86
[표 2-37]	새일센터 기업환경개선 사업 신청서- 창업 기업용	87
[표 2-38]	새일센터 기업환경개선 사업: 여성 근로자 및 여성 복지 현황표	88
[표 2-39]	새일센터 기업환경개선 사업: 여성친화 진단 측정 지표	89
[표 2-40]	새일센터 기업환경개선 사업 심사 기준표	90
[표 2-41]	세종 새일센터 여성친화일촌협약 내용별 현황	92
[표 2-42]	세종형 공정일터 인증 신청 결격사유	94
[표 2-43]	세종형 공정일터 인증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94
[표 2-44]	세종형 공정일터 인증을 위한 평가 기준	95
[표 2-45]	세종형 공정일터 인증을 위한 심사 절차	95
[표 2-46]	세종형 공정일터 인증제 주요 사항	96
[표 2-47]	제도 간 비교 표 작성	97
[표 3-1]	대전시 여성친화기업 선정 과정	108
[표 3-2]	인천형 여성친화기업 육성 지원 사업 추진 일정	112
[표 3-3]	인천형 여성친화기업 선정 절차	113
[표 3-4]	인천형 여성친화기업 인증 현장실사 평가 지표	113
[표 3-5]	인천형 여성친화기업 선정 평가항목	113

[표 3-6] 인천형 여성친화기업인증 평가항목 제도설명 및 예시	115
[표 3-7] 사업 추진 절차와 추진체계	119
[표 3-8] 청주시 여성친화기업 인증기준	120
[표 3-9] 서구청 여성친화도시협의체 일·생활균형분과 구성과 역할	125
[표 3-10] 광주광역시 서구의 여성친화기업 인증 절차	126
[표 3-11] 광주광역시 서구 심사 기준	127
[표 3-12]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친화기업 지원 신청서	128
[표 3-13]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친화기업 인증기준표(상사근로자 수 10명 미만) ..	129
[표 3-14]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친화기업 인증기준표(상사근로자 수 10명 이상) ..	130
[표 3-15]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친화기업 현장실사평가표(10명 미만)	131
[표 3-16]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친화기업 현장실사평가표(10명 이상)	132
[표 3-17]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친화기업 실사보고서	133
[표 3-18] 광역/기초 여성친화기업 인증 제도 비교 분석	141
[표 4-1] 전문가 의견조사 개최 내역	147
[표 4-2] 1차 자문회의 주제 및 논의사항	148
[표 4-3] 1차 자문회의 주요 논의 결과	148
[표 4-4] 2차 자문회의 주제	152
[표 4-5] 세종형 여성친화기업인증 모델안(1차)	152
[표 4-6] 2차 자문회의 주요 논의 결과	156
[표 4-7] 3차 자문회의 주제 및 논의사항	158
[표 4-8] <세종형 여성친화기업인증 모델안(2차)>	158
[표 4-9] 3차 자문회의(정책과제 콜로키움) 주요 논의 결과	165
[표 4-10] 세종형 여성친화기업인증제(안) 개요	171
[표 4-11] 제도 시행을 위한 주요 구성원별 역할	175
[표 4-12] <서식1. 세종형 여성친화기업 지원 신청서>	178
[표 4-13] <서식2. 세종형 여성친화기업 인증을 위한 기업의 여성친화도 점검표(안)>	179
[표 4-14] <서식3-1. 세종형 여성친화기업 인증 현장실사 평가 지표(10인 이상)>	181
[표 4-15] <서식3-2. 세종형 여성친화기업 인증 현장실사 평가 지표(10인 미만)>	182

[표 4-16] <서식4. 세종형 여성친화기업 인증을 위한 여성친화적 기업문화 및 환경조성을 위한 계획서>	183
[표 5-1] 세종형 여성친화기업 인증제(안) 개요	190
[표 5-2] 제도 시행을 위한 주요 구성원별 역할	193
[표 5-3] <서식1. 세종형 여성친화기업 지원 신청서>	196
[표 5-4] <서식2. 세종형 여성친화기업 인증을 위한 기업의 여성친화도 점검표(안)>	197
[표 5-5] <서식3-1. 세종형 여성친화기업 인증 현장실사 평가 지표(10인 이상)>	199
[표 5-6] <서식3-2. 세종형 여성친화기업 인증 현장실사 평가 지표(10인 미만)>	200
[표 5-7] <서식4. 세종형 여성친화기업 인증을 위한 여성친화적 기업문화 및 환경조성을 위한 계획서>	201
[표 5-8] 세종시 여성친화기업인증제 운영을 위한 조례 개정안	205
[부록 표 1-1] 2020년 하반기 성별 경제활동인구 특징(전국 vs. 세종시)	214
[부록 표 1-2] 2021년 하반기 성별 경제활동인구 특징(전국 vs. 세종시)	214
[부록 표 1-3] 2022년 하반기 성별 경제활동인구 특징(전국 vs. 세종시)	215
[부록 표 1-4] 기초지방자치단체별 여성친화기업에 관한 조례 내용	216
[부록 표 1-5] 중소기업 대상 인센티브(195개)	224
[부록 표 1-6] 대기업(중소기업 가능) 대상 인센티브(71개)	233
[부록 표 1-7] 가족친화인증기업 근로자와 가족을 위한 인센티브(38개)	236
[부록 표 1-8] 세종시 새일센터 여성친화일촌협약 체결 현황	239

그림 차례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10
[그림 2-1] 세종형 여성친화기업인증제 신설운영에 필요한 전략적 방향 제시	28
[그림 2-2] 세종시 2014년 대비 2020년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변화 추이	40
[그림 2-3] 세종시 2014년 대비 2020년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변화 및 증감률 비교	41
[그림 2-4] 세종시 2014년 대비 2020년 산업별 사업체 수 변화 및 증감률	44
[그림 2-5] 세종시 2014년 대비 2020년 산업별 종사자 수 변화 및 증감률	45
[그림 2-6] 세종시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비율(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기준)	50
[그림 2-7]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사업 운영체계	67
[그림 2-8]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의 절차도	71
[그림 2-9] 여성가족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사업 목적	78
[그림 2-10]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 추진체계	80
[그림 2-11] 기업환경개선 사업 만족도 조사(소간) 및 건의 사항 수렴 양식	91
[그림 3-1] 대전광역시 여성친화기업 지원 신청서(2021년 기준)	110
[그림 3-2] 대전광역시 여성친화기업 운영현황표(2021년 기준)	111
[그림 3-3] 인천형 여성친화기업 지원 신청서	116
[그림 3-4] 청주시 여성친화기업 지원 신청서	121
[그림 3-5] 청주시 여성친화기업 인증 체크리스트(30인 미만)	122
[그림 3-6] 청주시 여성친화기업 인증 체크리스트(30인 이상)	123
[그림 4-1] 세종시 50인 미만 전체 사업체 종사자 대비 각 산업별 사업체가 차지하는 비중	151
[그림 4-2] 세종시 50인 미만 전체 사업체 종사자 대비 각 산업별 사업체 종사자 비중	151

[그림 4-3] 세종형 여성친화기업인증제 추진을 위한 추진주체 및 협력거버넌스 체계	174
[그림 5-1] 세종형 여성친화기업인증제 추진을 위한 추진주체 및 협력거버넌스 체계	192
[그림 5-2] 세종형 여성친화기업인증제 신설·운영을 위한 전략적 방향 제시	207
[그림 5-3] 세종형 여성친화기업인증제 제도화 수준 제고 방안	211



서 론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장

1장 서론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대외적 환경 변화의 요구

여성가족부 지정 여성친화도시 세종특별자치시의 성숙을 위한 조치

- 세종시는 2021년 여성가족부 지정 2단계 여성친화도시로서, ‘여성의 경제·사회참여 확대 및 가족친화 환경 조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해야 함
 - 여성친화도시 5대 조성 목표: 성평등 정책 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사회참여 확대, 가족친화환경 조성, 지역사회 안전 증진,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 여성가족부 지정 여성친화도시 2단계 진입은 전 단계에 비하여 모든 정책목표의 ‘성숙’을 위한 조치를 추진해야 함
 - 여성친화기업인증제 도입은 세종시의 여성친화도시 2단계 진입을 위한 사업계획 중 가장 대표적인 성과로서 계획되었으므로 이를 위한 정책설계 및 추진 방안에 대한 기초연구자료가 필요한 상황임
- 세종시는 2023년 수립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행계획의 원활한 이행과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하여 여성친화기업인증제의 설계와 도입을 위한 준비가 필요함
 - 세종시 여성가족과의 <2023년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행계획>에 따르면, 세종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세부 추진 과제로 ‘세종형 여성친화기업인증제(과제번호 3-1-2)’를 실시할 계획을 담고 있음

2) 대내적 환경 변화

세종시 경제·산업 특성을 고려한 여성 친화적 제도 설계의 필요

- 세종시의 사업체 현황 및 고용 동향, 그리고 여성 경제활동의 특성을 고려한 여성 친화적 제도 설계가 필요함

- 세종시 소재 사업체 중 50인 미만 사업체 수의 경우, 전체 사업체 수의 98.41%, 종사자 비율 54.23%를 차지함(2020년 기준)
 - 5인 미만 종사자를 보유한 사업체 수는 전체 사업체 중 80.03%를 차지하며 종사자 수 비율은 21.02% 수준임
 - 5인 이상 ~ 50인 미만 사업체 수의 경우, 전체 사업체 수의 18.38%를 차지하나, 종사자 수 비율은 33.21% 수준임
- 세종시는 경력단절여성 비율이 전국 평균 17.4%보다 높은 21.5%(21년 기준) 수준으로 여성의 경력 유지와 신규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함
 - 시정 4기 당선인 공약 중 “여성의 모성권과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과제가 있는 만큼, 경력유지와 경제활동참여를 위한 여성 친화적 제도 도입을 통해 세종시 여성의 모성권과 노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겠음
- 경력단절여성 비율 개선을 위한 취·창업 지원과 함께 여성이 지속가능한 ‘일’ 환경 조성이 필요한 동시에, 소규모 사업체에서도 여성친화기업으로의 근로환경 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인체계 마련이 요구됨

□ 기존 유사 제도와의 중복성, 중첩성을 고려하여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전략 모색

-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에서 요구하는 ‘여성친화기업’과 정책목표가 일부 중첩되어 시행 중인 제도(가족친화기업인증제도 등)들을 검토하여,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세종형 여성친화기업인증제’ 신설 및 시행에 대한 타당성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기업인증제도는 ‘여성의 경제·사회참여 확대’라는 목표 달성 측면에서 가장 제도화 수준이 높으나, 유리천장 해소 및 여성의 경력유지를 위한 기업의 노력을 측정할 평가지표와 인센티브는 부족함
 - 가족친화기업인증제도의 높은 제도화 수준(법률적 제약사항)은 오히려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음. 예를 들어, 5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 「근로기준법」 미적용 대상이므로(일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한정되어 적용됨)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지원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¹⁾

- 기존 유사 제도와의 중복성, 중첩성을 고려한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 개선을 위한 제도 모델이 요구됨
 - (사각지대 해소 전략 모색) 제도화 가능한 사업체 규모를 선정하고, 기존 유사 제도의 중복과 중첩성을 검토하여 세종시의 지역특수성, 지역문제의 시급성, 전달체계의 조건, 수혜자 접근성 등을 고려한 효율적 세종형 여성친화기업인증 모델을 제시해야 함
 - (중복성 및 중첩성 검토 대상 선정) 여성가족부의 유사 제도 2건(가족친화기업인증,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여성친화일촌기업 협약 및 기업환경개선사업), 세종시의 유사 제도 1건(공정일터인증제)

2.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여성친화도시 세종특별자치시의 성숙을 위하여,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사업체(기업)를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세종형 여성친화기업인증제 도입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본 연구의 세부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음
 - (사업 신설·운영의 타당성 도출: 정책환경 진단) 왜 세종형 여성친화기업인증제가 필요한가?
 - (사업 신설·운영의 타당성 도출: 기존 제도와의 관계) 유사 제도와의 중복·중첩된 부분은 무엇이며, 어떻게 차별화된 모델을 만들 것인가?
 - (제도 설계를 위한 사례분석)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친화기업인증제도 운영 방식과 애로사항은 무엇인가?
 - (정책 제안) 세종형 여성친화기업인증제 모델(안)과 그 신설에 따른 정책과제는 무엇인가?

1)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지원사업은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에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기업에 한하여 적용됨

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 세종특별자치시 기준
- 비교 사례 연구 대상 지역
 - (광역) 대전광역시, 인천광역시
 - (기초) 충청북도 청주시, 광주광역시 서구

2)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2023년

3) 내용적 범위

- 세종형 여성친화기업인증제 신설·운영의 타당성 도출①: 정책환경 진단
 - 성인지적 관점으로 살펴본 세종시 경제·산업 특성
 - 여성친화기업환경 조성의 필요성, 타당성 도출
 - 여성친화기업인증제 운영을 위한 세종시 정책환경 진단
 - 여성가족부의 여성친화기업인증의 취지와 세종시 여건 분석
- 세종형 여성친화기업인증제 신설·운영의 타당성 도출②: 기존 유사 인증 제도와의 중복·중첩성 검토를 통한 추진 타당성 분석
 - (검토 대상 유사 인증 제도) 가족친화인증(여성가족부), 여성친화일촌기업 협약 및 기업환경개선사업(여성가족부 새일센터사업), 세종시 공정일터인증제
- 세종형 제도 구상: 타 지역 여성친화기업인증제 운영 사례 분석
 - 타 지역(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여성친화기업인증제 사례 분석

- 여성친화기업인증제 운영 지자체의 사례 분석을 실시하여, 각 사례가 세종시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사례 대상 지역 및 선정 이유

- (사례 선정 이유: 광역자치단체) **지리적 인접성과 사업예산 규모를 기준으로 사례 대상으로 선정함.** 여성친화기업인증제를 운영하는 광역자치단체 중 지리적으로 가장 인접한 광역자치단체인 대전광역시와 여성친화기업인증제의 사업예산 규모가 가장 큰 인천광역시의 사례를 선정함
- (사례 선정 이유: 기초자치단체) **추진 주체가 시 직영인 경우와 사업체 규모가 가장 비슷한 지역을 고려하여 사례 대상으로 선정함.** 충북 청주시는 인증제도의 주된 추진주체가 시 담당부서인 특징을 가짐. 광주광역시 서구의 경우, 사업체 규모가 세종시와 가장 유사한 규모를 나타내고 있는 지역 중 하나로서 검토 사례로서 매우 유용한 대상임

세종형 여성친화기업인증제 모델(안) 제안 및 운영을 위한 정책과제 도출

- 세종형 여성친화기업 인증 모델 제안
- 전략적 제도 운영을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과제 제안

[표 1-1] 연구의 흐름

목차	내 용 서 론
제1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범위와 방법 <p>여성친화기업인증제 신설·운영의 타당성 도출</p>
제2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친화기업인증제의 취지와 세종시 여건 분석 • 성인지적 관점으로 살펴본 세종시 경제·산업의 특성 • 유사 인증제도 운영 현황과 한계 <p>사례분석을 통한 제도 설계</p>
제3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자치단체 여성친화기업인증제도 운영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광역시, 인천광역시 • 기초자치단체 여성친화기업인증제도 운영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북도 청주시, 광주광역시 서구 • 세종시 적용 가능성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 취지 및 목적, 여성친화기업 개념 정의, 사업예산 규모, 추진 주체(인증 주체), 추진 기간 및 절차, 선정기준, 평가항목, 제출서류, 인센티브 등 측면에서의 시사점 도출 <p>세종형 여성친화기업인증제 모델(안)</p>
제4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 의견조사 • 세종형 여성친화기업인증제 모델안(최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종형 여성친화기업인증제 모델의 차별성 - 연구진 제안 모델 <p>결 론</p>
제5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요약 • 정책 제언

2. 연구의 방법

○ 문헌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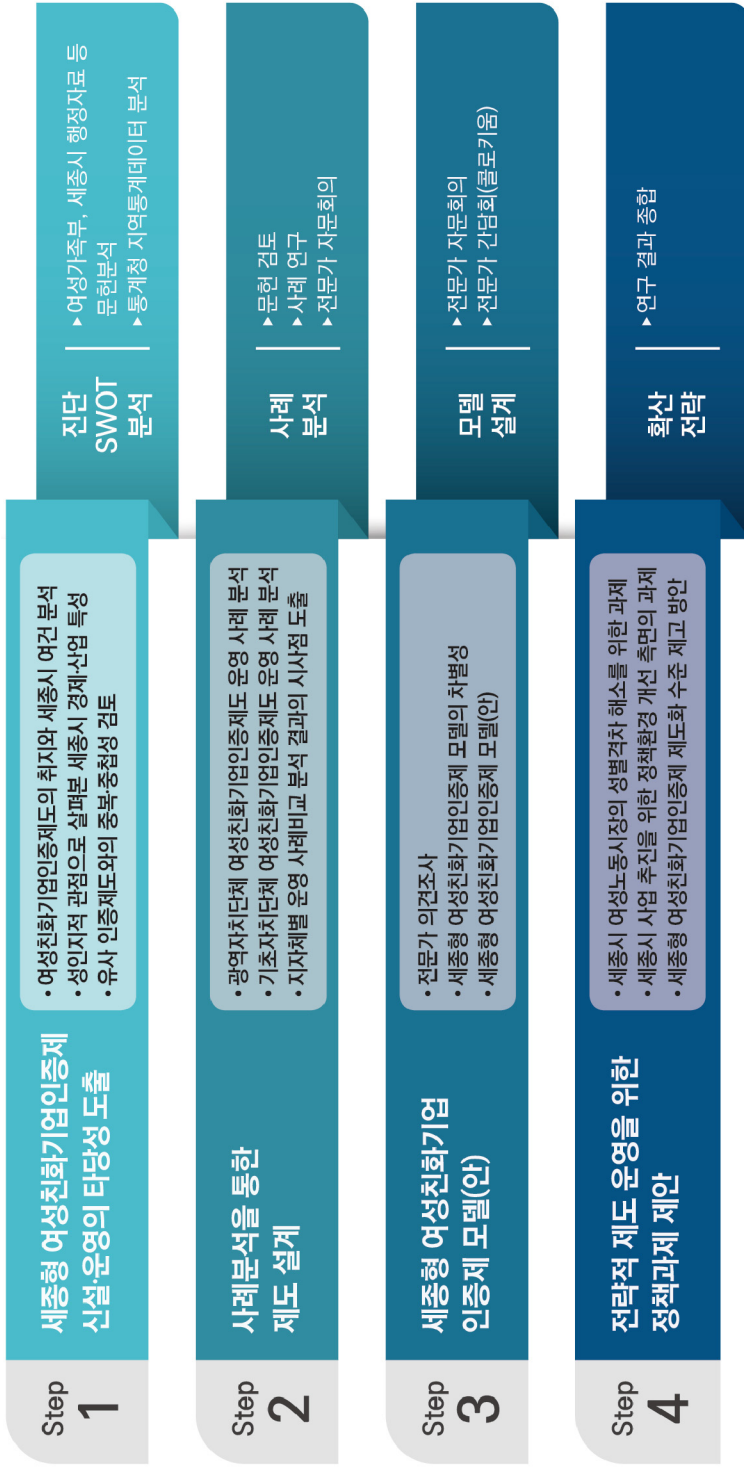
-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연구 자료 검토
- 유사 인증제도 분석을 위한 중앙부처 및 세종시 정책 자료 검토

- 정책환경 분석
 - 세종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법·제도(자치법규) 여건, 사업추진 현황, 조직 및 인력, 예산(재원조달), 지역사회 네트워크 현황 진단
 - SWOT 분석을 실시하여, 세종형 여성친화기업인증제 사업의 추진 타당성 결과 도출 및 전략별 대안 모색
- 사례분석
 -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중 여성친화기업인증제도 실시 중인 지자체 사례를 선정 후 추진계획 비교 분석
- 자문회의, 간담회(콜로키움) 등을 통한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 유사 인증 제도 운영 중인 기관 전문가와의 자문회의를 통한 의견 수렴
 - 세종시 여성 일자리 협의체와의 협업을 통한 제도 설계 보완
 - 세종형 여성친화기업인증제 모형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콜로키움)
 - 향후 정책 방향 및 과제에 대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3. 연구 결과의 활용 및 기대효과

- 세종시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실질적 기업지원으로 여성친화도시 구현
- 세종형 여성친화기업인증제 사업계획 수립 시 활용
-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2단계 지정 사업계획 이행률 제고
- 여성친화적 일자리 창출 및 근로환경 조성에 기여

□ 연구의 흐름도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여성친화기업인증제 신설·운영의 타당성 도출

- 1절 여성친화기업인증제의 취지와 세종시 여건 분석
- 2절 성인지적 관점으로 살펴본 세종시 경제·산업 특성
- 3절 유사 인증제도 운영 현황과 한계

2장

2장 여성친화기업인증제 신설·운영의 타당성 도출

〈2장 개요〉

- ❖ 이 장에서는 세종형 모델을 제안하는데 필요한 세종시의 여성친화기업인증제 신설·운영의 타당성을 도출하기 위하여 다음의 내용으로 구성하고자 함
 - ① 첫째, 여성가족부의 여성친화기업인증의 취지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의 지침과 컨설팅트 교육내용을 검토함
 - ② 둘째, 세종시의 정책환경 분석을 위하여 여건 분석 지표(자치법규 유무, 사업추진 현황, 조직 및 인력 현황, 예산현황 및 재원조달 가능성 측면, 지역사회 네트워크 현황)를 설정하여 SWOT 분석을 실시함
 - ③ 셋째, 성인지적 관점으로 세종시의 경제·산업 특성을 분석하여, 세종시에 필요한 여성친화기업인증 요소를 도출함
 - ④ 넷째,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기업인증제도, 새일센터의 여성친화일촌협약, 세종시 공정일터인증제도 등 유사 인증제도의 운영 현황을 검토하여 중복과 중첩성 정도를 파악하고자 함

1절 여성친화기업인증제의 취지와 세종시 여건 분석

1. 여성가족부의 안내 사항

1)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지침 중 관련 사항

-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행계획의 평가목적: 여성의 경제사회참여 확대
- 평가목적: 여성의 경제적 자립 여건 마련에 기여함

[표 2-1]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대표사업 분야 평가지표

구 분		범 위
추진 기반 역량	공공	- 해당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하려는 단체장의 의지가 있는가 - 주무부서가 추진하거나, 타부서 주관 사업이더라도 주무부서와 협업체계를 구성하여 사업이 추진되었는가 - 재원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수반되었는가
	민간· 시민	- 다양한 연령, 계층의 여성을 발굴하거나, 다양한 여성집단의 참여를 보장하였는가 - 지속적인 여성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는가
내용 적합성		- 사업 내용이 대표 사례 범위에 부합하는가 - 사업이 지역 여성들의 현황과 요구를 반영했는가

구 분	범 위
사업 효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의 경제력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가 - 성 불평등한 노동시장 문화와 규범의 전환에 기여했는가 -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며, 취창업지원기관(고용안정센터, 새일센터, 농업기술센터 등) 등과 연계, 지속성이 유지되는가 - 사업의 지속 추진이 예상되는가 - 사업의 확장이 예상되는가
<input type="checkbox"/> (대표사례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친화기업 협약/인증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취업률 증가 중소기업 지원(자금 지원 심사 시 우선순위 부여, 각종 인센티브 등을 부여) • 새일 사업인 여성친화기업 MOU 요건에 직장 내 성평등 관련 조치 강화. MOU 체결 독려를 위하여 기업 지원 인센티브 등을 마련 • 지자체 출연 공공기관 직장·가정양립제도 확대 위해 공공기관 평가지표 등을 개선 ○ 여성의 취·창업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또는 지자체가 취창업 지원기관(고용지원센터, 새일센터, 농업기술센터 등) 등과 연계하여 여성의 취·창업 지원 • 여성농업인력 육성 및 농업경영인 비율 확대, 여성 주도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 분야 확대, 지역산업 연계 직업훈련과 일자리 매칭 프로그램 운영, 직종분리 해소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 여성의 고용 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 내 성차별, 취창업 진입장벽 등의 해소를 지원 -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제도 사용이 어려운 소기업 여성재직자 대상 보육 바우처 제도 도입 등 - 농번기 급식소 운영, 가사돌봄 지원 등 여성농업인의 이중 노동 부담 경감 - 여성 다수 취업 직종의 일 여건 개선 사업(유통산업 협의체 구성으로 여성근로자 휴가 및 휴식 보장 등) ○ 대표사례 사업 목표와 성평등 효과에 준하는 자체설정 사업 ■ (부적합사례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일 센터,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 	

지방자치단체 여성친화기업 인증사업의 핵심요건²⁾

- 지자체 여성친화기업은 지속 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승진, 성희롱·성폭력예방을 위한 조치 등을 지속성을 보이며 추진하는 곳에 인증할 수 있어야 함
- 성평등 조치를 하려는 기업에 대하여 지자체의 기업우대 의지를 보이는 것이 중요함
 - 예시: CCTV 우선 증설, 주차장 요금감면, 창업지원 심사 시 가점 등

2)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컨설팅 교육 내용에 근거하여 재기술. 교육 담당: 최유진 박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일시/장소: 2023년 2월 1일 오후 2시 온라인 회의 및 2023년 2월 23일 오후 3시 온라인 회의 내용 재구성

- 여성친화기업인증 사업의 핵심요건은 첫째, 행정 내에서 여성의 지속고용을 위한 제도화 노력이 있었는지, 고용 시장 내 차별적 대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거나 선포하였는지가 중요. 둘째, 평가지표의 예를 들자면, 성별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 승진에서 남녀 간의 차별을 없애기 위한 노력 등을 포함해서 세워야 함
- 이를 위한 인센티브체계를 제시하고, 이러한 제도화 노력이 지속가능하도록 설계해야 할 것임

2)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컨설팅 내용

□ ‘여성친화기업’의 목표와 방향성³⁾

-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에서 주목하는 ‘여성친화기업’의 목표와 방향성
 - 여성친화도시 조성 목표 중 “여성 경제·사회 참여 확대”의 목표 정의는 “일하고 싶은 사람은 일하게 하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음
 - 여성친화기업은 여성이 노동시장(일자리)에서의 탈락 예방을 목표, 즉 경력보유에 목표를 두고 있음
 - 대기업들은 근무환경 및 조건, 조직문화 등에 있어 여성의 경력보유를 위한 제도화 수준이 상당히 높은 상태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미흡한 곳이 다수임
 - 일부 지자체의 경우 여성친화기업을 대기업에게 인증해 주는 경우도 있으나, 적절성 검토가 필요함
 - 기초지자체의 경우, 30인 미만 사업체가 대다수이므로 여성친화기업 인증사업 설계 시 중소기업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함
 - 예를 들어, 여성이 노동시장(일자리)에서의 탈락을 경험하는 사유는 일·가정 양립제도 제도의 부재 때문이 아니라 그 직장에 유리천장 등으로 인한 비전(승진 등)이 없는 것에 기인할 수 있음. 따라서 여성의 직장경력(승진 등) 및 직장 내 성차별 등을 해소하고, 보완하기 위한 사업주의 노력을 이끌 수 있는 정책설계 필요

3)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컨설팅 교육 내용에 근거하여 재기술. 교육 담당: 최유진 박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일시/장소: 2023년 2월 1일 오후 2시/ 온라인 회의

2. 세종시 여건 분석

1) 분석 개요

- 세종시 정책환경 분석을 통한 여성친화기업인증제 추진 타당성 도출
 - 세종시 정책환경 분석을 위하여 아래의 여건 분석 지표를 선정하여 그 현황을 진단하고자 함
 - 여건 분석 지표: 자치법규 유무, 사업추진 현황, 조직 및 인력 현황, 예산현황 및 채용조달 가능성 측면, 지역사회 네트워크 현황

2) 자치법규 유무

- 여성친화기업인증제 신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치법규 유무: “있음. 다만, 개정이 필요함”
 -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1조(여성능력개발의 효율화) 제5항에서 ‘여성친화기업의 증대’를 고려하여 여성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 간의 연계를 추진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다만, 여성친화기업을 인증하기 위한 조문은 부재함
 - 향후 세종형 여성친화기업인증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해당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세종시의 관련 조례 개정을 위하여 기초자치단체 중 여성친화기업 인증을 포함한 자치법규를 가진 사례를 조사함
 -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자치법규 검색창에 키워드 검색(검색어: 여성친화기업, 여성친화기업인증, 여성친화인증 기업)을 추진한 결과, 충북 음성군, 제천시, 충주시, 청주시가 여성친화기업인증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2-2] 여성친화기업 관련 자치법규 운영 사례(세종시와의 비교)

구 분		조 례 내 용
광역사도	기초단체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	<p>*세종시의 경우, 여성친화기업 인증에 관한 사항은 부재함</p> <p>「세종특별자치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1조(여성능력개발의 효율화)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여성능력개발 및 취업 지원 기관들을 서로 연계하여 생활권별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역량 강화 사업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정 및 직장과 사회교육기관 간 연계를 통한 여성일자리 창출·창업 지원 2. 시설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생활 근접형 교육훈련 지원 3. 사회교육 정보의 제공과 상담 4. 직장인의 학습 기회 확충 5. 여성친화기업의 증대
	음성군	<p>「음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7조의2(여성친화기업 지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군수는 여성의 고용안정과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을 여성친화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인증된 여성친화기업이 여성친화적인 기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생산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천시	<p>「제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2조의2(여성친화기업 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시장은 여성의 고용안정, 근무환경개선 등으로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을 여성친화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거 인증을 받은 기업이 여성친화적인 기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생산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시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취업·창업 관련 정보 제공과 상담 2. 사회적 기업 창업보육 지원
	충주시	<p>「충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9조(여성능력개발 및 여성 취업·창업 활성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시장은 여성능력개발 및 취업지원기관과 연계하여 역량강화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여성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네트워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여성인력을 주요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 기업 확대 및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 분		조 례 내 용
광역사도	기초단체	
		제11조(여성친화기업 지원) ① 시장은 여성의 고용안정, 근무환경 개선 등으로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을 여성친화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거 선정된 여성친화기업이 여성친화적인 기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생산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청주시	「청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1조의2(여성친화기업 지원) ① 시장은 여성친화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여성친화기업을 인증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증된 여성친화기업이 여성친화적인 기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생산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자료 검색일: 2023년 9월 5일, 검색 키워드: 여성친화기업)

3) 사업 추진 현황

세종시 여성친화도시 지정개요

- 여성친화도시란 지역 정책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임
- 세종시는 여성가족부 2021년 12월 재지정(2022~2026년)된 최초의 광역자치단체임
- (비전)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여성친화도시, 세종
- (과제) 15개 부서 38개 과제가 추진 중에 있음

[표 2-3] 세종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세부 추진과제 목록

역점 추진목표	세부 추진과제	담당부서	비고
15개 부서 38개 과제			
1. 시민참여로 양성평등 실현(5개)			
1-1. 여성친화도시 거버넌스 강화	1-1-1.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운영 및 활동 활성화	여성가족과	필수
	1-1-2.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 운영	복지정책과	
1-2. 양성평등한 참여와 자치 활성화	1-2-1. 양성평등 제고를 위한 시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예산담당관	
	1-2-2. 양성평등한 주민자치회 운영	자치행정과	
	1-2-3. 양성평등한 마을계획 수립 및 실행 단계적 확대	자치행정과	

역점 추진목표	세부 추진과제	담당부서	비고
2. 양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강화(7개)			
2-1. 양성평등 추진체계 강화	2-1-1. 양성평등담당관제 도입 및 운영	여성가족과	대표
	2-1-2. 성인지적 사전 검토제 운영	여성가족과	
	2-1-3.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 제고	운영지원과	필수
	2-1-4.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제고	여성가족과	필수
2-2. 성주류화 제도 활성화	2-2-1. 특정성별영향평가 추진	여성가족과	
	2-2-2. 성인지적 홍보물 제작 확대	여성가족과	
	2-2-3. 성인지 통계 구축 및 인포그래픽 발간·배포	정보통계담당관	필수
3.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11개)			
3-1.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3-1-1. 여성 일자리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여성가족과	필수
	3-1-2. 세종형 여성친화기업 인증제	여성가족과	대표
	3-1-3. 여성기업의 경쟁력 강화	기업지원과	
	3-1-4. 여성창업 문화 확산	투자유치단	
	3-1-5. 차세대 여성 농업 리더 육성	농업기술센터	
3-2.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강화	3-2-1. 여성의 자립·성장·네트워크 플랫폼 세종여성 플라자 운영	여성가족과	대표
	3-2-2. 여성 중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여성가족과	
	3-2-3. 읍·면 지역 여성 활동 활성화	여성가족과	
3-3. 함께 만드는 양성평등한 지역사회	3-3-1. 남녀 모두가 존중받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	여성가족과	
	3-3-2.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	문화예술과	
	3-3-3. 자원순환분야 여성 모임 활성화 및 커뮤니티 공간 지원	자원순환과	
	3-3-4. 지역 자원순환(재활용·업사이클링) 활성화	자원순환과	
4. 지속가능한 안전 도시 조성(8개)			
4-1. 모두가 안전한 세종 조성	4-1-1. 여성폭력 대응 민·관·경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여성가족과	필수
	4-1-2. 세종시민의 여성폭력 인식 제고 및 예방 강화	여성가족과	
	4-1-3. 폭력피해자 지원 및 시설 확대	여성가족과	대표
	4-1-4. 여성 1인 가구 생활안전 지원	여성가족과	
4-2. 스마트 안전 도시 조성	4-2-1. 여성친화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	건축과	
	4-2-2. 스마트시티 기술을 활용한 시민안전망 구축	지능형도시과	
	4-2-3. 범죄예방환경디자인(셉테드) 사업 추진	건축과	
	4-2-4. 여성의 참여 확대를 통한 여성의 지역 안전 유지 역량 강화	자연재난과	
5. 빈틈없는 돌봄 추진체계 강화(6개)			
5-1. 함께 일하고 돌보는 환경조성	5-1-1. 직장맘 지원센터 운영	여성가족과	대표
	5-1-2. 돌봄공동체 지원 사업	여성가족과	
	5-1-3. 세종 100인의 아빠단 운영	여성가족과	
5-2. 돌봄 공공성 강화	5-2-1. 돌봄노동자 지원 사업	복지정책과	필수
	5-2-2. 세종형 공동육아나눔터 조성 및 기능 확대	여성가족과	
	5-2-3. 아이돌봄 서비스 및 다함께 돌봄사업	아동청소년과	

자료: 세종특별자치시 여성가족과 내부자료(2023), <2023년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행계획>

세종시의 ‘세종형 여성친화기업인증제’는 여성친화도시 대표 과제 중 하나임

○ ‘세종형 여성친화기업인증제(과제번호 3-1-2)’ 추진계획은 아래 [표 2-4]과 같음

- (검토 의견) 2023년 2월 기준 사업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중 대표과제로 지정되어 있으며 '계속사업'으로 구분되어 추진 중이나, 제도 설계를 위한 연구 추진 중인 상황으로 실제 인증 절차가 개시된 것은 아님

[표 2-4] (과제번호 3-1-2.) 세종형 여성친화기업 인증제 사업 내용

구 분	내 용
사업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 근로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경력단절 없이 장기 근무가 가능하도록 일하기 좋은 기업문화 및 환경 조성
추진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지원과 함께 사전에 경력단절을 예방할 수 있는 기업 문화 및 환경 조성이 필요함 ▪ 모범적으로 여성친화적 경영을 실천하려는 기업을 인증·지원하는 세종형 여성친화기업 인증제도를 수립·실행할 필요가 있음
2022년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종형 여성친화기업 인증제 연구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수행) 대전세종연구원 - (연구기간) '22.12~'23.8.
2023년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추진) '23. 8.(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종형 여성친화기업 인증제 도입 필요성 - 타 시도 여성친화기업인증제 사례 분석 - 세종형 여성친화기업 인증제 모델 제안 및 운영 방안 제시(적용 범위, 대상, 인증지표, 인센티브 등)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통한 여성의 경제적 평등 실현 및 사회참여 기회 제고

4) 조직 및 인력 현황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 조직 및 인력 운영 계획 검토 결과

- 세종시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 인력은 5명으로 이 중 여성친화도시 전담 인력은 1명(주무관)임
- (검토 의견)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성별영향평가제도 등의 운영도 함께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시 직영으로 여성친화기업인증제를 추진할 경우,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지역 사회 유관 기관을 적극 활용하여 추진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표 2-5] 세종시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 인력 현황

(2023년 2월말 기준)

주무 부서	직 급	업 무
여성가족과 여성정책담당 (5명)	복지5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정책담당 업무 총괄 기획·조정 • 여성친화도시조성 기획·조정 및 제도개선 • 여성친화도시조성 협의체 및 시민참여단 운영 • 양성평등정책 발굴 및 제도개선 • 여성정책담당 자치법규 제·개정
	행정6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업무 보고 및 시장 공약, 지시사항 관리 • 국회 및 시의회 협력, 대응 •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 운영(민간회장실 불법촬영 점검) • 여성친화도시조성 대표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종여성플라자 설립·운영 관련 업무 - 여성중심마을공동체사업 • 직장맘 지원센터 설립·운영 관련 업무 •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평등위원회 운영 - 양성평등주간 행사 •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관련 업무 • 여성인재 관리 및 위원회 성별 균형 관리 • 여성관련 단체·법인 등 지원 • 여성관련 행사 및 사업 등 지원
	시간선택 임기제 나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친화도시 조성업무 전담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시행 - 여성친화도시 조성과제 발굴·시행 - 여성친화도시 조성과제 점검·평가 -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운영·관리 -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민참여단 운영·관리 - 여성친화도시 교육 및 홍보 - 여성친화도시 조성 통계 및 기록 관리 • 성별영향평가 업무 •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 직장내 4대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 성인지 교육 및 홍보 ※ 전체 업무 중 여성친화도시 업무 비중 (50%)
	행정7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가족과 기록물관리 및 서무 업무 • 여성가족과 예산회계 업무 • 주간·월간업무에 관한 사항 • 총무계획 수립, 비밀, 보안업무 • 양성평등기급사업 및 기금관리 등
	행정7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원 및 관리 업무 • 성폭력,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 성인권센터, 통합상담소 지원 및 관리 •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에 관한 사항 • 장애아동, 청소년, 비의무대상 폭력예방교육 • 경력단절여성 등 경제활동 촉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원 및 관리 업무 - 여성특화 일자리 박람회 등

5) 예산현황 및 재원조달 가능성 측면

□ 주무부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 예산 운영 계획 검토 결과

- (검토 의견) 시행계획에 세종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항목 중 여성친화 기업인증제 신설·운영 시 증액이 필요한 항목은 없음
 - 따라서 여성친화기업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항목을 신설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세종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예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세종여성플라자 운영비(76.8%)임. 세종여성플라자가 수행해야 하는 기능을 활용하여 여성친화기업인증제를 설계할 필요가 있음

[표 2-6] 세종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항목 및 예산 내역

(2023년 2월말 기준, 단위: 백만원)

사업 항목 및 주요 내용	예산액(비중 %)	자체예산 비중(%)
성인지 정책역량강화	4(0.5%)	100
여성친화도시 교육 및 홍보	7(0.8%)	100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26(3.0%)	100
여성중심 마을공동체 활성화	40(4.6%)	100
직장맘 지원센터 운영	124(14.3%)	100
세종여성플라자 운영	664(76.8%)	100
합 계	865(100%)	100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세종특별자치시 여성플라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7. 10.]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2172호, 2023. 7. 10., 일부개정]

제4조(기능) 플라자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성평등 문화 조성 및 확산
2. 양성평등 교육 및 홍보
3. 여성의 능력개발, 취·창업 지원을 위한 전문교육 및 컨설팅
4. 여성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한 활동 공간 지원
5. 여성단체 등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지원
6.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서비스 제공
7. 일하는 여성의 노동권 및 모성권 보호 관련 종합상담, 교육 등 서비스 지원을 위한 직장맘 지원센터 운영<신설, 2022. 12. 20.>
8. 여성·가족·양성평등에 관한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신설, 2023. 7. 10.>
9. 그 밖에 양성평등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호에서 이동, 2022. 12. 20.][제8호에서 이동, 2023. 7. 10.]

□ 재원 조달의 가능성

- 현재 세종시의 재정운용계획의 기초: 건전재정
 - 세종시의 <2023년 중기지방재정계획(2023~2027)>의 재정운용 기본 방향은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건전재정기조 확립'을 강조하고 있음
-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 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종류: 양성평등기금, 일반회계
- 양성평등기금 운용 현황: 세종특별자치시 고시 제2023-171호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 고시>에 따르면, 세종시 양성평등기금으로 조성된 예산액은 1,741백만원임
- 양성평등기금사업 추진 현황: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3-296호 <2023년 양성평등기금사업 공고>에 따라 2023년 양성평등기금사업예산은 18백만원(민간경상사업보조)으로 1~2개 사업자 선정에 그침
 - 시는 양성평등기금의 이자분을 공모사업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음. 해마다 이자율 변동에 따라 예산 금액의 변동이 발생함
 - 사업내용은 기금의 용도 범위에 속해야 하며, 양성평등 실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그 밖에 시장이 양성평등 실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 (검토 의견) 세종시의 2023년 재정기조를 고려하고, 양성평등기금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반회계를 활용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예산 운영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됨
 - 예산편성액의 수준을 정할 때, 세종시 재정기조 및 경제·산업적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타 지역 사례를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음

5) 지역사회 네트워크 현황

□ 지역사회 유관 기관을 활용한 네트워크 구축 가능성 검토

- 여성친화기업인증제와 연계 가능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자원 현황

- (세종시 여성 일자리 협의체) 세종시 기업지원과, 세종여성새로일하기지원 센터(세종새일센터), 세종여성플라자(직장맘지원센터), 세종지역 인적자원 개발위원회,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일·생활균형 대전·세종지역 추진단
- (여성기업 관련)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세종충남지회, 대전·세종·충남 여성벤처협회 등
- (검토 의견) 세종시의 여성친화기업인증제의 홍보를 활성화하고 추진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사회 네트워크와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함
 - (인력 측면에서의 보충적 자원으로 활용) 세종시 주무부서의 부족한 인력 보완을 위하여 유관 기관 중 중간거점조직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예산 측면에서의 보충적 자원으로 활용) 세종시 여성친화기업인증제 사업예산 편성이 건전재정 기조로 인하여 최소화될 경우, 유관 기관의 사업과 연계 추진을 통해 보완 시도한다면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홍보 및 참여도 제고를 위한 보충적 자원으로 활용) 홍보 및 참여도 제고를 위하여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3. 여성친화기업인증제 추진을 위한 정책환경 분석(SWOT) 결과

1) 요인별 특징

외부 기회요인

- 여성가족부 지정 여성친화도시 2단계 진입에 따른 시행 조치
 - <2023년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행계획>의 여성친화기업인증제 추진 과제 이행점검에 대비해야 함
- 중앙정부는 양성평등 일자리 기반 조성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정과제 50번.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의 일환으로 단계적인 성별근로공시제 추진을 계획함
- 세종스마트국가산단 조성 등 산업단지 조성 활성화

□ 외부 위협요인

- 국가 재정 기조가 ‘건전재정’을 강조하여 세종시 역시, 재정건전성을 위한 사업예산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세종시 중기지방재정계획 건전재정 기조 강화)
 - 세종시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를 위협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존재함
- 가족친화기업인증 등 기존 유사한 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높아, 여성친화기업인증제의 추진탄력성이 위협받을 수 있음
 - 중첩 또는 중복성이 높은 인증제도로 인식될 수 있으며, 제도의 취지 등에 따른 혼동으로 인하여 기업주의 관심과 참여율이 낮아질 수도 있음

□ 내부 강점

- 단체장의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경제활동참여에 대한 강력한 의지
 - 시정 4기 단체장 공약으로 직장맘지원센터 설치·운영 중
 - 세종여성플라자 설치·운영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및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인력 측면의 강점)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전담 인력 배치로 정책 추진의 전문성과 안정성 제고
 - 세종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전담 인력을 전문성을 가진 민간 전문가를 활용(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하여 배치하고 있음
- (지역사회 네트워크)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구심점으로 활동 중인 세종여성 플라자와 여성친화일촌협약 등 유사 사업을 추진해 온 여성새일센터, 청년 센터 등과의 협업 활성화

□ 내부 약점

-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실태)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경력단절여성비율과 지속적인 증가추세, 성별임금격차, 긴 노동시간(전국 5위, 2021년 하반기 기준)
- (경제·산업 특성) 소규모 사업체가 다수를 점함. 여성 종사자의 집중도가 높게 나타나는 사업체 규모를 살펴본 결과, 10인 미만의 사업체에 여성이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나타남

- (자치법규) 여성친화기업인증 관련 조문이 포함되도록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개정 필요
- (인력 측면의 약점)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전담 인력은 1명에 그치나, 성별영향평가제도 등의 유관 업무를 병행 중이므로 인력 보강계획이 필요함
 - 따라서 여성친화기업인증제 사업추진기획 및 모집, 선발, 사후관리 등 전반적인 과정을 혼자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
- (예산의 충분성 부족) 세종시의 건정재정 기조로 인하여 충분한 사업예산 편성이 어려울 전망이다

2) 전략적 방향성 도출

□ 지속성장 전략(강점-기회요인 전략)

- 여성친화기업인증제의 인센티브의 일환으로 세종시 직장맘지원센터 프로그램을 활용
- 세종여성플라자의 여성경제활동지원 기능을 활용하여 여성친화기업의 임금격차를 개선하기 위한 캠페인 추진
-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여성친화기업인증제 특성화 전략 마련(증장기적 과제)

□ 우회 전략(강점-위협요인 전략)

- 세종여성플라자의 기능 중 교육 기능을 여성친화기업인증제와 연계하여 여성친화기업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컨설턴트(상담사) 육성 후 여성친화기업 지원을 위한 인력으로 배치
- 여성친화기업인증제의 홍보를 위해 세종새일센터와 세종여성플라자, 청년센터 등과의 업무협약 체결
 - 세종새일센터의 여성친화일촌협약 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한 기업설명회 추진
 - 세종여성플라자의 여성정책네트워크를 활용한 정책 홍보 활성화
 - 세종청년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청년들로 하여금 여성친화기업 인증제도 및 인증기업 설명회 개최

□ **역량강화 전략(약점-기회요인 전략)**

-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여성친화 기업인증제에 대한 제도화 수준을 제고(사후관리 강화 및 인증제도에 대한 공신력 높이기 전략 마련)
- 신규 조성된 산업단지 내 사업체의 여성친화기업인증을 활성화하여, 비경제활동상태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기업홍보 강화
- 여성친화기업인증 대상 기업들을 대상으로 인센티브 수요 조사 실시

□ **방어 전략(약점-위협요인 전략)**

- 여성친화기업인증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경영주에 대한 지역사회 내 공헌활동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후관리의 지속성을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민참여단과의 협업체계 마련
- 시의 역점사업(예: 정원도시 산업, 지역농산물 판매 등)과 연계할 수 있는 원-원 인센티브 발굴
 - 예시: 인증기업 대상 실내 정원 조성 및 가드닝 서비스 제공
 - 예시: 인증기업 대상 지역농산물 간식 제공

Cross-SWOT분석을 통한 전략적 방향 제시

<p>내부환경</p> <p>외부환경</p>	<p>외부기회(Opportunitie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가족부 지정 여성친화도시 2단계 진입에 따른 시행 조치 • 중앙정부는 양성평등 일자리 기반 조성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정과제 50번>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의 일환으로 단계적인 성별근로공시제 추진을 계획함 • 세종스마트국가산단 조성 등 산업단지 조성 활성화 	<p>외부위협(Threat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재정 기조가 '간접재정'을 강조하여 세종시 역시, 재정 건전성을 위한 사업예산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 • 가족친화기업인증 등 기존 유사한 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높아, 여성친화기업인증제도의 추진탄력성이 위협받을 수 있음 • 중점 또는 중박성이 높은 인증제도로 인식될 수 있으며, 제도의 취지 등에 따른 혼동으로 인해 기업주의 관심과 참여율이 낮아질 수도 있음
<p>내부강점(Strength)</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장의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경제활동참여에 대한 강력한 의지: 직장맘지원센터 설치 운영, 세종여성플라자 설치 운영 • (인력 측면의 강점)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전담 인력 배치로 정책 추진의 전문성과 안정성 제고 • (지역사회 네트워크)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구성점으로 활동 중인 세종여성플라자와 여성친화기업연합회 등 유사 사업을 추진해 온 여성세일센터, 청년센터 등과의 협업 활성화 	<p>지속성장(SO전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O전략1. 여성친화기업인증제도의 인센티브의 일환으로 세종시 직장맘지원센터 프로그램을 활용 • SO전략2. 세종여성플라자의 여성경제활동지원 기능을 활용하여 여성친화기업의 임직원자를 개선하기 위한 캠페인 추진 • SO전략3.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여성친화기업인증제도 특성화 전략 마련(중장기적 과제) 	<p>우회전략(ST전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 전략 1. 세종 여성플라자의 기능 중 교육 기능을 여성친화기업인증제도와 연계하여 여성친화기업인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컨설팅(상담사) 육성 후 여성친화기업 지원을 위한 인력으로 배치 • ST전략2. 여성친화기업인증제도의 홍보를 위해 세종세일센터와 세종여성플라자, 청년센터 등과의 업무협약 체결
<p>내부약점(Weaknes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의 경제활동 실태)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경력단절여성 비율과 지속적인 증가세, 생활임금격차, 긴 노동시간 • (경제·산업 특성) 소규모 사업체가 다수를 점함. 여성 종사자의 집중도가 높게 나타나는 사업체는 10인 미만 종사자 규모의 사업체 • (자치법규) 여성친화기업인증을 위한 조문을 포함하여 조례개정 필요 • (인력측면) 시의 전담 인력 1명에 그쳐 여성친화기업인증제도 운영인력보강 필요 • (예산의 충분성 부족) 세종시의 간접재정 기조로 충분한 사업예산 편성 어려움을 전망함 	<p>역량강화(WO전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O전략1.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여성친화기업인증제도에 대한 제도화 수준을 제고(사후관리 강화 및 인증제도에 대한 공신력 높이기 전략 마련) • WO전략2. 신규 조성된 산업단지 내 사업체의 여성친화기업 인증을 활성화하여, 비경제활동상태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기업홍보 강화 • WO전략3. 여성친화기업인증 대상 기업들을 대상으로 인센티브 수요 조사 실시 	<p>방어전략(WT전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T전략1. 여성친화기업인증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경영주에 대한 지역사회 내 공헌활동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WT전략2. 사후관리의 지속성을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민참여단과의 협업체계 마련 • WT전략3. 시의 여성사업(예: 정원도시 산업, 지역농산물 판매 등)과 연계할 수 있는 원-원 인센티브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시: 인증기업 대상 실내 정원 조성 및 가드닝 서비스 제공 - 예시: 인증기업 대상 지역농산물 간식 제공

[그림 2-1] 세종형 여성친화기업인증제 신설운영에 필요한 전략적 방향 제시

2절 성인지적 관점으로 본 세종시 경제·산업 특성

1. 세종시 경제활동인구의 성별격차 특성

1) 성인지적 관점으로 살펴본 세종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현황

□ 2022년 상반기 세종시 경제활동인구의 성별격차 특성

- (세종시 경제활동인구의 특징) 남성 대비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참여율을 보이며, 성별 격차는 전국 수준에 비하여 더 큰 차이를 나타냄
 - 경제활동참가율의 성별 격차 수준이 전국 수준보다 높음. 전국 19%p, 세종 24.9%p 차이로 남성이 높음
 - 성별 간 고용률 격차(=남자 고용률-여성 고용률) 수준이 전국 수준보다 큼. 2022년 상반기 기준 전국 남녀 간 고용률 격차는 18.7%p, 세종시는 23.1%p로 조사됨

[표 2-7] 2022년 상반기 성별 경제활동인구 특징(전국 vs. 세종시)

(단위: 명, %)

항목/행정구역	전국(계)			세종시(계)		
		남자	여자		남자	여자
15세이상인구 (천명)	45,234 (100.0)	22,261 (49.2)	22,973 (50.8)	306 (100.0)	152 (49.7)	154 (50.3)
경제활동인구 (천명)	28,942 (100.0)	16,392 (56.6)	12,550 (43.4)	199 (100.0)	118 (59.3)	81 (40.7)
취업자 (천명)	28,078 (100.0)	15,933 (56.7)	12,145 (43.3)	196 (100.0)	115 (58.7)	80 (40.8)
실업자 (천명)	864 (100.0)	459 (53.1)	405 (46.9)	4 (100.0)	3 (75.0)	1 (25.0)
비경제활동인구 (천명)	16,291 (100.0)	5,868 (36.0)	10,423 (64.0)	107 (100.0)	34 (31.8)	73 (68.2)
경제활동참가율 (%)	64.0	73.6	54.6	65.2	77.7	52.8
고용률 (%)	62.1	71.6	52.9	64.0	75.9	52.2
실업률 (%)	3.0	2.8	3.2	1.8	2.4	1.0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지역별고용조사」, 시도/성별 경제활동인구 총괄, 2022 상반기 (자료 인출일: 2023년 4월 3일)

□ 세종시 고용률의 성별 격차 수준 변화 추이(2017년 상반기 대비 2022년 상반기)

○ 2017년 상반기와 2022년 상반기의 전국 고용률의 성별 격차 수준을 비교한 결과 격차는 감소함(20.5%p ⇒ 18.7%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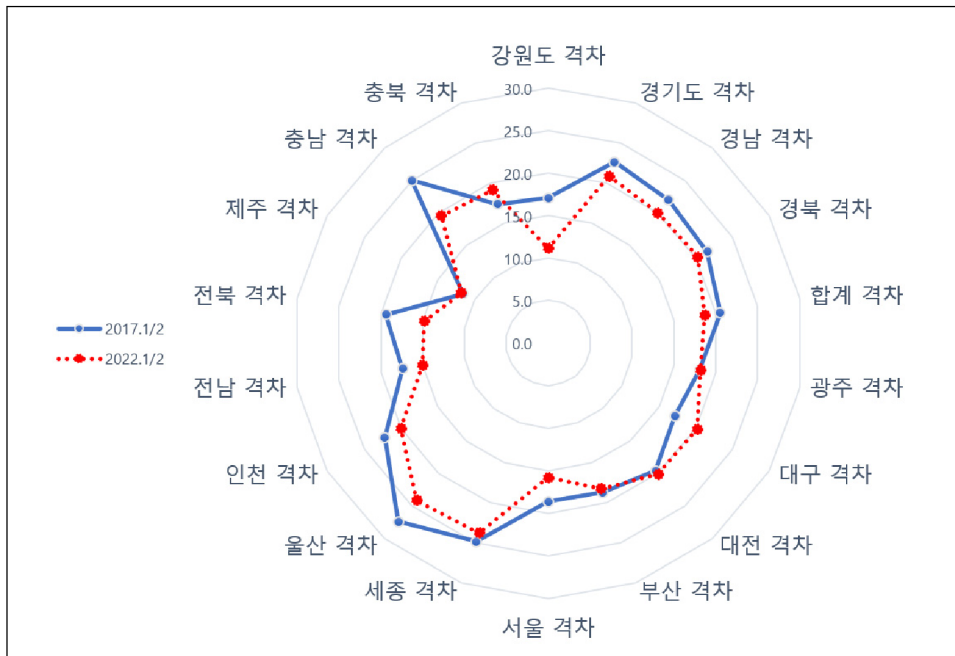
○ 다만, 시도별 편차는 상이하게 나타남

- 세종시 24.8%p ⇒ 23.7%p, 충남도 25.0%p ⇒ 19.6%p로 다소 부침은 있으나 감소세를 보임

- 반면, 대구시의 경우 17.2%p ⇒ 20.2%p, 충북도 17.4%p ⇒ 19.2%p, 대전시 19.6%p ⇒ 20.1%p로 증가세

[표 2-8] 성별 고용률 격차 특징(2017년 상반기 vs. 2022년 상반기)

(단위: %/p)



주*: 고용률의 성별 격차(%/p) = 남자 고용률(%) - 여자 고용률(%)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지역별고용조사」, 시도/성별 경제활동인구 총괄 자료 재구성, 2022 상반기(자료 인출일: 2023년 4월 3일)

[표 2-9] 성별 고용률 격차 연도별 특징(2017년~ 2022년 상반기)

(단위: %/p)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1/2	2/2	1/2	2/2	1/2	2/2	1/2	2/2	1/2	2/2	1/2
합계 격차*	20.5	20.0	19.9	19.5	19.2	18.6	19.5	18.9	18.8	18.4	18.7
강원도 격차	17.1	15.5	13.9	15.4	15.1	14.8	17.0	14.5	12.6	11.1	11.2
경기도 격차	22.7	22.1	22.8	22.3	21.6	21.2	22.4	22.8	21.6	21.1	20.9
경남 격차	22.0	23.9	22.8	23.1	20.9	20.9	20.9	19.6	18.8	18.2	20.0
경북 격차	21.6	21.2	21.6	20.6	19.8	18.9	20.7	20.8	21.2	20.2	20.3
광주 격차	18.1	16.5	16.7	17.7	17.9	17.2	16.4	15.1	17.5	17.1	18.2
대구 격차	17.2	16.6	14.8	15.9	18.6	19.7	20.7	20.1	19.6	19.4	20.2
대전 격차	19.6	19.1	17.9	16.5	19.2	18.4	18.6	17.2	17.6	19.5	20.1
부산 격차	18.7	21.6	20.0	17.8	17.3	15.8	15.1	16.8	17.1	17.6	18.2
서울 격차	18.6	17.7	17.4	16.4	16.5	15.3	16.4	16.1	15.9	14.8	15.8
세종 격차	24.8	24.5	24.3	23.7	22.2	21.4	21.0	22.4	23.9	22.0	23.7
울산 격차	27.4	25.9	25.7	23.1	24.1	23.9	26.9	27.5	22.6	22.6	24.1
인천 격차	22.2	19.3	20.5	20.1	19.2	18.6	19.9	17.9	18.8	20.8	20.0
전남 격차	17.4	16.1	16.5	17.0	16.1	18.8	16.5	16.3	17.9	15.0	15.0
전북 격차	19.4	18.8	19.5	19.5	15.9	18.1	18.3	16.4	17.0	16.9	14.8
제주 격차	11.6	9.7	13.0	13.7	15.2	10.8	9.8	10.1	10.3	12.2	11.8
충남 격차	25.0	21.5	21.0	20.8	21.9	19.5	21.3	19.2	20.1	19.9	19.6
충북 격차	17.4	19.3	21.2	21.2	18.3	17.7	19.4	16.1	18.1	16.8	19.2

주*: 격차(%/p) = 남자 고용률(%) - 여자 고용률(%)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지역별고용조사」, 시도/성별 경제활동인구 총괄 자료 재구성, 2022 상반기(자료 인출일: 2023년 4월 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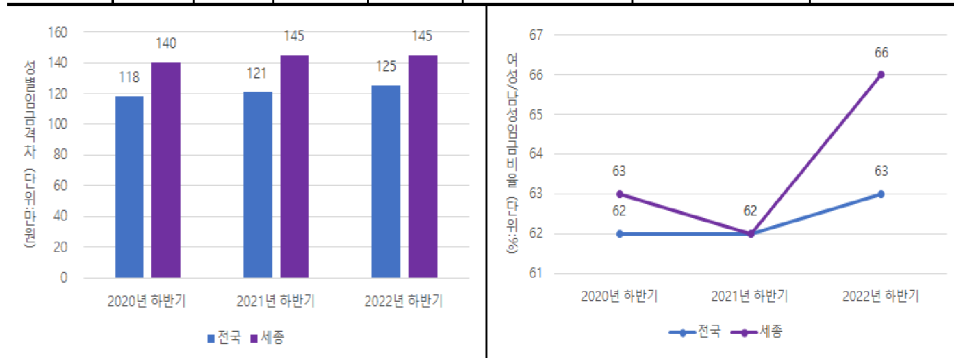
□ 세종시 성별 임금 격차 특징

- 세종시 성별 임금 격차는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남(약 20만원 정도 차이)
 - 세종시의 경우, 전국 평균 성별 임금 격차 수준에 비하여 남녀 간 임금 격차 수준이 크게 나타나고 있음. 2020년 하반기의 전국 평균 성별 임금 격차는 118만원 정도이고 세종시의 성별 임금 격차는 140만원 수준임
 - 2021년 하반기의 전국 평균 성별 임금 격차는 121만원 이었으나 세종은 145만원으로 24만원 차이를 보임. 순위를 매기면 격차가 큰 순서대로 2위를 하고 있었음. 남성 임금 대비 여성의 임금은 62% 수준을 유지하였음
 - 2022년 하반기의 전국 평균 성별 임금 격차는 125만원 이고, 세종시의 성별 임금 격차는 145만원으로 20만원 차이를 보임. 남성 임금 대비 여성의 임금은 66% 수준으로 다소 증가하였으나, 순위를 매기면 격차가 큰 순서대로 여전히 2위를 유지하고 있음

[표 2-10] 성별 임금 격차 수준 비교(전국 vs. 세종)

(단위: 만원, %)

연도	지역 구분	평균	남성	여성	여성/남성 임금 비율	성별 임금격차(만원)	격차 순위*
2020 하반기	전국	251	307	189	62%	118	
	세종	315	375	235	63%	140	2위
2021 하반기	전국	257	315	194	62%	121	
	세종	320	383	238	62%	145	2위
2022 하반기	전국	257	335	210	63%	125	
	세종	320	422	277	66%	145	2위



주*: 17개 광역시·도 기준. 내림차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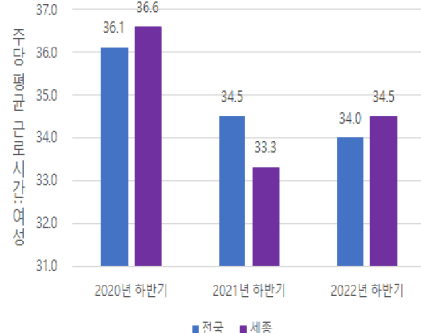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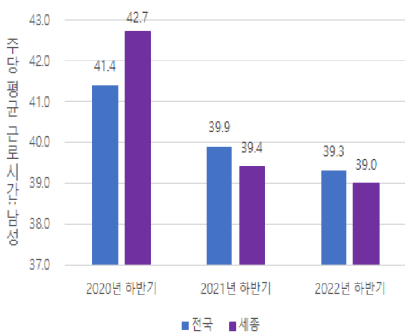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MDIS, 2020~2022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분석

□ 세종시 성별 주당 평균 근로시간

-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2020년 하반기에 전국보다 높았으나, 2021년에는 낮아짐. 이는 성별로 구분했을 때도 동일함
 - 2020년 하반기에 세종시 남성은 주당 42.7시간(전국 1위), 여성은 36.6시간(전국 5위)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국 평균 근로시간에 비해서 높은 편이었음
 - 2021년 하반기에 세종시 남성은 주당 39.4시간(전국 10위), 여성은 주당 33.3시간(전국 14위)로 나타나 전국 평균에 비해서 낮아졌음
 - 2022년 하반기에 세종시 남성은 주당 39.0시간(전국 10위), 여성은 주당 34.5시간(전국 14위)로 전국 평균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2-11] 성별 주당 평균 근로시간 비교(전국 vs. 세종)

연도	지역 구분	전체	남 성		여 성	
		시간	시간	순위	시간	순위
2020 하반기	전국	38.7	41.3	-	35.8	-
	세종	40.1	42.7	1	36.6	5
2021 하반기	전국	37.4	39.9	-	34.4	-
	세종	36.8	39.4	10	33.3	14
2022 하반기	전국	37.5	39.6		34.7	
	세종	37.2	39.0	10	34.5	14



자료: 통계청 MDIS, 2020~2022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분석

[표 2-12] 2020년 하반기 시도별 주당 평균 근로시간(성별 구분)

순위	2020년 남성		순위	2020년 여성	
	시도	시간		시도	시간
1	울산	42.7	1	서울	37.5
1	세종	42.7	2	인천	37.1
2	인천	42.4	2	경기	37.1
3	대전	42.1	3	대전	37
4	경기	42	3	울산	37
4	충남	42	4	충남	36.7
5	서울	41.9	5	광주	36.6
6	광주	41.7	5	세종	36.6
7	부산	41.3	5	제주	36.6
7	경북	41.3	6	부산	36.5
7	제주	41.3	7	대구	36.4
8	대구	41.2	8	충북	35.6
8	경남	41.2	8	경남	35.6
9	충북	40.8	9	경북	35.4
10	강원	40.4	10	강원	34.2
11	전남	39.8	11	전남	34.1
12	전북	39.7	12	전북	33.6

자료: 통계청 MDIS, 2020~2022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분석

[표 2-13] 2021년 하반기 시도별 주당 평균 근로시간(성별 구분)

순위	2021년 남성		순위	2021년 여성	
1	울산	41.3	1	서울	36
2	부산	40.7	2	부산	35.7
2	인천	40.7	3	경기	35.4
3	광주	40.6	3	제주	35.4
3	충남	40.6	4	대구	35.3
4	대구	40.5	4	울산	35.3
5	경기	40.3	5	충남	35.2
6	경북	40.2	6	인천	35.1
7	서울	39.9	7	광주	35
8	경남	39.7	8	대전	34.6
9	대전	39.5	9	경북	34.3
10	세종	39.4	10	경남	34.1
11	충북	39.3	11	충북	33.6
11	전남	39.3	12	세종	33.3
12	제주	39.2	13	전남	33.1
13	강원	38.9	14	강원	32.7
14	전북	38.4	15	전북	31.7

자료: 통계청 MDIS, 2020~2022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분석

[표 2-14] 2022년 하반기 시도별 주당 평균 근로시간(성별 구분)

순위	2022년 남성		순위	2022년 여성	
1	울산	41.2	1	서울	35.9
2	인천	40.7	2	울산	35.2
2	경북	40.7	2	제주	35.2
3	대구	40.3	3	광주	35.1
4	광주	39.9	4	인천	34.9
5	충남	39.8	4	대전	34.9
6	서울	39.7	5	경기	34.7
7	경기	39.3	5	대구	34.7
8	전남	39.2	6	세종	34.5
8	제주	39.2	7	경북	34.3
9	경남	39.1	8	충남	33.6
10	세종	39.0	9	부산	33.5
11	충북	38.8	10	충북	33.1
12	대전	38.4	10	전남	33.1
13	전북	38.0	11	경남	33.0
14	부산	37.7	12	전북	31.3
14	강원	37.5	13	강원	31.0

자료: 통계청 MDIS, 2020~2022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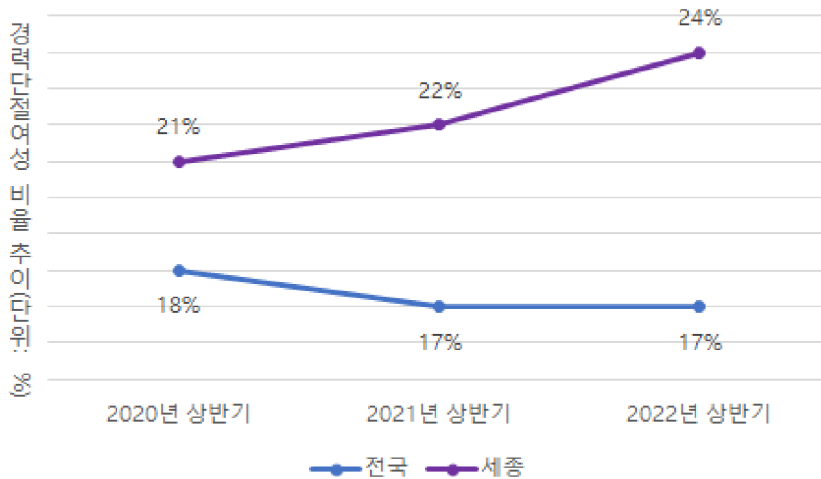
□ 경력단절여성 규모 추이(2020년~2022년)

- (경력단절여성 수 비교) 15~54세 기혼여성 중 미취업 여성의 수는 전국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나, 세종시의 경우 점차 증가 추세를 보임
- (경력단절여성의 비율 비교) 전국의 경력단절여성 비율은 20% 미만이나, 세종은 20%를 지속적으로 초과함
 - 전국 경력단절여성 비율은 2020년 상반기에 18%에서 2021년 상반기에는 17%로 1%p 감소했고, 2022년 상반기에 17%로 2021년 상반기와 동일함
 - 세종시의 경력단절여성 비율은 증가세를 나타냄. 2020년 상반기 21%에서 2022년 상반기 들어 24%로 높아졌음

[표 2-15] 경력단절여성 규모 비교(전국 vs. 세종)

(단위: 천명)

연 도	전국			세종		
	2020 상반기	2021 상반기	2022 상반기	2020 상반기	2021 상반기	2022 상반기
15~54세 기혼여성(A)	8,578	8,323	8,103	71	72	75
미취업여성	3,420	3,240	3,027	28	30	29
경력단절여성(B)	1,506	1,448	1,397	15	16	18
경력단절여성 비율(B/A)	18%	17%	17%	21%	22%	24%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20~2022년 상반기 시도별 경력단절여성. (자료 인출일: 23년 6월 15일)

□ 세종시 남녀 학력수준 별 취업자 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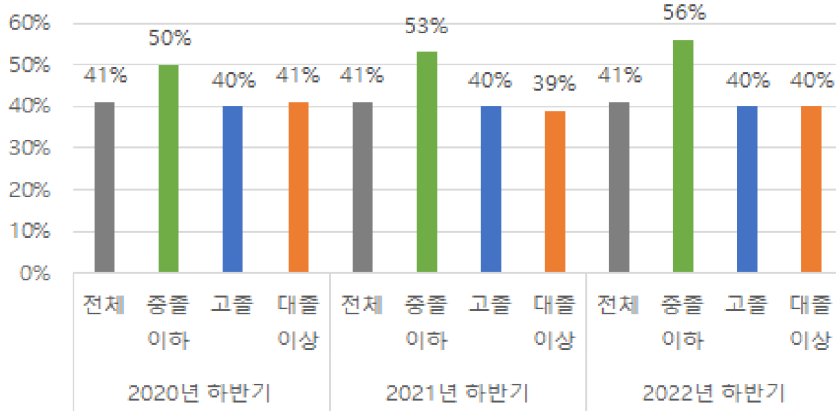
- 세종시 여성 취업자 비율은 전체(남, 여) 대비 41% 수준이었음
 -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취업자 중 여성의 비율은 연도순으로 50% → 53% → 56%으로 나타나 증가세를 보였음
 - 고졸 이하의 학력자 중 여성 취업자는 40%→40%→40%로 동일하였음
 - 대졸 이상의 학력자 중 여성 취업자는 41%→39%→40%로 나타났음

[표 2-16] 세종시 남녀 학력수준 별 취업자 수 비교

(단위: 천명)

	2020년 하반기				2021년 하반기				2022년 하반기			
	전체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전체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전체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계	184	18	43	123	188	19	43	127	202	16	45	141
남성	108	9	26	73	110	9	26	76	119	7	27	85
여성	76	9	17	50	78	10	17	50	83	9	18	56
여성 비율	41%	50%	40%	41%	41%	53%	40%	39%	41%	56%	40%	40%

세종시 여성 학력별 취업률(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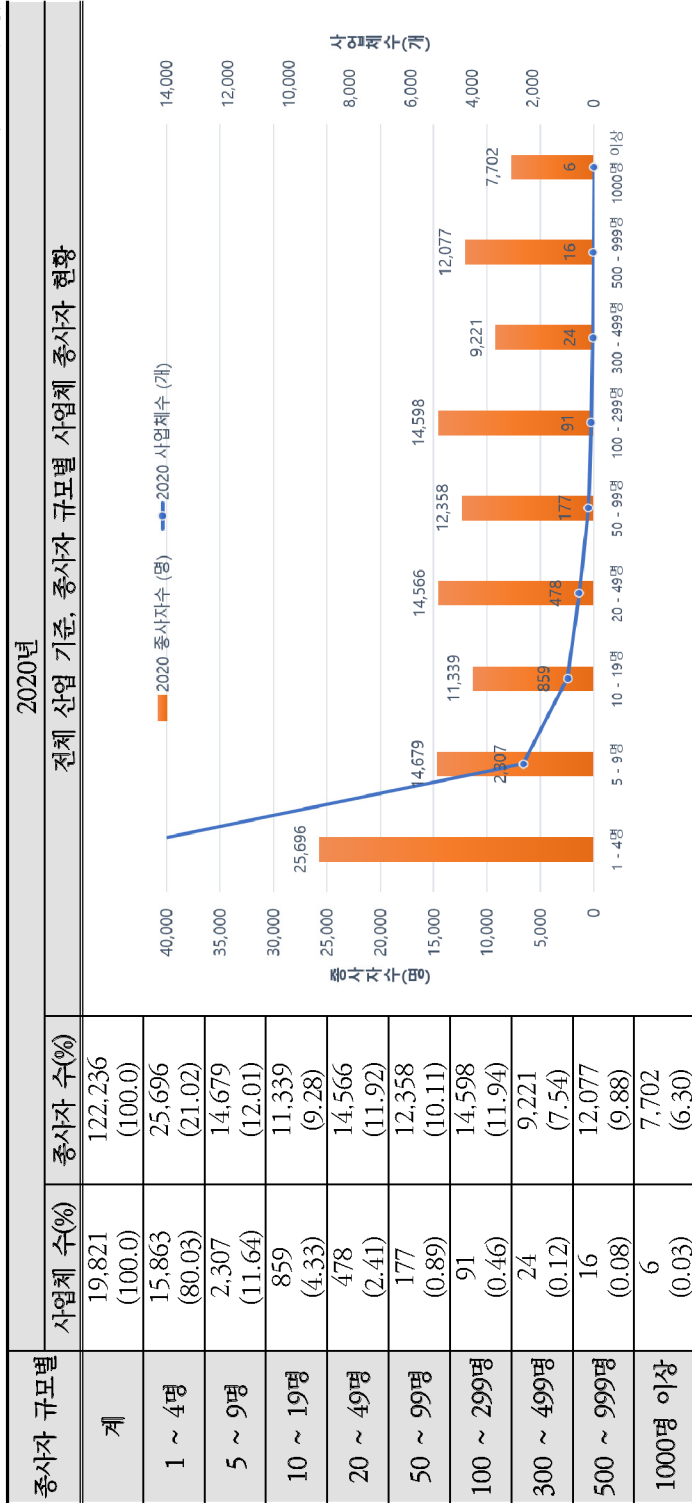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지역별고용조사」, 2020~2022년 하반기 시도별 경력단절여성, (자료 인출일: 23년 6월 15일)

2)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현황

□ 세종시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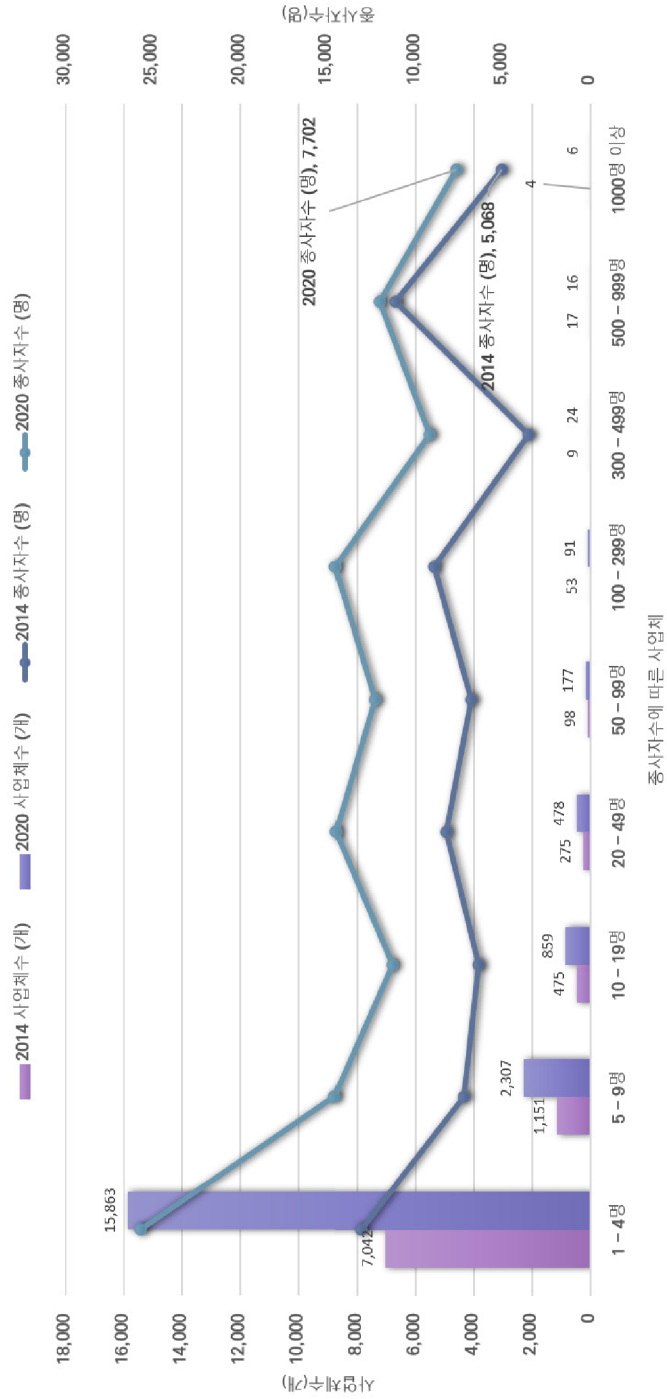
[표 2-17] 세종시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현황(2020년 기준)

(단위: 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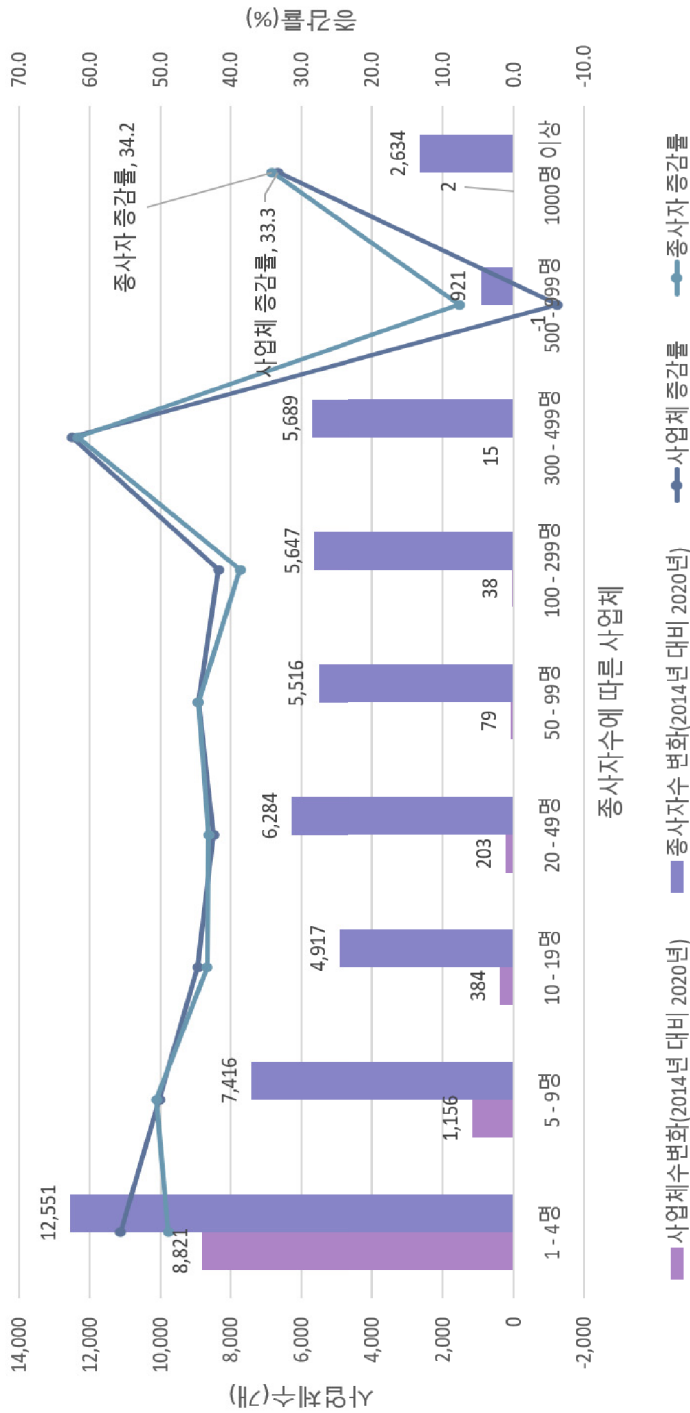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시·도·산업·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데이터 재구성; 최성은 외(2022), 58쪽 [표 3-11] 자료 업데이트

○ 세종시 소재 사업체 중 1~4명 종사자를 보유한 사업체 수가 전체 사업체 수 중 80.03%를 차지하며, 종사자 수 비율도 21.02%로 가장 많음



[그림 2-2] 세종시 2014년 대비 2020년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변화 추이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시·도·산업·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데이터 재구성



[그림 2-3] 세종시 2014년 대비 2020년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변화 및 증감률 비교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시·도·산업·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데이터 재구성

□ 세종시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및 종사자 변화(2014년 대비 2020년)

-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변화 특징) 2014년 대비 2020년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증감률을 분석한 결과,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인 것은 300~499명(62.5%), 1~4명(55.6%), 5~9명(50.1%), 10~19명(44.7%), 50~99명(44.6%), 100~299명(41.8%), 1000명 이상(33.3%) 사업체 순
 - 500~999명 사업체의 경우, 유일하게 1개 사업체가 감소되어 마이너스 감소율을 보임
- (사업체 규모별 종사자 변화 특징) 사업체 수와 달리, 종사자 수는 모든 유형별 사업체에서 증가하였음
 - 가장 큰 증가율을 나타낸 사업체 유형은 300~499명 사업체로 사업체 수 증가율 순위와 동일함
 - 유일하게 사업체 수 감소율을 나타낸 500~999명 사업체의 경우도 종사자는 7.6% 증가율을 보임

[표 2-18] 2014년 대비 2020년 세종시 사업체 규모별 사업체 및 종사자 증감률

(단위: %)

종사자규모별	사업체 증감률	종사자 증감률
1 - 4명	55.6	48.8
5 - 9명	50.1	50.5
10 - 19명	44.7	43.4
20 - 49명	42.5	43.1
50 - 99명	44.6	44.6
100 - 299명	41.8	38.7
300 - 499명	62.5	61.7
500 - 999명	-6.3	7.6
1000명 이상	33.3	34.2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시·도·산업·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데이터 재구성

3) 산업종류별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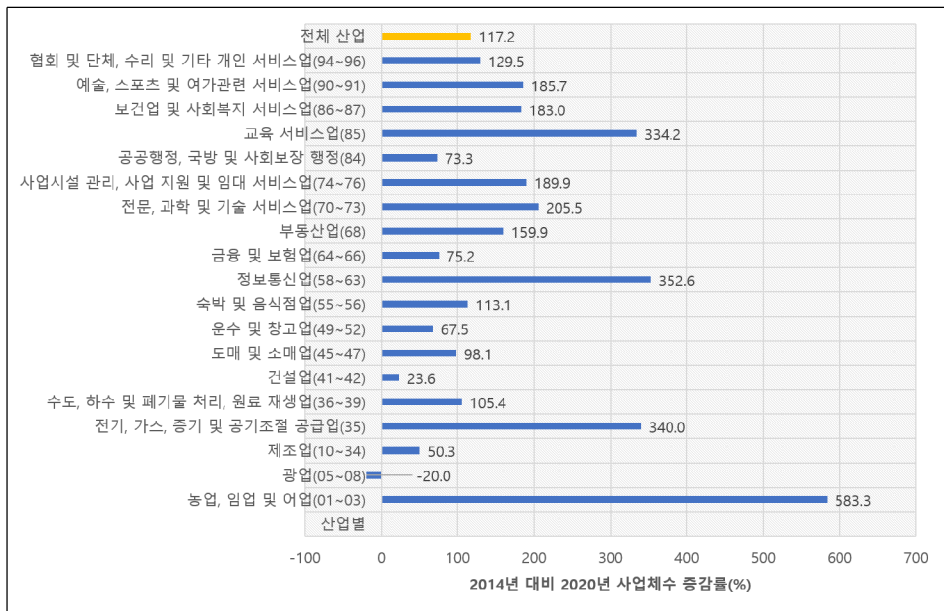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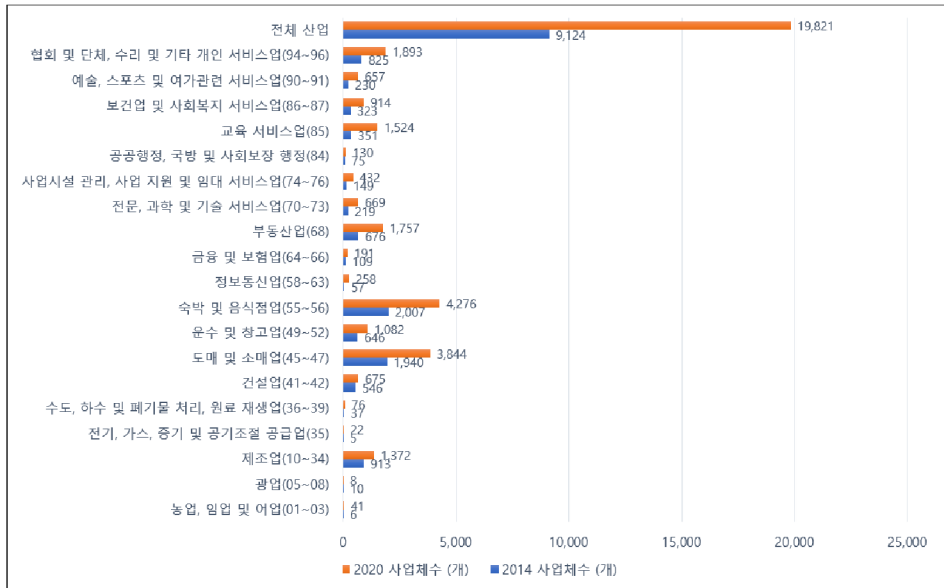
□ 세종시 산업종류별 사업체 변화

- (사업체 증가율 높은 순) 농업, 임업 및 어업 > 정보통신업 > 전기, 가스, 증가 및 공기조절 공급업 > 교육서비스업 등의 순

- (사업체 수 많이 증가한 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 > 도매 및 소매업 > 교육 서비스업 등의 순
- 세종시 산업종류별 사업체 수 변화를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 사업체는 숙박 및 음식점업(2014년 2,007개, 2020년 4,276개)
 - 두 번째로 많이 증가한 사업체는 도매 및 소매업(2014년 1,940개, 2020년 3,844개)임
 - 세 번째로 증가 양상을 보이는 사업체는 교육 서비스업(2014년 351개, 2020년 1,524개)임
 - 네 번째는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2014년 825개, 2020년 1,893개)으로 나타남
 - 다섯 번째는 부동산업(2014년 676개, 2020년 1,757개)이 차지함

□ 세종시 산업종류별 종사자 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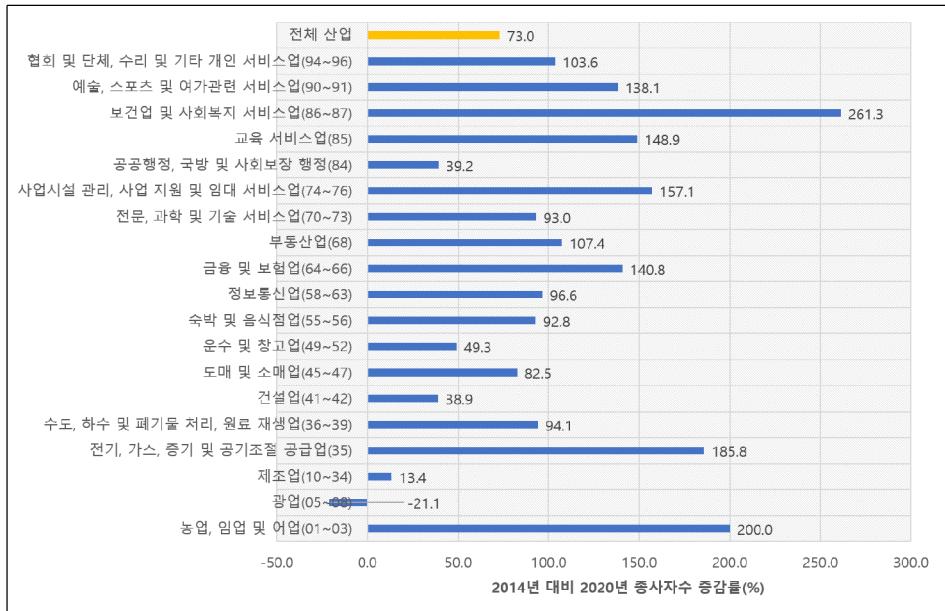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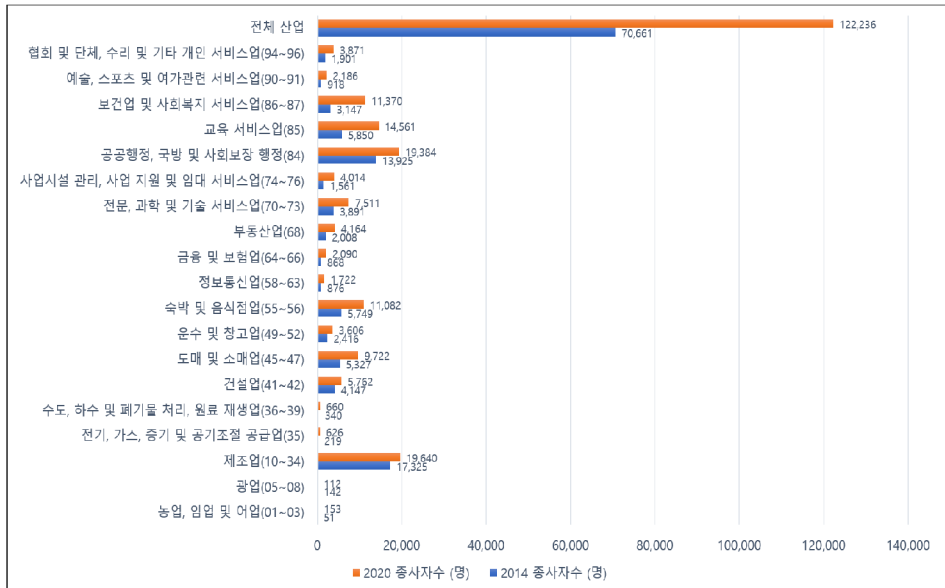
- (종사자 증가율 높은 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농업, 임업 및 어업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 교육서비스업 등의 순
- (종사자 수 많이 증가한 산업) 제조업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교육서비스업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의 순
- 세종시 산업별 종사자 수를 분석한 결과, 2014년의 경우, 제조업 분야 종사자(17,325명)가 가장 큰 규모를 차지했고, 2020년의 경우에도 제조업 분야 종사자(2014년 17,325명⇒2020년 19,640명)가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함
- 산업별 종사자 수 규모 변화를 살펴보면, 2014년 대비 2020년 종사자 증가율이 가장 큰 분야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261.3% 증가)’임
 - ‘농업, 임업 및 어업’ 200.0% 증가,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185.8%증가,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57.1% 증가, ‘교육서비스업’ 148.9% 증가 등의 순임
 - 종사자 수 규모가 제일 큰 제조업 분야는 13.4% 증가, 두번째로 큰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은 39.2% 증가함



[그림 2-4] 세종시 2014년 대비 2020년 산업별 사업체 수 변화 및 증감률

주: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기준,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시·도·산업·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데이터 연도별 재구성



[그림 2-5] 세종시 2014년 대비 2020년 산업별 종사자 수 변화 및 증감률

주: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기준,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시·도·산업·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데이터 연도별 재구성

4) 성별 종사자 집중 산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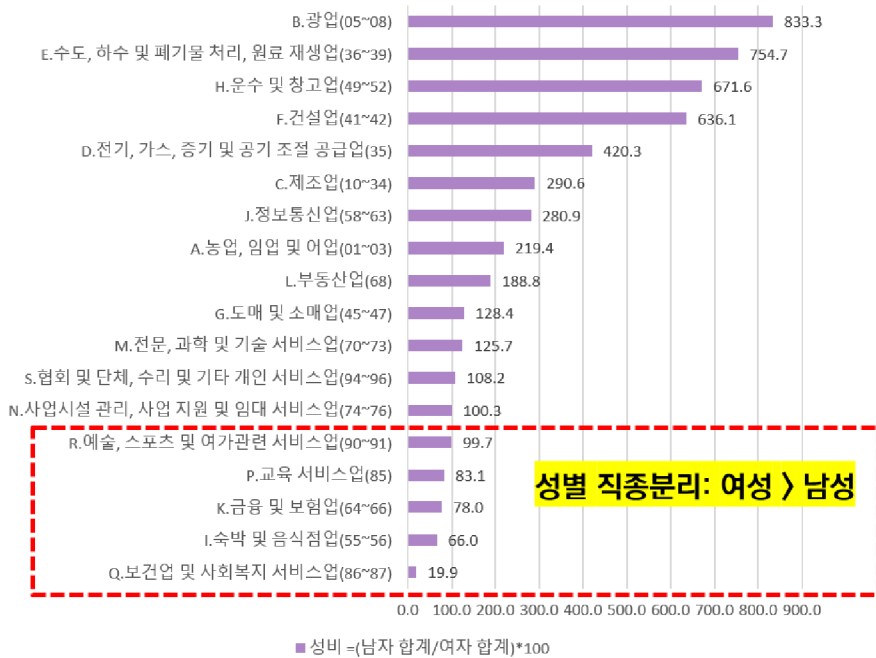
□ 성별 종사자 집중 산업 현황(여성 100명당 남성의 수, 성비)

- 여성 종사자 100명당 남성의 수가 200명을 넘어서는 산업은 B.광업, E.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H.운수 및 창고업(49~52), F.건설업, D.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C.제조업, J.정보통신업, A.농업, 임업 및 어업의 순으로 분석됨
- 여성 100명당 남성의 수가 100명에 못 미치는 산업은 Q.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I.숙박 및 음식점업, K.금융 및 보험업, P.교육 서비스업, R.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순으로 분석되어, 주로 서비스업 분야는 여성 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됨

[표 2-19] 세종시 산업분류별 남녀 종사자 차이 및 성비(2020년 기준)

(단위: 명, %)

산업분류별	남자 합계	여자 합계	성비*
전체**	45,953	36,169	127.1
A.농업, 임업 및 어업(01~03)	79	36	219.4
B.광업(05~08)	100	12	833.3
C.제조업(10~34)	14,195	4,885	290.6
D.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35)	496	118	420.3
E.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36~39)	566	75	754.7
F.건설업(41~42)	4,809	756	636.1
G.도매 및 소매업(45~47)	3,894	3,033	128.4
H.운수 및 창고업(49~52)	2,317	345	671.6
I.숙박 및 음식점업(55~56)	3,159	4,786	66.0
J.정보통신업(58~63)	924	329	280.9
K.금융 및 보험업(64~66)	908	1,164	78.0
L.부동산업(68)	2,035	1,078	188.8
M.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73)	4,075	3,242	125.7
N.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74~76)	1,924	1,919	100.3
P.교육 서비스업(85)	2,559	3,079	83.1
Q.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6~87)	1,864	9,363	19.9
R.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	700	702	99.7
S.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94~96)	1,349	1,247	108.2



주*: 성비 = (남자 합계/여자 합계)*100, 여성 100명당 남성의 수

주***: 사업체 규모 기준은 전체 종사자수(자영업자+상용근로자+임시일용근로자+무급가족 및 기타종사자) 기준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실태현황 자료 재구성. 「사업체노동실태현황」은 통계청 전수조사인 「전국사업체조사」에서 「자영업자」 또는 「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로만 구성된 사업체 및 공무원 재직기관을 제외하여 재구성한 가공통계임. 산업분류 중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산업은 제외됨

[표 2-20] 2020년 기준, 세종시 남자 집중 산업 순위

산업분류별	남자 합계	남자 순위	성비=(남자 합계/여자 합계)*100
C. 제조업(10~34)	14,195	1	290.6
F. 건설업(41~42)	4,809	2	636.1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73)	4,075	3	125.7
G. 도매 및 소매업(45~47)	3,894	4	128.4
I. 숙박 및 음식점업(55~56)	3,159	5	66.0
P. 교육 서비스업(85)	2,559	6	83.1
H. 운수 및 창고업(49~52)	2,317	7	671.6
L. 부동산업(68)	2,035	8	188.8
N.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74~76)	1,924	9	100.3

산업분류별	남자 합계	남자 순위	성비=(남자 합계/여자 합계)*100
Q.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6~87)	1,864	10	19.9
S.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94~96)	1,349	11	108.2
J.정보통신업(58~63)	924	12	280.9
K.금융 및 보험업(64~66)	908	13	78.0
R.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	700	14	99.7
E.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36~39)	566	15	754.7
D.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35)	496	16	420.3
B.광업(05~08)	100	17	833.3
A.농업, 임업 및 어업(01~03)	79	18	219.4

주*: 성비 = (남자 합계/여자 합계)*100, 여성 100명당 남성의 수

주**: 사업체 규모 기준은 전체 종사자수(자영업자+상용근로자+임시일용근로자+무급가족 및 기타종사자) 기준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실태현황 자료 재구성. 「사업체노동실태현황」은 통계청 전수조사인 「전국사업체조사」에서 「자영업자」 또는 「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로만 구성된 사업체 및 공무원 재직기관을 제외하여 재구성한 가공통계임. 산업분류 중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산업은 제외계임; 최성은 외(2022), <세종시 경력보유 여성을 위한 일자리 대응 정책 연구> 자료 업데이트

[표 2-21] 2020년 기준, 세종시 여자 집중 산업 순위

산업분류별	여자 합계	여자 순위	성비 = (남자 합계/여자 합계)*100
Q.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6~87)	9,363	1	19.9
C.제조업(10~34)	4,885	2	290.6
I.숙박 및 음식점업(55~56)	4,786	3	66.0
M.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73)	3,242	4	125.7
P.교육 서비스업(85)	3,079	5	83.1
G.도매 및 소매업(45~47)	3,033	6	128.4
N.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74~76)	1,919	7	100.3
S.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94~96)	1,247	8	108.2
K.금융 및 보험업(64~66)	1,164	9	78.0
L.부동산업(68)	1,078	10	188.8
F.건설업(41~42)	756	11	636.1
R.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	702	12	99.7

산업분류별	여자 합계	여자 순위	성비 = (남자 합계/여자 합계)*100
H.운수 및 창고업(49~52)	345	13	671.6
J.정보통신업(58~63)	329	14	280.9
D.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35)	118	15	420.3
E.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36~39)	75	16	754.7
A.농업, 임업 및 어업(01~03)	36	17	219.4
B.광업(05~08)	12	18	833.3

주*: 상동

주**: 상동

자료: 상동

□ 세종시 성별 직종 분리 현황(2020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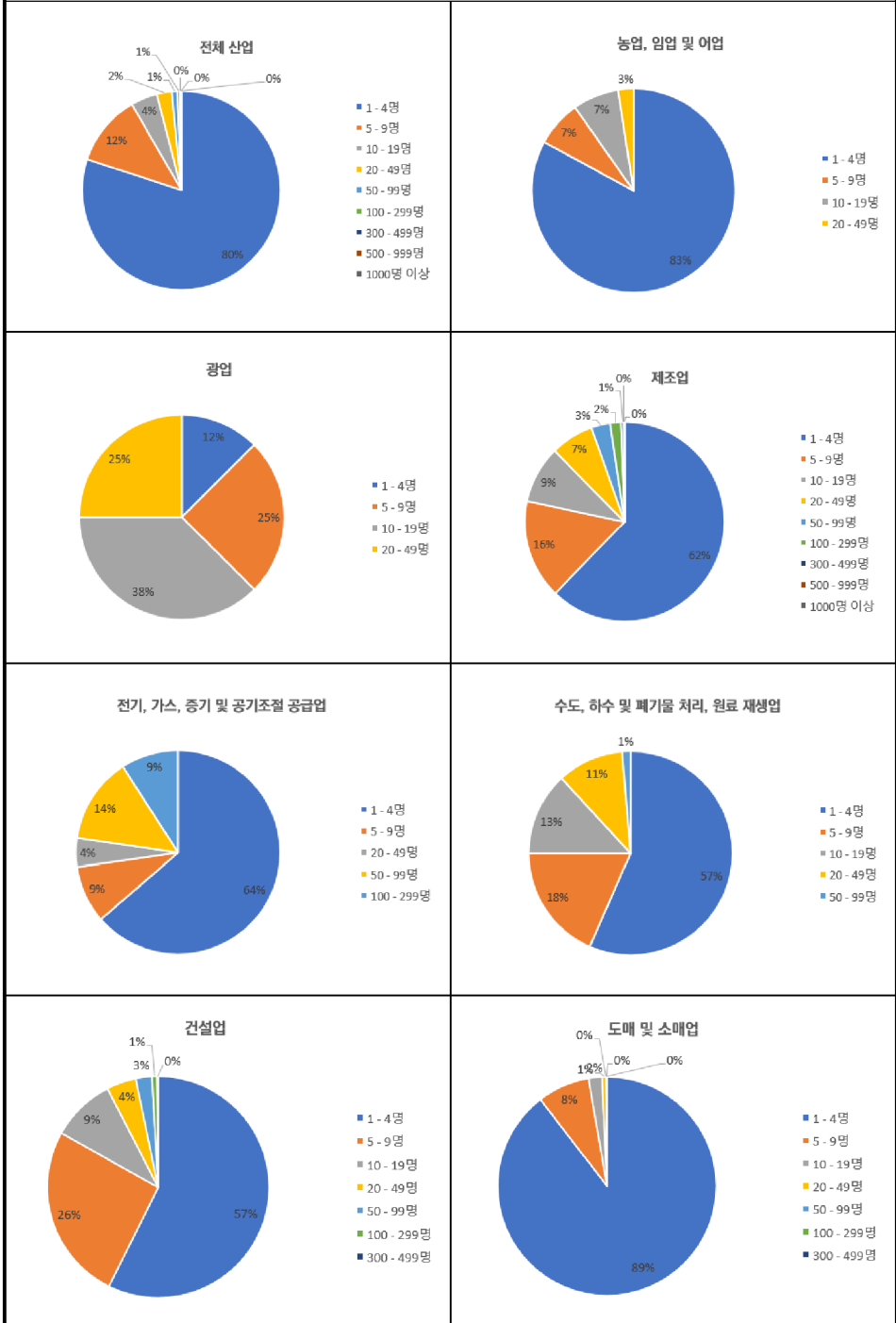
○ 고용노동부의 <사업체 노동실태 현황 자료(2020)>를 분석한 결과, 세종시 산업분류별 종사자 집중도는 성별에 따라 판이하게 나타남

- 남성은 '제조업(30.9%)'에 가장 많은 집중도를 보이고 여성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25.9%)'에 가장 많은 집중도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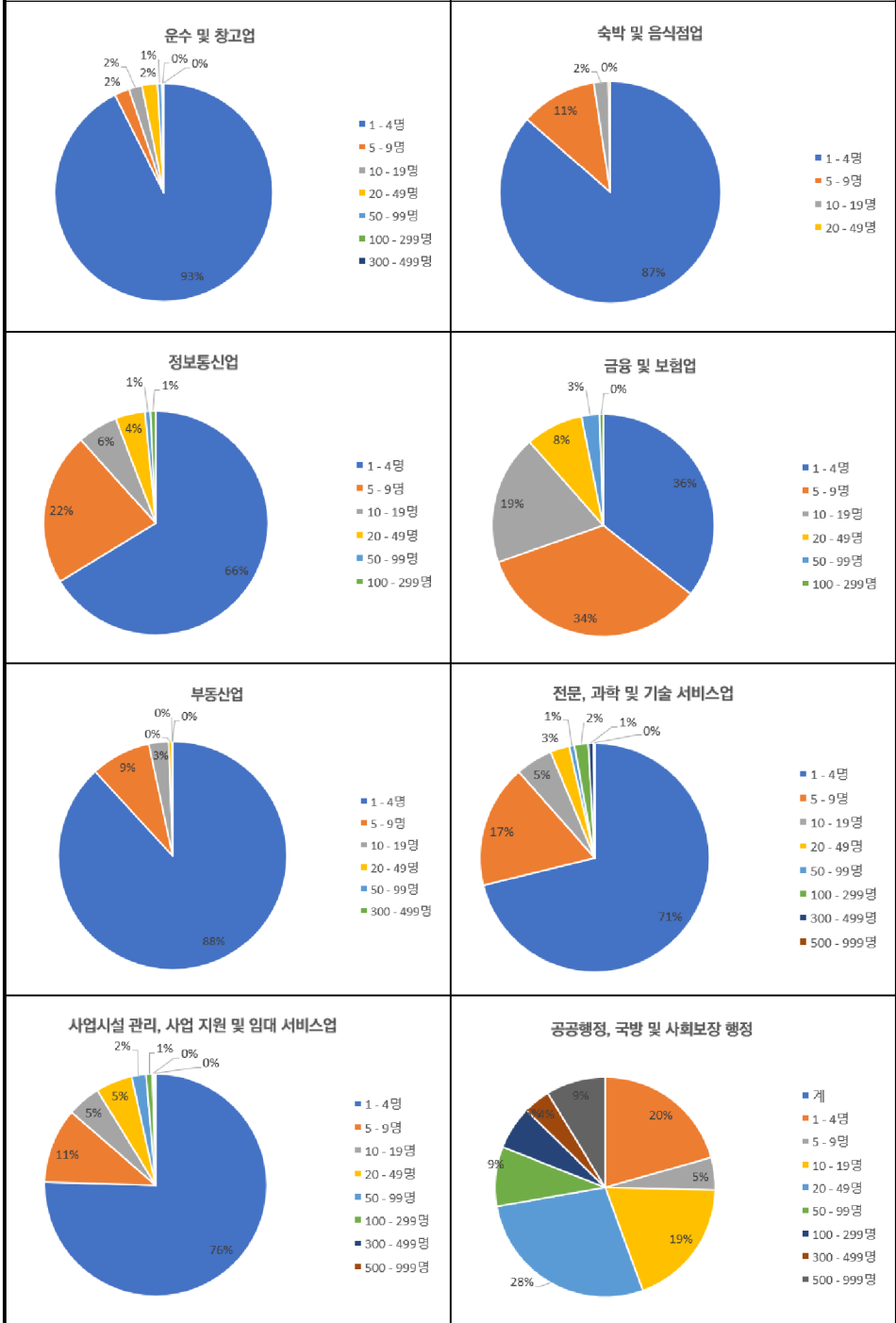
- (남성 1,000명 이상 종사 산업 분야) 제조업, 건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운수 및 창고업, 부동산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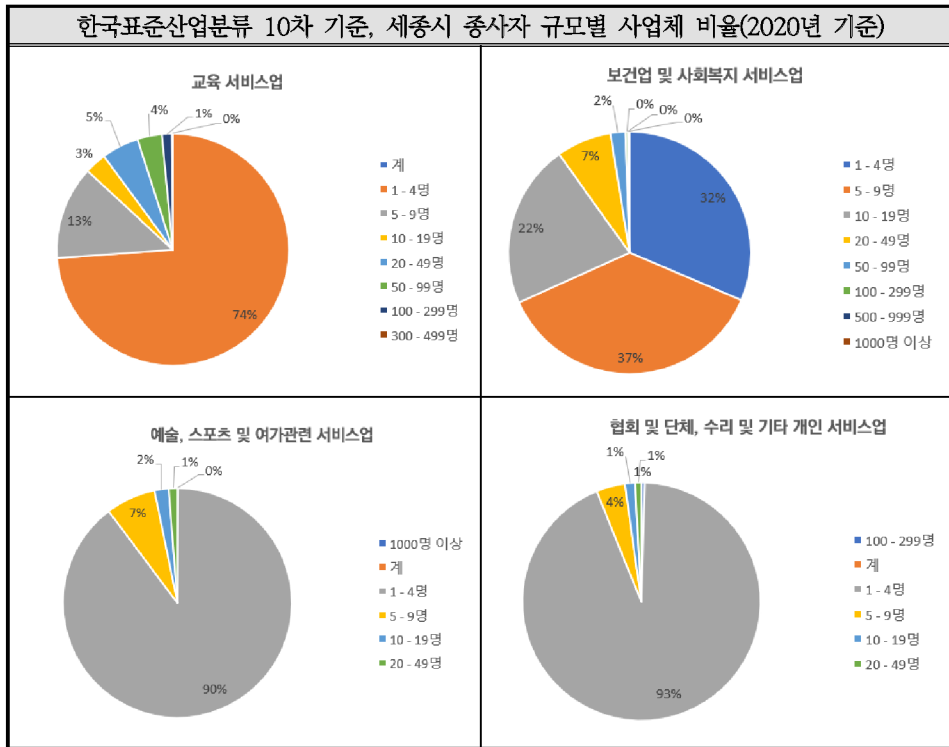
- (여성 1,000명 이상 종사 산업 분야)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순임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기준, 세종시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비율(2020년 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기준, 세종시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비율(2020년 기준)





[그림 2-6] 세종시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비율(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기준)

주: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기준,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시·도·산업·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수(2020년 기준), 종사자 수
 데이터 재구성; 최성은 외(2022) 자료 업데이트

□ 세종시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비율(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기준)

- (전체사업) 전체산업의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는 1~4명 80%, 5~9명 12%, 10~19명 4% 등의 순으로 비율이 높게 나타남
- (농업, 임업 및 어업) 1~4명 83%, 5~9명 7%, 10~19명 7% 등의 순
- (광업) 10~19명 38%, 5~9명 및 20~49명 25% 동일 비율로 나타남
- (제조업) 제조업의 경우, 1~4명 62%, 5~9명 16%, 10~19명 9% 등의 순

*참고. 제조업 종사자 성별 집중도(자료: 고용노동부(2020), 사업체 노동실태 현황 분석)
 남성 1위(30.9%, 14,195명), 여성 2위(13.5%, 4,885명)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1순위는 1~4명 64%, 차순위는 50~99명 14%, 3순위는 5~9명 및 100~299명 9% 동일 비율로 나타남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1~4명 57%, 5~9명 18%, 10~19명 13% 등의 순

○ (건설업) 1~4명 57%, 5~9명 26%, 10~19명 9% 등의 순

※참고 건설업 종사자 성별 집중도(자료: 고용노동부(2020), 사업체 노동실태 현황 분석)
남성 2위(10.5%, 4,809명)

○ (도매 및 소매업) 1~4명 89%, 5~9명 8%, 10~19명 1% 등의 순

※참고 도매 및 소매업 종사자 성별 집중도(자료: 고용노동부(2020), 사업체 노동실태 현황 분석)
남성 4위(8.5%, 3,894명), 여성 6위(8.4%, 3,033명)

○ (운수 및 창고업) 1순위 1~4명 93%, 차순위는 5~9명과 10~19명 및 20~49명 2% 동일 비율로 나타남

※참고 운수 및 창고업 종사자 성별 집중도(자료: 고용노동부(2020), 사업체 노동실태 현황 분석)
남성 7위(5.0%, 2,317명)

○ (숙박 및 음식점업) 1~4명 87%, 5~9명 11%, 10~19명 2% 등의 순

※참고 숙박 및 음식점업 종사자 성별 집중도(자료: 고용노동부(2020), 사업체 노동실태 현황 분석)
남성 5위(6.9%, 3,159명), 여성 3위(13.2%, 4,786명)

○ (정보통신업) 1~4명 66%, 5~9명 22%, 10~19명 6% 등의 순

○ (금융 및 보험업) 1~4명 36%, 5~9명 34%, 10~19명 19% 등의 순

※참고 금융 및 보험업 종사자 성별 집중도(자료: 고용노동부(2020), 사업체 노동실태 현황 분석)
여성 9위(3.2%, 1,164명)

○ (부동산업) 1~4명 88%, 5~9명 9%, 10~19명 3% 등의 순

※참고 부동산업 종사자 성별 집중도(자료: 고용노동부(2020), 사업체 노동실태 현황 분석)
남성 8위(4.4%, 2,035명), 여성 10위(3.0%, 1,078명)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4명 71%, 5~9명 17%, 10~19명 5% 등의 순

※참고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종사자 성별 집중도(자료: 고용노동부(2020), 사업체 노동실태 현황 분석)
남성 3위(8.9%, 4,075명), 여성 4위(8.9%, 3,242명)

○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4명 76%, 5~9명 11% 순으로 나타났고, 3순위는 10~19명 및 20~49명 5%의 동일 비율로 나타남

※참고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종사자 성별 집중도(자료: 고용노동부(2020), 사업체 노동실태 현황 분석)

남성 9위(4.1%, 1,924명), 여성 7위(5.3%, 1,919명)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20~49명 28%, 1~4명 20%, 10~19명 19% 등의 순
- (교육 서비스업) 1~4명 74%, 5~9명 13%, 20~49명 5% 등의 순

※참고 교육 서비스업 종사자 성별 집중도(자료: 고용노동부(2020), 사업체 노동실태 현황 분석)

남성 6위(5.6%, 2,559명), 여성 5위(8.5%, 3,079명)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5~9명 37%, 1~4명 32%, 10~19명 22% 등의 순

※참고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종사자 성별 집중도(자료: 고용노동부(2020), 사업체 노동실태 현황 분석)

남성 10위(4.1%, 1,864명), 여성 1위(25.9%, 9,363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4명 90%, 5~9명 7%, 10~19명 2% 등의 순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4명 93%, 5~9명 4%, 등의 순

※참고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종사자 성별 집중도(자료: 고용노동부(2020), 사업체 노동실태 현황 분석)

여성 8위(3.4%, 1,247명)

5) 세종시 산업단지 조성 현황

- 세종시의 경우, 2022년 9월 기준으로 조성이 완료된 산업단지 수는 14개소이며(분양률 100%), 조성 중인 산업단지는 총 5개소가 있음(도시첨단 산업단지 1개소, 일반산업단지 4개소). 또한, 세종스마트국가 산업단지도 연서면에 조성 중에 있음

[표 2-22] 2022년 2분기 전국산업단지 현황통계

(단위: 개사, 명, (%))

구분	입주계약 업체(A)	가동업체(B)	남성	여성	고용(계)
국가	59,832	54,857	867,595 (80.4)	211,056 (19.6)	1,078,651 (100.0)
일반	46,308	42,800	783,433 (76.5)	241,037 (23.5)	1,024,470 (100.0)
도시 첨단	2,161	1,806	14,852 (69.3)	6,572 (30.7)	21,424 (100.0)
농공	7,987	7,299	110,647 (72.1)	42,803 (27.9)	153,450 (100.0)
총합	116,288	106,762	1,776,527 (78.0)	501,468 (22.0)	2,277,995 (100.0)

자료: 세종시 경제산업국 내부자료; 최성은(2023), '세종특별자치시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단지 역할과 과제', <지역혁신과 산업단지의 동행: 충청권 편>, 한국산업단지공단.

- 이미 조성 완료된 산업단지 기준으로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사업체 수: 207개 업체, 종사자 수: 12,388명(남성 9,918명, 여성 2,470명)
 - 종사자 수 남녀 비율: 남성 80.1%, 여성 19.9%
 - 전국 산업단지의 여성 종사자 비율이 22%인 것에 비하여 세종시 산업단지 내 여성 근로자 비율은 19.9%에 그쳐, 다소 낮은 수준임
- (산업단지 세부 유형별 특징) 일반산업단지와 농공단지로 크게 구분됨. 전국과 세종시 산업단지 여성 고용비율을 비교한 결과, 농공단지 여성 고용비율에서 두 배 가까운 차이를 나타냄
 - (세종시 산업단지별 여성 고용비율) 일반산업단지 20.9%, 농공단지 12.5%
 - (전국 산업단지 세부 유형별 특징) 일반산업단지 23.5%, 농공단지 27.9%

- (세종시 산업단지별 성별 현황) 세종시 산업단지 중 여성 고용비율이 가장 높은 유형은 첨단산업단지로 분석됨(여성 고용비율 34.2%)

[표 2-23] 세종시 산업단지 현황

구분	단지명	조성 년도	지정면적 (천㎡)	산업시설 용지면적 (천㎡)	분양면적 (천㎡)	분양률 (%)	업체수				고용인원 (명)	
							계	가동	휴업	기타		
계	14개소	-	5,751	4,128	4,128		207	182	1	24	12,388	
	소계(9)	-	5,186	3,686	3,686		172	148	1	23	10,919	
일반 산업 단지	조 치 원	계	941	759	759	100	20	19	1	0	955	
		1공구	1988	295	200	200	100	5	5	-	-	254
		2공구	1990	170	139	139	100	6	6	-	-	388
		3공구	1992	476	420	420	100	9	8	1	-	313
	부강	1995	562	399	399	100	14	14	-	-	2,045	
	소정	1998	273	193	193	100	1	1	-	-	207	
	전의산단	1999	481	344	344	100	8	7	-	1	1,339	
	전의2산단	2010	867	591	591	100	36	35	-	1	1,538	
	명화	2016	838	568	568	100	40	38	-	2	3,725	
	첨 단	계	-	664	446	446	100	28	24	-	4	880
		1공구	2016	421	278	278	100					
		2공구	2020	243	168	168	100					
	미래	2018	560	386	386	100	25	10	-	15	230	
야 영 단 지	소계(4)	-	565	442	442	100	35	34	-	1	1,469	
	노장	1987	162	136	136	100	21	20	-	1	587	
	부용	1988	202	146	146	100	1	1	-	-	138	
	응암	1989	117	94	94	100	10	10	-	-	504	
	청송	1988	84	66	66	100	3	3	-	-	240	

주*: 고용인원의 경우, 업체 제출 자료에 기반하여 작성되었으며, 추후 변동 가능

주**: 자료는 2022년 9월 30일 기준임

자료: 세종시 경제산업국 내부자료; 최성은(2023), '세종특별자치시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단지 역할과 과제', <지역혁신과 산업단지의 동행: 충청권 편>, 한국산업단지공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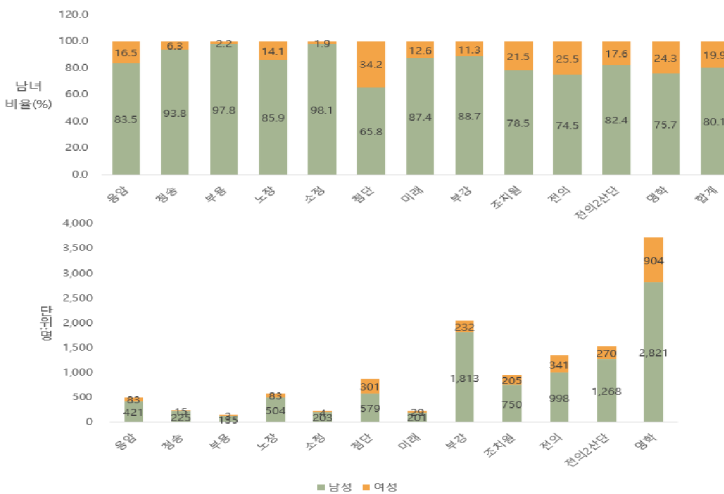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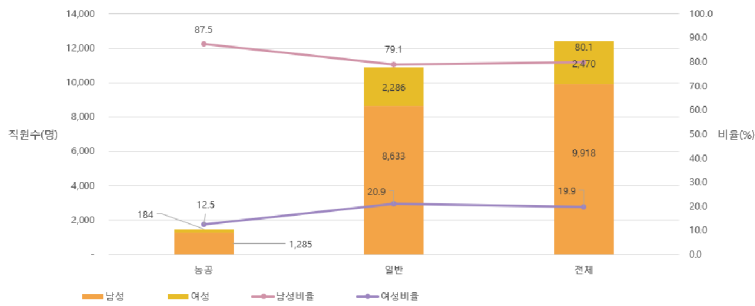
[표 2-24] 세종시 조성 중/조성 예정 산업단지 현황

구분	산단명	위치	면적(천㎡)	기간	사업비(억원)	시행사	
조 성 중	계	4개소	-	6,083	-	24,054	-
	1	세종전동	전동 노장	140	18-21	491	市
	2	스마트그린	소정고등, 전의읍내	850	17-21	2,583	세종스마트 그린타운(주)
	3	벤처밸리	전동 심중	590	17-21	1,293	세종벤처밸리㈜
조 성 예 정	4	세종테크밸리	4-2생	898	15-23	2,276	LH
	1	세종스마트국가	연서 와촌리	2,776	21-27	15,496	LH, 市
2	세종복합	전의 신방	829	20-23	1,915	세종복합산업단지㈜	

자료: 세종시 경제산업국 내부자료; 최성은(2023), '세종특별자치시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단지 역할과 과제', <지역혁신과 산업단지의 동행: 충청권 편>, 한국산업단지공단.

[표 2-25] 세종시 산업단지별 남녀 직원 현황

유형	산단명	직원 수(명)	남 성		여 성	
			명	%	명	%
농공단지	응암	504	421	83.5	83	16.5
	청송	240	225	93.8	15	6.3
	부용	138	135	97.8	3	2.2
	노장	587	504	85.9	83	14.1
	농공 합계	1469	1285	87.5	184	12.5
일반산업단지	소정	207	203	98.1	4	1.9
	첨단	880	579	65.8	301	34.2
	미래	230	201	87.4	29	12.6
	부강	2,045	1,813	88.7	232	11.3
	조치원	955	750	78.5	205	21.5
	전의	1,339	998	74.5	341	25.5
	전의2산단	1,538	1,268	82.4	270	17.6
	명학	3,725	2,821	75.7	904	24.3
	일반 합계	10,919	8,633	79.1	2,286	20.9
합계		12,388	9,918	75.7	2,470	24.3



주*: 자료는 2022년 9월 30일 기준임

자료: 세종시 경제산업국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최성은(2023), '세종특별자치시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단지 역할과 과제', <지역혁신과 산업단지의 동행: 충청권 편>, 한국산업단지공단

6) 여성기업현황

□ 세종시 경제산업국 기업지원과, “여성기업 역량강화사업 추진”

- (목적) 여성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경영혁신 세미나를 실시하여 여성기업인 리더십 향상 및 인적 네트워크 형성 기회 제공
 - 여성기업 판매 촉진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
- (법적 근거) 「세종특별자치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및 제7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 촉진 도모

「세종특별자치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제7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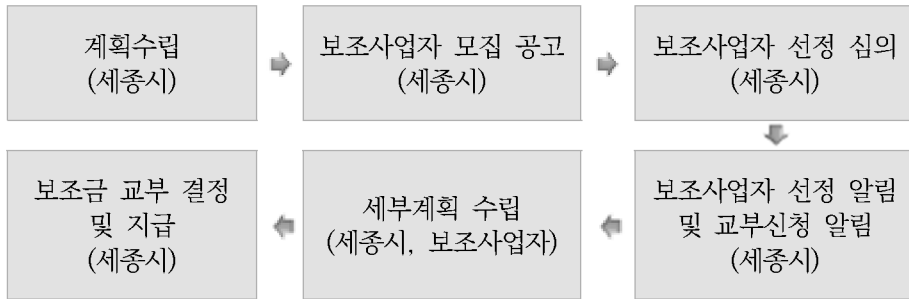
① 시장은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경제인·여성기업의 노동자 연수 및 여성창업(개정, 2023. 3. 6.)
2. 여성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신제품 개발(디자인 개발을 포함한다), 신기술·정보의 제공, 경영지도에 관한 지원
3. 여성기업의 제품 전시회 등 판매 촉진을 위한 지원
4. 여성기업의 국내·외 마케팅 지원 사업(신설, 2023. 3. 6.)
5.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단체에 대한 필요한 지원(제4호에서 이동, 2023. 3. 6.)
6. 여성기업의 역할과 기여에 관한 홍보 및 여성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사업(신설, 2023. 3. 6.)
7.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따른 여성기업 주간 기념사업(신설, 2023. 3. 6.)
8. 그 밖에 여성기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지원(제5호에서 이동, 2023. 3. 6.)

②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에 대하여 여성기업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 (사업 예산) 총 11,428천원 (시비 8,000천원, 자부담 3,428천원, 시비: 자부담 = 7:3)
- (추진 방법) 공모를 통한 보조사업, 약 6개월

[표 2-26] 여성기업 역량강화사업 추진 절차



- (사업 내용) 「여성기업법」 제12조의3(여성기업 주간)에 따른 법정행사
 - 여성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포럼, 간담회, 설문조사 등 실시

[표 2-27] 추진 실적(2020~2022)

2020년	2021년	202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량강화 세미나(1회) ‘소비트렌드 및 마케팅 전략’ - '20.7.10. / 세종시청 - 여성기업인 50여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량강화 세미나(1회) ‘팬데믹으로 인한 소비자 경향을 분석하라’ - '21.8.31. / 세종시청 - 여성기업인 50여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량강화 세미나(2회) ① ‘여성기업 ESG경영실천 노하우’ - '22.6.15. / 세종시청 - 여성기업인 100여명 ② ‘이순신 리더십’ - '22.10.19. / BOK아트센터 - 여성기업인 50여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책자 제작 - 여성기업 57개사 - 홍보책자 제작(400부), 전자책자 제작(pdf)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동영상 제작(3개사) - 카카오파이브, (주)태연, (주)아트랫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전시회(1회) - '22.12.13. / 라운지46 - 세종여성기업인회 미덕데이 행사개최에 홍보판넬 설치 ■ 우수기업 방문(2개사) - '22.10.13. - 여성기업인 10여명 - 아테나공동체, 슬터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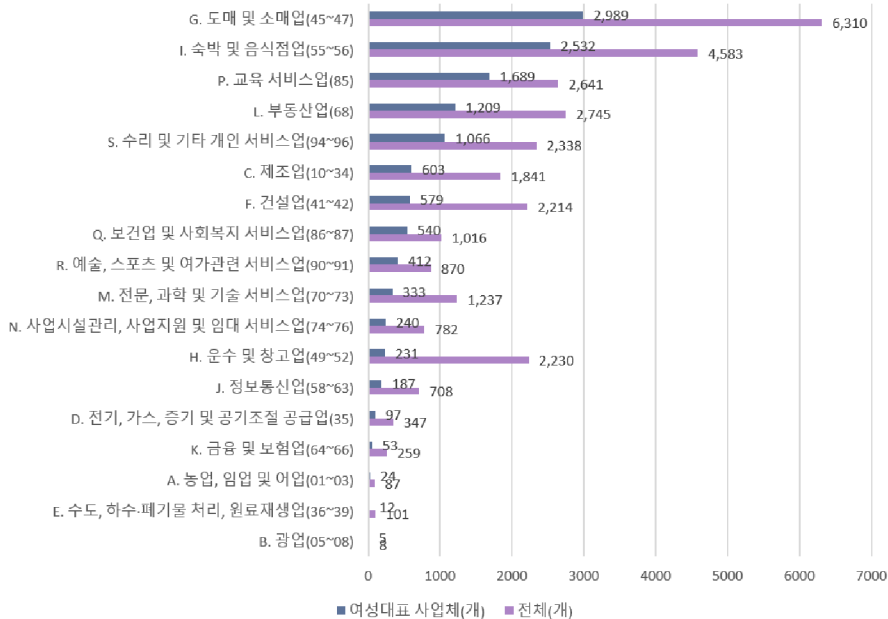
자료: 세종시청 경제산업국 기업지원과 내부자료(2023), <2023년 여성기업 역량강화사업 추진계획(안)> 및 <참고1. 여성기업인 역량강화사업 실적 및 현황>

□ 세종시 관내 여성기업현황

- 세종시 여성 기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세종시 관내 30,317개의 기업 중 12,801개의 기업이 여성대표 사업체로 있고 가장 많은 여성대표 사업체를 가진 분야는 '도매 및 소매업(2,989개)'로 나타남
 - 두 번째로 많은 여성대표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분야는 '숙박 및 음식점업(2,532개)'으로 세종시 전체 '숙박 및 음식점업(4,583개)'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함
 - 세 번째는 '교육 서비스업(1,689개)', 네 번째는 '부동산업(1,209개)', 다섯 번째는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1,066개)'로 다섯 분야 모두 여성대표 사업체가 1,000개 이상을 차지하는 분야임

[표 2-28] 세종시 산업별 여성대표 사업체 수

산업별	전체(개)	여성대표 사업체(개)
합 계	30,317	12,801
A.농업, 임업 및 어업(01~03)	87	24
B.광업(05~08)	8	5
C.제조업(10~34)	1,841	603
D.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35)	347	97
E.수도,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36~39)	101	12
F.건설업(41~42)	2,214	579
G.도매 및 소매업(45~47)	6,310	2,989
H.운수 및 창고업(49~52)	2,230	231
I.숙박 및 음식점업(55~56)	4,583	2,532
J.정보통신업(58~63)	708	187
K.금융 및 보험업(64~66)	259	53
L.부동산업(68)	2,745	1,209
M.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73)	1,237	333
N.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74~76)	782	240
P.교육 서비스업(85)	2,641	1,689
Q.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6~87)	1,016	540
R.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	870	412
S.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94~96)	2,338	1,066



주: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021. 12. 기준)」, 공공행정(84) 제외
 자료: 세종시청 경제산업국 기업지원과 내부자료(2023), <2023년 여성기업 역량강화사업 추진계획(안)> 및 <참고1. 여성기업인 역량강화사업 실적 및 현황>

□ 여성기업 인증 및 여성경제인협회 가입 현황

[표 2-29] 세종시 여성기업 사업체 현황

구분	여성기업 수	여성기업확인서 발급업체	여성경제인협회 가입업체
세종	12,801	716	17
출처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1.12.기준) 여성경제인협회 세종충남지회 (23.2.기준)		

자료: 세종시청 경제산업국 기업지원과 내부자료(2023), <2023년 여성기업 역량강화사업 추진계획(안)> 및 <참고1. 여성기업인 역량강화사업 실적 및 현황>

2. 성인지적 관점으로 본 세종시 경제·산업 특성(시사점)

□ 세종시의 지역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성별격차의 특성에 따른 시사점

- (총평) 양성평등한 일자리 확대, 여성의 경력유지 및 재취업 확보를 위한 세종시의 정책적 의지를 담아낼 정책실체가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됨. 따라서 세종형 여성친화기업인증제 추진의 타당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됨
- 남성에 비하여 낮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 마련이 요구됨
- 특히, 성별 임금 격차의 수준이 전국에 비하여 크게 나타나고 있어 성별임금격차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됨
 -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50번.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의 실현을 위하여 단계적인 ‘성별근로공시제’를 내세워 양성평등 일자리 기반 조성을 추진할 계획에 있음
 - 따라서 세종시 차원에서도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세종시의 경력단절여성 비율은 이미 전국 평균 수준을 상회하며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어 여성의 경력유지와 재취업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비율과 여성 집중도 측면

- 세종시의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비율과 여성 집중도를 고려할 때, 소규모 사업체 중심의 여성친화기업인증제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짐
- 세종시 산업분류별 종사자 집중도를 검토한 결과를 보면, 여성 종사자 집중도가 높은 사업체 규모는 5인 미만이 대부분임([표 2-19] 참조)
 - 여성 집중도가 높은 직종 중 2위부터 10위까지 직종이 모두 5인 미만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됨
 - 2위 제조업, 3위 숙박 및 음식점업, 4위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5위 교육 서비스업, 6위 도매 및 소매업, 7위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8위 협회 및 단체, 수립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9위 금융 및 보험업, 10위 부동산업
- 여성 종사자 집중도 1위인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경우, 5~9명 이내 사업체 비율이 37%로 다른 직종에 비해 가장 높은 편이지만, 1~4명 이내 사업체 비율은 32%로 결국 10인 미만의 사업체에 여성이 집중되어 있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음
 - 여성 종사자 집중도 1위부터 10위까지 직종 중 1위인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과 9위 금융업 및 보험업을 제외하면 규모 5인 미만 사업체 비중이 60%를 넘어감
 - 5인 미만 사업체 비중, 제조업(62%), 숙박 및 음식점업(87%),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1%), 교육 서비스업(74%), 도매 및 소매업(89%),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76%), 협회 및 단체, 수립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93%), 부동산업(88%)

□ 산업단지 현황 및 관내 여성기업 현황 진단에 따른 시사점

- 세종시 산업단지 조성 계획 및 지원 정책과의 연계 필요
 - 일반산업단지 중에서도 첨단산업단지의 여성 고용률이 높게 나타난 것은 세종시에 조성 중인 ‘도시첨단산업단지’를 통해 매력적인 여성 일자리 공급의 기회를 준비할 수 있음을 시사함(최성은, 2023)

- 직업훈련프로그램 마련 시 산업단지 입주 기업이 요구하는 사항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마련이 필요하며, 동시에 일자리 정보 제공을 위한 홍보를 확대·강화할 필요가 있겠음

○ 세종시 여성기업 지원 제도와의 연계 강화 필요

- 법률적 제도 기반이 튼튼한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과 상대적으로 법률적인 제도적 기반이 미약한 여성친화기업인증제의 연계를 도모한다면, 인력난 해소와 여성창업의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제도 간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갈 것으로 기대됨
- 예시: 여성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연계 활성화,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및 연속 고용 시 여성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여성기업의 여성친화기업인증 활성화 추진을 통해 특화된 근무환경(예: 실내 정원 조성) 제공 등
- 예시: 여성벤처협회 및 여성경제인협회 세종지회 등과의 연계를 통해 여성기업인 간담회 지속 추진, '선배' 여성기업의 '후배' 여성기업 지원이 가능한 사회공헌 기회 제공 등

3절 유사 인증제도 운영 현황과 한계

1. 검토 개요

□ 여성친화기업 인증모형 설계를 위해 검토가 필요한 제도들

-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업 인증 기준’ 검토의 필요성
 - 가족친화 직장문화형성 지원을 위한 여성가족부의 인증제도로써 제도화 수준과 인지도가 가장 높은 제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음
 - 근로자의 조화로운 일과 생활 균형을 위한 다양한 일·가정양립제도 수준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제도임
 - 따라서 여성친화기업인증제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여성의 경력보유를 위한 제도 지원과 가장 많은 부분이 중첩되는 제도이므로 검토가 필요함
- ‘여성가족부 여성새로일하기지원센터 여성친화일촌협약, 기업환경지원개선 사업’ 검토의 필요성
 - 여성친화기업과 명칭이 가장 비슷하고, 정책 목표의 유사성이 가장 큰 사업임
 -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자체재원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아닌, 여성가족부 여성새로일하기지원센터 사업의 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어 단체장의 여성친화도시 조성 의지나 추진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활용하기는 어려움
 - 여성가족부에서는 여성친화일촌협약과 기업환경개선사업에 추가적인 지자체만의 보완 프로그램이 추진될 경우, 여성친화기업인증제로서 인정가능하다는 입장임
 - 따라서 해당 사업은 세종시가 여성친화기업인증제를 가장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초프로그램이 될 수 있으므로 검토 대상으로 적합함
- 세종시 공정일터인증제도
 - 고용평등과 고용차별 개선을 위한 세종시의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사업 중 하나임

- 따라서 직장 내 유리천장 해소를 통해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자 하는 여성친화기업인증 목표와 중첩된 정책 지향성을 가진 제도로써 연계 가능성 측면에서 사례 검토 대상으로 선정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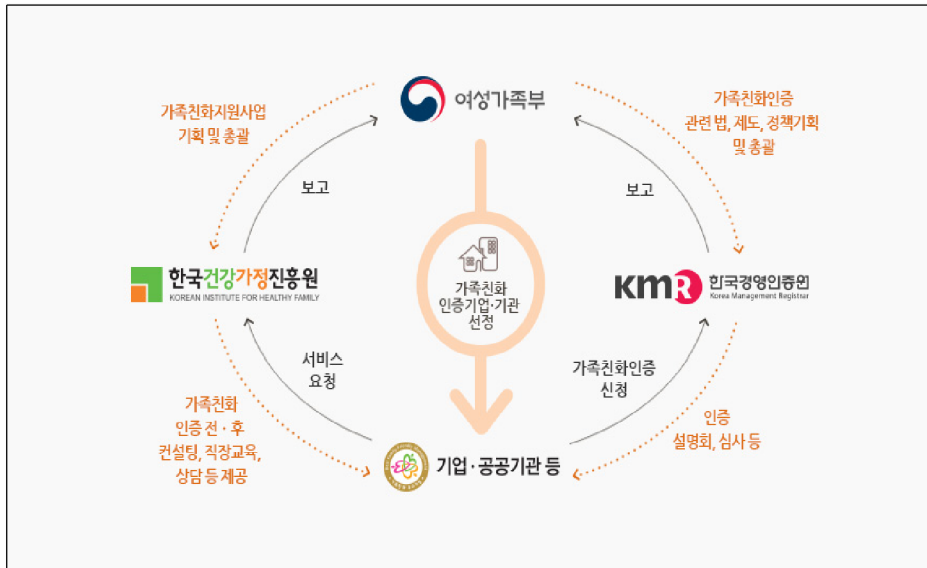
□ 제도별 비교 기준

- 본 연구에서는 가족친화기업 인증제, 여성친화일촌협약, 기업환경 개선사업, 세종시 공정일터인증제의 대상 및 범위, 시기 등 선정기준,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 추진체계(누가 주체인가)를 중심으로 비교를 시도하고자 함

2.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

□ 가족친화지원사업 개요

- (개념 정의 및 사업 목적)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는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써,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가정 양립 제도 및 사업운영을 통하여 가족친화 직장문화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임
 - 가족친화지원사업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근거를 두고 있음.
- (운영 체계) 가족친화지원사업의 전체 운영 체계는 다음 그림과 같음
 - 우선 해당 사업을 총괄하는 여성가족부는 가족친화지원사업에 대한 기획 및 총괄, 가족친화인증 관련 법, 제도, 정책기획 및 총괄 업무를 수행함
 - 구체적으로 가족친화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으로, 가족친화인증 전·후의 컨설팅, 직장 교육,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
 - 가족친화인증과 관련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한국경영인증원으로,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인증신청을 하면 인증 심사를 수행하고 관련하여 인증 설명회를 실시하는 등의 제반 업무를 수행함



[그림 2-7]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사업 운영체계

자료: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www.ffsb.kr/>)

□ 가족친화기업인증제도 추진 목적 및 인센티브 목록

- (개념정의 및 사업 목적) 가족친화기업 인증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가족친화제도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5조에 근거한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 등을 의미함
 - 신청 대상은 가족친화관련 법규요구사항을 충족한 기업 및 기관이며 신규인증과 연장, 재인증으로 구분됨
 - 2022년 12월 기준 가족친화인증 기업 / 기관은 총 5,415개사이며 대기업 591개사, 중소기업 3,706개사, 공공기관 1,118개사임
- 가족친화인증기업 대상: 중소기업, 대기업, 공공기관이 포함되며 최소충족요건(법규 요구사항)을 갖춰야 신청 가능
 - 「근로기준법」 관련 최소충족요건: 제50조(근로시간),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제73조(생리휴가), 제74조(임산부의 보호),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유산·사산휴가의 청구 등), 제74조(임산부의 보호: 임신기간 중

근로시간 단축 제도),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제75조(육아 시간: 유급 수유시간 보장)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최소충족요건: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제19조(육아휴직), 제19조(육아휴직),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증배제 대상

- (폭력예방교육 의무 실시 공공기관만 해당) 폭력예방 의무교육(성폭력·가정 폭력·성희롱·성매매) 실적 부진기관 해당여부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 대상만 해당) 직장어린이집 설치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여부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AA) 적용 대상만 해당) 3년 연속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기준에 미달 사업장 명단 공표 여부
- 고의의 임금 체불 확인
- 가족친화 관련 법규 요구사항 위반 여부(최근 2년 이내)
- 사회적 물의 야기 여부(최근 3년 이내)

○ 가족친화인증 대상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에 근거하여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사업체만 가능(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 검색일: 2023년 4월 4일)

- (중소기업 기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영리기업(법인기업, 개인사업자)이나 「사회적기업 육성법」상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사업)협동조합(연합회)이 해당됨. 각각의 개별 법률이 정한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중소기업의 판단은 법인의 경우 사업장 단위가 아닌 법인 전체를 기준으로 하며,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판단함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2015. 2. 3., 2016. 1. 27., 2018. 8. 14., 2019. 12. 10., 2020. 10. 20., 2020. 12. 8., 2020. 12. 29.>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나. 자본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표 2-30]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
(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 등 1,5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 등 1,000억원 이하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13. 코르크,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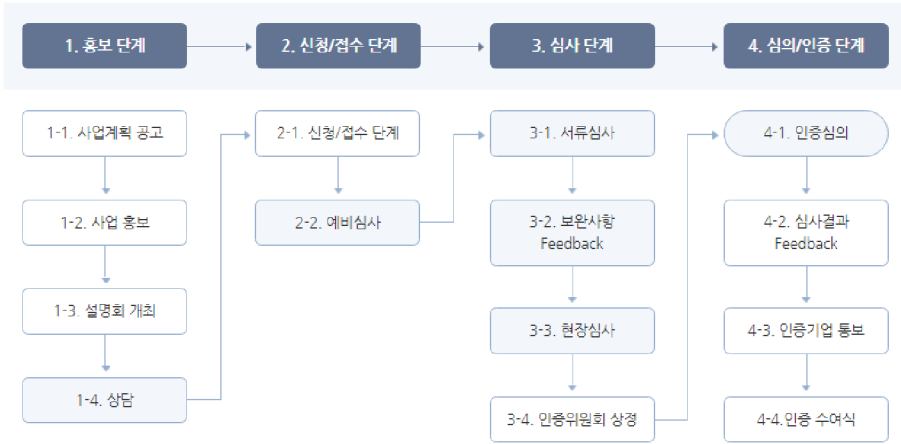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22. 수도업	E36	
23. 건설업	F	
24. 도매 및 소매업	G	
25. 음료 제조업	C11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의약품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32. 운수 및 창고업	H	
33. 정보통신업	J	평균매출액 등 600억원 이하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한다)	N(N76 제외)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평균매출액 등 400억원 이하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금융 및 보험업	K	
42. 부동산업	L	
43. 임대업	N76	
44. 교육 서비스업	P	

비고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 산업분류에 따른다.
- 위 표 제19호 및 제20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C30393),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 등 1,500억원 이하로 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 인증 절차는 아래 도식과 같음



[그림 2-8]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의 절차도

자료: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www.ffsb.kr/>)

- 인증사업에 대한 공고는 4월이며, 공고 이후 6월까지 권역별 설명회를 실시함. 같은 기간에 인증신청(4~6월)이 가능하며, 6월~8월에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가 진행됨. 11월경 가족친화인증위원회에 상정하여 최종 인증 여부 결정 후 12월에 인증서 수여 및 정부 포상 수여식이 이루어지는 절차로 진행됨
- (인증에 따른 인센티브)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면 중앙부처, 지자체, 은행 등이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활용할 수 있음(2022년 4월 기준)
 - 여성가족부는 가족친화인증기업에 공식적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가족친화 우수기업의 정부 표창을 진행함.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가족친화경영과 관련된 무료 컨설팅 및 가족친화 직장교육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함
 - 그 외 중앙부처, 지자체, 금융기관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함. 인센티브는 대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제공되며 각 기업과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는 대기업 71개, 중소기업 195개, 공공기관 9개로 나타남

□ 가족친화인증기업 관련 인센티브

- 세종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제공(2022년 4월 25일 공지사항)자료
 -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195개), 대기업은 활용 불가 ([부록 표 1-5] 참조)
 - 대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71개) 중소기업도 활용 가능 ([부록 표 1-6] 참조)
 - 인증기업 근로자와 가족을 위한 인센티브(38개)([부록 표 1-7] 참조)
- 공공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10개)

[표 2-31] 공공기관 대상 인센티브(10개)

구분	기관명	지원사업	지원내용
중앙부처 제공(1)	기획재정부(1)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가족친화인증여부반영	비계량 2점 중 일부
	부산광역시(1)	부산시출자·출연기관경영평가	가점 0.5점
지자체 제공(9)	대구광역시(6)	대구시 출자·출연기관경영평가	시 산하 12개 출자·출연기관 평가 시 가점
		대구시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 가족친화행사지원	가족친화강연, 공연, 행사지원
		대구시 가족친화우수기업 시상	인증기업, 실무자 시장표창
		대구광역시 가족친화인증기업 현판제작	신규인증기업 현판제작비 지원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3년간 유예
		가족친화인증 심사비 지원	인증 심사비 지원
	인천광역시(1)	인천광역시 출자 출연기관 경영평가 가족친화인증 획득 반영	가점 0.1점
광주광역시(1)	광주시출연기관경영평가	0.3점 부여	

자료: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s://www.ffsb.kr/ffm/ffmCertStatus.do>)(인증제도 안내, 검색일: 2023년 4월 4일)

□ 가족친화기업인증 세부 내용

-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기준(2022. 4. 25. 시행)은 ‘신규인증’, ‘유효기간 연장 및 재인증’으로 구분됨
- 각각의 인증 방법은 다시 중소기업과 대기업 등으로 구분하여 기준이 제시됨.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명시된 중소기업을 의미하며, 그 외의 기업은 ‘대기업 등’으로 분류됨. 다음은 신규 인증에 대한 내용임
- (중소기업 신규 인증 지표) ‘최고경영층의 리더십(20점)’, ‘가족친화제도 실행(60점)’, ‘가족친화경영 만족도(20점)’, ‘가점(최대 15점)’의 네 가지 분야로 구분됨
 - ‘최고경영층의 리더십’은 가점을 제외한 100점 만점 중 20점으로 20%의 비중을 차지함. 내용은 최고경영층의 관심 및 의지에 대한 평가로써, 가족친화제도와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 야기에 대한 여부를 확인함
 - ‘가족친화제도 실행’ 부분은 60%의 비중으로 실제 제도의 이용률을 측정함. 주요 내용으로 ① 여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률(10점), ② 남여 근로자 육아휴직 후 복귀율(10점), ③ 출산전후 휴가 후 고용유지율(10점), ④ 배우자출산휴가 10일 이상 이용률(5점), ⑤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률(5점), ⑥유연근무제 활용률(10점), ⑦정시퇴근(10점)으로 구성되어 있음
 - ‘가족친화경영 만족도’는 20%의 비중으로 자녀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관련 직원 만족도로 측정함
 - 가산점 영역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항목을 비롯하여 가족친화 관련 프로그램 시행, 남성근로자 육아휴직 이용 등 15개 항목으로 구성됨
- (대기업 신규 인증 지표) 대기업 등의 경우 중소기업의 심사항목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가·감점 영역이 최대 10점으로 약간 다름. 구체적으로 분야별 항목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최고경영층의 리더십’은 20점으로, ① 최고경영층의 관심 및 의지(15점), ② 가족친화 관련 프로그램 참여(3점), ③ 가족친화 관련 전담 인력 보유(2점)으로 구성됨

- ‘가족친화제도 실행 분야’는 60점으로 비중이 가장 크며, 세부 영역으로 ‘차녀 출산 및 양육 지원(40점)’, ‘유연근무제도(20점)’, ‘가족친화직장문화 조성(10점)’으로 구분되어 있음
 -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분야는 중소기업의 기준과 동일함
 - ‘가·감점’ 영역은 최대 10점으로, ‘고용노동부 주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서 여성근로자의 고용기준에 미달하는 기준’인 경우 -2점의 감점이 발생함
- (중소기업 vs. 대기업 지표 차이) 중소기업과 대기업 등의 가족친화기업 인증 기준은 다음과 같은 항목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최고경영층의 리더십’ 분야에서 최고경영층의 관심과 의지(사회적 물의 야기 여부 확인)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등에서 공통적으로 측정하나, 대기업 등에서는 최고경영층이 가족친화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지, 가족친화 관련 전담인력을 두고 있는지를 세분하여 측정함. 즉, 최고경영층의 참여와 구조적 노력에 대한 의지를 함께 측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가족친화제도 실행’ 분야에서 중소기업은 7가지 항목을 측정하나, 대기업 등은 7개 항목에 더불어 ‘남성근로자 육아휴직 이용률’과 ‘가족친화 직장교육 실시’ 항목을 추가하여 살펴봄
 - 이상 두 가지 항목은 중소기업 인증 항목에서 가점 영역에 포함되어 있으나, 대기업 등에서는 가·감점 영역이 아닌 정규적인 평가의 영역으로 편입되어 있음. 따라서 대기업 등에서 가족친화기업이 되기 위한 기본적인 기준선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음
 -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영역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등에서 동일하게 적용됨
 - ‘가점 또는 감점’ 영역에서 중소기업의 경우 감점 없이 가점 사항만 존재하나, 대기업 등에서는 ‘여성근로자의 고용기준에 미달’ 시 감점이 발생함.
 - 또한, 중소기업과 대기업 등의 환경적 조건을 고려하여 몇 가지 항목에서 차이가 나타남. 대표적으로 대기업 등의 가점 항목인 ‘여성임원비율’이나 중소기업의 가점 항목인 ‘청년친화강소기업’을 들 수 있음
 - 신규인증 통과 기준은 중소기업은 가점을 포함하여 60점임. 다만,

‘최고경영층의 리더십’의 영역에서 10점 이상의 점수를 반드시 득하여야 하고, 대기업 등은 가·감점을 포함한 70점으로 ‘최고경영층의 리더십’에서 10점 이상, ‘가족친화제도 실행’에서 30점 이상의 점수를 득하여야 함

[표 2-32] 가족친화기업 신규 인증 평가 항목

중소기업		
분야	심사항목	배점
최고경영층의 리더십	최고경영층의 관심 및 의지(사회적 물의 야기 여부 확인)	20
가족친화제도 실행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률	10
	남녀 근로자 육아휴직 후 복귀율	10
	출산 전후 휴가 후 고용 유지율	10
	배우자출산휴가 10일 이상 이용률	5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률	5
	유연근무제 활용률	10
	정시퇴근	10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관련 직원 만족도	20
가점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이행사업장 제외)	8
	가족친화 관련 프로그램 시행(7가지, 각 1점)	7
	남성근로자 육아휴직 이용	8
	가족돌봄휴직 이용 또는 가족돌봄휴가 이용	5
	가족친화 직장교육 실시	5
	고용노동부 주관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선정	3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중소기업에만 해당됨	3
	근무혁신인센티브제 우수기업	3
	연차 활용률	3
	자동육아휴직제 시행	2
	대체인력 채용	2
	조기퇴근제 시행	2
	청년친화강소기업 *중소기업에만 해당됨	2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2
	여성관리자비율 목표제 시행	2

대기업 등		
최고경영층의 리더십	최고경영층의 관심 및 의지(사회적 물의 야기 여부 확인)	15
	가족친화 관련 프로그램 참여	3
	가족친화 관련 전담 인력 보유	2
가족친화제도 실행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률	10
	남성근로자 육아휴직 이용률	5
	남녀 근로자 육아휴직 후 복귀율	10
	출산 전후 휴가 후 고용 유지율	5
	배우자출산휴가 10일 이상 이용률	5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률	5
	유연근무제 활용률	10
	정시퇴근	5
	가족친화 직장교육 실시	5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관련 직원 만족도
가(감)점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이행사업장 제외)	5
	가족친화 관련 프로그램 시행(5가지, 각 1점)	5
	가족돌봄휴직 이용 또는 가족돌봄휴가 이용	5
	고용노동부 주관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선정	2
	근무혁신인센티브제 우수기업	2
	여성관리자비율 목표제 시행	2
	여성임원비율 *대기업 등에만 해당됨	1
	연차 활용률	1
	자동육아휴직제 시행	1
	대체인력 채용	1
	조기퇴근제 시행	1
	여성근로자의 고용기준에 미달 *대기업 등에만 해당됨	-2

자료: 여성가족부 고시 제2022-10호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기준” 제구성

- (유효기간 연장 및 재인증 심사) 기준에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 받은 경우에는 유효기간 연장 및 재인증 심사를 받을 수 있음
 - 중소기업의 경우 ‘최고경영층의 리더십(15점)’, ‘가족친화제도 실행(60점)’, ‘가족친화경영 만족도(15점)’, ‘자체점검 이력(10점)’에 대해서 심사하며, 가점은 최대 15점이며, ‘인증 유효기간 내 가족친화경영 컨설팅 시행(5점)’ 항목을 추가로 고려함

- 대기업 등의 유효기간 연장 및 재인증 심사는 위 중소기업 심사 내용과 동일하며 가·감점은 최대 10점임
- 유효기간 연장 시에 중소기업은 가점을 포함하여 60점임. 다만, '최고경영층의 리더십'의 영역에서 8점 이상의 점수를 반드시 득하여야 하고, 대기업 등은 70점으로 '최고경영층의 리더십'에서 8점 이상, '가족친화제도 실행'에서 30점 이상의 점수를 득하여야 함
- 재인증 시에 중소기업은 가점을 포함하여 65점인데 단 '최고경영층의 리더십'의 영역에서 8점 이상의 점수를 반드시 득하여야 하고, 대기업 등은 75점으로 '최고경영층의 리더십'에서 8점 이상, '가족친화제도 실행'에서 30점 이상의 점수를 득하여야 함

[표 2-33] 가족친화기업 신규인증, 연장 및 재인증 점수와 기준

구분	중소기업		대기업 등	
	통과 점수 (가점 포함)	필수 기준	통과 점수 (가·감점 포함)	필수 기준
신규인증	60	최고경영층 리더십 배점 10점 이상	70점	최고경영층 리더십 배점 10점 이상, 가족친화제도 실행 배점에서 30점 이상
유효기간 연장	60	최고경영층 리더십 배점 8점 이상	70	최고경영층 리더십 배점 8점 이상, 가족친화제도 실행 배점에서 30점 이상
재인증	65	최고경영층 리더십 배점 8점 이상	75	최고경영층 리더십 배점 8점 이상, 가족친화제도 실행 배점에서 30점 이상

자료: 여성가족부 고시 제2022-10호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기준” 재구성

3. 여성가족부 새일센터 사업 중 유사 제도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목적 및 현황

○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운영하는 여성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센터임

- 새일센터의 목적은 비경제활동상태인(경제활동을 중단하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자에게 취업 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과 같은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데 있음



[그림 2-9] 여성가족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사업 목적

○ 시·도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 현황(2022년 12월 31일 기준)
 - 17개 광역시·도 중 13개 지역에 광역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있음. 세종과 대구, 울산, 제주에는 새일센터 광역센터는 부재함

- 광역센터가 부재한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세종시는 인프라 측면에서 부족한 상황임. 대구는 5개소, 울산 4개소, 제주 3개소로 권역별 원스톱 취업지원서비스가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나, 세종시는 1개소에 그침

[표 2-34] 시·도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 현황

(2022년 12월 31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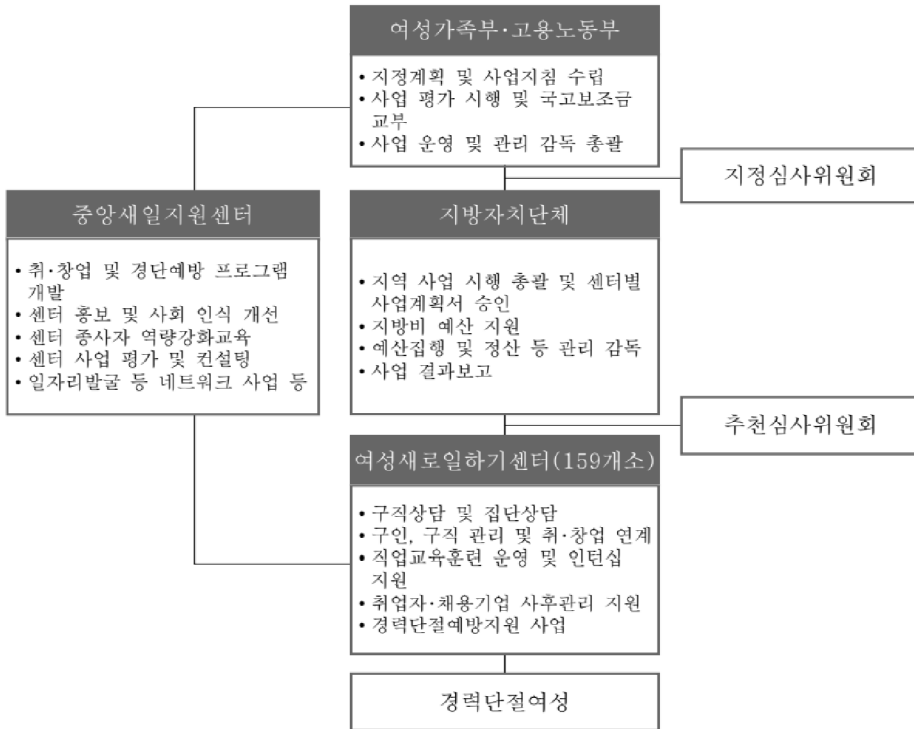
구 분	기 초	광 역
서 울	26	1
부 산	11	1
대 구	5	-
인 천	9	1
광 주	5	-
대 전	3	1
울 산	4	-
세 종	1	-
경 기	29	2
강 원	10	1
충 북	6	1
충 남	11	1
전 북	9	1
전 남	9	1
경 북	9	1
경 남	9	1
제 주	3	-
합 계	159	13

자료: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2023), <2023년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지침>, 9쪽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체계는 새일센터 운영예산의 지원체계와도 일치함
- 여성가족부예산 지원(국비-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지원계정): 새일센터 운영지원비(인건비, 사업운영비, 사후관리비), 광역센터운영지원비, 산단형 센터 운영지원비, 새일여성인턴, 직업교육훈련, 창업지원(인건비), 경력단절 예방(인건비 및 사업비), 경력이음 사례관리(인건비 및 사업비)
- 고용노동부예산 지원(국비-일반회계): 직업상담사 인건비 및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비(직업상담사 활동경비 및 사후관리비 포함)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 법」) 제13조(지방비 부담의무)에 따라 국고보조 사업과 매칭된 지방비를 확보하여야 하며, 국고 보조사업 이외에 지역별 실정에 맞게 지방비 부담으로 인건비, 종사자 전환 수당, 추가 사업 및 운영비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그림 2-10]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 추진체계

자료: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2023), <2023년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지침>, 11쪽

- ‘여성친화기업’과 유사한 사업들: 여성친화일촌협약(일촌기업), 기업환경지원 개선사업
-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서 강조하는 여성친화기업인증제와 가장 유사한 새일센터의 사업은 크게 2가지임. 여성친화기업 인증과 유사한 제도로 볼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의 ‘여성친화일촌기업’과 관련 기업에 시설 개선비를 지원해 주는 ‘기업환경 개선사업’이 있음

- ‘여성친화일촌협약’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사업운영비로 추진되고 있음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사업운영비는 취업 연계 활동, 홍보활동, 여비 등 새일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집행이 가능함
 - 취업 연계 활동은 구인·구직 발굴 및 일자리 네트워크 구축 등을 포함하며 이 중 “기업체 협력망 구축”을 위한 사업프로그램의 하나로 여성친화일촌협약이 추진 중임
- “기업환경개선지원 사업”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사후관리비로 지출됨
 - 사후관리비는 ‘구직자·취업자 사후관리’, ‘채용 기업 사후관리’ 사업으로 구분됨. 기업환경개선지원 사업은 ‘채용 기업 사후관리’에 해당함

□ 새일센터 여성친화일촌협약(일촌기업)

자료: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2023), <2023년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지침>, 65쪽

[여성친화 일촌기업 관련 새일센터 지침 일부 발췌]

- 새일센터에서는 취업자의 고용 유지 지원 등을 위한 여성친화 일촌기업 및 가족친화인증기업 등과 구인 업체와의 협력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 기업체 HR 담당자, 중간 관리자 등과 협력망을 개최하여 취업 및 직장 적응 지원 방안 마련 논의, 기업의 여성친화 환경 조성 및 여성친화 경영 컨설팅 지원 등에 대한 협력 등 지원

여성친화 일촌기업

- ‘여성친화 일촌기업’이란 새일센터를 통해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한 기업체 또는 채용을 약정한 기업체로서 새일센터가 여성친화적 일터를 조성, 취업자의 고용 유지를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한 업체를 말함
- ※ 다만, 여성친화 일촌기업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해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과는 별개 개념이므로, 해당 기업에 대해 인증·공증·인증서 수여 등 가족친화기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사업 진행은 불가하며, 협약 체결 기업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정부가 인증하는 ‘여성친화 기업’이 아님을 명확히 안내하고, 협약 체결 시 협약 기간을 명시하여 관리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에서는 5~300인 미만 기업체 협력망 구축사업의 일환으로서 ‘여성친화일촌기업협약’을 추진하고 있음
 - ‘여성친화 일촌기업’이란 새일센터를 통해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한 기업체 또는 채용을 약정한 기업체를 의미함. 이는 새일센터가 여성친화적 일터를 조성하고 취업자의 고용유지를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한 업체임

- 다만, 여성친화일촌기업은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과는 별개의 개념이며, 정부가 인증하는 ‘여성친화기업’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는 내용이 지침에 명시되어 있음

○ 여성친화일촌기업 협약에 따른 주요 혜택


- 여성친화일촌기업으로 협약을 맺는 기업에 새일센터에 등록된 여성인력을 우선적으로 연계하여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고, 동시에 해당 기업에 인턴 채용 인력 1인당 월 80만원의 인턴채용 지원금을 3개월간 지급함
- 또한,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기업에 새일고용장려금 80만원을 지급하고, 인턴 당사자에게는 근속장려금 60만원을 지급함
- 고용의 조건은 주당 35시간 이상의 전일제 근무이며, 급여는 시급 8,720원 이상으로 월 1,822,480원 이상 지급되어야 함
- 이후 일촌기업은 새일센터의 사후관리사업 우선지원 대상이 되어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경력단절 예방프로그램 등과 같이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의 조성과 관련된 교육 서비스를 지원함

○ 새일센터는 여성친화적 일터를 조성하고 취업자의 고용유지를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한 업체를 대상으로 현판을 제공하고 ‘친친기업 협의체 구성’이 가능하다는 사업지침이 있으나 “권고” 수준에 그치며, 지속가능한 협의체 운영 사례가 거의 없는 상황

[표 2-35] 여성친화 일촌 기업 협약서 예시

[별표 제49호 서식] 여성친화 일촌기업 협약서 예시

여성친화 일촌기업 협약서

기업 심벌 

여성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여성 인력을 적극 채용하고, 현장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가지고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여성 근로자가 일하기 좋은 여성친화 일터를 만들기 위하여 ○○○○○와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지정○○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은

첫째, 여성친화적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여성 인력을 적극 채용하고 기업의 핵심 인재로 양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모성보호와 정시 퇴근 등 일·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도입하고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넷째, 채용·승진·임금 등에서 차별을 해소하여 고용에 있어 양성평등을 실현하겠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첫째, 기업에서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발굴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기업의 여성 근로자를 위하여 예시) 출퇴근 셔틀버스,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하여 기업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넷째, 여성친화적 기업 문화 확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이 협약기간은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년 ○○월 ○○일

○○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

○○○○○○ ○○○

새일센터 기업환경개선사업

-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기업 내 여성전용시설 및 여성친화시설의 설치, 개선을 통하여 여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목적임

○ 지원대상기업은 상시근로자수 5~300인 미만으로서,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 연계자 포함)가 최근 1년간 2명 이상, 최근 2년간 3명 이상인 기업, 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환경개선 지원 이후 6개월 이내)한 업체 또는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 상용근로자 중 여성의 비율이 80%가 넘는 기업(지원분야 확대),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임

- 다만 최근 3년 내 지원을 받았던 사업장은 제외됨

○ 시설개선지원 분야로는 여성 편의시설 설치, 개보수(화장실, 휴게실, 수유실 등), 여성 관련 복지시설 물품·비품 지원, 여성 근로자의 근로환경에 맞춘 입·퇴직 의사 등 지원함

- 1개 기업당 최대 4백만 원 한도 내에서 총 사업비의 70%까지 지원함

*자료: 여성가족부(2023), <2023년도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사업지침>

[기업환경개선사업 새일센터 지침 일부 발췌]

○ 지원 대상 기업

-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 연계자 포함)가 최근 1년간 2명 이상인 업체
-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 연계자 포함)가 최근 2년간 3명 이상인 업체
-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창업 후 1년 이내)
 - ※ 창업기업의 (공동)대표자가 직업교육훈련, 창업동아리, 창업컨설팅 등 새일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증빙자료 필요
-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 ※ 단, 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환경개선 지원 이후 6개월 이내)한 업체에 한함
- 여성친화일촌기업(5~300인 미만)
 - ※ 단, 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 업체에 한함
 - ※ 모집 공고시 해당 지자체, 센터 자체 홈페이지 및 센터 게시판 등에 10일 이상 반드시 모집 공고하여야 함

○ 시설환경개선 대상

- 여성화장실, 여성 휴게실(수유실) 등
- 사무공간 및 작업공간 개선*
 - * 사업 신청일 기준 근로기준법 제41조에 따른 '근로자명부'기준으로 전체 상용근로자 중 여성근로자의 비율이 50%이상인 업체에 한함(단, 조선업 관련 산업, 공업 단지의 경우 여성근로자 비율 40% 이상 시 허용- 관련 증빙자료 철저히 구비)

○ 물품 구입

- 시설 환경 개선에 대상 업체에 한하여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품 구입 가능 (단, 가능한 품목은 아래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

- 화장실(사위실)에 필요한 수납장, 시물함, 운수기
- 휴게실(탈의실), 수유실 인산놀이방에 필요한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유축(수유)기, 침대, 사물함(옷장), 탁자, 의자, 소파
- 작업실에 필요한 의자
 - ※ 그 외 물품은 시도 승인 거쳐 제한적으로 사용 가능(시도에서 면밀히 검토 후 승인 필요)

-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의 초기 세팅을 위한 물품
(단, 최초 1회 한으로 시설환경개선 없이 물품만으로 지원 가능)

- 시설환경 개선에 따라 필요한 물품(상기 표 참조)
- 인테리어 및 업무용 컴퓨터, 책상, 책장, 의자, 소파 등

○ 환경 개선 제외 사업장

- 공공기관, 관공서(학교 포함) 등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 수요 업체(예: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 업체)
- 임금 성격으로 보기 어려운 직종, 간접 고용 등 파견 업체
- 새일센터장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 자매가 경영하는 사업장
 - ※ 단, 시도에서 환경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이라고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 숙박, 음식 업종 사업체
 - ※ 단,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경우, 센터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 사회복지시설 등 타 기관으로부터 국고·지방비 보조금 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사업장
 - ※ 'e나라도움 홈페이지-정보공시'-보조사업자 정보공시' 확인
- 새일센터 환경개선사업장으로 승인 통보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초과하지 않은 사업장
- 기타 사후관리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사업장

[표 2-36] 새일센터 기업환경개선 사업 신청서- 일반 기업용

[별표 제50-1호 서식] 기업환경개선 사업 신청서 - 일반 기업용

※ 신청서 임의 수정 불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기업환경개선 사업 신청서

1. 신청인(사업주)

사업장명		대표자	
업종명 및 상시근로자 수		주 생산품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전화번호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 수 (인턴 연계자 포함)	최근 1년 00명 최근 2년 00명	상시근로자 수 / 상시근로자 중 여성 비율	
주소		가족친화인증기업	여 <input type="checkbox"/> 부 <input type="checkbox"/>
		여성친화 일촌기업 협약일	년 월 일

2. 환경 개선 계획

환경 개선* 희망 시설(선택)	화장실(), 탈의실(), 수유실(), 임시놀이방(), 샤워실(), 휴게실(), 기타()		
환경 개선 계획 기간(일정)	년 월 일 ~ 년 월 일(약 일간)		
환경 개선 비용 견적 금액**	원	환경 개선 지원 신청 금액***	원
<p>○○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여성 기업 환경 개선 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직인)</p> <p>○○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귀하</p>			

※ 필수 제출서류

- (첨부 1) 사업자등록증 1부.
- (첨부 2) 고용 환경 개선 계획서(개선할 현장사진 필수 첨부) 1부.
- (첨부 3) 여성 근로자 및 여성 복지 현황표 1부.
- (첨부 4) 여성친화 진단 측정 지표 1부.
- (첨부 5) 환경 개선비용 견적서 1부.
- (첨부 6)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증서(사본) 1부. * 해당 시

* 여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여성 전용 시설에 한하여 신청가능합니다 (단순한 물품 지원은 불가합니다).

** 환경개선 희망시설에 대한 비용 견적액을 기입합니다.

*** 환경개선 비용 견적액의 70% 범위내에서 신청가능하며, 최대 500만원 한도로 신청합니다.

[표 2-37] 새일센터 기업환경개선 사업 신청서- 창업 기업용

[별표 제50-2호 서식] 기업환경개선 사업 신청서 - 창업 기업용

※ 신청서 임의 수정불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기업환경개선 사업 신청서 (창업기업용)

1. 신청인(사업주)

사업장명		대 표 자	
업종명 및 상시근로자 수		주 생산품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전화번호	
주소		개업 년월일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 수 (인턴 연계자 포함)	최근 1년 00명 최근 2년 00명	상시근로자 중 여성 비율 (상시근로자 수)	여 <input type="checkbox"/> 부 <input type="checkbox"/>
새일센터 창업자 여부	여 <input type="checkbox"/> 부 <input type="checkbox"/>	창업자의 새일센터 참여 프로그램	년 월 일

2. 환경 개선 계획

환경 개선* 희망 시설(선택)	화장실(), 탈의실(), 수유실(), 임시놀이방() 샤워실(), 휴게실(), 기타(), 해당없음()		
환경 개선 계획 기간(일정)	년 월 일 ~ 년 월 일(약 일간)		
물품 구입 목록			
환경 개선 비용 견적 금액**	원	지원 신청 금액***	원
<p>○○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여성 기업 환경 개선 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직인) ○○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귀하</p>			

※ 필수 제출서류

- (첨부 1) 사업자등록증 1부.
- (첨부 2) 고용 환경 개선 계획서(개선할 현장사진 필수 첨부, 시설 개선 시) 1부.
- (첨부 3) 여성 근로자 및 여성 복지 현황표 1부.
- (첨부 5) 환경 개선비용 및 구입 물품 견적서 1부.
- (첨부 6) 창업자의 새일센터 프로그램 참여 내역 증빙 서류 1부.
- (첨부 7)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증서(사본) 1부. * 해당 시

*여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여성 전용 시설에 대해 신청 가능합니다.(시설 개선 시)

**환경개선 희망시설에 대한 비용 및 물품 구입 견적액을 기입합니다. (물품구입의 경우 비교견적 필수)

***환경개선 및 물품 구입 비용 견적액의 70% 범위내에서 신청가능하며, 최대 500만원 한도로 신청합니다.

[표 2-39] 새일센터 기업환경개선 사업: 여성친화 진단 측정 지표

여성친화 진단 측정 지표								
(* 가장 가까운 항목에 “○” 표시 해 주세요.)								
지수	평가항목	문항	아니다 ↔ 그렇다					
조직문화	여성친화적 조직문화 지수	종업원 존중	여성 인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1	2	3	4	5
			직장 생활 만족도 제고를 위해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한다.	1	2	3	4	5
		가족친화적 근무환경	일과 가정의 조화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다.	1	2	3	4	5
			야근 직무 배치에 있어 임신부나 어린자녀를 둔 여성을 배려한다.	1	2	3	4	5
			임신, 결혼, 육아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가 있다.	5	4	3	2	1
			남성 근로자들이 학무보 활동으로 휴가를 내는 편이다.	1	2	3	4	5
	남성중심적 직업관행 제거	가족의 간호를 위한 휴가를 낼 수 있는 분위기이다.	1	2	3	4	5	
		관행적으로 초과 근무(야간 등)를 하는 편이다.	5	4	3	2	1	
		여성 상사를 기피하는 분위기이다.	5	4	3	2	1	
			여성의 일과 남성의 일이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는 편이다.	5	4	3	2	1
집수계산		소계(A)		()점				
일·가정양립 지원	일·가정양립 지수	탄력 근무	탄력 근무제(시차출퇴근, 재택근무, 반일휴가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활용도가 높은 편이다.	2	4	6	8	10
		돌봄노동 지원	보육비 지원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활용도가 높은 편이다.	2	4	6	8	10
			배우자 출산휴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활용도가 높은 편이다.	2	4	6	8	10
			가족간호 휴가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활용도가 높은 편이다.	2	4	6	8	10
			육아 휴직자에 대한 직장 복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활용도가 높은 편이다.	2	4	6	8	10
총 점		소계(B)		()점				
		총계(100점 만점, A+B)		()점				
평가 결과		0~40점 미만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40~60점 미만 좀 더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60점 이상 여성친화 기업입니다.				

<p>[별표 제53호 서식] 기업 환경 개선 사업 만족도 조사(소간) 및 건의 사항 수렴</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p style="text-align: center;">기업 환경 개선 사업 만족도 조사 및 건의 사항 수렴</p> <p>◆ ○○여성새일센터에서는 여성친화적인 기업 환경과 여성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여성친화 기업 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이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사업 결과에 대한 피드백 기능을 강화하고자 직접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p> <p>◆ 설문 조사 내용은 내부 용도로만 사용되며, 외부로 공개되지 않습니다.</p> </div>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10px;"> <tr> <td style="width: 20%;">회사명</td> <td style="width: 30%;"></td> <td style="width: 10%;">책임자</td> <td style="width: 40%;"></td> </tr> <tr> <td>연락처</td> <td>TEL :</td> <td>FAX :</td> <td>E-mail :</td> </tr> </table> <p>1.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 환경 조성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귀사의 여도에 대해 기대해 주세요 ()</p> <p>2.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 환경 조성을 위해 가장 시급한 점은? (해당란에 √해 주세요)</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10px;"> <tr> <td><input type="checkbox"/> 국내·외 경기 활성화</td> <td style="text-align: right;">()</td> </tr> <tr> <td><input type="checkbox"/> 금융 기관의 자금 조달 규제 완화</td> <td style="text-align: right;">()</td> </tr> <tr> <td><input type="checkbox"/> 세계 지역 등 기타 인센티브 제공</td> <td style="text-align: right;">()</td> </tr> <tr> <td><input type="checkbox"/> 정부·기업 등 이해 관계자 간 충분한 의사소통 체계 구축</td> <td style="text-align: right;">()</td> </tr> <tr> <td><input type="checkbox"/> 기업이나 국민 등에 대한 홍보</td> <td style="text-align: right;">()</td> </tr> <tr> <td><input type="checkbox"/> 현장 점검이나 법적 규제</td> <td style="text-align: right;">()</td> </tr> <tr> <td><input type="checkbox"/> 기타 ()</td> <td style="text-align: right;">()</td> </tr> </table> <p>3. 이밖에 시행한 여성친화 기업 환경 개선 사업이 귀사와 여성친화적 기업 환경 조성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습니까? (해당란에 √해 주세요)</p> <p>① 많은 도움이 되었다(4점) ② 다소 도움이 되었다(3점) ③ 그저 그렇다(2점) ④ 별로 도움이 안됐다(2점) ⑤ 도움이 안됐다(1점)</p> <p>4. 여성친화 기업 환경 개선 사업의 필요 사항 또는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이나 기대 효과에 대해 기재해주세요. ()</p>	회사명		책임자		연락처	TEL :	FAX :	E-mail :	<input type="checkbox"/> 국내·외 경기 활성화	()	<input type="checkbox"/> 금융 기관의 자금 조달 규제 완화	()	<input type="checkbox"/> 세계 지역 등 기타 인센티브 제공	()	<input type="checkbox"/> 정부·기업 등 이해 관계자 간 충분한 의사소통 체계 구축	()	<input type="checkbox"/> 기업이나 국민 등에 대한 홍보	()	<input type="checkbox"/> 현장 점검이나 법적 규제	()	<input type="checkbox"/> 기타 ()	()	<p>[별표 제54호 서식] 기업 환경 개선 사업 소감(기업 여성 근로자 用)</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p style="text-align: center;">기업 환경 개선 사업 소감 및 건의 사항 수렴</p> <p>◆ ○○여성새일센터에서는 여성이 일하기 좋은 근무 환경과 여성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여성친화 기업 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여성 근로자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사업 결과에 대한 피드백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아래문의 소감을 솔직하게 적어주세요.</p> </div>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10px;"> <tr> <td style="width: 60%;">기업명</td> <td style="width: 40%;">직업명</td> </tr> </table>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height: 150px; width: 100%;"></div>	기업명	직업명
회사명		책임자																							
연락처	TEL :	FAX :	E-mail :																						
<input type="checkbox"/> 국내·외 경기 활성화	()																								
<input type="checkbox"/> 금융 기관의 자금 조달 규제 완화	()																								
<input type="checkbox"/> 세계 지역 등 기타 인센티브 제공	()																								
<input type="checkbox"/> 정부·기업 등 이해 관계자 간 충분한 의사소통 체계 구축	()																								
<input type="checkbox"/> 기업이나 국민 등에 대한 홍보	()																								
<input type="checkbox"/> 현장 점검이나 법적 규제	()																								
<input type="checkbox"/> 기타 ()	()																								
기업명	직업명																								

[그림 2-11] 기업환경개선 사업 만족도 조사(소간) 및 건의 사항 수렴 양식

4. 세종시 여성친화일촌협약 체결 현황

- 세종새일센터의 여성친화일촌협약 현황(2023년 4월 12일 기준)
 - 세종새일센터에 요청하여 2023년 4월 12일에 회신 받은 여성친화일촌협약 기업체현황 자료를 재구성하여 협약 내용별로 분석을 시도함
 - 협약 체결 내용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여성친화적 조직문화 조성 노력’에 관한 것으로, 199개 기업체와 협약을 맺음
 - 이것은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에서 지향하는 ‘여성친화기업 인증제도’ 추진 목적과도 상당히 일치하고 있음을 보여줌
 - 따라서 별도의 세종형 여성친화기업인증제를 추진하는 것보다 새일센터의 여성친화일촌협약 사업을 일부 수정 설계하는 방식이 사업 추진의 중복성, 자원조달 측면에서 합리적인 정책 결정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됨(부록 표 1-8) 참조)

[표 2-41] 세종 새일센터 여성친화일촌협약 내용별 현황

협약 내용	업체수
가족친화 문화 확산 네트워크	1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2
교육훈련 자문 및 취업연계 협력	10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협업	1
대체인력채용지원서비스 협약	1
돌봄 사회적 지원, 복지실현	1
민간·공공기관간 연계시스템 구축	9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 촉진	1
사회적 취약계층 일자리제공	2
성평등, 여성 취·창업 활성화	1
여성 취·창업 활성화	15
여성친화적 조직문화 조성 노력	199
지역내 여성인재 발굴 및 육성	1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협력	2
직업교육훈련 취업연계 협력	1
통계인력 확보 및 취업활성화	1
평생직업교육훈련 협력 및 자문	1
총합계	249

자료: 세종새일센터 내부자료(2023), <여성친화일촌협약 리스트 2013~2023> 연구자 직접 재구성. 2023년 4월 12일 기준

5. 세종시 공정일터인증제도

□ 차별 없는 일터 조성을 위한 「세종형 공정일터」 사업 개요

- (개념 정의) '세종형 공정일터'란, ①고용평등 실천과 ②고용차별 개선으로 일터 내 차별 없는 '공정' 가치 확립으로, 일자리 질 측면에서 우수한 기업을 의미함
 - ①고용평등 실천: 정규직 채용 원칙 확립으로 정규직 비율이 높고, 노동자간 차별이 없는 기업
 - ②고용차별 개선: 고용형태 전환(비정규직→정규직, 간접→직접고용), 각 영역(성별·연령 등) 차별개선
- (추진 배경) 2019년 노사민정협의회 일자리창출 분과에서 제안된 사항으로, 2020년부터 추진되고 있음
- (추진 목적) 정규직 채용 확대, 기초노동질서 준수, 노동자 간 차별개선 등 공정일터 조성을 선도적으로 추진한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여 모범사례로서 확산하고자 함
- (근거 규정) 「세종특별자치시 노사상생 및 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
- (추진 기간) '23.5월~'23.12월
- (사업 예산) 45,000천원(시비 40,500천원, 자부담 4,500천원)
- (대상자 선정) 매년 3개사를 선정함. 2023년부터 상근직 규모별 선정 조건 폐지(노사민정협의회 의결사항 반영)
 - 고용평등 실천과 고용차별 개선으로, 일터 내 차별 없는 공정가치 확립과 고용환경을 선도적으로 개선한 우수 사업장

□ 사업공고 및 신청 접수

- (신청 자격) 본사(또는 주공장)가 시에 소재하고 3년 이상 정상가동 중이며,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사업장(공고일 기준)

[표 2-42] 세종형 공정일터 인증 신청 결격사유

〈 결 격 사 유 〉	
■	최근 3년 이내에 세종특별자치시 공정일터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
■	최근 2년 이내에 불법 노사분규가 발생한 사업장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업장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	최근 2년 이내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된 사업장(사업주)
※	확인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 공표
■	최근 2년 이내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등)

자료: 세종시 경제산업국 기업지원과 노사협력담당 내부자료(2023), <세종형 공정일터 인증제 추진현황>

- (신청 방법) 세종시청 홈페이지에서 첨부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신청기간 내 증빙서류 등과 함께 이메일 제출
- 결격사유 및 고용현황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세종시청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각각 위반 여부 등 확인(최근 2년 이내 불법 노사분규, 산업재해,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등)

[표 2-43] 세종형 공정일터 인증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번호	구비서류	양식	작성 방법
1	선정 신청서	붙임 1	온라인 작성 및 서명된 스캔본 제출
2	공정일터 조성 추진실적	붙임 2	한글파일로 제출(A4 10페이지 이내)
3	추진실적 증빙자료	-	한글 또는 PDF 파일 스캔본 제출
4	개인(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붙임 3	온라인 작성 및 서명된 스캔본 제출
5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국세청, 정부24 발급 후, 스캔본 제출
6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	총 4부(21년말/22.6월말/22년말/23.5월말) ※ 발급 웹사이트 주소 : www.ei.go.kr

자료: 세종시 경제산업국 기업지원과 노사협력담당 내부자료(2023), <세종형 공정일터 인증제 추진현황>

□ 선정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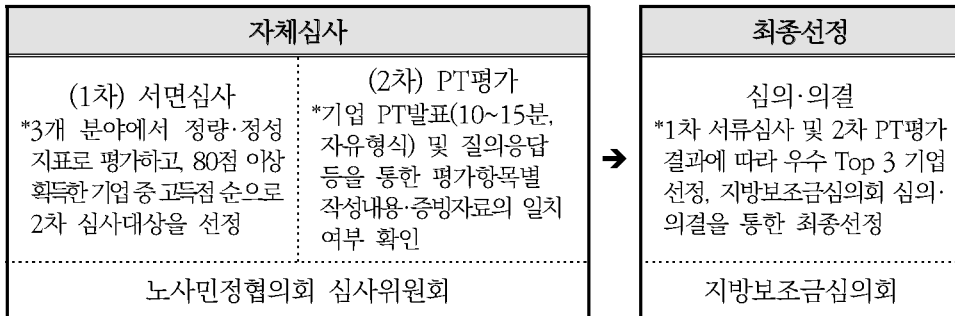
○ 3개 분야, 10개 세부지표 / 110점(정량 60점, 정성 50점)

[표 2-44] 세종형 공정일터 인증을 위한 평가 기준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
I. 공정일터 실천의지	• 일터 내 공정가치 확립 의지와 노력 <정성, 10점>	10점
II. 공정일터 이행 및 성과	1. 고용평등 실천(40점)	90점
	• 정규직 채용 원칙 확립(정규직 비율) <정량, 20점>	
	• 각 영역에서 노동시간 차별 없는 처우 보장·지원 <정성, 20점>	
	2. 고용차별 개선(50점)	
	• 기간제, 단시간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정량, 20점>	
• 간접고용 노동자를 직접고용으로 전환 <정량, 20점>		
• 각 영역에서 노동자 간 차별 및 처우 개선 <정성, 10점> - 고용형태별, 성별, 연령별, 학력, 장애 등		
III. 사회적 책임 이행	• 일자리 유지, 나누기 등 고용안정 노력 <정성, 3점>	(가점) 10점
	• 원·하청 간 상생협력 노력 <정성, 3점>	
	• 사회적 취약계층 채용 여부 <정성, 2점>	
	• 관내 청년 채용 여부 <정성, 2점> ※ 신규 추가	
총 점		100점 (+10)

자료: 세종시 경제산업국 기업지원과 노사협력담당 내부자료(2023), <세종형 공정일터 인증제 추진현황>

[표 2-45] 세종형 공정일터 인증을 위한 심사 절차



자료: 세종시 경제산업국 기업지원과 노사협력담당 내부자료(2023), <세종형 공정일터 인증제 추진현황>

- **공정일터 선정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
- 재정지원과 기타지원사항으로 구분

[표 2-46] 세종형 공정일터 인증제 주요 사항

재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사상생지원금* : 기업당 사업비 15,000천원(자부담 10% 포함, 2023년 기준) *교육, 워크숍, 간담회 및 홍보물 제작 등의 용도로 사용 가능(민간경상보조) <p style="text-align: center;">< 지원대상 비용 (예시) ></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교육, 행사, 워크숍, 간담회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 ② 홍보물 제작 및 보급에 소요되는 비용 ③ 책자, 팸플릿 등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④ 기타 사업 수행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div> <p>※ 노사상생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자본형성적 경비(시설비 등) 및 운영경비(사무실 임대료, 상근직원 인건비 등) 등은 제외</p>
기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종시 기업인의 날 인증서, 인증현판 수여(인증기간 3년) • 선정기업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기업 홍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市 보유 매체 및 기획기사 보도 등 기사화 - 우수사례집 발간 및 일자리박람회 시 홍보 등

자료: 세종시 경제산업국 기업지원과 노사협력담당 내부자료(2023), <세종형 공정일터 인증제 추진현황>

- (추진 현황)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8개(누적) 기업 선정
 - (2020년) 3개사 신청 ⇒ 2개사 선정 (남양유업(주) 중앙연구소, (주)유라테크)
 - (2021년) 5개사 신청 ⇒ 3개사 선정((주)데이터몬스터즈, 한국바이오캡제약(주), (주)바른기업)
 - (2022년) 9개사 신청 ⇒ 3개사 선정(노사상생지원금은 2021년부터 지급)

6. 제도 간 비교 시사점

1) 유사 인증 제도 간 사업 추진 개요 비교

- 대상 및 범위, 시기 등 선정기준,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 추진체계(누가 주체인가)를 중심으로 사업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함

[표 2-47] 제도 간 비교 표 작성

구분	가족친화기업 인증제	여성친화일촌협약	기업환경 개선 사업	세종시 공정일터인증제
취지 및 목적	가족친화 직장문화 형성 지원	세일센터를 통해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한 기업체 또는 채용을 약정한 기업체로서 세일센터가 여성친화적 일터를 조성, 취업자의 고용유지를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한 업체 (세일센터의 지역 네트워크 구축 중 기업체 협력망 구축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해 가족친화 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과는 별개)	세일센터를 통해 경력단절 여성 채용 및 인턴을 연계한 기업을 대상으로 사후관리 차원에서 기업환경 개선을 지원함 *여성친화 일촌기업도 대상	고용평등 실천, 고용차별 개선을 통해 일터 내 차별 없는 공정가치를 확립하려고 노력하는 우수한 기업 발굴과 모범 사례 확산
대상 및 범위	인증 신청한 기업/기관 - 중소기업*, 대기업, 공공기관으로 별적인 최소 충족요건에 부합하고 인증매제 사유가 없는 곳의 대상	협약을 체결한 업체 (5~300인 미만) *가족친화기업 인증과는 무관	지원 대상 기업은 아래와 같음 - 세일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 연계자 포함)가 최근 1년간 2명 이상인 업체 - 세일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 연계자 포함)가 최근 2년간 3명 이상인 업체	세종시 관내 소재하며 3년 이상 정상가동 중이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사업장 *최근 3년 이내 공정일터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경우, 최근 2년 안에 불범 노사분규 발생, 근로기준법 위반, 또는 중대제해

구분	가족친화기업 인증제	여성친화일촌협약	기업환경 개선 사업	세종시 공정일터인증제
	<p>*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가능한 곳</p>		<p>-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 (창업 후 1년 이내) ※ 창업기업의 (공동)대표자가 직업 교육훈련, 창업동아리, 창업 컨설팅 등 새일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증빙자료 필요 증빙자료 필요 -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 단, 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환경개선 지원 이후 6개월 이내)한 업체에 한함 - 여성친화일촌기업(5~300인 미만) ※ 단, 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 업체에 한함</p>	<p>발생 등으로 중단 공표된 사업장(사업주), 공고일 현재 구세 및 지방세 체납 사업장,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p>
추진 주체 시기	<p>여성가족부 / 매년 4월~11월</p>	<p>여성가족부, 광역시도, 새일센터/ 비정기적</p>	<p>여성가족부, 광역시도, 새일센터/ 사업별 시기는 상이함</p>	<p>세종특별자치시 기업지원과/ 매년 5월경~12월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p>
신청 기준	<p>신규 / 연장 / 재인증 구분 - 특징: 최고경영층 리더십을 매우 중요한 필수 기준으로 삼고 있을 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과는 달리, 가족친화제도 실행 배합에 있어서 30점 이상을 받아야만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함</p>	<p>새일센터를 통해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한 기업체 또는 채용을 약정한 기업체로서 새일센터가 여성친화적 일터를 조성, 취업자의 고용유지를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한 업체</p>	<p>■ 기업 환경 개선 사업 심사 기준표에 의한 심사 1. 지원 타당성 취업여계실적, 향후 채용 약정의 구체성,화실성,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 여부, 새일센터와의 협력 정도 (여성친화일촌기업 등 참여 여부) 2. 사업 계획 적절성(사업 계획의 적절성, 예산 편성의 적합성)</p>	<p>3개 분야, 10개 세부지표 / 110점(정량 60, 정성 50) *세종시 노사민정협의회 심사위원회의 자체심사(1차 서면, 2차 PT평가) 후 최종심정(지방보조금심의회의 심의·의결)</p>

구분	가족친화기업 인증제	여성친화일촌협약	기업환경 개선 사업	세종시 공정일터인증제
인센티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마크 부여 - 선별하여 정부 표창 - 무료 컨설팅, 무료 교육 - 중앙부처, 지자체, 금융기관 별 - 대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 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턴채용 지원금 - 새일고용장려금 - 인턴 당사자 근속장려금 - 새일센터 사후관리사업 우선지원 대상 -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경력단절예방프로그램 등의 교육 지원 	<p>3. 사업의 효과성(여성 근로자 사기 진작 및 동기부여 도모 여부, 기업환경효과 장기 지속 가능 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 제출 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② 고용 환경 개선 계획서(개선할 현장사진 필수 첨부) ③ 여성 근로자 및 여성 복지 현황표 ④ 여성친화 진단 측정 지표 ⑤ 환경 개선비용 견적서 ⑥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증서(사본)* 해당 시 	<p>제정지원: 노사상생지원금(기업당 사업비 13,500천원(자부담 1,500천원))</p> <p>기타지원: 세종시 기업인의 날 인증서, 인증현판 수여(인증기간 3년), 선정기업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 지원</p>

2) 비교의 시사점

□ (취지 및 목적) 비교 대상 중 여성친화기업인증제의 정책 목표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사업은 부재함

- 검토 대상 사례 중 여성의 고용 안정성 제고, 유리천장 해소, 성평등한 조직문화 속 일과 생활의 균형을 모두 고려한 제도는 부재함. 따라서 여성친화기업인증제가 추구하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종시 차원의 정책 추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됨
- 가족친화기업인증제도나 세종시 공정일터인증제의 경우 일부 정책 목표가 중첩되고 있으나 정책 목표의 범위가 여성에 방점을 두기 보다는 가족이나 특정 성이 아닌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여성친화일촌협약과 기업환경개선사업은 경력단절 여성이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중요한 사업대상 및 목표로 삼고 있으나, 국비지원 금액 이상의 자체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운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대상 및 범위) 50인 미만 사업체 중심의 제도 설계 필요

- 가족친화기업인증제, 여성친화일촌협약, 기업환경개선, 세종시 공정일터 인증제 대상기업의 규모는 대부분 크게 제한이 없음. 그렇기 때문에 인증 및 사업 수혜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있는 사업체가 매우 유리함
 - 가족친화인증제의 경우, 중소기업, 대기업,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함. 법적인 최소 충족요건에 부합해야 하는 조건이 있어 소규모 사업체의 제도 접근이 쉽지 않음
 - 여성친화일촌협약 및 기업환경개선사업은 5~300인 미만 규모의 사업체가 대상으로 그 범위가 매우 넓은 것이 특징임
 - 세종시 공정일터인증제는 세종시 관내 소재 3년 이상 정상가동 중이며, 특정 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 중임
- 따라서 소규모 사업체 수가 많은 세종시의 특성을 고려한 여성친화기업 인증제 설계를 통해 인증제도 등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이 요구된다고 평가됨

□ (추진 주체와 시기) 추진 주체는 크게 여성가족부와 세종시로 구분되며, 시기의 경우 사례별로 다소 차이가 있음

- (추진 주체) 가족친화기업인증제와 여성 새로일하기지원센터의 여성친화일촌협약,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모두 여성가족부의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
- (추진 주체) 비교 대상 사례 중 세종시 공정일터인증제도만이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의 세부사업임.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지원과에서 수행 중이며, 국비와 시비 비율이 1:9로 국비 보다 자체 재원 비중이 큰 특징을 가짐
- (추진 시기와 기간) 가족친화기업인증제도와 세종시 공정일터인증제는 각각 매년 4~11월, 5~12월에 걸쳐 추진되며 8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됨
- (추진 시기와 기간) 반면, 여성친화일촌협약과 기업환경개선사업은 지역 새일센터의 상황 및 새일센터를 통한 경력단절여성 채용 시기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선정 기준) 선정기준의 법적 요건 수준이 저마다 상이함. 가족친화기업인증제의 제도화 수준이 가장 높은 편임

- (가족친화기업 인증제의 시사점) 제도화 수준이 높은 가족친화인증제도에서 최고경영층 리더십을 측정하고, 그에 따른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사업주들의 인식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을 세종형 여성친화기업인증제 평가 시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겠음
 - 가족친화기업인증제도의 선정 기준의 특징은 최고경영층 리더십을 매우 중요한 필수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것임
 - 또한, 중소기업과 대기업과의 선정의 차별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대기업의 경우, 가족친화제도 실행 배점에 있어서 30점 이상을 받아야만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수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여성친화일촌협약의 시사점) 향후 세종형 여성친화기업인증 시에는 새일인턴 외에도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하고 지속적인 경력 유지에 힘쓰는 기업들을 발굴하여 그 사례를 확산시켜나갈 필요가 있음
 - 새일센터를 통한 경력단절여성(새일인턴)을 채용한 기업체와 채용을 약정한 기업체를 대상으로 협약을 추진하고 있어 여성친화기업인증제의

추진 목적에 부합하지만 사후관리 연계가 미흡할 수밖에 없는 사업예산 등을 고려하여 사업 추진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세종시의 지원이 요구됨

- (기업환경 개선사업의 시사점) 기업환경 개선사업의 선정기준도 비교적 제도화 수준이 높으나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기업환경 개선사업의 홍보와 제출 서류 작성에 필요한 컨설팅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짐
 - 기업이 직접 고용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여성친화 진단 측정 지표를 통해 근로환경을 점검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규모 사업체가 많은 세종시의 특성상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하기에는 전문인력 부족 등의 문제에 부딪힐 우려가 있음
- (세종시 공정일터인증제의 시사점) 세종형 여성친화기업인증제의 심사 역시 노사민정협의회와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세종시 노사민정협의회 심사위원회의 자체 심사로 선정되는 공정일터인증제의 선정 과정은 고용차별이 없는 근로환경의 개선을 위한 노사협력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있음

□ (인센티브) 제도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컨설팅과 교육, 그리고 자부담 최소화 필요

- (가족친화기업 인증제의 시사점) 무료 컨설팅과 무료 교육의 경우, 가족친화기업인증제도의 홍보와 참여도를 높이는데 중요한 인센티브라고 할 수 있어, 세종형 여성친화기업인증제 역시 컨설팅과 교육이 중요한 인센티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여성친화일촌협약의 시사점) 새일인턴채용 지원금과 새일고용장려금 및 인턴 당사자의 근속장려금의 취지가 여성친화기업인증제도의 지향하는 목표와 매우 유관하나, 지속적 지원이 아니라는 점에 있어서 한계가 있음
 - 여성친화일촌협약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세종형 여성친화기업인증제를 설계해 볼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여성친화일촌협약을 맺은 세종시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여성친화기업인증제를 시행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기업환경 개선사업의 시사점) 1개 기업당 최대 4백만원 중 30%를 자부담으로 책정하고 있으며, 환경개선 대상이 구체적으로 지정(여성편의시설 설치 및 개보수, 여성관련 물품/비품 지원, 근로환경에 맞춘 입좌식 의자 등)되어 있어 기업의 수요와 불일치할 수 있음
 - 기업환경개선의 영역을 세종시에 맞춰 확장하여 적용한 인센티브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예: 세종시 동 지역의 경우 새로 지은 건물들이 많아 임대 사업장의 경우 기업환경개선이 불필요할 수 있음)
 - 새일센터의 기업환경 개선사업 대상은 비교적 다양하나 자부담 비율이 30%라는 점이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세종시 공정일터인증제의 시사점) 새일센터 기업환경개선금에 비하여 높은 재정지원금이 특징으로 자부담 비율은 약 11%임. 여성친화기업인증 시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적정 지원금액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여겨짐

기존 새일센터 사업(여성친화 일촌기업 협약)이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포함되기 위한 요건⁴⁾

- 비교 대상 사례 검토 결과, 여성친화기업인증제의 취지와 가장 목적부합성이 높은 것은 새일센터의 여성친화일촌협약과 기업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할 수 있음
 - 세종시의 재정기조가 건정재정을 강조하면서 사업 예산편성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새로운 정책설계가 가장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기존 제도의 확장 모델을 만드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새일센터 사업을 여성친화기업인증 모델로 확장 추진할 수 있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새일센터 사업이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이 되기 위한 여성가족부의 의견을 면밀히 살펴보고자 함
- 여성가족부의 기본 입장은 기존 새일센터 사업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자체의 대표사업이 될 수 없다는 의견임

4)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컨설팅 교육 내용에 근거하여 재기술. 교육 담당: 최유진 박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일시/장소: 2023년 2월 1일 오후 2시 온라인 회의 및 2023년 2월 23일 오후 3시 온라인 회의 내용 재구성

- 다만, 기존 새일센터의 여성친화일촌협약사업이나 기업환경개선사업에 추가적인 제도 설계와 예산 배정이 이루어질 경우, 지자체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 의지를 인정하여 대표사업으로 인정하겠다는 입장임
 - 예를 들어, 새일센터 여성친화일촌협약사업은 사업체와 MOU를 체결하는 사업으로 체결 조건이 새일 인턴을 고용한 사업장에 한하며 그 지원도 일시적인 경우가 대부분임
 - 만약, 추가적으로 MOU 요건을 강화하거나 해당 기업에 대한 지속적 지원과 관리체계가 신설되어 운영되고 그에 필요한 추가적인 예산도 별도로 마련된다면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으로 인정 가능함
 - 만약 새일센터 사업을 활용할 경우에는 “새일센터 사업에 + 행정적인 인센티브를 추가하고 + 여성을 위한 고용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화 노력 + 관리직 진출을 높이기 위한 제도화 노력 + 일·가정양립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제도화 노력을 보여줄 수 있는 지표체계를 추가해야 함



사례분석을 통한 제도 설계

- 1절 광역자치단체 여성친화기업인증제도 운영 사례
- 2절 기초자치단체 여성친화기업인증제도 운영 사례
- 3절 세종시 적용 가능성 검토

3장

3장 사례분석을 통한 제도 설계

※사례 선정 개요

- (목적) 여성친화기업인증제 운영 중인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분석을 실시하여 세종형 여성친화기업인증제 모델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사례 대상 지역과 선정기준) 지리적 인접성, 사업예산 규모, 운영주체(시 직영), 사업체 규모
 - (광역자치단체 검토 대상 및 선정기준) 여성친화기업인증제도를 운영하는 광역자치단체 중 지리적으로 가장 인접한 광역자치단체이며, 사업예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대전광역시를 선정함. 광역자치단체 중 여성친화기업인증제도의 사업예산이 상대적으로 큰 인천광역시의 사례를 검토함
 - (기초자치단체 검토 대상 및 선정기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으며, 시 직영으로 운영 중인 청주시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체 규모가 가장 비슷한 지역인 광주광역시 서구를 검토 대상으로 선정함

1절 광역자치단체 여성친화기업인증제도 운영 사례

1. 대전광역시 사례⁵⁾

□ 대전시 여성친화기업 선정 개요

- 대전시는 2010년부터 여성친화기업 선정 협약식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2021년까지 168개의 기업을 선정한 바 있음
- 사업 취지 및 목적
 - 여성친화 우수기업 선정으로 여성 근로여건 개선문화 정착
 - 여성친화기업 협약체결로 기업의 자긍심 제고
 - 일·생활 균형 환경 조성 및 여성 친화적 기업문화 확대
- 대전시의 여성친화기업 개념정의
 - ‘전체 근로자 30인 이상 기업 중 경영자가 여성인력 활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근로자의 일과 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적·문화적 환경을 구축하며 여성 인재의 육성을 위하여 힘쓰는 기업’

5) 대전시 내부자료(2022), <2022 여성친화기업 선정 계획> 요약 및 발췌

- 2022년의 경우, 10월 11일부터 28일까지 신청접수를 시작하였으며 현장실사와 심사를 통하여 12개 기업을 선정하였음. 최종적으로 협약식은 11월 말에 이루어짐
- 사업예산(2022년 기준): 6,413천원
- 신청 및 심사 시기: 2개월 정도 소요
 - 2022년 기준: 10월 11일 신청접수 시작 ⇒ 11월 9일 심사 ⇒ 11월 말 협약식 개최 후 홍보실시

□ 대전시 여성친화기업 선정 사업 추진체계

- 사업의 추진은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여성새일센터임
 - 신청접수는 대전광역시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실시함. 여성친화기업 선정에 있어서 현장실사는 취업상담사 2인이 한 개조로 편성되어 실시, 이후 심사는 심의위원단을 통하여 진행함
 - 주최주관: 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여성새일센터(센터장 김정현)
 - 협조: 대전여성새일센터, 대전배재대ICT융합여성새일센터
- 2022년도 기준 선정 절차는 크게 신청접수, 현장실사, 심사선정, 협약식 순임
 - 현장실사는 현장 실사표를 활용하여 추진함. 이후 심사선정에서는 현장 실사표와 현장실사 보고서를 토대로 심의위원 평가를 진행함. 고득점 업체 순으로 최종 12개 업체를 선정함

[표 3-1] 대전시 여성친화기업 선정 과정

신청접수	현장실사	심사선정	협약식
- 기업기초 파악 - 홍보 - 신청접수	- 기업현장 실사 - 보고서 작성	- 심사위원회 구성 - 심사 후 선정	- 협약서 서명 - 현판 교부
'22. 10. 11. ~ 10. 28.	'22. 10. 31. ~ 11. 4.	'22. 11. 9.	'22. 11월 말

자료: 대전시 내부자료(2022), <2022 여성친화기업 선정 계획>

□ **대전시 여성친화기업 선정기준**

- 대전시에 사업장을 둔 기업 중 기업 중 새일센터에 구인을 등록한 여성취업 참여기업
- 근로자 30인 이상 고용기업 중 여성을 20%이상 고용한 기업체 또는 20인 이상 여성고용기업체
- 고용(구직, 임금, 인사 등)의 성평등을 실천하는 기업
- 「일·생활 균형」 이행이 가능한 제도 도입으로 여성 근로여건을 개선 실천하고 있는 기업
 - 제외대상: 2회 이상 여성친화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여성친화기업으로 선정된 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제출서류
 - 여성친화기업 지원 신청서
 - 기업운영현황표
 - 사업자등록증

□ **대전시 여성친화기업 선정 시 혜택 사항**

- 최대 500만원 한도의 환경개선비 지원
- 새일여성인턴 채용을 우선 지원(기업지원 1인당 320만원)
- 여성친화기업 현판 제작 및 홍보
- 양성평등 교육, 성희롱 예방 교육, 일·생활 균형 인식개선 교육 강사 지원 등이 있음

여성친화기업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1차 선정			
업 체 현 황	사 업 장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업 종				
	설 립 일				
	소 재 지	□□□□□			
	연 락 처	전 화		팩 스	
	홈 페이지	http://			
	근 로 자 수	본 사		지사·공장	
		총 : 명	여 : 명	총 : 명	여 : 명
가 입 보 험	<input type="checkbox"/> 고용 <input type="checkbox"/> 산재 <input type="checkbox"/> 의료 <input type="checkbox"/> 연금				
담 당 자	성 명				
	부 서 및 직 책				
	연 락 처				
	이 메 일	@			
<p>2021년도 여성친화기업선정 사업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2021년 월 일</p> <p>신청인 : (인)</p> <p>대전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귀하</p>					
<p>※ 제출서류: 1.여성친화기업지원신청서 1부, 2.여성친화기업운영현황표 1부, 3.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p> <p>※ 제출기한: 2021년 10월 20일(수) 18:00 까지 도착분</p> <p>※ 제출방법: 1. 팩스 (042-532-2735) 2. E-mail (djjob3@hanmail.net)</p> <p style="padding-left: 40px;">3. 우편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 636(도신회관 5층), 여성친화기업선정 담당자 앞)</p> <p>※ 문의전화: 042-524-4181 ~2</p> <p>※ 직성시 유의사항: 상단의 접수번호와 1차선정란은 공란으로 두시기 바랍니다.</p>					

[그림 3-1] 대전광역시 여성친화기업 지원 신청서(2021년 기준)

자료: 대전여성인력개발센터 홈페이지(<https://www.djjob.or.kr>) 대전여성새로일하기센터 공지사항(검색일: 2023년 6월 12일)

여성친화기업 운영현황표

회사명:

담당자:

연락처:

구분	항목	내용	현황	비고
고용 개선	고용과 승진	1. 전체 근로자 현황	명	
		2. 정규직 근로자	명	
		3. 비정규직 근로자	명	
		4. 관리직급 근로자 현황	명	
		5. 최근 2년간 신규채용	명	
		6. 여성 정규직 근로자 평균 근속년수	년	
		7. 여성근로자 능력개발 기회 제공 실적 (최근 2년)	회	
	남녀임금 격차비교	8. 동일업무, 동일직종 남녀임금비교(남성기준) 예) 남녀임금 동일의 경우 100%	%	
직장 문화 개선	성평등 직장 만들기,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9. 직장 내 성차별·성희롱 예방지침 마련 여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시 조치사항 규정 여부		
		10. 직장 내 성차별·성희롱 예방 교육실적 (최근 2년)	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실적(최근 2년)	회	
		11. 직장 내 성차별·성희롱 관련 전담 고충상담원 지정 여부	명	
일· 생활 균형 지원	임신, 보육지원	12. 산전·후 휴가제도 시행여부		
		13. 유(사)산 휴가제도 시행여부		
		14. 육아휴직제도 시행여부		
		15. 육아휴직시 대체근로자 채용 여부		
	여성 편의시설	16. 여성편의시설 설치여부(휴게실, 수유실, 탈의실 등)		
	가정친화	17. 직장보육시설 설치 또는 미설치 시설 보육료등 지원		
		18. 가족돌봄(휴가, 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 운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운영여부		
		19. 유연근무제(시간선택제, 시차출퇴근제, 탄력근무제등) 시행여부		
20. 유연근무제 참여실적		명		

[그림 3-2] 대전광역시 여성친화기업 운영현황표(2021년 기준)

자료: 대전여성인력개발센터 홈페이지(<https://www.djjob.or.kr>) 대전여성새로일하기센터
공지사항(검색일: 2023년 6월 12일)

2. 인천광역시 사례⁶⁾

□ 인천시 여성친화기업 선정 개요

- 인천시는 2020년 인천형 여성친화기업 육성지원 계획을 수립을 시작으로 매년 10개 기업을 선정하여 인센티브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 인천시 여성친화기업 개념정의
 - ‘기업이 성평등한 채용 조건과 고용환경을 갖추고 경영자가 여성인력 활용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근로자가 일·생활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는 기업’
- 사업예산(2023년 기준): 126 백만 원(10개 기업 선정)
- 신청 및 심사 시기: 10개월 소요

[표 3-2] 인천형 여성친화기업 육성 지원 사업 추진 일정

일 정	세 부 내 용	비 고
2023. 3.~4. (37일간 공고)	• 공고·홍보 및 신청서 접수	공고·홍보: 시 여성정책과 신청접수: 광역새일센터
2023. 5.	• 기업 현장실사 실시	• 지역센터별 교차 실시 • 정량평가(70%)
2023. 6.	• 심사위원회 구성 • 심사위원회 심의 및 선정	심사 및 선정: 시 여성정책과 • 외부전문가 5인 이상 • 정성평가(30%)
2023. 7.~12.	• 인센티브 지원 및 사후관리	시 여성정책과, 광역새일센터
2023. 10.	• 여성친화기업 선정식 개최	시 여성정책과, 광역새일센터 • 특화형 경력단절예방사업 성과보고회와 병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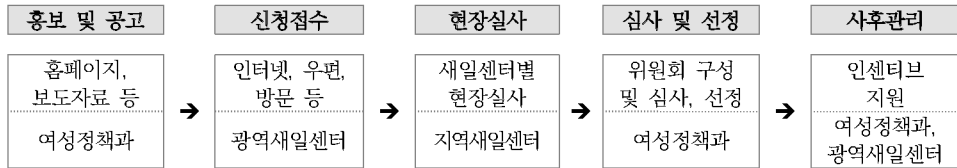
자료: 인천광역시 내부자료(2023), <2023년 인천형 여성친화기업 육성지원계획(안)> 재구성

6) 인천광역시 내부자료(2023), <2023년 인천형 여성친화기업 육성지원계획(안)>

인천시 여성친화기업 선정 사업 추진 체계

- 인천형 여성친화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추진체계는 인천시(여성정책과)와 인천광역새일 일자리지원단, 지역새일센터가 포함됨. 선정주체는 인천광역시장임

[표 3-3] 인천형 여성친화기업 선정 절차



인천시 여성친화기업 선정기준

- 선정 대상: 10개 기업
 - 인천시 관내 종사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으로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고용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 기준)

〈제외대상〉

- ▶ 공공기관, 관공서(학교 포함), 정부(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 수요 업체(예: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 ▶ 숙박, 음식 업종 사업체
- ▶ 사회복지시설 등 타 기관으로부터 국고·지방비 보조금 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사업장

- 현장실사: 4개 분야 23개 항목에 대하여 현장실사 실시 후 보고서 작성. 정량평가(70%) 해당

[표 3-4] 인천형 여성친화기업 인증 현장실사 평가 지표

구 분	항 목(23)	배점
① 여성고용 현황	제직자, 직원근속, 직원신규채용, 근로자 급여(9)	70점
② 일·생활 균형 지원	모성보호제도 운영, 유연근무제도 운영(8)	15점
③ 업무협약 및 협력사업	일·생활 균형 관련 업무협약 및 사업운영(3)	10점
④ 기타	복리후생운영(3)	5점

- 심사위원회 심사
 - 일자리 및 고용 관련 외부전문가 5인 이상
 - 현장실사보고서, 증빙서류 확인에 따른 정성평가(30%) 실시
 - 정량평가(70%) + 정성평가(30%) 점수 합산 및 60점 이상인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 별도 계획 수립

[표 3-5] 인천형 여성친화기업 선정 평가항목

구 분	가이드라인	평 가 항 목
여성고용현황 (70)	재직자 현황 (2023년 2월 말 기준)(40)	전체 근로자 수 : (명)
		여성 근로자 수 : (명)
		관리자 현황* 임원급 이상 탐장급 이상
	직원 근속 현황(10)	근로자 평균 근속기간**
		최근 1년간 근로자 퇴사자 수 (2023년 2월 말 기준)
	직원 신규채용 현황(10)	2022년 신규 채용인원
2023년 2월 현재 근속인원***		
근로자 급여현황(10)	여성근로자 급여 현황 (※관리자 제외)	
일·생활 균형지원(15)	최근 3년간 (2021.1.1.~ 2023.2.28.) 모성 보호제도 운영 현황(10)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최근 3년간 (2021.1.1.~ 2023.2.28.) 유연근무제도 운영 현황(5)	시간선택제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제량근무제
재택근무제		
업무협약 및 협력사업(10)	일·생활 균형 관련 업무협약 및 사업운영 현황(10)	정시퇴근제 실시여부
		조기 퇴근제 실시여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일·생활 균형 관련 지원사업 참여여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일·생활 균형 관련 지원사업 참여내용
기타(5)	복리후생 운영현황(5)	명절상여금 지급
		식대 지급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 운영 실적

주*: 부서원(팀원)에 대한 지휘 또는 총괄의 책임을 맡고 있는 자로, 직함의 부여 여부보다 조직 내에서 실질적인 지휘·총괄의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는 자를 의미. (임원급 이상은 '부장 이상', 탐장급 이상은 '중간관리자 이상' 해당). 명칭이 과장이라 하더라도 부서 업무의 책임자로서 부서원을 감독·평가하는 위치에 있지 않다면 관리자가 아님에 유의

주**: 파견직 및 일용근로자 제외

주***: 2023년 2월 현재 근속인원 : 2022년에 신규 채용된 근로자 중 조사시점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인원. 단, 파견직 및 일용근로자 제외임

[표 3-6] 인천형 여성친화기업인증 평가항목 제도설명 및 예시

구 분	설 명	예 시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전일제근로자보다 근로 시간을 단축하여 근무	주15~35시간 선택
시차 출퇴근제	선택할 수 있는 출퇴근 시간대를 회사 규정에 정하고, 상사의 승인을 받아 출퇴근 시간을 근로자가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	08:00 출근 17:00 퇴근 10:00 출근 19:00 퇴근
선택근무제	근로자가 일주일 중 5일 모두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 요일을 줄여서 주 40시간을 유지하는 근무형태	4일간 하루 10시간씩 근무
재량근무제	근로시간의 배분과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고 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한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
재택근무제	컴퓨터 및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직장이 아닌 곳에서 근무가 가능한 제도	스마트워크센터 근무
정시퇴근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 기업에서 특정한 날을 선정하고, 정시에 퇴근하도록 권장하는 제도	가족의 날, PC오프제 등 시행
조기퇴근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 기업에서 규정한 시간보다 일찍 퇴근하도록 마련한 제도	매월 1시간 조기퇴근실시

자료: <http://announce.incheon.go.kr/> <2023년 인천형 여성친화기업 선정 공모 공고>, 고시/공고번호 2023-741

○ 제출서류

- 인천형 여성친화기업 지원 신청서
- 인천형 여성친화기업 선정 기준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인천시 여성친화기업 선정 시 혜택 사항

- (여성정책과) 환경개선사업비, 채용장려금, 기업조직문화개선 컨설팅
 - 환경개선사업비 지원: 기업당 최대 1,000만원 한도(자부담 10%)
 - 채용장려금 지원: 1인 100만원, 기업당 2명(예산범위내 추가 지원 가능)
 - 기업별 맞춤형 조직문화개선 지원(찾아가는 기업컨설팅·워크숍·교육)
 - 여성친화기업 현판 제공 및 기업 홍보
- (인천시 산업정책과) 중소기업 육성자금(이자차액보전우대), 우수기업 선정(가점부여)
- (인천시 시금고 금융 혜택) 수수료면제, 저금리대출 상담지원(신한은행 시·구 금고 한함)

2절 기초자치단체 여성친화기업인증제도 운영 사례

1. 충청북도 청주시 사례⁷⁾

□ 청주시 여성친화기업 선정 개요

- (사업추진 취지 및 목적) 청주시는 여성친화기업환경 조성(여성의 고용안정과 인재육성, 근무환경개선 등)에 앞장선 지역 내 우수기업을 선정·발굴하여 우수사례를 전파함으로써 올바른 기업문화를 확산하고자 2019년부터 여성친화기업 인증을 추진해오고 있음
 - 2019년 14개 기업, 2020년 10개 기업, 2021년 8개 기업
 - 2023년 10개 이내 기업 인증 계획에 있음
- 청주시의 여성친화기업 개념 정의
 - 「청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1조(여성의 취업·창업 활성화) 및 11조의2.(여성친화기업 지원)에 근거하여, 일·가정 양립 기업 환경 조성에 노력하는 기업을 여성친화기업으로 정의하여, 인증·협약을 추진하고 있음
- 사업예산(2022년 기준): 35,700천원(시비 100%)
 - 환경개선 30,000천원, 현판·교육 5,700천원
- 신청 및 심사 시기: 8개월 소요
 - 2022년 기준: 5월 16일~31일 공고 및 신청·접수 ⇒ 6월 2일~17일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 ⇒ 6월 20일~24일 인증기업 심의 및 선정 ⇒ 6월 27일~ 7월 1일 인센티브 지원 신청 접수 ⇒ 7월 4일~ 30일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 8월 1일~26일 인증 및 협약 ⇒ 8월 29일 ~ 12월 31일 지원 및 정산

7) 청주시 내부자료(2022), <2022년 여성친화기업 인증 및 협약 계획>

□ **청주시 여성친화기업 선정 사업 추진 체계**

- 청주시 여성친화기업 선정 사업의 주된 추진체계는 청주시 여성가족과라고 할 수 있음
- 청주시의 사업 추진체계의 주된 특징은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거버넌스체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점임
 - 서류심사에는 여성친화도시 시민파트너단이 참여함. 인증기업 심의와 선정에는 여성친화도시 추진단 일자리·돌봄 분과 위촉직 위원이 참여함
- 2022년 청주시 여성친화기업 선정 절차는 크게 공고 및 신청·접수,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 인증기업 심의·선정, 인센티브 지원 신청 접수,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인증·협약, 지원 및 정산 순임
 - 청주시의 경우, 인센티브 지원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며, 여성친화인증기업 중 중소기업 우선 선정, 자부담 20%가 가능한 기업이라는 기준을 제시하여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특징을 가짐

[표 3-7] 사업 추진 절차와 추진체계

사업 추진 절차	주요 내용	추진체계
공고 및 신청·접수 '22. 5. 16. ~ 5.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 홈페이지 공고 및 언론 홍보 • 기업인협의회 및 산단을 통한 집중 홍보 • 신청 : 신청기업(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 접수 : 청주시 여성가족과 	청주시 여성가족과
↓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 '22. 6. 2. ~ 6.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무심사팀 구성(여성가족과 및 시민파트너단 2~3명) • 기업현장 실사 및 현장(면담)평가, 실사보고서 • 추가 증빙(참고)자료 확보 	청주시 여성가족과 및 시민파트너단
↓		
인증기업 심의·선정 '22. 6. 20. ~ 6.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회구성 10명 이내(여성친화도시추진단) • 여성친화인증기업 심의 및 선정 	여성친화도시추진단 일자리·돌봄 분과 워홀직 위원
↓		
인센티브 지원 신청 접수 '22. 6. 27. ~ 7.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 상 : 심의·선정된 여성친화기업 •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환경개선금 기업당 2,000~4,000천원 - 성평등(직장 내 성희롱예방) 교육 	청주시 여성가족과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인센티브 지원대상 선정> '22. 7. 4. ~ 7.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예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검토의견서 - 지방보조금사업 지원신청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친화인증기업 중 중소기업 우선 선정 ❖ 자부담 20% 부담 가능 기업 	청주시 예산과, 여성가족과
↓		
인증·협약 '22. 8. 1. ~ 8.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 상 : 2022년 여성친화인증 선정기업 • 장 소 : 미정 * 코로나19 상황 고려 • 내 용 : 협약서 교환 및 인증현판 수여 	
↓		
지원 및 정산 '22. 8. 29. ~ 12.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지침) 의거 지원 및 정산 	

청주시 여성친화기업 선정기준

- (대상) 근로자 300인 미만 기업 중 여성근로자 30%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여성친화기업 인증 및 협약을 진행함. 다만,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인증기업 (과거 인증기업 포함)은 제외하고 있음
- 인증은 신규 / 재인증 / 연장으로 구분되며 각각 3년 / 3년 / 2년의 기간을 두고 있음

- (평가지표) 인증 기준은 30인 미만 기업의 경우 4개 분야 10개 항목이며, 30인 이상의 기업은 4개 분야 14개 항목임

[표 3-8] 청주시 여성친화기업 인증기준

구 분	기 준 점 수		
	신규인증	재인증	재인증 연장
현장실사 및 면담(100점)	60점	65점	70점
현장실사보고서(50점)	30점	35점	40점
적용기준	제시된 점수 이상 획득한 기업만 심의위원회 상정, 고득점 순으로 선정(예정)		

- ※ 단, 재인증 및 재인증 연장기업은 전체 선정 기업의 20% 이하 선정
- ※ 신청 기업이 10개 미만일 경우 신규인증과 동일한 기준점수 적용
- ※ 30인 미만 기업과 30인 이상 ~ 300인 미만 기업의 신청 비율 고려하여 선정

- 제출서류: 총 3개
 - 여성친화기업 지원신청서
 - 여성친화기업 인증 체크리스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청주시 여성친화기업 선정 시 혜택 사항

- 여성친화인증기업 현판제공 및 기업 홍보
- 기업 환경개선금을 지원함
 - 기업별로 20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차등 지급
 - 기업환경개선금 지원(여성화장실, 여성휴게실(탈의실), 물품구입 등 여성전용 시설 조성 및 개선)
 - 지원규모: 기업별 2,000 ~ 4,000천원 이내(자부담 20% 이상)
 - 물품구입은 기업환경 개선사업 지원가능 물품내역에 한함
- 성평등(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지원: 강사파견
- 청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 선정 심사 시 가점 5점 부여
- 청주시 유망중소기업 선정 시 가점 8점 부여
- 우수기업인 표창 시 추천
- 일·가정양립 가족친화 프로그램 참여

회사명:

성 명:

연락처:

분야	평가 항목	기업 현황					3년 후 계획	비고
최고경영층 리더십 (20점)	여성친화기업 환경 조성에 대한 최고 경영층의 관심 및 의지	상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하 <input type="checkbox"/>						
	사내규정(취업규칙) 여부	운영 <input type="checkbox"/> 미운영 <input type="checkbox"/>						
고용평등 (30점)	전체근로자 중 여성근로자 비율	66%이상 <input type="checkbox"/>	66%이상 <input type="checkbox"/>	46%이상 <input type="checkbox"/>	36%이상 <input type="checkbox"/>	36%미만 <input type="checkbox"/>		
	전체여성근로자 중 정규직 비율	60%이상 <input type="checkbox"/>	40%이상 <input type="checkbox"/>	30%이상 <input type="checkbox"/>	20%이상 <input type="checkbox"/>	20%미만 <input type="checkbox"/>		
	동일업무 남녀동일임금 적용	100% <input type="checkbox"/>	96%이상 <input type="checkbox"/>	90%이상 <input type="checkbox"/>	86%이상 <input type="checkbox"/>	86%미만 <input type="checkbox"/>		
일·생활 균형지원 (30점)	임신근로자 배려제도 운영 (근로시간 단축제 등)	운영 <input type="checkbox"/> 미운영 <input type="checkbox"/>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운영	운영 <input type="checkbox"/> 미운영 <input type="checkbox"/>						
	유연근무제운영(사차출퇴근 재택근무, 시간제, 스마트워크)	운영 <input type="checkbox"/> 미운영 <input type="checkbox"/>						
여성안전·편의 지원 (20점)	여성편의시설 설치 (휴게실, 탈의실 등)	설치 <input type="checkbox"/> 미설치 <input type="checkbox"/>						
	직장 내 성희롱예방 자침 운영 및 교육 실시	자침 및 교육 운영 <input type="checkbox"/> 자침 또는 교육 운영 <input type="checkbox"/> 미운영 <input type="checkbox"/>						

※ ‘3년 후 계획’은 3년 뒤 재인증 평가에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항목별 기업의 목표치 기재 바람

[그림 3-5] 청주시 여성친화기업 인증 체크리스트(30인 미만)

회사명:

성 명:

연락처:

분야	평가항목	기업현황					3년후 계획	비고
최고경영층 리더십 (10점)	여성친화기업 환경 조성에 대한 최고경영층의 관심 및 의지	상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하 <input type="checkbox"/>						
고용평등 (20점)	전체근로자 중 여성근로자 비율	85%이상 <input type="checkbox"/>	65%이상 <input type="checkbox"/>	45%이상 <input type="checkbox"/>	35%이상 <input type="checkbox"/>	35%미만 <input type="checkbox"/>		
	전체여성근로자 중 정규직 비율	50%이상 <input type="checkbox"/>	40%이상 <input type="checkbox"/>	30%이상 <input type="checkbox"/>	20%이상 <input type="checkbox"/>	20%미만 <input type="checkbox"/>		
	여성 관리자 비율(과장급 이상)	25%이상 <input type="checkbox"/>	20%이상 <input type="checkbox"/>	15%이상 <input type="checkbox"/>	10%이상 <input type="checkbox"/>	10%미만 <input type="checkbox"/>		
	등일업무 남녀등일일급 적용	100% <input type="checkbox"/>	95%이상 <input type="checkbox"/>	90%이상 <input type="checkbox"/>	85%이상 <input type="checkbox"/>	85%미만 <input type="checkbox"/>		
일 - 생활 균형지원 (60점)	임신근로자 비려제도 운영 (근로시간 단축제 등)	운영 <input type="checkbox"/> 미운영 <input type="checkbox"/>						
	여성근로자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운영	운영 <input type="checkbox"/> 미운영 <input type="checkbox"/>						
	남성근로자 육아휴직제 운영	운영 <input type="checkbox"/> 미운영 <input type="checkbox"/>						
	유연근무제 운영(시차출퇴근, 자택근무, 시간제, 스마트워크)	운영 <input type="checkbox"/> 미운영 <input type="checkbox"/>						
	가족간호제(돌봄휴가) 운영	운영 <input type="checkbox"/> 미운영 <input type="checkbox"/>						
여성안전 - 편의 지원 (20점)	여성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CCTV (CPTED) 설치	설치 <input type="checkbox"/> 미설치 <input type="checkbox"/>						
	적정규모의 여성유계실 설치	설치 <input type="checkbox"/> 미설치 <input type="checkbox"/>						
	안전한 여성화장실 운영 (①설치비율, ②비상벨, ③불법카메라 점검, ④안심스크린 설치 등)	4개 이상 (10) 2개(6)		3개 (8) 1개(4) 미운영 (2)				
	직장 내 성희롱예방 지침 운영 및 교육 실시	지침 및 교육 운영 <input type="checkbox"/> 지침 또는 교육 운영 <input type="checkbox"/> 미운영 <input type="checkbox"/>						

※ '3년 후 계획'은 3년 뒤 재인증 평가에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항목별 기업의 목표치 기재 바람

[그림 3-6] 청주시 여성친화기업 인증 체크리스트(30인 이상)

2. 광주광역시 서구 사례⁸⁾

□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친화기업 선정 개요

- 광주광역시 서구의 종사자규모별 사업체 특성은 세종시와 유사하여 여성친화기업인증제 사례 검토 대상으로 적절함
 - (광주 서구의 사업체 및 종사자 수) 서구의 2021년 기준 사업체수는 39,773개이며 종사자수는 167,123명임(광주광역시 서구, 2023)
 - (광주 서구의 종사자규모별 사업체 특성) 5인 미만이 86%(34,196개), 5~99명이 13.7%(5,450개), 100~299명 0.3%(102개), 300명 이상 0.1%(25개)을 차지하고 있어 세종시와 유사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음(세종시 2020년 기준 5인 미만 사업체 비율 80.03%, 15,863개)
- (취지 및 목적) 광주광역시 서구는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여성친화적 기업 환경 조성에 대한 기업의 관심을 유도하고, 여성근로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여성기업인 및 여성근로자가 경력단절 없이 장기적으로 일하기 좋은 기업문화 및 환경 조성하기 위해 2018년부터 여성친화기업을 선정해 오고 있으며, 2022년까지 총 12개임
 - 1년간 3~4개 기업 이내로 한정하여 인증을 실시하고 있음(추진계획서 상에는 4개 기업 이내, 공고문에는 3개 기업으로 기재되어 있음)
- 광주광역시 서구의 여성친화기업 인증 개념정의
 - 광주광역시 서구의 <2023년 여성친화기업 인증사업 공고문>에 따르면 여성친화기업이란 ‘여성친화도시로서 여성의 고용안정과 근무환경 개선으로 일·생활 균형 기업환경 조성에 노력하는 기업’을 의미함
- 사업예산(2023년 기준): 11,800천원(구비)
 - 기업환경개선 사업비 10,000천원
 - 인증현판 제작 1,800천원

8) 광주광역시 서구청 양성평등과 내부자료(2023), <2023년 여성친화기업 인증제 추진계획>

○ 신청 및 심사 시기: 5개월 정도 소요

- 2023년 기준: 3월 여성친화도시협의체 일생활균형분과 구성 ⇒ 공고 및
 홍보, 신청 접수 ⇒ 4월 현지실사 ⇒ 심사·선정(5월) ⇒ 인증·협약(6월)
 ⇒ 사업비 지원(6월) ⇒ 정산 등(7월)

□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친화기업 선정 사업 추진 체계**

○ 광주광역시 서구의 경우, 서구청 양성평등과를 중심으로 서구청 유관부서,
 여성친화도시 컨설턴트, 시민참여단, 기업대표 관련 단체 등과 협의회를
 구성하여 여성친화기업 선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표 3-9] 서구청 여성친화도시협의체 일생활균형분과 구성과 역할

부서 및 기관		역 할
서 구 청	양성평등과	여성친화기업인증제 계획 수립, 공고 및 홍보 여성근로자 근로환경개선사업 추진 여성친화기업 지원 언론매체 홍보로 인증기업 이미지 향상
	일자리 청년지원과	사회적기업 현황 제공 및 발굴 지원
	경제과	대상 중소기업 현황 제공 및 발굴 지원
여성친화도시 컨설턴트		여성친화기업 인증제 전반 자문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여성친화 신청기업 현장 실사 및 모니터링
기업대표 관련 단체		여성친화기업인증제 홍보 및 우수기업 추천

○ 광주광역시 서구의 선정 절차는 다음과 같음

[표 3-10] 광주광역시 서구의 여성친화기업 인증 절차

1. 협의체 구성 (’23. 3월)	2. 공고 및 홍보 (’23. 3월)	3. 신청 접수 (’23. 3월)	4. 현지 실사 (’23. 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친화도시협의체 일생활균형분과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 홈페이지 공고 기업대상 홍보 안내문 발송 주민센터·유관기관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 해당기업 접수: 양성평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사팀 구성 기업현장 실태조사 증빙자료 수집
5. 심사·선정 (’23. 5월)	6. 인증·협약 (’23. 6월)	7. 사업비 지원 (’23. 6월)	8. 정산 등 (’23.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사 및 선정 - 4개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4개 기업 장소: 서구청 내용: 협약식 및 인증서 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컨설팅 실시 환경개선사업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예산: 1천만원 - 지원사업: 여성 편의 시설 개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조금 정산 모니터링 실시

- 현지 실사는 현장실사평가표를 활용한 실태조사로 추진되며, 실사결과는 현장실사평가표와 실사보고서에 작성하도록 함
- 인증기업 심사와 선정은 일생활균형분과위원 중 10명 이내로 구성되며, 인증기준표, 현장실사평가표 및 환경개선사업 계획서를 토대로 고득점 순으로 선정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친화기업 선정기준

- (공모신청자격) 서구 관내 등록 후 사업 개시 2년 이상, 근로자 5인 이상인 기업 중 여성 근로자 20% 이상인 기업으로,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
- (자격제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한 기업

[표 3-11] 광주광역시 서구 심사 기준

구 분	평가방식	배 점
현장실사평가표	정량평가	70점
현장실사보고서	정성평가	30점

- (특이사항)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 기업과 10명 이상 기업의 인증기준표 등 심사기준의 차이가 있음
-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친화기업 공모 제출 서류
 - 여성친화기업 지원신청서
 - 여성친화기업 인증기준표
 - 환경개선사업 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친화기업 선정 시 혜택 사항**

- 지원내용: 기업환경개선 사업비 지원(자부담 20% 이상)
 - 여성편의시설 신설 및 개보수(화장실, 휴게실, 수유실 등)
 - 여성친화 기업환경 개선 등
- 여성친화기업 인증 대상기업체 발굴·홍보
 - 일자리청년지원과, 경제과
- 여성친화기업 인증 보도자료, SNS 홍보
 - 홍보실
- 여성친화기업 포스터 배부
 - 동행정복지센터

[표 3-13]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친화기업 인증기준표(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

여성친화기업 인증기준표(10명 미만)

회사명:

성 명:

연락처:

구분	가이드라인	평가항목	선정기준					변경
여성친화적근무환경조성	고용평등	전체근로자 중 여성근로자 비율	45% 이상 <input type="checkbox"/>	40% 이상 <input type="checkbox"/>	35% 이상 <input type="checkbox"/>	25% 이상 <input type="checkbox"/>	20% 이상 <input type="checkbox"/>	
		전체여성근로자 중 정규직 비율	20% 이상 <input type="checkbox"/>	15% 이상 <input type="checkbox"/>	10% 이상 <input type="checkbox"/>	5% 이상 <input type="checkbox"/>	5% 미만 <input type="checkbox"/>	
		동일업무 동일직종 남녀임금비교 (남성기준)	100% <input type="checkbox"/>	95% 이상 <input type="checkbox"/>	90% 이상 <input type="checkbox"/>	85% 이상 <input type="checkbox"/>	85% 미만 <input type="checkbox"/>	
		사내규정 운영	운영 <input type="checkbox"/>		미운영 <input type="checkbox"/>			
	성희롱 예방지침 운영 및 교육시행	직장 내 성희롱예방지침 운영 및 교육 시행	지침 및 교육 운영 <input type="checkbox"/> 지침 또는 교육 운영 <input type="checkbox"/> 미운영 <input type="checkbox"/>					
여성능력개발 교육기회부여	여성근로자의 직무관련 교육훈련 실적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일·생활균형지원	임신 및 육아 근로자 지원	유연근무제 운영	운영 <input type="checkbox"/> 미운영 <input type="checkbox"/>		2년내 운영예정 <input type="checkbox"/>			
		출산휴가제 및 배우자 출산휴가제 운영	전부운영 <input type="checkbox"/> 미운영 <input type="checkbox"/>		일부운영 <input type="checkbox"/>			
	보육지원	육아휴직제 운영	운영 <input type="checkbox"/> 미운영 <input type="checkbox"/>		2년내 운영예정 <input type="checkbox"/>			
	가족지원	가족 문화체육행사 등 프로그램 운영	운영 <input type="checkbox"/> 미운영 <input type="checkbox"/>		2년내 운영예정 <input type="checkbox"/>			

[표 3-14]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친화기업 인증기준표(상시근로자 수 10명 이상)

여성친화기업 인증기준표(10명 이상)

회사명:

성 명:

연락처:

구분	가이드라인	평가항목	평가지표					변경
여성친화적근무환경조성	고용평등	전체근로자 중 여성근로자 비율	45%이상 <input type="checkbox"/>	40%이상 <input type="checkbox"/>	35%이상 <input type="checkbox"/>	25%이상 <input type="checkbox"/>	20%이상 <input type="checkbox"/>	
		전체여성근로자 중 정규직 비율	20%이상 <input type="checkbox"/>	15%이상 <input type="checkbox"/>	10%이상 <input type="checkbox"/>	5%이상 <input type="checkbox"/>	5%미만 <input type="checkbox"/>	
		동일업무 동일직종 남녀임금비교 (남성기준)	100% <input type="checkbox"/>	95%이상 <input type="checkbox"/>	90%이상 <input type="checkbox"/>	85%이상 <input type="checkbox"/>	85%미만 <input type="checkbox"/>	
		사내규정 운영	운영 <input type="checkbox"/>		미운영 <input type="checkbox"/>			
	여성인재육성	여성임원 비율	20%이상 <input type="checkbox"/>		10%이상 <input type="checkbox"/>		10%미만 <input type="checkbox"/>	
	성희롱예방지침 운영 및 교육 시행	직장 내 성희롱예방지침 운영 및 교육 시행	지침 및 교육 운영 <input type="checkbox"/> 지침 또는 교육 운영 <input type="checkbox"/> 미운영 <input type="checkbox"/>					
여성능력개발 교육기회 부여	여성근로자의 직무관련 교육훈련 실적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일·생활균형지원	입신 및 육아 근로자 지원	유연근무제 운영	운영 <input type="checkbox"/>	2년내 운영예정 <input type="checkbox"/>		미운영 <input type="checkbox"/>		
		출산휴가제 및 배우자 출산휴가제 운영	전부운영 <input type="checkbox"/>	일부운영 <input type="checkbox"/>		미운영 <input type="checkbox"/>		
	보육 지원	육아휴직제 운영	운영 <input type="checkbox"/>	2년내 운영예정 <input type="checkbox"/>		미운영 <input type="checkbox"/>		
		보육비 지원제도 운영 및 직장보육시설 설치	운영 및 설치 <input type="checkbox"/>		운영 또는 설치 <input type="checkbox"/>		미운영 <input type="checkbox"/>	
	가족 지원	가족 돌봄 휴가제 운영	운영 <input type="checkbox"/>	2년내 운영예정 <input type="checkbox"/>		미운영 <input type="checkbox"/>		
		가족 문화체육행사 등 프로그램 운영	운영 <input type="checkbox"/>	2년내 운영예정 <input type="checkbox"/>		미운영 <input type="checkbox"/>		
시설환경개선	여성친화적 여성 편의 시설 설치	여성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CCTV (CPTED) 설치	설치 <input type="checkbox"/>		미설치 <input type="checkbox"/>			
		여성휴게실 설치	설치 <input type="checkbox"/>		미설치 <input type="checkbox"/>			
		화장실 내 여성편의시설 설치	설치 <input type="checkbox"/>		미설치 <input type="checkbox"/>			

[표 3-15]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친화기업 현장실사평가표(10명 미만)

여성친화기업 현장실사평가표(10명 미만)

회 사 명 :
 현 장 평 가 일 :
 현장실사평가단 :

구분	가이드라인	평가항목	평가지표					점수					변경		
			45%이상	40%이상	35%이상	25%이상	20%이상	8	5	4	3	1			
여성친화적근무환경조성(40)	고용평등	전체근로자 중 여성근로자 비율	45%이상 <input type="checkbox"/>	40%이상 <input type="checkbox"/>	35%이상 <input type="checkbox"/>	25%이상 <input type="checkbox"/>	20%이상 <input type="checkbox"/>	8	5	4	3	1			
		전체여성근로자 중 정규직 비율	20%이상 <input type="checkbox"/>	15%이상 <input type="checkbox"/>	10%이상 <input type="checkbox"/>	5%이상 <input type="checkbox"/>	5%미만 <input type="checkbox"/>	8	5	4	3	1			
		동일업무 동일직종 남녀임금비교(남성기준)	100% <input type="checkbox"/>	95%이상 <input type="checkbox"/>	90%이상 <input type="checkbox"/>	85%이상 <input type="checkbox"/>	85%미만 <input type="checkbox"/>	8	5	4	3	1			
	사내규정 운영	운영 (3)		미운영 (1)			3					1			
	성희롱예방지침 운영 및 교육 시행	직장 내 성희롱예방지침 운영 및 교육 시행	지침 및 교육 운영 <input type="checkbox"/> 지침 또는 교육 운영 <input type="checkbox"/> 미운영 <input type="checkbox"/>					7		4			1		
여성능력개발교육기회부여	여성근로자의 직무관련 교육훈련 실적	있음 (6)		없음 (1)			6					1			
일·생활균형지원(30)	임신 및 육아근로자 지원	유연근무제 운영	운영 (8)			2년내 운영예정 (4)		미운영 (1)		8		4		1	
		출산휴가제 및 배우자 출산휴가제 운영	전부운영 (7)			일부운영 (4)		미운영 (1)		7		4		1	
	보육지원	육아휴직제 운영	운영 (8)			2년내 운영예정 (4)		미운영 (1)		8		4		1	
	가족지원	가족 문화체육행사 등 프로그램 운영	운영 (7)			2년내 운영예정 (4)		미운영 (1)		7		4		1	

[표 3-16]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친화기업 현장실사평가표(10명 이상)

여성친화기업 현장실사평가표(10명 이상)

회 사 명 :

현 장 평 가 일 :

현장실사평가단 :

구분	가이드라인	평 가 항 목	평 가 지 표					점 수					변경
			45%이상	40%이상	35%이상	25%이상	20%이상	5	4	3	2	1	
여성 친화적 근무 환경 조성 (30)	고용평등	전체근로자 중 여성근로자 비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	4	3	2	1	
		전체여성근로자 중 정규직 비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	4	3	2	1	
		동일업무 동일직종 남녀임금비교(남성기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	4	3	2	1	
		사내규정 운영	운영 (3)		미운영 (1)			3					1
	여성인재 육성	여성임원 유무	20%이상 <input type="checkbox"/>	10%이상 <input type="checkbox"/>	10%미만 <input type="checkbox"/>			4		3		1	
	성희롱예방 지침 운영 및 교육 시행	직장 내 성희롱예방지침 운영 및 교육 시행	지침 및 교육 운영 <input type="checkbox"/> 지침 또는 교육 운영 <input type="checkbox"/> 미운영 <input type="checkbox"/>					4		3		1	
	여성능력개발 교육기회부여	여성근로자의 직무관련 교육훈련 실적	있음 (4)		없음 (1)			4					1
일·생활 균형 지원 (30)	임신 및 육아근로자 지원	유연근무제 운영	운영 (5) 2년내 운영예정 (3) 미운영 (1)				5		3		1		
		출산휴가제 및 배우자 출산휴가제 운영	전부운영 (5) 일부운영 (3) 미운영 (1)				5		3		1		
	보육지원	육아휴직제 운영	운영 (5) 2년내 운영예정 (3) 미운영 (1)				5		3		1		
		보육비 지원제도 또는 직장보육시설 설치	운영 및 설치 (5) 운영 또는 설치 (3) 미운영 (1)				5		3		1		
	가족지원	가족 돌봄 휴가제 운영	운영 (5) 2년내 운영예정 (3) 미운영 (1)				5		3		1		
	가족 문화체육행사 등 프로그램 운영	운영 (5) 2년내 운영예정 (3) 미운영 (1)				5		3		1			
시설 환경 개선 (10)	여성친화적 여성 편의 시설 설치	여성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CCTV (CPTED) 설치	설치 (2) 미설치 (1)				3				1		
		여성휴게실 설치	설치 (3) 미설치 (1)				4				1		
		화장실 내 여성편의시설 설치	설치 (2) 미설치 (1)				3				1		

[표 3-17]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친화기업 실사보고서

현장평가일				
현장실사 평가단				
회 개 사 요	사업장			
	소재지			
	업종			
	대표자		담당자	
	전화		팩스	
분야별 실사내용				
최고경영자 의 관심 의				
여성친화적 근무환경 조	※ 여성임원 수, 여성근로자 직무관련 교육훈련 내용 등			
일·생활 균형 지원	※ 각종 복무관련 제도 실사용자 유무, 휴가제 등 사용시 직장 내 분위기, 가족 문화체육행사 내용 및 횟수 등			
시설환경 개 선	※ 설치 개소, 주 이용자, 관리 여부 등			
개 별 의 견	※ 시설환경개선 사업계획서의 효과성, 합목적성 등			

3절 세종시 적용 가능성 검토

1. 4개 사례 비교 분석 개요

4개 사례 비교 분석 개요

- 이 절에서는 제2절에서 살펴본 광역(대전, 인천)/기초(충북 청주, 광주 서구) 자치단체의 여성친화기업 인증 제도 비교 분석을 실시하여 세종시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비교 분석 기준) ① 인증 취지 및 목적, ② 여성친화기업의 개념정의, ③ 사업예산 규모, ④ 추진 주체(인증 주체), ⑤ 추진 기간 및 절차, ⑥ 선정기준(업체 수·규모), ⑦ 평가항목, ⑧ 제출서류, ⑨ 인센티브, ⑩ 기존 새일센터 사업(여성친화일촌기업 협약 및 기업환경개선 사업)과의 차이

2. 세부 기준별 비교 분석의 시사점

① 인증 제도의 취지 및 목적 부분 비교 분석의 시사점

- 4개 지역 인증 취지 및 목적의 주요 키워드 추출 결과
 - 여성 근로여건 개선, 기업의 자긍심 제고, 일·생활 균형, 여성친화적(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문화, 여성의 고용안정, 여성 인재육성, 우수사례 전파, 여성 기업인과 근로자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기업문화와 환경 조성
- (시사점) 세종형 여성친화기업인증제 사업목표 개선안 제시 ⇒ ‘① 차별 없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② 경력단절 예방이 가능한 근무환경과 ③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기업문화 및 환경 조성에 선도적인 지역 내 우수기업 발굴로 우수사례를 확산하여, 지속 가능한 여성친화도시 세종의 제도적 성숙에 기여’
 - (기존 사업목표) 세종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행계획(2023년) 상의 세종형 여성친화기업 인증제 사업목표는 ‘여성 근로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경력단절 없이 장기 근무가 가능하도록 일하기 좋은 기업문화 및 환경 조성’임

□ ㉔ **여성친화기업 개념 정의에 대한 비교 분석의 시사점**

- 4개 지역 개념정의 비교 분석 결과
 - 4개 지역 모두 여성친화기업 인증 제도의 취지 및 목적을 활용하여 여성친화기업에 대한 개념 정의를 내리고 있음. 주목할 만한 점은 대전시 사례로서, 인증 대상 사업체의 규모를 명시하고 있음
- (시사점: 세종형 여성친화기업 개념 정의 제시) ‘세종형 여성친화기업이란, 여성의 고용 안정성 제고와 유리천장 해소를 위한 기업 차원의 제도적 노력이 지속성을 가지며, 양성평등한 조직 문화 속에서 일·생활 균형을 위한 기업문화 및 환경 조성에 힘쓰는 기업’
 - (기존 개념 정의) 세종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행계획(2023년) 상의 세종형 여성친화기업에 대한 개념정의는 부재함
 - (향후 추가할 사항) 대전시 사례와 같이 여성친화기업 인증 대상 규모를 적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 ㉕ **사업예산 규모에 대한 비교 분석의 시사점**

- 4개 지역 사업예산 규모 비교 분석 결과
 - 비교 준거 대상 4개 지역 중 여성친화기업 인증제도의 사업예산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인천광역시(126백만원), 충북 청주시(35백만원), 광주 서구(11백만원), 대전광역시(6백만원) 순임
- (시사점: 세종형 여성친화기업 사업예산 규모 제안) 세종시와 사업체 종사자규모 특성이 가장 비슷한 지역은 광주 서구라고 할 수 있어, 광주 서구의 예산 규모를 고려하되, 신설 모델의 형태에 따라 가감 조정할 필요가 있겠음
 - 기존 제도를 활용한 신설·운영 시: 예를 들어, 새일센터의 여성친화일촌기업 협약 및 기업환경개선 사업의 일부 확대를 통한 세종형 여성친화기업 인증제도를 신설할 경우 사업 예산은 광주광역시 서구 수준에서 추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광주광역시 서구의 경우 선정된 4개 기업 중 2개 기업에만 기업환경개선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선정된 모든 기업에게 기업환경개선금을

- 지원할 경우 또는 참여도를 제고하기 위한 필요한 예산 수준을 고려하여 예산 편성은 상이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음
- 세종형 여성친화기업 인증제는 세종시 보건복지국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로서, 인천광역시처럼 양성평등기금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기금 운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업예산 규모를 가감 조정할 필요가 있음
- 기존 제도 미활용 신설·운영 시: 기존 제도와 무관한 여성친화기업 인증제도 신설 시, 제도 설계에 다른 추가적인 검증절차(추가적인 연구용역, 지표 타당성 검토 등)가 필요하며, 추진체계 역시 새로운 전담 기관과 인력이 요구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이 경우, 제도 실시에 따른 사업예산이 4개 지역 이상으로 소요될 전망이다

□ ④ 추진 주체(인증 주체)에 대한 비교 분석의 시사점

- 4개 지역 추진 주체 비교 분석 결과
 - 세종시와 같은 광역시인 대전시와 인천시 모두 광역 새일센터가 있어, 여성친화기업 인증을 위한 중간조직으로서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대전시와 인천시 모두 행정체계가 2계층제로서 소속 기초자치단체가 있고, 기초 수준의 새일센터가 권역별로 설치·운영 중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추진체계가 운영 가능한 것임
 - 세종시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이나 단층제 행정체계가이며 광역급 새일센터는 부재하고, 기초 수준의 새일센터 1개소만 있는 상황이라 타 광역시의 추진체계를 벤치마킹하기는 어려움
- (시사점: 세종형 여성친화기업 추진 주체 제시) 세종시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인 충북 청주시나 광주 서구의 사례와 같이 여성가족과가 인증 주체가 되어 유관 부서, 기관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거버넌스(여성 일자리 협의체, 시민참여단 등)와 적극 협력하고, 세종새일센터가 중간조직으로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방안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됨
 - 이를 위해서는 세종 새일센터의 조직 및 인력에 대한 진단이 필요함. 기존 사업 외에 추가적인 제도 신설·운영이 가능할 것인가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이 점을 고려하여 세종형 여성친화기업 인증제도를 설계해야 할 필요가 있겠음

□ ⑤ 추진 기간 및 절차에 대한 비교 분석의 시사점

- 4개 지역 추진 기간 및 절차 비교 분석 결과
 - (기간) 4개 준거 집단 모두 상이함. 최소 2개월 ~ 10개월
 - (절차) 공고 및 신청·접수, 현장실사(실사 보고서 작성), 심사 및 선정, 인증 및 협약, 사업비 지원, 정산 등의 순으로 모두 유사함
- (시사점: 세종형 여성친화기업 추진 기간 및 절차 제안) 2024년 첫 인증제도를 실시할 경우, 제도에 대한 사전홍보가 충실히 이루어져야 함. 따라서 아래와 같이 추진 기간 및 절차를 제안하는 바임
 - 2023년 10월 차년도 사업 추진 계획 수립 및 정책 홍보 시작, 세종형 여성친화기업 인증을 위한 협의체(또는 위원회) 구성 ⇒ 2024년 1월 세종형 여성친화기업 인증제도 홍보, 여성친화기업컨설팅단 교육 실시 ⇒ 2024년 3월~4월 모집 및 공고, 신청 접수 ⇒ 현지실사 및 보고서 작성(5월) ⇒ 면접심사 및 선정 (6월) ⇒ 인증 및 협약식 개최(7월) ⇒ 사업비 지원(8월) ⇒ 정산 등 사후관리 개시(9월~12월)

□ ⑥ 선정기준(업체 수, 규모)에 대한 비교 분석의 시사점

- 4개 지역 여성친화기업 선정기준 비교 분석 결과
 - (선정 대상 업체 수) 4개 지역별로 차이가 큼. 최소 4개 기업 이내~ 12개 업체까지 다양함
 - (선정 대상 업체 규모) 4개 지역별로 차이가 큼. 대전시의 경우 근로자 30인 이상 고용기업 중 20% 이상 여성을 고용한 기업체 또는 20인 이상 여성고용기업체, 인천시의 경우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 충북 청주시의 경우, 근로자 300인 미만 기업 중 선정, 광주 서구의 경우 관내 등록 후 사업 개시 2년 이상, 근로자 5인 이상 기업 중 여성 근로자 20% 이상인 기업
 - (자격 제한) 인천시의 제외 대상 기준이 가장 구체적임. 대전시의 경우 2회 이상 선정된 기업, 여성친화기업 선정 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한하여 자격을 제한하고 있음. 광주시 서구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한 기업을 제한함. 반면, 인천시의 경우 공공기관, 관공서(학교 포함), 정부(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 수요 업체(예: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숙박·음식 업종 사업체, 사회복지시설 등 타 기관으로부터 국고·지방비 보조금 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사업장으로 제외대상을 명시하고 있음

- (시사점: 세종형 여성친화기업 선정기준 제안) 세종시의 기존 유사 인증 제도를 일부 변경한 제도를 운영할 경우, 선정 대상 업체 수와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새일센터의 여성친화일촌기업 협약 제도를 보완한 제도 신설 추진 시, 기존의 여성친화일촌기업 협약 사업체가 신청할 수 있는 기준과 새로운 사업체가 진입할 수 있는 기준을 구분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세종시의 경우, 여성친화기업인증제 추진 시 참여할 관내 사업체 수가 비교 대상 지역에 비하여 많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기존의 여성친화일촌협약을 통해 '여성친화적 근로환경'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제도를 확산시킬 수 있는 전략이 요구됨
 - 이와 더불어,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산업규모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세종시만의 특성을 고려하여 여성친화일촌협약을 아직 맺지 않은 사업체가 여성친화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신규 진입 창구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임
- (시사점: 세종형 여성친화기업 자격제한 제안) 세종시의 경우, 제도 신설 초기 정책 인식도를 높이기 위하여 신청 제한 기업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⑦ 평가항목 및 ⑧ 제출 서류에 대한 비교 분석의 시사점

- 4개 지역 여성친화기업 평가항목 비교 분석 결과
 - 준거 대상 지역 마다 명칭은 상이하지만, 사업체를 대상으로 여성 친화적 근로환경을 검토할 수 있는 지표체계가 존재함(대전시: 여성친화기업 운영현황표, 인천시: 여성친화기업 선정 기준표, 충북 청주시: 여성친화기업인증 체크리스트, 광주 서구: 여성친화기업 인증기준표)
- (시사점: 세종형 여성친화기업 평가항목 제안) 세종형 여성친화인증기업 개념정의에 따라 평가인증지표를 설계할 필요가 있음. 또한, 사업체 규모에 따라 상이한 인증기준을 제시한 충북 청주시와 광주 서구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 4개 지역 여성친화기업 제출 서류 비교 분석 결과
 - 준거 대상 대부분 유사함. 크게 여성친화기업 지원 신청서, 각 지역별 여성친화기업을 확인할 수 있는 점검 자료(운영 현황표, 체크리스트 등),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광주 서구의 경우, 타 지역과 달리, 환경개선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 (시사점: 세종형 여성친화기업 제출서류 제안) 세종형 여성친화기업 인증제의 대상 기업 범위에 따라 환경개선사업 계획서와 같은 기업의 향후 추진 의지를 반영할 수 있는 서류 형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⑨ 인센티브에 대한 비교 분석의 시사점

- 4개 지역 여성친화기업 인센티브 비교 분석 결과
 - (공통사항) 현판제공 및 기업홍보, 환경개선비, 교육 및 컨설팅
 - (차이점) 환경개선사업비 금액 및 자부담 비율, 금융혜택, 다른 기업지원제도 혜택을 위한 가점인정, 우수기업인 표창시 추천 등
- (시사점: 세종형 여성친화기업 인센티브 제안) 준거 대상 지역 공통사항은 적극 수용하되, 세종시 기존 유사 인증 제도 추진 현황에 따른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인센티브 종류 및 범위 선정할 필요가 있음

⑩ 기존 새일센터 사업(여성친화일촌기업 협약 및 기업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비교 분석의 시사점

- 4개 지역 기존 새일센터 사업과의 차이 비교 분석 결과
 - (공통사항) 4개 지역 모두 기존 여성가족부 새일센터 지침상의 여성친화일촌 협약이나 기업환경개선사업과는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 새일센터 고유사업인 여성친화일촌 협약이나 기업환경개선사업과는 달리, 시 자체재원 활용하고, 사업 대상 범위는 상대적으로 축소되어 있으며, 자부담율은 30% 미만임
 - (차이점) 다만, 자부담율은 지역마다 상이함. 인천시는 10%, 대전시, 충북 청주시와 광주 서구는 20%로 부과하고 있음

- (시사점: 세종형 여성친화기업 인증관련 제안) 세종시의 경우, 새일센터를 거점 조직으로 활용하되, 추가적인 예산을 마련하여 세종형 여성친화기업 인증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
 - 자부담율의 경우, 기존 세종새일센터의 기업환경개선사업 추진 결과를 검토하여 설정해야 함
 - 이미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에서는 새일센터의 여성친화일촌 협약과 기업환경개선사업이 대표과제가 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자체재원을 마련하고 사업을 추진할 것을 컨설팅하고 있음

[표 3-18] 광역/기초 여성친화기업 인증 제도 비교 분석

구분	대전광역시 여성친화기업 선정	인천광역시 여성친화기업	충북 청주시 여성친화기업	광주광역시 서구
인증 취지 및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친화 우수기업 선정으로 여성 근로여건 개선문화 정착 여성친화기업 협약체결로 기업의 자긍심 제고 일·생활 균형 환경 조성 및 여성 친화적 기업문화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지역 내 우수기업을 인천형 여성친화기업으로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의 고용안정과 인재육성, 근무 환경개선 등으로 여성친화기업환경 조성에 앞장선 지역 내 우수기업들을 선정·발굴하여 우수사례를 전파함으로써 올바른 기업 문화를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여성친화적 기업 환경 조성에 대한 기업의 관심 유도 여성근로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여성기업인 및 여성근로자가 경력단절 없이 장기적으로 일하기 좋은 기업문화 및 환경 조성
여성 친화 기업 개념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체 근로자 30인 이상 기업 중 경영자가 여성인력 활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근로자의 일과 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적·문화적 환경을 구축하며 여성 인재의 육성을 위하여 힘쓰는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이 선풍당한 채용 조건과 고용환경을 갖추고 경영자가 여성인력 활용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근로자가 일·생활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는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가정 양립 기업 환경 조성에 노력하는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친화도로서 여성의 고용안정과 근무환경 개선으로 일·생활 균형 기업환경 조성에 노력하는 기업
사업 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예산(2022년 기준): 6,413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예산(2023년 기준): 126백만 원 - 양성평등기금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예산(2022년 기준): 35,700천원(시비 100%) - 환경개선 30,000천원, 현판교육 5,7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예산(2023년 기준): 11,800천원(구비) - 기업환경개선 사업비 10,000천원 - 인증현판 제작 1,800천원
추진 주체 / 실시 시기 (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최) 대전광역시, (주관)대전광역시여성새일센터, (협조) 대전여성새일센터, 대전배재대(CTI)융합여성새일센터 신청 및 접수: 대전광역시여성새일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광역시 여성정책과/ 접수처: 인천광역시여성새일하기센터, 신청주체: 인천광역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주시(여성가족과) 주된 특징은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커버넌스체계를 적극 활용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주광역시 서구/여성친화도시협의체 일생활균형분과 운영 -여성친화도시협의체 일생활균형분과 구성: 광주광역시 서구청 양성평등과, 일자리청년지원과, 경제과/여성친화도시 컨설턴트/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기업대표 관련 단체로 구성

구분	대전광역시 여성친화기업 선정	인천광역시 여성친화기업	충북 청주시 여성친화기업	광주광역시 서구
사업 추진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월~11월(약 2개월 소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3월~10월(약 10개월 소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5월~12월(약 8개월 소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3월~ 7월(약 5개월 소요)
추진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 접수(22. 10.11. ~ 10.28.)⇒ 현장실사(기업현장 실사, 실사보고서 작성, 22.10.31.~11. 4.)⇒심사 및 선정(22.11.9.)⇒협약식(22.11월 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홍보 및 공고 신청접수(23. 3.~4. / 37일간 공고)⇒현장실사 및 실사보고서 작성(23.5) ⇒심사 및 선정(23.6)⇒인센티브 지원 및 사후관리(23.7.~12.)⇒여성친화기업 선정식 개최(23.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고 및 신청·접수(22.5.16.~5.31.)⇒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및 실사보고서 작성(22.6.2.~6.17.)⇒ 인증기업 심사·선정(22.6.20.~6.24.)⇒ 인센티브 지원 신청 접수(22.6.27.~7.1.)⇒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인센티브 지원 대상 선정(22.7.4.~7.30.)⇒ 인증·협약(22.8.1.~8.26.)⇒ 지원 및 정산(22.8.29.~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의체 구성(23.3.)⇒공고 및 홍보(23.3.)⇒신청접수⇒현지실사 및 실사보고서 작성(23.4.)⇒심사 및 선정(23.5) ⇒인증 및 협약(23.6) ⇒사업비 지원(23.6.)⇒정산 등(23.7.)
신청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 대상: 12개 업체 대전시에 사업장을 둔 기업 중 기업 중 세일센터에 구인을 등록한 여성 취업 참여기업 근로자 30인 이상 고용기업 중 20%이상 여성을 고용한 기업체 또는 20인 이상 여성고용기업체 고용(구직, 임금, 인사 등)의 성평등을 실천하는 기업 「일·생활 균형」 이행이 가능한 제도 도입으로 여성 근로여건을 개선 실천하고 있는 기업 제외대상: 2회 이상 여성친화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여성친화기업으로 선정된 후 사회적 불의를 일으킨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 대상: 10개 기업, 인천시 관내 종사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으로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 기준) 〈제외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기관, 관공서(학교 포함), 정부(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3개월 미만의 계절직·일시직 인력 수요 업체(예: 계절직 농수산물 가공업체) 숙박, 음식 업종 사업체 사회복지시설 등 타 기관으로부터 국고·지방비 보조금 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사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대상: 4개 기업 이내 - 2개 기업 : 여성친화기업 인증, 인증현판 수여, 기업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 2개 기업 : 여성친화기업 인증, 인증현판 수여 (대상) 서구 관내 등록 후 사업 개시 2년 이상, 근로자 5인 이상인 기업 중 여성 근로자 20% 이상인 기업으로,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 자격제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한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대상: 4개 기업 이내 - 2개 기업 : 인증기준표, 현장실사 평가표 자료 및 환경개선사업 계획서 - 선정방법 : 심사표 고득점 순으로 4개 기업 선정
평가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의 운영현황표를 토대로 실태 조사 및 현장실사표를 측정, 심의 위원회를 거쳐 고득점 순으로 12개 업체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량평가(70%) + 정성평가(30%) 점수 합산 하여, 60점 이상 고득점 기업 순으로 심 의위원회 심사·선정 ※ 별도 계획 수립 일자리 및 고용 관련 외부전문가 5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기준) 인증 기준은 30인 미만 기업의 경우 4개 분야 10개 항목 이며, 30인 이상의 기업은 4개 분야 14개 항목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사항목 : 인증기준표, 현장실사 평가표 자료 및 환경개선사업 계획서 선정방법 : 심사표 고득점 순으로 4개 기업 선정

구분	대진광역시 여성친화기업 선정	인천광역시 여성친화기업	충북 청주시 여성친화기업	광주광역시 서구											
제출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 3개 - 여성친화기업 지원 신청서 - 기업운영현황표 - 사업자등록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 3개 - 인천형 여성친화기업 지원 신청서 - 인천형 여성친화기업 선정 기준표 - 사업자등록증 사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 3개 - 여성친화기업 지원신청서 - 여성친화기업 인증 체크리스트(30인 미만, 30인 이상 구분) - 사업자등록증 사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 4개 - 여성친화기업 지원 신청서 - 여성친화기업 인증기준표(10명 미만, 10명 이상 구분) - 환경개선사업 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센티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새일센터 기업 환경개선사업 지원에 따른 환경개선비 우선지원(여성후계실 설치, 수유시설, 여성편의 시설 등 / 최대 500만원 한도) 새일여성인턴 채용 우선지원(기업 지원 1인 320만원) 현판 제작 배부 및 홍보 양성평등 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일·생활 균형 인식개선 교육 강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정책과) 환경개선사업비, 채용장려금, 기업조직문화개선 컨설팅 환경개선사업비 지원: 기업당 최대 1,000만원 한도(자부담 10%), 10,000원×10개 기업 채용장려금 지원: 1인 100만원, 기업당 2명(예산범위내 추가 지원 가능), 1,000원×10개 기업×2명 기업별 맞춤형 조직문화개선 지원(찾아가는 기업컨설팅·워크숍·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친화인증기업 현판제공 및 기업 홍보 기업 환경개선금을 지원함 - 기업별로 20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차등 지급 - 기업환경개선금 지원(여성화장실, 여성후계실(탈의실), 물품구입 등 여성적용시설 조성 및 개선) - 지원규모: 기업별 2,000~4,000천원 이내(자부담 20%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내용: 기업환경개선 사업비 지원(자부담 20% 이상) - 여성편의시설 신설 및 개보수(화장실, 휴게실, 수유실 등) - 여성친화 기업환경 개선 등 ▪ 여성친화기업 인증 대상기업체 발굴·홍보 - 일자리정년지원과, 경제과 ▪ 여성친화기업 인증 보도자료, SNS 홍보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실사보고서, 증빙서류 확인에 따른 정성평가(30%) 실시 인천형 여성친화기업 인증 현장실사 평가 지표 여성고용현황(7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직자, 직원근속, 직원신규채용, 근로자 급여(9개 지표) 일·생활균형지원(15점): 모성보호제도 운영, 유연근무제도 운영(8개 지표) 업무협약 및 협력사업(10점): 일·생활 균형 관련 업무협약 및 사업운영(3개 지표) 기타(5점): 복리후생운영(3개 지표) ⇒ 청량평가(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실사 및 면담(100점) 현장실사 보고서(50점) 적용기준 <table border="1" data-bbox="338 552 380 894">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2">기준점수</th> </tr> <tr> <th>신규인증</th> <th>재인증</th> </tr> </thead> <tbody> <tr> <td>현장실사 및 면담(100점)</td> <td>60점</td> <td>65점</td> </tr> <tr> <td>현장실사 보고서(50점)</td> <td>30점</td> <td>35점</td> </tr> </tbody> </table> <p>제시된 점수 이상 획득한 기업만 심의위원회 상정, 득점 순으로 선정(예정)</p>	구분	기준점수		신규인증	재인증	현장실사 및 면담(100점)	60점	65점	현장실사 보고서(50점)	30점	3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실사 및 면담(100점), 현장실사보고서(50점) 	
구분	기준점수														
	신규인증	재인증													
현장실사 및 면담(100점)	60점	65점													
현장실사 보고서(50점)	30점	35점													

구분	대전광역시 여성친화기업 선정	인천광역시 여성친화기업	충북 청주시 여성친화기업	광주광역시 서구
기존 새일 센터 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비 100% 지원 부담(지방보조금사업) 새일센터 고유사업이 아닌, 대전시 특화사업으로 추진 (2023년 6월 12일 대전새일센터 백운순팀장님과 전화인터뷰) 자부담율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친화기업 현판 제공 및 기업 홍보 ■ (인천시 산업정책과)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전차액보조금), 우수기업 선정(가점부여) ■ (인천시 시문고 금융 혜택) 수수료면제, 저금리대출 상담지원(신한은행 시·구 금고 한함) ■ 인센티브 지원조진 - (환경개선사업) 여성전용시설에 한해(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시 기타 노후 시설개선 지원 가능) ※ '23년 11월까지 환경개선사업 완료 - (채용장려금) 정규직 채용 후 3개월 경과 시 지원 - 선정기업은 소재지 새일센터와 업무협약 및 구인 등록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특구입은 기업환경 개선사업 지원가능-물품내역에 한함 ■ 성평등(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지원 : 강사파견 ■ 청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 선정 심사 시 가점 5점 부여 ■ 청주시 유망중소기업 선정 시 가점 8점 부여 ■ 우수기업인 표창 시 추진 ■ 일가정양립 가족친화 프로그램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실 ■ 여성친화기업 포스터 배부 - 동행정보복지센터
<p>기업환경개선금 지원: 기업별로 200~400만원까지 차등지급하며, 자부담 20%이상</p> <p>청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 시 가점 5점 부여, 유망중소기업 선정 시 가점 8점 등 타 중소기업관련 인증 및 자금 지원 사업에 가점을 부여하도록 해 농음</p>	<p>홍보예산 별도 책정: 소요예산 : 2,000천원</p> <p>* 홍보물(품) 제작 등 2,000,000원×1식</p> <p>새일센터의 여성친화일촌협약이나 기업환경개선사업과는 별개 사업으로 추진 중. 대상이 다르고(여성친화기업은 5인 이상 50인 미만)에 한정함. 반면, 여성친화일촌협약 대상 등은 5인~300인 미만), 자부담 비율(10%)도 다르다. (23년 4월 6일 전화인터뷰)</p>	<p>기업환경개선금 지원: 기업별로 200~400만원까지 차등지급하며, 자부담 20%이상</p> <p>청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 시 가점 5점 부여, 유망중소기업 선정 시 가점 8점 등 타 중소기업관련 인증 및 자금 지원 사업에 가점을 부여하도록 해 농음</p>	<p>기업환경개선금 지원: 기업별로 200~400만원까지 차등지급하며, 자부담 20%이상</p> <p>청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 시 가점 5점 부여, 유망중소기업 선정 시 가점 8점 등 타 중소기업관련 인증 및 자금 지원 사업에 가점을 부여하도록 해 농음</p>	<p>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 사업 자부담 비율: 사업비의 20% 이상</p>

세종형 여성친화기업인증제 모델(안)

1절 전문가 의견조사

2절 세종형 여성친화기업인증제 모델안(최종)

4장

4장 세종형 여성친화기업인증제 모델(안)

1절 전문가 의견조사

1. 전문가 의견조사 개요

조사 개요

○ 총 3차에 걸친 의견조사 과정을 거침

- (1차 자문회의 목적) 세종새일센터 사업 추진 현황 검토
- (2차 자문회의 목적) 세종시 여성정책의 중심 추진체계인 세종여성플라자*와의 협업체계 구상 등을 위한 자문회의
*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돕고 지역사회에 성평등 문화가 정착되도록 여성정책의 중심 역할을 하기 위해 2022년에 설립된 기관(100% 세종시 자체재원으로 운영)
- (3차 자문회의 목적) 타 지방자치단체 사업 운영 사례 및 자문의견 청취를 통하여 세종시에 적합한 사업의 효율성, 효과성을 고려한 제도 설계(안) 도출

[표 4-1] 전문가 의견조사 개최 내역

구분	주제	참석자
1차	세종새일센터 여성친화일촌기업 협약 추진 현황과 애로사항	세종새일센터 담당자(팀장), 세종시 여성가족과, 연구진
2차	세종여성플라자와의 협업 체계 구상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세종여성플라자 대표, 세종시 여성가족과, 연구진
3차	(정책과제 콜로키움) 여성친화기업인증 추진 지역 사례를 통한 제도 설계	세종시 여성가족과, 기업지원담당, 대전시 여성가족청소년과 담당자, 대전광역새일센터 담당자, 충북 청주시 여성친화기업인증 담당 공무원, 여성친화도시 컨설턴트, 연구진

2. 전문가 의견조사 추진 결과

1) 세종시의 유사 사업 추진 현황 검토

1차 자문회의 개최 주제 및 논의사항

- 1차 자문회의(2023년 4월 12일) 개최를 위한 주제 및 논의사항은 다음 [표 4-2]와 같음

[표 4-2] 1차 자문회의 주제 및 논의사항

주 제	참 석 자
세종새일센터 여성친화일촌기업 협약 추진 현황과 애로사항	세종시 여성가족과, 세종새일센터 담당자(팀장), 연구진
논 의 사 항	
1. 세종새일센터 여성친화일촌기업 협약 사업 추진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협약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 세종새일센터 고유사업 외에 특화사업으로 진행하는 사항이 있는가? 2. 기업환경개선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 성과는 어떠한가? • 세종새일센터 고유사업 외에 특화사업으로 진행하는 사항이 있는가? • 애로사항은 무엇인가? • 시와 협업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가? 3. 세종형 여성친화기업 인증 도입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제도가 도입이 될 경우, 적절한 대상기업 범위는 무엇인가? • 기존 여성친화기업일촌 협약, 기업환경개선사업이나 세종시 경제산업국 노사협력담당에서 추진하는 공정일터인증제와 연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 1차 자문회의 논의사항별 주요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표 4-3] 1차 자문회의 주요 논의 결과

구 분	주요 논의 결과
① 여성친화 일촌기업협약 사업 추진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종새일센터를 통해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하거나 채용을 약정한 기업체로 새일센터가 여성친화적 일터를 조성, 취업자의 고용유지를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한 업체를 일컬음(협약 대상: 여성근로자가 근무하는 기업/ 협약 기간: 2년). 현재 세종새일센터 고유사업 외에 특화사업으로 진행되는 사항은 부재함 - 여성친화일촌기업 대상으로 채용지원서비스, 새일여성인턴, 경력 단절예방사업(직장문화개선 교육, 워크숍, 경영컨설팅) 등 사후관리 사업 우선 지원 - 여성가족부 인증 '가족친화인증기업'과는 별개 구분

구 분	주요 논의 결과
② 기업환경 개선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15개 기업에 환경개선 지원금 지원함(2014~2020년, 기업 11개/창업 4개) - 여성휴게실, 탈의실, 화장실, 작업장 개선에 필요한 시설 환경개선 및 물품 제한적 허용(창업은 초기 세팅을 위한 물품만으로 지원 가능) - 주요 성과: 여성을 위한 휴게 공간, 탈의실 옷장 구비, 남녀 화장실 분리 등 예산지원을 통해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덜고, 필요한 시설 개선을 통해 직원 복지 여건 조성, 업무 능률이 오르고, 애사심을 갖는 계기가 됨 - 애로사항: 홍보에도 불구하고 모집이 어려움. 종사자를 위한 휴게실 등 복지를 위한 시설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대표자의 부정적 인식. 자부담 30%에 대한 부담감을 크게 느낌. 세종시는 새 건물이 많아 시설 환경개선보다는 물품에 대한 지원을 희망하였으나, 물품만 지원은 불가함. 안마의자, 커피머신 등 희망하는 물품 지원 불가 - 시설개선이 필요 없는 기업은 희망 물품에 대한 지원만도 가능하도록 요건 완화 및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 점검 필요
③ 세종형 여성친화기업 인증 도입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종시는 10인 미만 기업이 90%에 이르는 등 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이며 직종, 업종에 따라 남녀 구성 비율이 현저한 차이를 보임 (5인~50인 기업, 여성비율 30% 이상 기준 필요) - 대상 기업에 대한 기준(업력, 종사자수, 여성종사자 비율, 제한 업종 등) 필요함. 단순히 여성근로자가 많다거나 여성대표이기 때문에 평가에 유리한 것은 불합리 - 인증기간 (1년, 2년, 3년), 재인증 여부, 지속가능한 예산 확보 등 장기적인 관점의 제도 마련 - 기업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유인책(인센티브) 필요. 기업 대표가 필요한 인센티브(세제 혜택, 금리 인하, 공모사업 가점 등)와 종사자가 필요한 인센티브(여가비 지원, 가족참여프로그램, 가맹점 할인 등)가 다를 것으로 예상됨으로 구체적 지원 범위에 대해 제시 - 기업 대표자, 중간관리자에 일·생활균형, 성평등 교육 의무화를 통해 인식을 개선하고, 경영매뉴얼이나 취업규칙에 적용하도록 하는 등 종사자와의 가교 역할을 하도록 추진 - 인증마크, 현판 수여 등 세종형 여성친화기업을 홍보하고, 타지역 인증기업에 대한 성과, 사례 공유 및 네트워크 기회 마련 - 타 유사 사업과의 차별성을 명확히 해야 함 - 새일센터 여성친화일촌협약 기업에 세종형 여성친화인증제 홍보 및 채용지원서비스, 새일여성인턴(1인 380만원) 지원 - 새일센터 경력단절예방사업 우선 지원 (직장내동아리, 조직문화개선 교육, 워크숍, 기업경영컨설팅, 경력개발·노무상담 등 안내)

○ 주요 논의 결과 ① 여성친화일촌협약 사업 추진 현황에 따른 시사점

- 세종새일센터 여성친화일촌협약은 경력단절 여성의 채용 및 고용유지를 위한 ‘느슨한 협약’이며, 이 협약을 토대로 사후관리사업 우선 지원 자격을 부여하는 데에 특징이 있음
- 협약체결 유지 기간이 2년임을 고려할 때, 협약의 지속성과 강제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 추진이 가능한 구조는 아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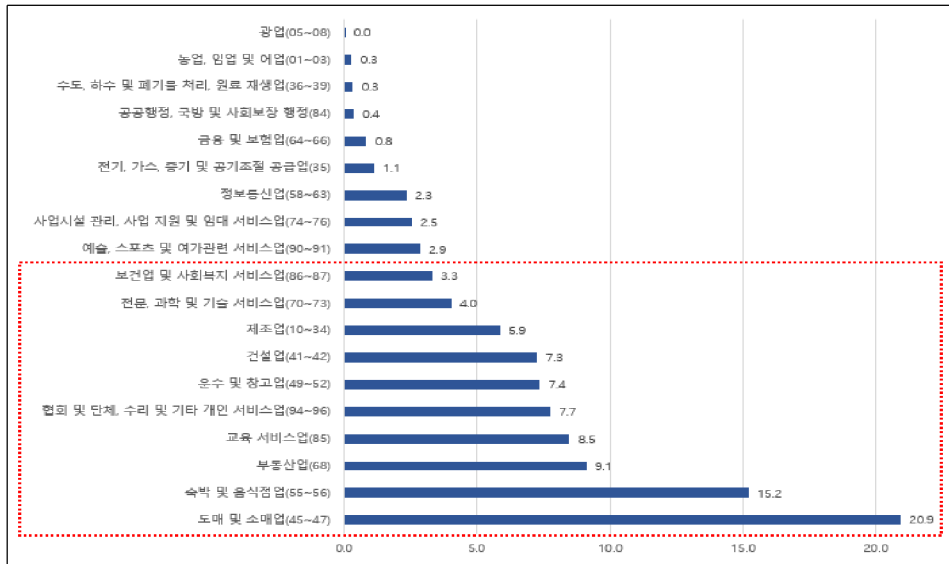
- 여성친화일촌기업 협약체결로 인해 얻을 수 있는 대표적인 인센티브는 '기업환경개선 지원금'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여성친화일촌기업 협약은 기업환경개선지원사업의 대상의 필요조건 중 하나이지 충분조건은 아님

○ 주요 논의 결과 ② 기업환경개선 사업 추진 현황에 따른 시사점

- 이제 출범 10년을 갓 넘어선 세종시의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음. 시설개선이 필요 없는 근무환경을 가진 사업체의 경우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물품 지원이 필요함
- 다만, 물품 지원에 따른 도덕적 해이(사유화 등)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 대안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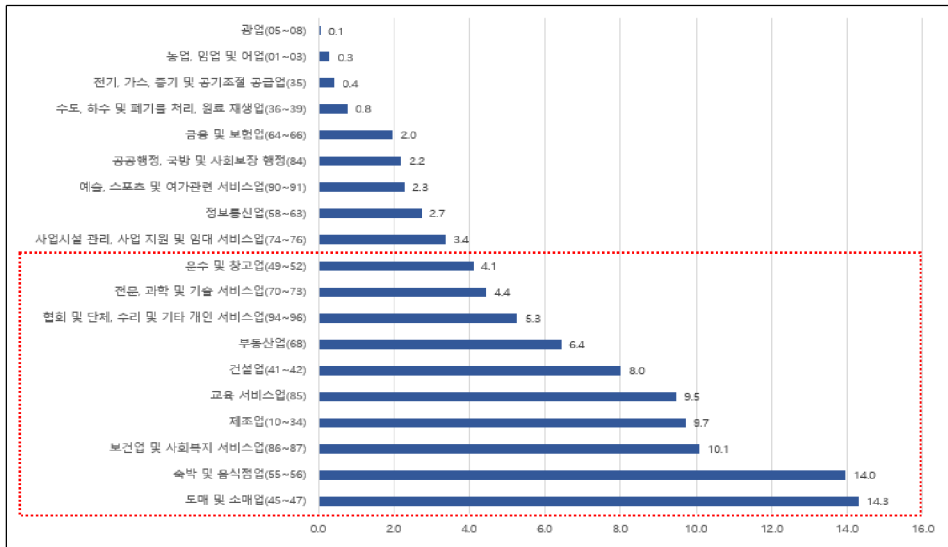
○ 주요 논의 결과 ③ 세종형 여성친화기업인증제 도입에 관한 사항

- (인증 대상 규모) 세종형 여성친화기업인증제의 차별화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인증 대상 사업체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자문의견에서와 같이, 5인~50인 기업, 여성비율 30% 이상 사업체를 기준으로 하되 심사는 10인 미만과 10인 이상 사업체를 구분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세종시 50인 미만 사업체 수 대비 각 산업별 사업체가 차지하는 비중) '도매 및 소매업'이 20.9%, '숙박 및 음식점업'이 15.2%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함
- (세종시 50미만 사업체 종사자 수 대비 각 산업별 사업체 종사자 비중) '도매 및 소매업' 종사자가 14.3%로 가장 많았고, '숙박 및 음식점업' 종사자가 14%로 차순위를 차지함
- 20인 미만 사업체와 50인 미만 사업체를 비교 했을 때, 비중이 큰 상위 10개 분야는 변동의 거의 없음
- (인증 유효기간) 여성친화일촌 협약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여성친화기업인증의 유효기간은 2년을 고려하는 것이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다만, 2년 기간 동안의 인센티브 부여 방식, 지원 범위, 사후관리 등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그림 4-1] 세종시 50인 미만 전체 사업체 종사자 대비 각 산업별 사업체가 차지하는 비중

주: 2021년 기준, 세종시 50인 미만 사업체 수(소계) 대비 각 산업별 사업체 종사자 수가 차지하는비중(%)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시도산업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데이터 연도별 재구성



[그림 4-2] 세종시 50인 미만 전체 사업체 종사자 대비 각 산업별 사업체 종사자 비중

주: 2021년 기준, 세종시 50인 미만 사업체 수(소계) 대비 각 산업별 사업체 종사자 수가 차지하는비중(%)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시도산업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데이터 연도별 재구성

□ 2차 자문회의 개최 주제 및 논의사항

- 2차 자문회의(2023년 6월 21일) 개최를 위한 주제 및 논의사항은 다음 [표 4-4]과 같음

[표 4-4] 2차 자문회의 주제

주 제	참 석 자
연구진 제안 <세종형 여성친화기업인증 모델(1인)>에 대한 자문회의	세종시 여성가족과, 세종여성플라자 대표, 연구진
논 의 사 항	
1. 연구진 제안 <세종형 여성친화기업인증 모델안(1차)> 공유 •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분석 결과 및 세종시 여성가족과의 협의를 통해 도출된 사항을 토대로 연구진은 <세종형 여성친화기업인증 모델안(1차)>을 도출함 • 사업 목적, 개요, 세부 추진계획, 여성친화도 점검을 위한 지표(인), 인센티브 발굴 방안 등을 논의함 2. 선정에 따른 추가적인 인센티브 제공(안) 논의 3. 세종여성플라자와의 연계 및 협력 가능한 부분 논의	

[표 4-5] 세종형 여성친화기업인증 모델안(1차)

구 분	제 안 내 용
사업 목적	① 차별 없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② 경력단절 예방이 가능한 근무환경과 ③ 일과 생활이 균형이 이루는 기업문화 및 환경 조성에 선도적인 지역 내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그 사례를 확산하며, 지속 가능한 여성친화도시 세종의 제도적 상속에 기여
개념 정의	'세종형 여성친화기업이란, 여성의 고용 안정성 제고와 유리친장 해소를 위한 기업 차원의 제도적 노력이 지속성을 가지며, 양성평등한 조직 문화 속에서 일-생활 균형을 위한 기업문화 및 환경 조성에 힘쓰는 기업'
사업 기간	2024.2.~2024.12.
인증방식	공모방식
추진 방법	2023년 10월 차년도 사업 추진 계획 수립 및 정책 홍보 시작, 세종형 여성친화기업 인증을 위한 협의체(또는 위원회) 구성 → 2024년 1월 세종형 여성친화기업 인증제도 홍보, 여성친화기업컨설팅단 교육 실시 → 2024년 3월~4월 모집 및 공고, 신청 접수 → 현지실사 및 보고서 작성(5월) → 편집심사 및 선정 (6월) → 인증 및 협약식 개최(7월) → 사업비 지원(8월) → 정산 등 사후관리 개시(9월~12월)
심사 방법	세종형 여성친화기업인증심사위원회 구성 후 심사 서류평가, 현장실사(현장실사평가표, 실사보고서), 인증기업 신청을 위한 최종심의

제 안 내 용													
구 분													
기업 선정	4개 이내 기업 선정 관내 기업 등록을 마친 10인 미만 사업체 중 여성 근로자 30% 이상인 기업 관내 기업 등록을 마친 10인 이상 사업체 중 여성 근로자 30% 이상인 기업 *자격제한 요건: 전문가 자문회의 후 보완												
혜택	여성친화기업 인증 후 인증현판 수여, 기업환경개선 사업비 또는 불품 지원비 타 부서 혜택과 연계할 사항(전문가 및 부서 업무협의 후 보완필요)												
소요 예산	*광주광역시 서구 예시 인증현판 제작 1,800천원×4개 = 7,200천원												
주요 구성원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부서 및 기관</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여성친화기업 인증 신청접수 방식</td> <td>여성가족과</td> </tr> <tr> <td>기업지원과</td> </tr> <tr> <td>여성지원담당 노사협력담당 사회복지경제담당</td> </tr> <tr> <td rowspan="3">여성친화기업 인증 신청접수 방식</td> <td>세종여성새로일하기지원센터</td> </tr> <tr> <td>여성친화도시 건설팀트</td> </tr> <tr> <td>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세종여성플라자</td> </tr> <tr> <td rowspan="2">여성친화기업 인증 신청접수 방식</td> <td>세종시 여성 일자리 협의체9명(당연직 2명, 위촉직 7명/남 4명, 여 5명)</td> </tr> </tbody> </table>	부서 및 기관		여성친화기업 인증 신청접수 방식	여성가족과	기업지원과	여성지원담당 노사협력담당 사회복지경제담당	여성친화기업 인증 신청접수 방식	세종여성새로일하기지원센터	여성친화도시 건설팀트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세종여성플라자	여성친화기업 인증 신청접수 방식	세종시 여성 일자리 협의체9명(당연직 2명, 위촉직 7명/남 4명, 여 5명)
부서 및 기관													
여성친화기업 인증 신청접수 방식	여성가족과												
	기업지원과												
	여성지원담당 노사협력담당 사회복지경제담당												
여성친화기업 인증 신청접수 방식	세종여성새로일하기지원센터												
	여성친화도시 건설팀트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세종여성플라자												
여성친화기업 인증 신청접수 방식	세종시 여성 일자리 협의체9명(당연직 2명, 위촉직 7명/남 4명, 여 5명)												
	여성친화기업 인증 신청접수 방식	(접수 방식) 방문접수 또는 우편 접수 - (제출서류) 세종형 여성친화기업 인증을 위한 신청서, 기업의 여성친화도 점진표, 여성친화적 기업문화 및 환경조성을 위한 계획서(① 차별 없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② 경력단절 예방이 가능한 근무환경과 ③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기업문화 및 환경 조성을 위한 계획서)											
여성친화기업 인증을 위한 현장심사	- (기간) 2024년 4월~5월(실사단 구성은 2월경) - (구성) 5명 이내(세종시 여성가족과, 세종시 여성일자리협의회 위원, 시민참여단 등) - (실사평가표) 세종형 현장심사평가표(※세종특별자치시 여성친화도시 공공시설 가이드라인을 활용한 공간 점검, 사업목적별 평가 기준 등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를 활용한 현장조사 - (실사결과 보고서 작성) 최종 심의를 위한 현장심사보고서 작성(여성가족과)												

제 안 내 용																
구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 시기) 2월경 - (면접심사시기) 6월경 - (역할) 최종 세종형 여성친화기업 인증 심사 및 선정 - (인원) 세종시 여성 일자리 협의체 구성원 및 외부 전문가,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민참여단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 - (평가항목) 세종형 여성친화기업 인증을 위한 신청서, 기업의 여성친화도 점검표, 여성친화도 점검표, 여성친화도 점검을 위한 계획서 및 현장실사보고서를 고려하여 심사표 고득점 순으로 4개 기업 선정 															
여성친화기업 인증 및 협약서 개최	<p>(개최 시기) 7월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유효기간) 협약일로부터 2년 또는 3년 - (내용) 협약서 교환 및 여성친화기업 인증현판 수여 															
여성친화기업 사업비 지원	<p>(지원 시기) 8월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예산) 미정 - (지원 내용) 기업환경개선 사업비 지원(※자부담 추후 논의 필요), 기업근로자를 위한 물품지원비 - (보조금 정산 및 사후관리) 2023. 9월~12월 															
[세종형 여성친화기업 인증을 위한 기업의 여성친화도 점검을 위한 지표(안)]																
여성친화도 점검 지표(안)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지 표</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경제활동 현황</td> <td>재직자 현황(2023년 12월 말 기준)(30)</td> </tr> <tr> <td>전체근로자 중 여성근로자 비율 전체여성근로자 중 정규직 비율</td> </tr> <tr> <td rowspan="4">차별 없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td> <td>동일업무 동일직종 남녀임금비교(남성기준)</td> </tr> <tr> <td>최근 3년간 경력단절* 유경험 여성 채용 현황</td> </tr> <tr> <td>직장 내 성희롱예방지침 운영 및 교육 시행</td> </tr> <tr> <td>최근 5년 간 기간제, 단시간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최근 5년 간 간접 고용자를 직접고용으로 전환한 경우</td> </tr> <tr> <td rowspan="2">경력단절 예방이 가능한 근무환경</td> <td>출산휴가제 및 배우자 출산휴가제 운영 육아휴직</td> </tr> <tr> <td>최근 3년간 (2022.1.1~2023.12.31) 출산 및 양육 지원제도 운영</td> </tr> <tr> <td colspan="2">여성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추진 여부(교육기회 부여)</td> </tr> </tbody> </table>	지 표		경제활동 현황	재직자 현황(2023년 12월 말 기준)(30)	전체근로자 중 여성근로자 비율 전체여성근로자 중 정규직 비율	차별 없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동일업무 동일직종 남녀임금비교(남성기준)	최근 3년간 경력단절* 유경험 여성 채용 현황	직장 내 성희롱예방지침 운영 및 교육 시행	최근 5년 간 기간제, 단시간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최근 5년 간 간접 고용자를 직접고용으로 전환한 경우	경력단절 예방이 가능한 근무환경	출산휴가제 및 배우자 출산휴가제 운영 육아휴직	최근 3년간 (2022.1.1~2023.12.31) 출산 및 양육 지원제도 운영	여성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추진 여부(교육기회 부여)	
	지 표															
경제활동 현황	재직자 현황(2023년 12월 말 기준)(30)															
	전체근로자 중 여성근로자 비율 전체여성근로자 중 정규직 비율															
차별 없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동일업무 동일직종 남녀임금비교(남성기준)															
	최근 3년간 경력단절* 유경험 여성 채용 현황															
	직장 내 성희롱예방지침 운영 및 교육 시행															
	최근 5년 간 기간제, 단시간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최근 5년 간 간접 고용자를 직접고용으로 전환한 경우															
경력단절 예방이 가능한 근무환경	출산휴가제 및 배우자 출산휴가제 운영 육아휴직															
	최근 3년간 (2022.1.1~2023.12.31) 출산 및 양육 지원제도 운영															
여성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추진 여부(교육기회 부여)																

제 안 내 용	
구 분	<p>여성친화기업인증제 추진 목표별 구분</p> <p>직장밖을 위한 연계협력사업 추진 여부(직장밖 지원센터와의 업무협약)</p> <p>세종시 여성친화도시 공공시설 가이드라인 점검 결과</p> <p>시간선택제</p> <p>시차출퇴근제</p> <p>선택근무제</p> <p>제량근무제</p> <p>제택근무제</p> <p>가축 문화체육행사, 여가활동 등 지원에 관한 프로그램 운영</p> <p>일·생활균형 실천기업 우수 사례 선정 여부</p>
	<p>여성친화기업인증제 추진 목표별 구분</p> <p>최근 3년간 (2022.1.1~2023.12.31.) 유연근무제도 운영 현황</p> <p>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기업문화 및 환경 조성</p>
<p>선정에 따른 인센티브 (안)</p>	<p>세종형 여성친화인증기업 협판제공 및 기업 홍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평등주간 특별 기업홍보 추진 - 기업 환경개선금 지원+기업 필요 물품 지원 - 현재, 기업별 지원금 예산편성은 어느 정도에서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상황임 - 기업환경개선금 지원(여성화장실, 여성휴게실(탈의실), 물품구입 등 여성친화시설 조성 및 개선)⇒ 임대건물, 새 건물 입주 기업의 경우 기업환경개선금의 활용 목적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세종시 사업제 공간의 특성을 고려한 기업환경개선지원 필요 - 자부담율 설정방식: 우리시는 기업별 지원금은 자부담율 0%로 추진하는 방안 검토 필요 - 물품구입은 기업환경 개선사 지원가능 물품내역에 한함⇒ 우리는 물품 지원 중심으로 인센티브를 설정하는 방안 검토 필요 <p>[세일센터 연계방안 제안] 세일센터 경력단절여성취업 우선 지원 (직장내용어려, 조직문화개선 교육, 워크숍, 기업경영컨설팅, 경력개발·노무상담 등 인내)</p> <p>[세종여성플라자 연계방안 제안] 직장맘지원센터 찾아가는 노무종합상담 및 역량강화교육(노동법률 교육, 부모교육 및 직장부모 커뮤니터 발굴과 지원)</p> <p>[세종시 경제산업국 기업지원과 연계방안 제안] 세종시 공정일터인증제 선정 시 가산점 부여, 일생활균형을 위한 컨설팅 지원</p>

○ 2차 자문회의 논의사항별 주요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표 4-6] 2차 자문회의 주요 논의 결과

구분	주요 논의 결과	
	사업 목적	원안 동의
	개념 정의	원안 동의
	사업 기간	원안 동의(예산편성에 따라 다소 조정 필요)
	인증방식	• 공모방식에 동의하나, 사업시행 초기(시범사업기간)에는 여성친화일촌협약 체결 사업체를 중심으로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음
	추진 방법	원안 동의
	심사 방법	원안 동의
	기업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개 기업 선정이 적절할 것으로 여겨짐 • 다만, 관내 10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 여성근로자가 20%이상인 기업으로 선정 기준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① 연구진 제안 〈세종형 여성친화기업인증 모델안(1차)〉 공유	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종시 경제산업국 기업지원 분야의 인센티브 연계 필요 • 세종시 관내 사업체 중 여성친화기업인증제 대상 사업체를 중심으로 인센티브 수요 조사 필요
	소요 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너무 적은 지원금이 책정될 경우, 기업의 참여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대전시와 같이 작은 예산편성은 제도의 추진 탄력성과 효과성을 저해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함
	주요 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종시 직영으로 추진하는 것이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조성 마련에 용이할 것임 •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민참여단의 적극적인 활동이 포함되는 추진체계가 중요함
	여성친화기업인증 신청접수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안 동의. 다만, 세종시 관내 소규모 사업체의 경우 여성친화기업인증에 필요한 서류 작업에 대하여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큰 만큼 인증제도 지원을 위한 컨설팅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여성친화기업인증을 위한 현장실사	원안 동의
	여성친화기업인증심사위원회 구성 및 면접심사	원안 동의

주요 논의 결과	
구 분	여성친화기업 인증 및 협약식 개최
	여성친화기업 사업비 지원
	<p>원안 등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절한 예산 편성과 지원이 필요함 • 동일업무 동일직종 남녀임금비교: 소규모 사업체에서 남녀 임금 비교 및 결과값에 대한 해석이 평가 지표로서 적절하지 않을 수 있어 다른 지표로의 변경을 고려해 볼 것을 제안함 • 10인 미만 사업체와 10인 이상 사업체 간 여성친화도 점검 지표가 상이하게 구성 될 필요가 있음 • 경력단절 예방이 가능한 근무환경 영역에 있어, 화장실, 휴게실 등의 불편 촬영 점점을 장기적으로 실시하는지를 포함한 필요가 있음 • 직장맘을 위한 연계협력사업 추진 여부 지표의 경우 직장맘지원센터와 더불어 새 일센터도 유사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함께 언급할 필요가 있음 <p>여성친화도 점검 지표(안)</p>
② 선정에 따른 추가적인 인센티브 제공(안)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종시 여성친화기업인증제의 경우, 참여 희망 사업체가 제출서류(제출서류: 세종형 여성친화기업 인증을 위한 신청서, 기업의 여성친화도 점검표, 여성친화적 기업문화 및 환경조성을 위한 계획서)에 작성에 대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권 설턴트를 지원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임 • 기업설명회는 기존 일촌협약기업을 중심으로 하여, 여성친화적 근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기업주들을 대상으로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사업의 홍보와 참여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여겨짐
③ 세종여성플러다와의 연계 및 협력 가능한 부분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종여성플러다자는 공공기관으로서 여성친화도시 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하는 여성정책네트워킹의 중요한 가 교역할을 수행 중에 있음. 특히, 교육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세종형 여성친화기업 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권설턴트 등)을 양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더불어, 계획안 중 여성친화기업인증 현장 실시 시 기업의 화장실 등에 불편촬영 기기가 있는지 점검 등을 시민, 또는 전문가와 함께 수행할 수도 있음 • 특히, 2023년 6월 개소한 세종시 직장맘지원센터의 노무상담 및 교육을 통해 모성보호가 조직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가능함

□ 3차 자문회의 개최 주제 및 논의사항

- 3차 자문회의(2023년 8월 3일)는 정책과제 콜로키움으로 개최함. 콜로키움 주제는 “여성친화기업인증 추진 지역 사례를 통한 제도 설계”로서 여성친화기업인증을 추진 중인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 중심의 자문회의를 추진함. 주요 논의사항은 다음 [표 4-7]과 같음

[표 4-7] 3차 자문회의 주제 및 논의사항

주 제	참 석 자
여성친화기업인증 추진 지역 사례를 통한 제도 설계	안○○ 선임연구위원(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여성가족연구본부), 권○○ 교수(예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세종새일센터 김○○ 팀장, 대전시청 여성가족청소년과 윤○○ 성인지정책팀장, 충북 청주시청 정○○ 주무관, 대전광역시청 새일센터 백○○ 팀장 (세종시청 제안부서) 김○○사무관(여성가족과), 안○○ 주무관(여성가족과), 연구진
논 의 사 항	
1. 세종형 여성친화기업인증제 모델(안)에 대한 정책 자문 ① 인증방식, 추진방법, 심사방법, 기업 선정, 혜택, 소요예산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 제안 ② 세종형 여성친화기업인증제 모델(안) 구성원별 역할에 관한 자문 ③ 세종형 여성친화기업 인증을 위한 기업의 여성친화도 점검표(장표)에 대한 개선안 ④ 세종형 여성친화기업 인증을 위한 지원 신청서 및 계획서 양식(안)에 대한 개선안 ⑤ 세종형 여성친화기업 인증을 위한 현장실사 평가 지표(안)에 대한 개선안 2. 상기 내용 외 전략적 제도 운영을 위한 정책과제 제안	

[표 4-8] <세종형 여성친화기업인증 모델안(2차)>

구 분	제 안 내 용
사업 목적	① 차별 없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② 경력단절 예방이 가능한 근무환경과 ③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기업문화 및 환경 조성에 선도적인 지역 내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그 사례를 확산하여, 지속 가능한 여성친화도시 세종의 제도적 성숙에 기여

구분	제안내용																	
개념 정의	'세종형 여성친화기업이란, 여성의 고용 안정성 제고와 유리친장 해소를 위한 기업 차원의 제도적 노력이 지속성을 가지며, 양성평등한 조직 문화 속에서 일·생활 균형을 위한 기업문화 및 환경 조성에 힘쓰는 기업'																	
사업 기간	2024.2.~2024.12.																	
인증방식	공모방식																	
추진 방법	2023년 10월 차년도 사업 추진 계획 수립 및 정책 홍보 시작, 세종형 여성친화기업 인증을 위한 협의체(또는 위원회) 구성 ⇒ 2024년 1월 세종형 여성친화기업 인증제도 홍보, 여성친화기업진실인증단 교육 실시 ⇒ 2024년 3월~4월 모집 및 공고, 신청 접수 ⇒ 현지실사 및 보고서 작성(5월) ⇒ 면접심사 및 선정 (6월) ⇒ 인증 및 협약식 개최(7월) ⇒ 사업비 지원(8월) ⇒ 정산 등 사후관리 개시(9월~12월)																	
심사 방법	세종형 여성친화기업인증심사위원회 구성 후 심사 서류평가, 현장실사(현장실사평가표, 실사보고서), 인증기업 선정을 위한 최종심의																	
기업 선정	4개 이내 기업 선정 관내 기업 등락을 마친 10인 미만 사업체 중 여성 근로자 30% 이상인 기업 관내 기업 등락을 마친 10인 이상 사업체 중 여성 근로자 30% 이상인 기업 *자격제한 요건: 전문가 자문회의 후 보완																	
혜택	여성친화기업 인증 후 인증현관 수여, 기업환경개선 사업비 또는 물품 지원비 타 부서 혜택과 연계할 사항(전문가 및 부서 업무협의 후 보완필요)																	
소요 예산	*광주광역시 서구 예시 인증현관 제작 1,800천원×4개 = 7,200천원																	
주요 구성원 역할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부서 및 기관</th> <th>역할</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세종 시청</td> <td>여성가족과</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친화기업 인증 제도 시행계획 수립 공고 및 홍보 여성근로자 근로환경개선사업 추진 여성친화기업 지원 언론매체 홍보로 인증기업 이미지 향상 </td> </tr> <tr> <td>기업지원과</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예로사항 지원,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상 중소기업 현황 제공 및 발굴 지원 </td> </tr> <tr> <td></td> <td>노사협력담당</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종형 공정일터 인증제도 연계 </td> </tr> <tr> <td></td> <td>사회직정계담당</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기업 현황 제공 및 발굴 지원 신청 및 접수, 인증기업 관리 등 중간점검조치 </td> </tr> <tr> <td colspan="2">세종여성새로일하기지원센터</td> <td></td> </tr> </tbody> </table>	부서 및 기관		역할	세종 시청	여성가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친화기업 인증 제도 시행계획 수립 공고 및 홍보 여성근로자 근로환경개선사업 추진 여성친화기업 지원 언론매체 홍보로 인증기업 이미지 향상 	기업지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예로사항 지원,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상 중소기업 현황 제공 및 발굴 지원 		노사협력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종형 공정일터 인증제도 연계 		사회직정계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기업 현황 제공 및 발굴 지원 신청 및 접수, 인증기업 관리 등 중간점검조치 	세종여성새로일하기지원센터		
	부서 및 기관		역할															
	세종 시청	여성가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친화기업 인증 제도 시행계획 수립 공고 및 홍보 여성근로자 근로환경개선사업 추진 여성친화기업 지원 언론매체 홍보로 인증기업 이미지 향상 															
		기업지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예로사항 지원,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상 중소기업 현황 제공 및 발굴 지원 															
	노사협력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종형 공정일터 인증제도 연계 																
	사회직정계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기업 현황 제공 및 발굴 지원 신청 및 접수, 인증기업 관리 등 중간점검조치 																
세종여성새로일하기지원센터																		

제 안 내 용	
구 분	내 용
	부서 및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친화기업 인증 제도 설계 및 운영 진반에 걸친 자료 • 여성친화인증 기업 모니터링 • 여성친화기업 인증 제도 설계 자료 및 현장조사, 모니터링, 인센티브 발굴 및 연계 • 우수기업 추천 및 홍보 • 세종시 여성가족과장 및 여성정책담당, 기업지원과 기업정책담당, 대진세종연구원, 세종여성플라자, 세종지역인재개발위원회,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일·생활균형 대전·세종지역 추진단, 사회적협동조합 대표로 구성
여성친화기업 인증 신청접수 방식	<p>(접수 방식) 방문접수 또는 우편 접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서류) 세종형 여성친화기업 인증을 위한 신청서, 기업의 여성친화도 점검표, 여성친화적 기업문화 및 환경조성을 위한 계획서(① 차별 없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② 경력단절 예방이 가능한 근무환경과 ③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기업문화 및 환경 조성을 위한 계획서)
여성친화기업 인증을 위한 현장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2024년 4월~5월(실사단 구성은 2월경) - (구성) 5명 이내(세종시 여성가족과, 세종시 여성일자리협의회 위원, 시민참여단 등) - (실사평가표) 세종형 현장실사평가표(※세종특별자치시 여성친화도시 공공시설 가이드라인을 활용한 공간 점검, 사업목적별 평가 기준 등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를 활용한 현장조사 - (실사결과 보고서 작성) 최종 심의를 위한 현장실사보고서 작성(여성가족과)
여성친화기업 인증심사 위원회 구성 및 면접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 시기) 2월경 - (면접심사시기) 6월경 - (역할) 최종 세종형 여성친화기업 인증 심사 및 선정 - (인원) 세종시 여성 일자리 협의체 구성원 및 외부 전문가,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민참여단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 - (평가항목) 세종형 여성친화기업 인증을 위한 신청서, 기업의 여성친화도 점검표, 여성친화적 기업문화 및 환경조성을 위한 계획서 및 현장실사보고서를 고려하여 심사표 고득점 순으로 4개 기업 선정
여성친화기업 인증 및 협약식 개최	<p>(개최 시기) 7월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유효기간) 협약일로부터 2년 또는 3년 - (내용) 협약서 교환 및 여성친화기업 인증현판 수여
여성친화기업 사업비 지원	<p>(지원 시기) 8월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예산) 미정 - (지원 내용) 기업환경개선 사업비 지원(자부담 00% 이상), 기업근로자를 위한 물품지원비 - (보조금 정산 및 사후관리) 2023. 9월~12월
서식 제안	

구 분		제 안 내 용				
[세종형 여성친화기업 인증을 위한 기업의 여성친화도 점검표(정량)]						
구분	지 표	점 점 항 목				
			여성 근로자 수			(명)
		남성 근로자 수			(명)	
		전체 근로자 수			(명)	
	경제활동 현황	관리자 현황	임원급 이상	소계	(명)	
			여성		(명)	
			소계		(명)	
			여성		(명)	
		45%이상 <input type="checkbox"/>	40%이상 <input type="checkbox"/>	35%이상 <input type="checkbox"/>	25%이상 <input type="checkbox"/>	20%이상 <input type="checkbox"/>
		20%이상 <input type="checkbox"/>	15%이상 <input type="checkbox"/>	10%이상 <input type="checkbox"/>	5%이상 <input type="checkbox"/>	5%미만 <input type="checkbox"/>
		100% <input type="checkbox"/>	95%이상 <input type="checkbox"/>	90%이상 <input type="checkbox"/>	85%이상 <input type="checkbox"/>	85%미만 <input type="checkbox"/>
차별없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고용 차별없는 여성친화적 근로환경 조성	최근 3년간 경력단절* 유경험 여성 채용 현황(10)	육아휴직 후 복귀자, 새일센터 새일인턴 채용 후 지속 고용, 신규채용이지만 이전 직장에서 경력단절 유경험자 모두 포함 있다 <input type="checkbox"/> 없다 <input type="checkbox"/>			
		직장 내 성희롱예방지침 운영 및 교육 시행	지침 및 교육 운영 <input type="checkbox"/> 지침 또는 교육 운영 <input type="checkbox"/> 미운영 <input type="checkbox"/>			
		최근 5년 간 기간제, 단시간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있다 <input type="checkbox"/>	전체		(명)
			없다 <input type="checkbox"/>	여성		(명)
		최근 5년 간 간접 고용자를 직접고용으로 전환한 경우	있다 <input type="checkbox"/>	전체		(명)
		없다 <input type="checkbox"/>	여성		(명)	

구 분		제 안 내 용			
구분	지 표	점 검 항 목			
		전부운영 <input type="checkbox"/> 일부운영 <input type="checkbox"/> 미운영 <input type="checkbox"/>	전체	(명)	
최근 3년간 (2022.1.1.~ 2023.12.31.) 출산 및 양육 지원제도 운영	출산휴가제 및 배우자 출산휴가제 운영	전부운영 <input type="checkbox"/> 일부운영 <input type="checkbox"/> 미운영 <input type="checkbox"/>	여성	(명)	
		전부운영 <input type="checkbox"/> 일부운영 <input type="checkbox"/> 미운영 <input type="checkbox"/>	전체	(명)	
	육아휴직	전부운영 <input type="checkbox"/> 일부운영 <input type="checkbox"/> 미운영 <input type="checkbox"/>	여성	(명)	
		전부운영 <input type="checkbox"/> 일부운영 <input type="checkbox"/> 미운영 <input type="checkbox"/>	전체	(명)	
		전부운영 <input type="checkbox"/> 일부운영 <input type="checkbox"/> 미운영 <input type="checkbox"/>	여성	(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업제도의 조성보호 사업 추진 사례 유무	여성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추진 여부(교육기회 부여)	전부운영 <input type="checkbox"/> 일부운영 <input type="checkbox"/> 미운영 <input type="checkbox"/>	사래명	*관련 사항 증빙 필요	
		전부운영 <input type="checkbox"/> 일부운영 <input type="checkbox"/> 미운영 <input type="checkbox"/>	전부운영 <input type="checkbox"/> 일부운영 <input type="checkbox"/> 미운영 <input type="checkbox"/>		
경력단절 예방이 가능한 근무환경	직장만을 위한 연계협력사업 추진 여부	직장만 지원센터, 세일센터와의 업무협약	있다 <input type="checkbox"/> 없다 <input type="checkbox"/>	있다 <input type="checkbox"/> 없다 <input type="checkbox"/>	
	세종시 여성친화도시 공공시설 가이드라인 점검 결과	준수 <input type="checkbox"/> 일부 준수 <input type="checkbox"/> 미준수 <input type="checkbox"/> *준수(일부준수 포함) 사항 증빙 필요	전부운영 <input type="checkbox"/> 일부운영 <input type="checkbox"/> 미운영 <input type="checkbox"/> 전부운영 <input type="checkbox"/> 일부운영 <input type="checkbox"/> 미운영 <input type="checkbox"/> 전부운영 <input type="checkbox"/> 일부운영 <input type="checkbox"/> 미운영 <input type="checkbox"/> 전부운영 <input type="checkbox"/> 일부운영 <input type="checkbox"/> 미운영 <input type="checkbox"/> 전부운영 <input type="checkbox"/> 일부운영 <input type="checkbox"/> 미운영 <input type="checkbox"/>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기업문화 및 환경 조성	최근 3년간 (2022.1.1.~ 2023.12.31.) 유연근무제도 운영 현황	시간선택제	전부운영 <input type="checkbox"/> 일부운영 <input type="checkbox"/> 미운영 <input type="checkbox"/>		
		시차출퇴근제	전부운영 <input type="checkbox"/> 일부운영 <input type="checkbox"/> 미운영 <input type="checkbox"/>		
	가족 문화체육행사, 여가활동 등 직원에 관한 프로그램 운영	선택근무제	전부운영 <input type="checkbox"/> 일부운영 <input type="checkbox"/> 미운영 <input type="checkbox"/>		
		재량근무제	전부운영 <input type="checkbox"/> 일부운영 <input type="checkbox"/> 미운영 <input type="checkbox"/>		
		제택근무제	전부운영 <input type="checkbox"/> 일부운영 <input type="checkbox"/> 미운영 <input type="checkbox"/>		
일·생활균형 실천기법 우수 사례 선정 여부		전부운영 <input type="checkbox"/> 일부운영 <input type="checkbox"/> 미운영 <input type="checkbox"/>	있다 <input type="checkbox"/> 없다 <input type="checkbox"/>	있다 <input type="checkbox"/> 없다 <input type="checkbox"/>	

[세종형 여성친화기업 지원 신청서]

세종형 여성친화기업 지원 신청서

기업현황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대표자 성별	(여성기업인제도 수혜여부)
	업종		
	설립일		
	소재지	□□□-□□□□	
	업태	전 화	팩 스
	홈페이지	http://	
	근로자수	총 : 명	남 : 명 여 : 명
	가입보험	<input type="checkbox"/> 고용 <input type="checkbox"/> 산재 <input type="checkbox"/> 의료 <input type="checkbox"/> 연금	
담당자	성명		
	부서 및 직책		
	연락처		
	이메일	@	
2023년도 세종형 여성친화기업인증 사업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청인(대표자) :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 제출서류: 1. 여성친화기업 지원 신청서 1부, 2.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사업 계획서 1부, 3. 여성친화기업 인증 기준표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제출기한: ※ 제출방법: ※ 문의처: ※ 작성 시 유의사항			

[세종형 여성친화기업 인증을 위한 여성친화적 기업문화 및 환경조성을 위한 계획서 양식]

경기도의 대표전략수도 세종

여성친화적 기업문화 및 환경조성을 위한 계획서
(OOOO회사)

1. 세종형 여성친화기업 인증을 위한 기업의 여성친화도 점검표(정량) 결과에 따른 개선 계획

구 분	진단결과에 따른 개선 계획
① 차별없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진단(문제점) <input type="checkbox"/> 개선 계획 <input type="checkbox"/>
② 경력단절 예방이 가능한 근무환경	진단(문제점) <input type="checkbox"/> 개선 계획 <input type="checkbox"/>
③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기업문화 및 환경 조성	진단(문제점) <input type="checkbox"/> 개선 계획 <input type="checkbox"/>

2. 여성친화기업 인증에 따른 기업문화 및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 계획 또는 물품 설치에 따른 활용계획

1) 주요사업 내용

2) 소요사업비: 원 · 견적서 첨부 ※ 자부담 비율: 사업비의 20%이상
 총금액: 원(보조금 원, 자부담 원)

3)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4) 사업대상 사진

[표 4-9] 3차 자문회의(정책과제 클로키움) 주요 논의 결과

구 분	주요 논의 결과
1. 세종형 여성친화 기업인증제 모델(안)에 대한 정책 자문	사업 목적
	개념 정의
	사업 기간
	인증방식
	추진 방법
	심사 방법
	기업 선정
	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의 경우 세종시는 인센티브 자체가 없고, 중앙부처의 인센티브는 중소기업에 별로 실효성이 없음. 중소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여성친화기업 인증 노력을 위해서는 세종시만의 인센티브 발굴이 필요함 • 실질적으로 기업은 인센티브 자체 보다는 여성친화인증을 통해 기업의 이미지를 좋게 하여 인지도를 높이고,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데 목적. 인증기업에 대한 활발한 홍보가 진행되어야 하며, 지속적인 인증기업 관리 또한 중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안 동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안 동의(예산편성에 따라 다소 조정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모방식에 동의하나, 사업시행 초기(시범사업기간)에는 여성친화일촌협약 체결 사업체를 중심으로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 홍보 활성화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종시의 경우 소규모 기업 비율이 높으므로, 작성양식 등 인증 절차를 간소화 할 필요가 있음 • 계획서를 미리 제출하도록 조치하는 방식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됨. 다만, 구체적인 예산계획을 세워서 함께 받는 것이 인증제도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인 이상 기업으로 하게 되면 너무 소규모 기업이라고 여겨짐. 소규모 기업이 많겠지만, 10인 이상 정도도 두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자격제한요건: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사업장(예: 퇴직금 미지급, 중대해해사업장 산제시고, 임금체불 등), 사회적유리성 문제를 일으킨 기업, 소비항락업체, 근로자파견, 용역업체, 보조금 운영 사업장 • 10인 미만, 이상 기준 통합(5인 이상~300인, 여성 비율 30%, 임력 3년 이상)을 제안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점제도: 고용우수기업 선정, 산업단지 입주기업 선정, 기업인대상 선정 등 - 자금-판로지원: 경영자금(융자)지원(보증수수료 감면 등), 지역축제 등 기업 판매전박람회, 소셜 커머스 등 우선 참여 기회 부여 - 사용자 감면: 공공시설-문화재 사용자(여성친화기업 직원 대상) 등 	

주요 논의 결과	
구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개 인증 기업 당 500만원 이내, 자부담 20%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됨 (충북 청주시 제인) 관련 부서 및 기관이 너무 많다고 생각됨. 청주시의 경우 여성친화 기업을 인증하는 과정에서 여성친화도추진단 일자리특별 분과 위원회만 들어오는데, 이 안에서도 각자의 생각이 달라 의견을 취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음 경제인단체 역할 포함 고려 인센티브 발굴에 실질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투자유치과, 기업지원과 등 공공에서 참여하여 진의 사항을 수렴해 주어야 실효성이 있음 (새일센터 제인) 현장실사, 신청 시 컨설팅(컨설팅드 연계)까지 전담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시민참여단과 함께 모니터링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등 구체적인 운영 및 역할 분담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음
소요 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의 자가진단(사전 점검표) 양식 제공 필요하다고 여겨짐
여성친화기업인증 신청접수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실사를 나갔을 때 볼 수 있는 사전 점검표를 잘 작성해야 그것을 근거로 서류와 현장을 확인할 수 있음. 점검표를 좀 더 세밀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음 - 지원 타당성, 사업계획의 적절성, 예산 적합성, 사업의 효과성 등 • 현장실사 평가인 만큼 제도적인 부분 외에 여성휴게실 등 현장근무환경에 대한 평가항목도 넣었으면 좋겠음 • 서류심사 내용을 현장실사에서 확인하는 방식과 구별된 고유한 측정내용 설계 - 평가지표 예시: ① 경영진: 양성평등 기업경영 인식→양성평등(채용, 승진 등)과 같은 다양성 요소를 기업경영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는가/② 근로자: 양성평등 기업문화 인식 및 효과성 • 평가방법: 인터뷰, 현장점검 시 정성지표로 사업주 인터뷰, 근로자 인터뷰를 포함하는 방안 검토 필요함
여성친화기업인증을 위한 현장실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안 동의
여성친화기업인증 심사위원회 구성 및 면접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2년) - 현판, 워크숍 지원비/ 재인증(3년) - 환경개선, 불품지원 등 인증기간 동안 1회성이 아닌 단계적, 지속적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여성친화기업 인증 및 협약식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개선 - 500만원 이내, 자부담 20%정도가 적정할 것으로 여겨짐 • 시설 개선이 필요 없는 기업은 불품에 대한 지원만도 가능하도록 요건 완화 및 개선시설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사후 점검 필요
여성친화기업 사업비 지원	

구 분	주요 논의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실사 시 확인하기 어려운 지표(예: 임금 부분)는 삭제할 필요가 있음 • 동일업무 동일직종 남녀 임금비교는 필요한 항목이나, 현장실사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는 개인별 봉급표를 증빙자료로 받아야 확인이 가능하나 개인별 봉급표 제출은 민감한 사항이라 기업에서 제출을 꺼리는 경향이 있어 다른 지표로 대체하는 것이 원활한 인증제도 추진에 도움이 될 것임 • '최근 5년간 기간제 단시간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에 대한 지표를 '최근 5년→3년'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현장실사 할 때 증빙자료를 모두 첨부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제 입장에서 준비가 어려울 수 있음 • '최근 5년간 간접고용자를 직접고용으로' 이 항목은 삭제할 것을 제안함. 기간제를 정규직으로 한 경우를 지표로 삼고 있으므로, 증점된 지표를 추가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됨 • 항목 '여성친화도시 공공시설 가이드라인 점검결과 준수여부'는 공공시설에 적용 가능한 것이지 중소기업에서 실행 가능한지 의문이 됨. 특정한 구역에 한하여(예: 여성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휴게실, 수유실 등) 확인하는 것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음 • 여성친화적일 제도는 운영되고 있으나 사업장 소속 종사자의 전체적인 연령대 또는 성별의 특성에 따라 이용률이 낮아 미운영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여성친화도 점검 시 이러한 상황도 고려해야 함 • 영역 및 지표: 경력단절예방 근무환경 영역-일·생활균형 기업문화 및 환경조성 영역구분 및 세부 지표 분류 검토(예: 기업의 양성평등 제도 영역 신설) • 평가배점: 영역별 배점 조정 고려필요. 예) ① 축소, ②~③ 증가 - 현재) ① 차별없는 경제활동 참여(70점), ② 경력단절 예방이 가능한 근무환경(20점), ③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기업문화 환경 조성(10점) - 여성친화기업의 목표와 방향성 '경력유지' 이므로 진입(투입)→과정→결과(산출)지표 가운데 ②~③ 영역의 점수비중 상향 조정 • 세부지표 제안 - 사업주가 점검 또는 증명하기 어려운 지표를 보다 쉬운 지표로 변경 또는 삭제할 필요가 있겠음. 예시: 동일직종·동일임금→ 세종시 생활임금 준수 여부 - 실적측정 기준년도 통일: 예) 최근 3년 -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 ⇒ 직장 내 괴롭힘이 더 큰 범주(성희롱 포함됨) - 기간제, 단시간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고용형태와 근무시간형태가 혼용

세종형
여성친화기업
인증을 위한
기업의 여성친화도
점검표(정량)에
대한 개선안

구 분	주요 논의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전환: 소규모 기업에서 실효성 있는 지표인지 재검토 - 삭제 제안: 직장맘지원센터와의 업무협약 - 지표 추가 제안: 여성안전편의 증진, 임신근로자 배려정도, 남성육아휴직자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 • 점검항목: '일부운영'의 경우 '일부'에 대한 각기 다른 해석 존재 가능성 - 제도 항목: 제도 유무/ 제도 이용률로 단순화 • 자체적으로 수준 파악이 가능한 세부 지표별 점수 및 결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 (40점미만 - 많은 노력 / 60점 미만 - 좀더 노력 / 60점 이상 - 여성친화기업) • 경력단절여성 채용 현황 지표 중 '있다'의 경우, 1명 이상이면 동일한 점수를 부여할 것인지 차등을 둘 것인지 고민이 필요함
<p>2. 상기 내용 외 전략적 제도 운영을 위한 정책과제 제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테전시 제안 사항) 여성친화기업인증제에 선정된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주어야 함. 처음 정책을 도입할 때 인센티브 예산 지원을 충분히 해야 함. 이후 예산 증액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 • (충북 청주시 제안 사항) 사업예산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음. 이면 청주시 여성친화인증 기업 심의에서 총 9개 기업 중 2개 기업은 보조금 신청을 하지 않음. '여성친화' 라는 타이틀이 중요하다고 기업과 여성친화도시추진단 일자리 분과위원회에서 같은 이야기가 나눔 • (홍보) 시에서 적극적인 사전, 사후 홍보가 필요함. 기업 홍보의 지속가능성, 홍보 기능의 강화가 매우 중요함 • (조례) 세종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조례에 여성친화기업인증제도를 넣어 보완하는 방안 마련해야 함 • (예산) 양성평등기금 활용방안, 예산 규모 충분하게 제안 요망 • (계획서) 지방보조금사업 심사와 유사하게, 예산계획 첨부하도록 해야 함 • (제출서류) 제출서류의 양과 증빙 절차 등의 간소화 필요 • (인센티브) 자부담을 제외 등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시 필요 - 자부담을 제외하되, 인증 첫해에 기업환경개선자금을 제공하기 보다는 제인증 절차를 마련하여 어느 정도 노력을 기울인 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조치해야 함 - 여성친화기업인증을 받은 기업의 물품 구매 시 부서평가 가점 부여하는 방안도 추가 바람 • (이해관계자 갈등관리) 구성원 업무 분담 구체화하여 이해충돌 없도록 제안해 주시길 희망함 •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참여) 시민참여단이 중요한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으나, 새일센터에서 담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명확한 주체 선정 및 방향 제시 요망 • (사후관리) 인증 후 사후관리 방향도 추가 요망. 인증만 필요한 기업들 조치방안 검토 요망

□ 1~3차 자문회의 결과의 시사점

- 세종형 여성친화기업인증제모델(안)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사항
 - 형식과 절차의 간소화 전략이 중요함
 - 인증신청 참여자 입장을 고려한 알기 쉬운 인증 절차와 지원이 필요함
 - 사업시행 초기 충분한 사업예산이 마련되기 어려울 것으로 여겨짐.
주무부서인 여성가족과 중심의 인센티브 체계 마련이 단기간에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증장기적 확대 운영을 고려한 예산편성안 마련이 요구됨
- 여성친화도시 조성과제에 있어 거버넌스의 역할과 역량강화 측면을 함께 반영할 수 있는 제도 운영 체계 마련이 필요
 - 다만, 이해관계자 간의 역할 분담과 관련하여 갈등의 소지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책임과 권한, 그 역할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음

2절 세종형 여성친화기업인증제 모델안(최종)

1. 세종형 여성친화기업인증제 모델의 차별성

□ 세종형 여성친화기업인증제 모델의 차별성

- 첫째, (합목적성 측면)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조성 차원에서 강조하는 여성친화기업 인증 취지에 부합하는 인증 모델 구현
 -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여성가족부의 컨설팅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인증제도의 목적 및 여성친화도 점검 기준으로 활용
 - 유사 제도와의 중복·중첩성을 검토한 결과, 비교 대상 중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정책 목표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사업은 부재함
- 둘째, (협력적 거버넌스 측면) 여성친화도시 조성 거버넌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추진 체계를 구성함
 - 세종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민참여단의 적극적인 참여 기회
 - 세종시 관내 여성정책 거버넌스의 연계와 협력을 기초로 추진체계를 마련함
- 셋째, (세종형 여성친화기업 컨설턴트단 운영) 여성친화기업인증제의 목적과 취지, 그리고 확산과 더불어 여성의 경제·사회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세종형 여성친화기업 컨설턴트단을 운영함
 - 여성친화기업인증 과정에서 해당 사업체 근로자의 경력유지, 고용평등 개선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재교육, 그리고 사회참여가 연결될 수 있는 여성친화적 경제·사회활동 참여 생태계 조성
- 넷째, (인증을 위한 지표체계) 차별 없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제고하고, 경력단절 예방이 가능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세종시만의 지표 발굴
 - 세종시 생활임금⁹⁾ 준수 여부: 성별임금공시제 추진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체의 운영 현실을 고려하여, 대리 지표로 선정함

9)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임금 조례」제6조(생활임금의 결정)

- 최근 3년간 경력단절 유경험 여성 채용 현황: 경력보유 여성의 채용에 적극성을 가진 사업체를 발굴하고, 사례의 확산을 위해 대리 지표로 선정함
- 직장맘을 위한 연계협력사업 추진 여부(직장맘 지원센터와의 업무협약): 세종시 시정 4기 단체장 공약으로 추진되고 있는 직장맘 지원센터와의 적극적 협력 체계 마련을 위한 대리 지표임

2. 연구진 제안 모델

□ 사업 목적

- 세종시의 ‘세종형 여성친화기업인증제’ 신설 및 운영의 사업 목적은 다음과 같음
 - ① 차별 없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② 경력단절 예방이 가능한 근무환경과 ③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기업문화 및 환경 조성에 선도적인 지역 내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그 사례를 확산하여, 지속 가능한 여성친화도시 세종의 제도적 성숙에 기여

□ 사업 개요

- ‘세종형 여성친화기업’에 대한 개념정의
 - ‘세종형 여성친화기업이란, 여성의 고용 안정성 제고와 유리천장 해소를 위한 기업 차원의 제도적 노력이 지속성을 가지며, 양성평등한 조직 문화 속에서 일·생활 균형을 위한 기업문화 및 환경 조성에 힘쓰는 기업’
- 세종형 여성친화기업 인증 제도 시행을 위한 주요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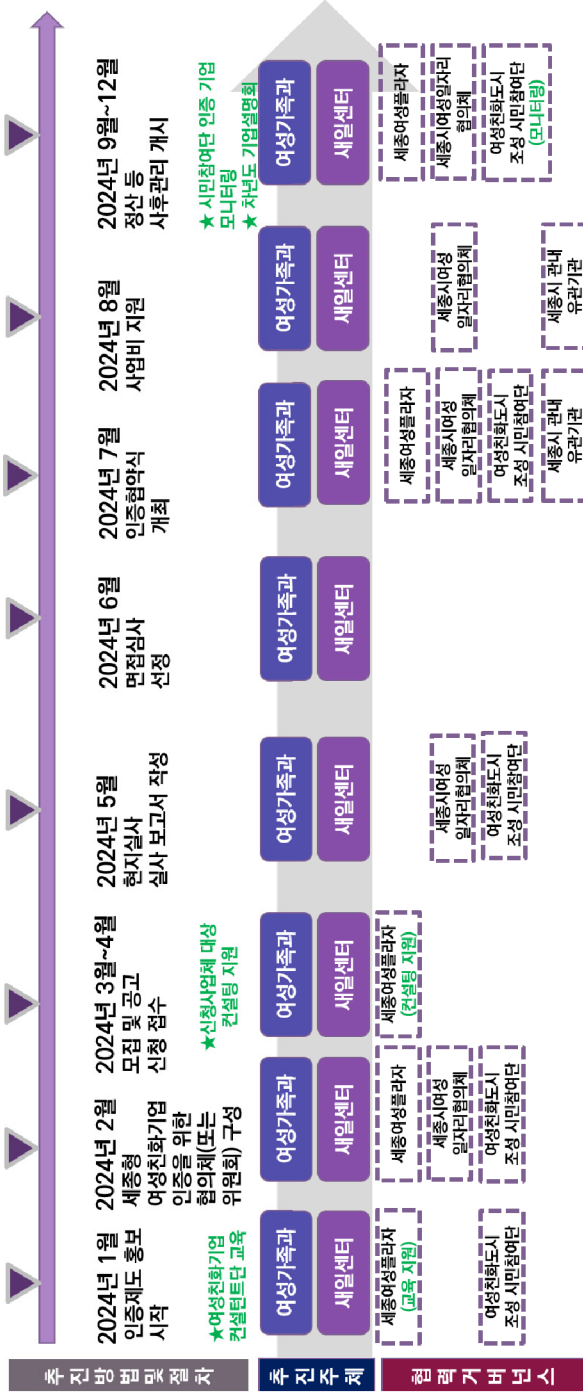
[표 4-10] 세종형 여성친화기업인증제(안) 개요

구 분	내 용
사업명	▪ 세종형 여성친화기업인증제
사업기간	▪ 2024.2.~2024.12.
인증방식	▪ 공모방식

구 분	내 용
추진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 10월 차년도 사업 추진 계획 수립 및 정책 홍보 시작, 세종형 여성친화기업 인증을 위한 협의체(또는 위원회) 구성 ⇒ 2024년 1월 세종형 여성친화기업 인증제도 홍보, 여성친화기업컨설팅트단 교육 실시 ⇒ 2024년 3월~4월 모집 및 공고, 신청 접수 ⇒ 현지실사 및 보고서 작성(5월) ⇒ 면접심사 및 선정 (6월) ⇒ 인증 및 협약식 개최(7월) ⇒ 사업비 지원(8월) ⇒ 정산 등 사후관리 개시(9월~12월)
심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종형 여성친화기업인증 심사위원회 구성 후 심사 - 서류평가, 현장실사(현장실사평가표, 실사보고서), 인증기업 선정을 위한 최종심의
기업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개 이내 기업 선정 - 관내 기업 등록 후 3년 이상 운영을 한 10인 미만 사업체 중 여성 근로자 30% 이상인 기업 - 관내 기업 등록 후 3년 이상 운영을 한 10인 이상 사업체 중 여성 근로자 30% 이상인 기업 * 자격제한 요건: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사업장(예: 퇴직금 미지급, 중대재해 사업장, 산재사고, 임금체불 등), 사회적·윤리적 문제를 일으킨 기업, 소비 항락업체, 근로자파견·용역업체, 보조금 운영 사업장, 여성친화기업으로 선정된 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시범사업 단계 제안) 제도 시행 초기에는 새일센터의 여성친화일촌협약 체결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정하여 모집 및 선정을 추진해 볼 것을 제안함
혜택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여성가족과의 직접 추진으로 가능한 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친화기업 인증 후 인증현판 수여 ▪ 여성친화기업 인증 사업체 홍보 ▪ 기업환경개선 사업비(시비 100%, 지방보조금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환경개선의 범주: 중장기적으로 다양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음 - (예시) 복리후생을 위한 물품 및 예술문화 향유 기회 지원, (가칭) 실내형 정원사업 추진을 통해 실내공기정화식물 등을 제공하고, 찾아키는 가드닝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혜택 ※ 제공 혜택 중 일부만을 원하는 사업체의 경우, 혜택 포기에 대한 양해 각서를 작성하도록 조치해야 함 - 기업환경개선사업비에 대한 자부담율 적용: 20% ※ 단, 기업환경개선사업비 지원 거부 사업체의 경우, 별도의 지침을 만들어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중·장기적) 육아휴직 업무대행자 수당 지원 2. 타 부서와 협업 추진으로 가능한 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기업지원과 협의 필요) ▪ 인력 지원(기업지원과 협의 필요) ▪ 자금 지원(기업지원과 협의 필요) ▪ 세종시공정일터인증제 신청 시 가점(기업지원과 협의 필요)

구 분	내 용
<p style="text-align: center;">소요예산</p>	<p>■ 단계적 예산 증액이 필요함</p> <p>[1단계] 시범사업 단계: 1,600만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증현판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5만원×4개 = 220만원 2. 기업환경개선 사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0만원×4개 사업체 = 1,200만원 3. 타 부서와 협업 추진으로 가능한 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요예산 산출 불가 4. 사업 운영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판식, 심사비 등 운영비 180만원 <p>[2단계] 안정화 단계: 2,800만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증현판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0만원×6개 = 360만원 2. 기업환경개선 사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0만원×6개 사업체 = 1,800만원 3. 타 부서와 협업 추진으로 가능한 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요예산 산출 불가 4. 사업 운영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판식, 심사비, 인증 기업 사후관리 등 운영비 400만원 ▪ 제도 확산을 위한 인증 기업 네트워크 구축 사업 240만원

- 세부 사업 추진계획 제안
- 여성친화기업인증제의 추진은 반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참여단의 참여를 기초로 관내 여성정책 추진 기관 또는 전문가와의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로 이루어져야 함
- 이는 일반적인 기업 인증제도와 세종형 여성친화기업인증제가 갖는 차별성이자 구별된 정책목표의 실현을 위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음



[그림 4-3] 세종형 여성친화기업인증제 추진을 위한 추진주체 및 협력거버넌스 체계

- 제도 시행을 위한 주요 구성원별 역할을 다음 [표 4-11]과 같이 제시하는 바임
 - 추진 주체: 세종시 여성가족과, 여성새일센터(중간조직)
 - 운영 방식: 시 직영 방식
 - 협력거버넌스: 세종시 여성 일자리협의체,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민참여단, 세종여성플라자, 세종시 관내 유관기관
- “(가칭) 세종형 여성친화기업컨설팅트단” 창설 및 운영에 필요한 교육활동은 여성친화기업인증제의 예산편성 시 교육기능에 대한 재원 배분이 어려울 경우, 세종여성플라자의 교육기능을 활용하여 협업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함
 -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민참여단 활동 유경력자를 대상으로 여성친화기업 컨설팅 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참여의 기회 모색
 - 2023년 9월~10월경 세종시 예산편성 결과에 따라 세종시와 새일센터, 그리고 세종여성플라자 간 재논의가 필요한 사항임

[표 4-11] 제도 시행을 위한 주요 구성원별 역할

부서 및 기관		역할(제안 예시)	
세 종 시	여성가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친화기업 인증 제도 시행계획 수립 - 공고 및 홍보 - 여성근로자 근로환경개선사업 추진 - 여성친화기업 지원 - 언론매체 홍보로 인증기업 이미지 향상 	
	기업 지원과	기업 지원 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애로사항 지원, 중소기업육성기금 ▪ 대상 중소기업 현황 제공 및 발굴 지원
		노사 협력 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종형 공정일터 인증제도 연계
		사회적 경제 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 현황 제공 및 발굴 지원
세종여성새로일하기 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 및 접수, 인증기업 관리 등 중간거점조직 	

부서 및 기관	역할(제안 예시)
세종형 여성친화기업 컨설턴트단 (세종여성플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종형 여성친화기업 컨설팅 지원(공모지원, 운영 지원 등) ■ 역량강화교육기관: 세종여성플라자
여성친화도시 컨설턴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친화기업 인증 제도 설계 및 운영 전반에 걸친 자문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친화인증 기업 모니터링
세종시 여성 일자리 협의체 9명(당연직 2명, 위촉직 7명/남 4명, 여 5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친화기업 인증 제도 설계 자문 및 현장실사, 모니터링, 인센티브 발굴 및 연계 ■ 우수기업 추천 및 홍보 - 세종시 여성가족과장 및 여성정책담당, 기업지원과 기업정책담당,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여성플라자, 세종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일·생활균형대전·세종지역 추진단, 사회적협동조합 대표로 구성

○ 세종형 여성친화기업인증 신청접수 방식

- (접수 방식) 방문접수 또는 우편 접수
- (제출서류) 세종형 여성친화기업 인증을 위한 신청서, 기업의 여성친화도 점검표, 여성친화적 기업문화 및 환경조성을 위한 계획서(① 차별 없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② 경력단절 예방이 가능한 근무환경과 ③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기업문화 및 환경 조성을 위한 계획서)

○ 세종형 여성친화기업인증을 위한 현장실사

- (기간) 2024년 4월~5월(실사단 구성은 2월경)
- (구성) 5명 이내(세종시 여성가족과, 세종시 여성일자리협의체 위원, 시민참여단 등)
- (실사평가표) 세종형 현장실사평가표(세종특별자치시 여성친화도시 공공시설 가이드라인을 활용한 공간 점검, 사업목적별 평가 기준 등으로 마련할 것)를 활용한 현장조사
- (실사결과 보고서 작성) 최종 심의를 위한 현장실사보고서 작성(여성가족과)

○ 세종형 여성친화기업인증심사위원회 구성 및 면접심사

- (구성 시기) 2월경

- (면접심사 시기) 6월경
- (역할) 최종 세종형 여성친화기업 인증 심사 및 선정
- (인원) 세종시 여성 일자리 협의체 구성원 및 외부 전문가,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민참여단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
- (평가항목) 세종형 여성친화기업 인증을 위한 신청서, 기업의 여성친화도 점검표, 여성친화적 기업문화 및 환경조성을 위한 계획서 및 현장실사보고서를 고려하여 심사표 고득점 순으로 4개 기업 선정
- 세종형 여성친화기업 인증 및 협약식 개최
 - (개최 시기) 7월경
 - (협약유효기간) 협약일로부터 2년
 - (내용) 협약서 교환 및 여성친화기업 인증현판 수여
- 세종형 여성친화기업 사업비 지원
 - (지원 시기) 8월경
 - (지원 예산) 인증제도 운영비를 포함하여 사업비 적정예산은 5,000만원 정도라고 판단됨
 - (지원 내용) 현판 제작비용(720만원, 4개 기업), 기업환경개선 사업비 지원(4,000만원, 4개 기업), 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운영비(280만원: 심사 수당, 여성친화기업인증제를 위한 협의체 구성에 소요되는 회의비 등)
 - (보조금 정산 및 사후관리) 9월~12월
- 세종형 여성친화기업 홍보 등 기타 행정사항

○ <서식2. 세종형 여성친화기업 인증을 위한 기업의 여성친화도 점검표(안)>은 다음 [표 4-13]과 같음

- 여성친화기업인증 심사를 받기 위한 서류 심사용 서식임.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여성친화도를 점검할 수 있는 점검표임
- 사업주는 점검 항목에 대한 응답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표 4-13] <서식2. 세종형 여성친화기업 인증을 위한 기업의 여성친화도 점검표(안)>

구 분	지 표	점 검 항 목					
기본사항	재직자 현황 (2023년 12월 말 기준)	여성 근로자 수		(명)			
		남성 근로자 수		(명)			
		전체 근로자 수		(명)			
		관리자 현황	임원급 이상	소계	(명)		
				여성	(명)		
			팀장급 이상	소계	(명)		
여성	(명)						
전체근로자 중 여성근로자 비율	30%이상 <input type="checkbox"/>		30%미만 <input type="checkbox"/>				
전체 여성근로자 중 정규직 비율	20%이상 <input type="checkbox"/>	15%이상 <input type="checkbox"/>	10%이상 <input type="checkbox"/>	5%이상 <input type="checkbox"/>	5%미만 <input type="checkbox"/>		
차별 없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고용평등을 위한 사내 운영 규정 유무	있다 <input type="checkbox"/>		없다 <input type="checkbox"/>			
	세종시 생활임금 준수 여부	100% <input type="checkbox"/>	95%이상 <input type="checkbox"/>	90%이상 <input type="checkbox"/>	85%이상 <input type="checkbox"/>	85%미만 <input type="checkbox"/>	
	최근 3년간 경력단절 유경험 여성 채용 현황	육아휴직 후 복귀자 새일센터 새일인턴 채용 후 지속고용인 신규채용이나 이전 직장에서 경력단절 유경험자 모두 포함 있다 <input type="checkbox"/> 없다 <input type="checkbox"/>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예방지침 및 교육 시행	지침 및 교육 운영(둘 다) <input type="checkbox"/> 지침 또는 교육 운영(둘 중 하나) <input type="checkbox"/> 미운영 <input type="checkbox"/>					
	최근 3년간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있다 <input type="checkbox"/> 없다 <input type="checkbox"/>	전체		(명)		
경력단절 예방이 가능한 근무환경	최근 3년간 출산 및 양육 지원 제도 운영	출산휴가제 및 배우자 출산휴가제 운영	전부운영 <input type="checkbox"/>	전체		(명)	
			일부운영 <input type="checkbox"/>	여성		(명)	
	출산휴가제 및 배우자 출산휴가제 운영	미운영 <input type="checkbox"/>	전체		(명)		
		미운영 <input type="checkbox"/>	여성		(명)		
출산휴가제 및 배우자 출산휴가제 운영	육아휴직	전부운영 <input type="checkbox"/>	전체		(명)		
		일부운영 <input type="checkbox"/>	여성		(명)		
출산휴가제 및 배우자 출산휴가제 운영	육아휴직	미운영 <input type="checkbox"/>	전체		(명)		
		미운영 <input type="checkbox"/>	여성		(명)		

구 분	지 표		점 검 항 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부운영 <input type="checkbox"/> 일부운영 <input type="checkbox"/> 미운영 <input type="checkbox"/>	전체	(명)	
				여성	(명)	
	여성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추진 여부(교육기회 부여)		운영 <input type="checkbox"/>	미운영 <input type="checkbox"/>		
		직장맘을 위한 연계협력사업 추진 여부	직장맘 지원센터, 새일센터와의 업무협약	있다 <input type="checkbox"/>	없다 <input type="checkbox"/>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기업문화 및 환경 조성	최근 3년간 유연 근무 제도 운영 현황	시간선택제	운영 <input type="checkbox"/>	미운영 <input type="checkbox"/>		
		시차출퇴근제	운영 <input type="checkbox"/>	미운영 <input type="checkbox"/>		
		선택근무제	운영 <input type="checkbox"/>	미운영 <input type="checkbox"/>		
		재량근무제	운영 <input type="checkbox"/>	미운영 <input type="checkbox"/>		
		재택근무제	운영 <input type="checkbox"/>	미운영 <input type="checkbox"/>		
		근로자의 성별 유연근무제 활용률	유연근무제 이용자 중 남성 비율	%	유연근무제 이용자 중 여성 비율	%
	가족 문화체육행사, 여가활동 등 지원에 관한 프로그램 운영		운영 <input type="checkbox"/>	미운영 <input type="checkbox"/>		

○ <서식3. 세종형 여성친화기업 인증을 위한 현장실사 평가지표(안)>은 다음 [표 4-14]과 같음

- 현장실사 평가지표는 여성친화도 점검표(안)를 기초로 하되, 실사를 통해 심사자들이 파악할 수 있는 다음의 항목을 추가할 것을 제안함
- 첫째, ‘경력단절 예방이 가능한 근무환경’을 파악하기 위하여, 세종시의 여성친화도시 공공시설 가이드라인을 고려한 근무환경 평가를 실시(10인 이상 사업체만 해당)
- 둘째, 경영진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기업경영 인식도를 살펴보기 위한 경영진 인터뷰 실시
- 세종형 여성친화기업 인증을 위한 현장실사평가표의 경우, 10명 이상 사업체(<서식3-1>)와 10명 미만 사업체(<서식3-2>) 간 차등을 두어 지표와 배점을 선정할 필요가 있음

[표 4-14] <서식3-1. 세종형 여성친화기업 인증 현장실사 평가 지표(10인 이상)>

구 분	항 목	배점
사업체 기본현황	■ 경제활동현황: 재직자현황(성별 근로자 및 관리자 현황), 전체근로자 중 여성근로자 비율, 전체여성 근로자 중 정규직 비율	없음
① 차별 없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40점)	■ 여성임원 유무 20%이상 □ 10%이상 □ 10%미만 □	5점
	■ 고용평등을 위한 사내 운영 규정 유무	5점
	■ 세종시 생활임금 준수 여부	5점
	■ 최근 3년간 경력단절 유경험 여성 채용 현황	10점
	■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예방지침 및 교육 시행	5점
	■ 최근 3년간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 있음: 5점 - 정규직 전환 여성비율: 50%이상 5점, 40%이상 4점, 30%이상 3점, 20%이상 2점, 20%미만 1점	10점
② 경력단절 예방이 가능한 근무환경(30점)	■ 출산 및 양육지원제도 운영 ① 출산휴가제 및 배우자 출산휴가제 운영 ② 육아휴직 ③ 육아기근로시간단축 ④ 그 외 사업체 개별 지원 제도 유무 *①~③의 경우, 대상자 부재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점수 배정하지 않음	5점
	■ 여성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추진 여부	10점
	■ 직장맘을 위한 연계협력사업 추진 여부	5점
	■ 여성친화도시 공공시설 가이드라인을 고려한 근무환경 평가 • 여성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CCTV (CPTED) 설치(3점) • 여성휴게실 설치(3점) • 화장실 내 여성편의시설 및 안심벨 설치(4)	10점
	■ 최근 3년간 유연근무제도 운영현황 ① 시간선택제 ② 시차출퇴근제 ③ 선택근무제 ④ 재량근무제 ⑤ 재택근무제 ⑥ 근로자의 성별 유연근무제 활용률(남녀의 균형있는 유연근무제 활용정도를 평가하여 점수평가) *①~⑤의 경우, 대상자 부재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점수 배정하지 않음	10점
③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기업문화 및 환경 조성(30점)	■ 가족 문화체육행사, 여가활동 등 지원에 관한 프로그램 운영 여부	10점
	■ 경영진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기업경영 인식도	10점

[표 4-15] <서식3-2. 세종형 여성친화기업 인증 현장실사 평가 지표(10인 미만)>

구 분	항 목	배점
사업체 기본현황	■ 경제활동현황: 재직자현황(성별 근로자 및 관리자 현황), 전체근로자 중 여성근로자 비율, 전체여성근로자 중 정규직 비율	없음
① 차별 없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40점)	■ 세종시 생활임금 준수 여부	10점
	■ 최근 3년간 경력단절 유경험 여성 채용 현황	10점
	■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예방지침 및 교육 시행	10점
	■ 최근 3년간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 있음: 5점 - 정규직 전환 여성비율: 50%이상 5점, 40%이상 4점, 30%이상 3점, 20%이상 2점, 20%미만 1점	10점
② 경력단절 예방이 가능한 근무환경(30점)	■ 출산 및 양육지원제도 운영 ① 출산휴가제 및 배우자 출산휴가제 운영 ② 육아휴직 ③ 육아기근로시간단축 ④ 그 외 사업체 개별 지원 제도 유무 *①~③의 경우, 대상자 부재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점수 배정하지 않음	5점
	■ 여성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추진 여부	5점
	■ 직장만을 위한 연계협력사업 추진 여부	10점
③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기업문화 및 환경 조성(30점)	■ 최근 3년간 유연근무제도 운영현황 ① 시간선택제 ② 시차출퇴근제 ③ 선택근무제 ④ 재량근무제 ⑤ 재택근무제 ⑥ 근로자의 성별 유연근무제 활용률(남녀의 균형있는 유연근무제 활용정도를 평가하여 점수평가) *①~⑤의 경우, 대상자 부재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점수 배정하지 않음	10점
	■ 가족 문화체육행사, 여가활동 등 지원에 관한 프로그램 운영 여부	10점
	■ 경영진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기업경영 인식도	10점

- <서식4. 세종형 여성친화기업 인증을 위한 여성친화적 기업문화 및 환경조성을 위한 계획서> 양식은 다음 [표 4-16]과 같음
 - 여성친화기업인증 후 기업환경개선지원금 예산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체의 경우, 계획서와 함께 예산지출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

[표 4-16] <서식4. 세종형 여성친화기업 인증을 위한 여성친화적 기업문화 및 환경조성을 위한 계획서>

여성친화적 기업문화 및 환경조성을 위한 계획서 (○○○○회사)	
1. 세종형 여성친화기업 인증을 위한 기업의 여성친화도 점검표(정량) 결과에 따른 개선 계획	
구 분	진단결과에 따른 개선 계획
❶ 차별없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진단(문제점) ■
	개선 계획 ■
❷ 경력단절 예방이 가능한 근무환경	진단(문제점) ■
	개선 계획 ■
❸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기업문화 및 환경 조성	진단(문제점) ■
	개선 계획 ■
2. 여성친화기업 인증에 따른 기업문화 및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 계획 또는 물품 설치에 따른 활용계획	
1. 주요사업 내용	
○	
○	
2. 소요사업비: 원 · 견적서 첨부 ※ 자부담 비율: 사업비의 20%이상	
○ 총금액: 원(보조금 원, 자부담 원)	
3.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	

4. 사업대상 사진

사업전 장면	사업전 장면
장소명칭(예:여성화장실)	장소명칭
사업전 장면	사업전 장면
장소명칭	장소명칭



결 론

제1절 연구요약

제2절 정책 제언

5장

5장 결론

1절 연구요약

1. 연구요약

- 본 연구는 여성친화도시 세종특별자치시의 성숙을 위하여,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사업체(기업)를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세종형 여성친화기업인증 도입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세부 연구 질문별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① 왜 세종형 여성친화기업인증제가 필요한가?
 - ② 유사 제도와와의 중복·중첩된 부분은 무엇이며, 어떻게 차별화된 모델을 만들 것인가?
 - ③ (제도 설계를 위한 사례분석)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친화기업인증제도 운영 방식과 애로사항은 무엇인가?
 - ④ (정책 제안) 세종형 여성친화기업인증제 모델(안)과 그 신설에 따른 정책과제는 무엇인가?
- 먼저, 세종형 여성친화기업인증제의 신설·운영의 타당성을 도출하기 위하여 다음의 연구과정을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함
 - 여성가족부의 여성친화기업인증제도의 취지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의 지침과 컨설턴트 교육내용을 검토함
 - 세종시의 정책환경 분석을 위하여 여건 분석 지표(자치법규 유무, 사업추진 현황, 조직 및 인력 현황, 예산현황 및 자원조달 가능성 측면, 지역사회 네트워크 현황)를 설정하여 SWOT 분석을 실시함
 - 성인지적 관점으로 세종시의 경제·산업 특성을 분석하여, 세종시에 필요한 여성친화기업인증 요소를 도출함

-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기업인증제도, 새일센터의 여성친화일촌협약, 세종시 공정일터인증제도 등 유사 인증제도의 운영 현황을 검토하여 중복과 중첩성 정도를 파악함
- 다음으로, 세종형 여성친화기업인증제의 설계 구상을 위한 타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친화기업인증제 운영 사례를 분석하여 세종시에 필요한 모델 초안을 도출함
 - 인증 취지 및 목적, 여성친화기업 개념 정의, 사업예산 규모, 추진주체(인증주체), 추진 기간 및 절차, 선정기준, 평가항목, 제출서류, 인센티브 등 측면에서의 시사점 도출
- 끝으로 타 지자체 사례를 통해 구상한 세종형 여성친화기업인증모델(안)을 토대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세 차례 걸쳐 추진한 후 인증 모델 보완 과정을 거쳐 최종안 제시
- 각 파트별 정책적 시사점은 이어지는 2절 정책 제언을 통하여 세종형 여성친화기업인증제 신설·운영에 필요한 정책과제로 재구성하여 제안함

2. 세종형 여성친화기업인증제 모델(안)

□ 본 연구에서 제안한 세종형 여성친화기업인증제 모델의 차별성

- 첫째, (합목적성 측면)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조성 차원에서 강조하는 여성친화기업 인증 취지에 부합하는 인증 모델 구현
 -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여성가족부의 컨설팅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인증제도의 목적 및 여성친화도 점검 기준으로 활용
 - 유사 제도와의 중복·중첩성을 검토한 결과, 비교 대상 중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정책 목표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사업은 부재함
- 둘째, (협력적 거버넌스 측면) 여성친화도시 조성 거버넌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추진 체계를 구성함
 - 세종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민참여단의 적극적인 참여 기회
 - 세종시 관내 여성정책 거버넌스의 연계와 협력을 기초로 추진체계를 마련함

- 셋째, (세종형 여성친화기업 컨설턴트단 운영) 여성친화기업인증제의 목적과 취지, 그리고 확산과 더불어 여성의 경제·사회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세종형 여성친화기업 컨설턴트단을 운영함
 - 여성친화기업인증 과정에서 해당 사업체 근로자의 경력유지, 고용평등 개선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재교육, 그리고 사회참여가 연결될 수 있는 여성친화적 경제·사회활동 참여 생태계 조성
- 넷째, (인증을 위한 지표체계) 차별 없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제고하고, 경력단절 예방이 가능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세종시민의 지표 발굴
 - 세종시 생활임금¹⁰⁾ 준수 여부: 성별임금공시제 추진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체의 운영 현실을 고려하여, 대리 지표로 선정함
 - 최근 3년간 경력단절 유경험 여성 채용 현황: 경력보유 여성의 채용에 적극성을 가진 사업체를 발굴하고, 사례의 확산을 위해 대리 지표로 선정함
 - 직장맘을 위한 연계협력사업 추진 여부(직장맘 지원센터와의 업무협약): 세종시 시정 4기 단체장 공약으로 추진되고 있는 직장맘 지원센터와의 적극적 협력 체계 마련을 위한 대리 지표임

□ 사업 목적

- 세종시의 '세종형 여성친화기업인증제' 신설 및 운영의 사업 목적은 다음과 같음
 - ① 차별 없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② 경력단절 예방이 가능한 근무환경과 ③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기업문화 및 환경 조성에 선도적인 지역 내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그 사례를 확산하여, 지속 가능한 여성친화도시 세종의 제도적 성숙에 기여

□ 사업 개요

- '세종형 여성친화기업'에 대한 개념정의
 - '세종형 여성친화기업이란, 여성의 고용 안정성 제고와 유리천장 해소를 위한 기업 차원의 제도적 노력이 지속성을 가지며, 양성평등한 조직 문화 속에서 일·생활 균형을 위한 기업문화 및 환경 조성에 힘쓰는 기업'

10)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임금 조례」제6조(생활임금의 결정)

○ 세종형 여성친화기업인증제 시행을 위한 주요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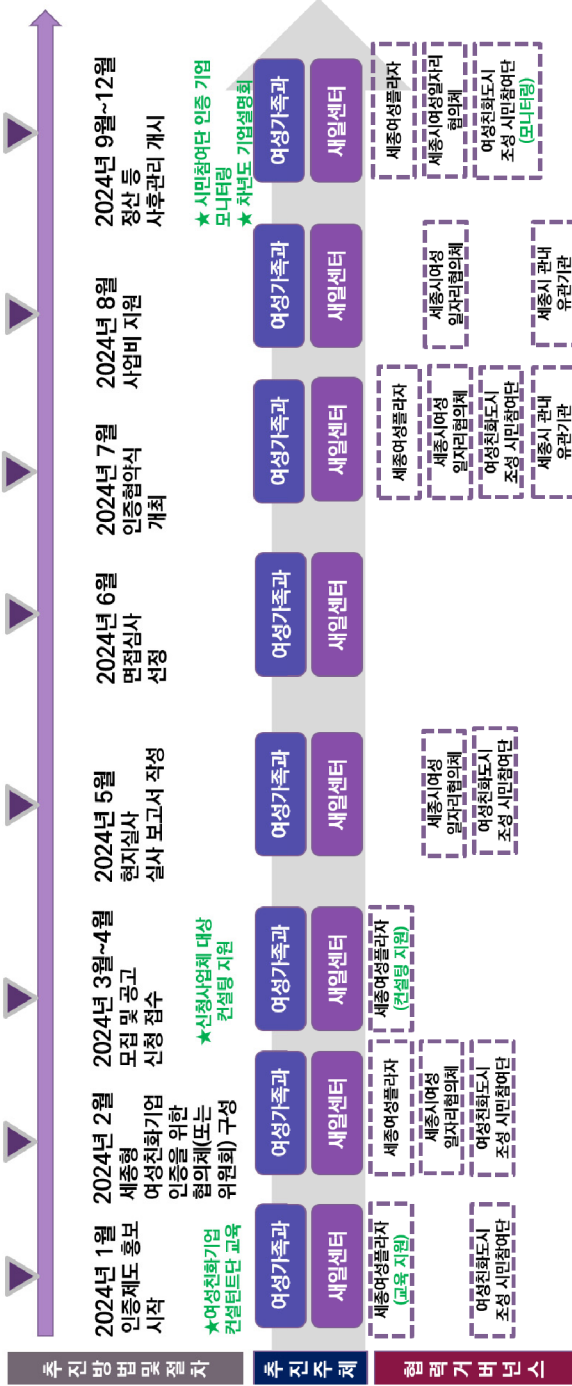
[표 5-1] 세종형 여성친화기업 인증제(안) 개요

구 분	내 용
사업명	▪ 세종형 여성친화기업 인증제
사업기간	▪ 2024.2.~2024.12.
인증방식	▪ 공모방식
추진방법	▪ 2023년 10월 차년도 사업 추진 계획 수립 및 정책 홍보 시작, 세종형 여성친화기업 인증을 위한 협의체(또는 위원회) 구성 ⇒ 2024년 1월 세종형 여성친화기업 인증제도 홍보, 여성친화기업컨설팅트단 교육 실시 ⇒ 2024년 3월~4월 모집 및 공고, 신청 접수 ⇒ 현지실사 및 보고서 작성(5월) ⇒ 면접심사 및 선정 (6월) ⇒ 인증 및 협약식 개최(7월) ⇒ 사업비 지원(8월) ⇒ 정산 등 사후관리 개시(9월~12월)
심사방법	▪ 세종형 여성친화기업인증 심사위원회 구성 후 심사 - 서류평가, 현장실사(현장실사평가표, 실사보고서), 인증기업 선정을 위한 최종심의
기업선정	▪ 4개 이내 기업 선정 - 관내 기업 등록 후 3년 이상 운영 을 한 10인 미만 사업체 중 여성 근로자 30% 이상인 기업 - 관내 기업 등록 후 3년 이상 운영 을 한 10인 이상 사업체 중 여성 근로자 30% 이상인 기업 *자격제한 요건: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사업장(예: 퇴직금 미지급, 중대재해사업장, 산재사고, 임금체불 등), 사회적·윤리적 문제를 일으킨 기업, 소비항락업체, 근로자파견·용역업체, 보조금 운영 사업장, 여성친화기업으로 선정된 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시범사업 단계 제안] 제도 시행 초기에는 새일센터의 여성친화일촌협약 체결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정하여 모집 및 선정을 추진해 볼 것을 제안함
혜택	2. 여성가족과의 직접 추진으로 가능한 혜택 ▪ 여성친화기업 인증 후 인증현판 수여 ▪ 여성친화기업 인증 사업체 홍보 ▪ 기업환경개선 사업비(시비 100%, 지방보조금사업) - 기업환경개선의 범주: 중장기적으로 다양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음 - (예시) 복리후생을 위한 물품 및 예술문화 향유 기회 지원, (가칭) 실내형 정원사업 추진을 통해 실내공기정화식물 등을 제공하고, 찾아가는 가드닝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혜택 ※ 제공 혜택 중 일부만을 원하는 사업체의 경우, 혜택 포기에 대한 양해각서를 작성하도록 조치해야 함 - 기업환경개선사업비에 대한 자부담율 적용: 20% ※ 단, 기업환경개선사업비 지원 거부 사업체의 경우, 별도의 지침을 만들어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중·장기적) 육아휴직 업무대행자 수당 지원

구 분	내 용
	<p>2. 타 부서와 협업 추진으로 가능한 혜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기업지원과 협의 필요) ▪ 인력 지원(기업지원과 협의 필요) ▪ 자금 지원(기업지원과 협의 필요) ▪ 세종시공정일터인증제 신청 시 가점(기업지원과 협의 필요)
소요예산	<p>■ 단계적 예산 증액이 필요함</p> <p>[1단계] 시범사업 단계: 1,600만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증현판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5만원×4개 = 220만원 2. 기업환경개선 사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0만원×4개 사업체 = 1,200만원 3. 타 부서와 협업 추진으로 가능한 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요예산 산출 불가 4. 사업 운영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판식, 심사비 등 운영비 180만원 <p>[2단계] 안정화 단계: 2,800만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증현판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0만원×6개 = 360만원 2. 기업환경개선 사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0만원×6개 사업체 = 1,800만원 3. 타 부서와 협업 추진으로 가능한 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요예산 산출 불가 4. 사업 운영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판식, 심사비, 인증 기업 사후관리 등 운영비 400만원 ▪ 제도 확산을 위한 인증 기업 네트워크 구축 사업 240만원

□ 세부 사업 추진계획 제언

- 여성친화기업인증제의 추진은 반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참여단의 참여를 기초로 관내 여성정책 추진 기관 또는 전문가와의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로 이루어져야 함
- 이는 일반적인 기업 인증제도와 세종형 여성친화기업인증제가 갖는 차별성이자 구별된 정책목표의 실현을 위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음



[그림 5-1] 세종형 여성친화기업인증제 추진을 위한 추진주체 및 협력거버넌스 체계

- 제도 시행을 위한 주요 구성원별 역할을 다음 [표 5-2]와 같이 제시하는 바임
 - 추진 주체: 세종시 여성가족과, 여성새일센터(중간조직)
 - 운영 방식: 시 직영 방식
 - 협력거버넌스: 세종시 여성 일자리협의체,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민참여단, 세종여성플라자, 세종시 관내 유관기관
- “(가칭) 세종형 여성친화기업컨설팅트단” 창설 및 운영에 필요한 교육활동은 여성친화기업인증제의 예산편성 시 교육기능에 대한 재원 배분이 어려울 경우, 세종여성플라자의 교육기능을 활용하여 협업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함
 -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민참여단 활동 유경력자를 대상으로 여성친화기업 컨설팅 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참여의 기회 모색
 - 2023년 9월~10월 세종시 예산편성 결과에 따라 세종시와 새일센터, 그리고 세종여성플라자 간 재논의가 필요한 사항임

[표 5-2] 제도 시행을 위한 주요 구성원별 역할

부서 및 기관		역할(제안 예시)	
세 종 시	여성가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 주체 - 여성친화기업 인증 제도 시행계획 수립 - 공고 및 홍보 - 여성근로자 근로환경개선사업 추진 - 여성친화기업 지원 - 언론매체 홍보로 인증기업 이미지 향상 	
	기업 지원 과	기업 지원 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애로사항 지원, 중소기업육성기금 ▪ 대상 중소기업 현황 제공 및 발굴 지원
		노사 협력 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종형 공정일터 인증제도 연계
		사회적 경제 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 현황 제공 및 발굴 지원
세종여성새로일하기 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 및 접수, 인증기업 관리 등 중간거점조직 	
세종형 여성친화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종형 여성친화기업 컨설팅 지원(공모지원, 운영 지원 등) 	

부서 및 기관	역할(제안 예시)
컨설턴트단 (세종여성플라자)	▪ 역량강화교육기관: 세종여성플라자
여성친화도시 컨설턴트	▪ 여성친화기업 인증 제도 설계 및 운영 전반에 걸친 자문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 여성친화인증 기업 모니터링
세종시 여성 일자리 협의체 9명(당연직 2명, 위촉직 7명/남 4명, 여 5명)	▪ 여성친화기업 인증 제도 설계 자문 및 현장실사, 모니터링, 인센티브 발굴 및 연계 ▪ 우수기업 추천 및 홍보 - 세종시 여성가족과장 및 여성정책담당, 기업지원과 기업 정책담당,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여성플라자, 세종지역인적 자원개발위원회,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일·생활균형 대전·세종지역 추진단, 사회적협동조합 대표로 구성

○ 세종형 여성친화기업인증 신청접수 방식

- (접수 방식) 방문접수 또는 우편 접수
- (제출서류) 세종형 여성친화기업 인증을 위한 신청서, 기업의 여성친화도
점검표, 여성친화적 기업문화 및 환경조성을 위한 계획서(① 차별 없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② 경력단절 예방이 가능한 근무환경과 ③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기업문화 및 환경 조성을 위한 계획서)

○ 세종형 여성친화기업인증을 위한 현장실사

- (기간) 2024년 4월~5월(실사단 구성은 2월경)
- (구성) 5명 이내(세종시 여성가족과, 세종시 여성일자리협의체 위원,
시민참여단 등)
- (실사평가표) 세종형 현장실사평가표(세종특별자치시 여성친화도시 공공시설
가이드라인을 활용한 공간 점검, 사업목적별 평가 기준 등으로 마련할 것)를
활용한 현장조사
- (실사결과 보고서 작성) 최종 심의를 위한 현장실사보고서 작성(여성가족과)

○ 세종형 여성친화기업인증심사위원회 구성 및 면접심사

- (구성 시기) 2월경

- (면접심사 시기) 6월경
- (역할) 최종 세종형 여성친화기업 인증 심사 및 선정
- (인원) 세종시 여성 일자리 협의체 구성원 및 외부 전문가,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민참여단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
- (평가항목) 세종형 여성친화기업 인증을 위한 신청서, 기업의 여성친화도 점검표, 여성친화적 기업문화 및 환경조성을 위한 계획서 및 현장실사보고서를 고려하여 심사표 고득점 순으로 4개 기업 선정
- 세종형 여성친화기업 인증 및 협약식 개최
 - (개최 시기) 7월경
 - (협약유효기간) 협약일로부터 2년
 - (내용) 협약서 교환 및 여성친화기업 인증현판 수여
- 세종형 여성친화기업 사업비 지원
 - (지원 시기) 8월경
 - (지원 예산) 인증제도 운영비를 포함하여 사업비 적정예산은 5,000만원 정도라고 판단됨
 - (지원 내용) 현판 제작비용(720만원, 4개 기업), 기업환경개선 사업비 지원(4,000만원, 4개 기업), 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운영비(280만원: 심사 수당, 여성친화기업인증제도를 위한 협의체 구성에 소요되는 회의비 등)
 - (보조금 정산 및 사후관리) 9월~12월
- 세종형 여성친화기업 홍보 등 기타 행정사항

- <서식2. 세종형 여성친화기업 인증을 위한 기업의 여성친화도 점검표(안)>은 다음 [표 5-4]과 같음
 - 여성친화기업인증 심사를 받기 위한 서류 심사용 서식임.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여성친화도를 점검할 수 있는 점검표임
 - 사업주는 점검 항목에 대한 응답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표 5-4] <서식2. 세종형 여성친화기업 인증을 위한 기업의 여성친화도 점검표(안)>

구 분	지 표	점 검 항 목				
기본사항	재직자 현황 (2023년 12월 말 기준)	여성 근로자 수		(명)		
		남성 근로자 수		(명)		
		전체 근로자 수		(명)		
		관리자 현황	임원급 이상	소계	(명)	
	여성		(명)			
	팀장급 이상	소계	(명)			
여성	(명)					
	전체근로자 중 여성근로자 비율	30%이상 <input type="checkbox"/>		30%미만 <input type="checkbox"/>		
	전체 여성근로자 중 정규직 비율	20%이상 <input type="checkbox"/>	15%이상 <input type="checkbox"/>	10%이상 <input type="checkbox"/>	5%이상 <input type="checkbox"/>	5%미만 <input type="checkbox"/>
차별 없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고용평등을 위한 사내 운영 규정 유무	있다 <input type="checkbox"/>		없다 <input type="checkbox"/>		
	세종시 생활임금* 준수 여부	100% <input type="checkbox"/>	95%이상 <input type="checkbox"/>	90%이상 <input type="checkbox"/>	85%이상 <input type="checkbox"/>	85%미만 <input type="checkbox"/>
	최근 3년간 경력단절** 유경험 여성 채용 현황	있다 <input type="checkbox"/>		없다 <input type="checkbox"/>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예방지침 및 교육 시행	지침 및 교육 운영(둘 다) <input type="checkbox"/> 지침 또는 교육 운영(둘 중 하나) <input type="checkbox"/> 미운영 <input type="checkbox"/>				
	최근 3년간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있다 <input type="checkbox"/> 없다 <input type="checkbox"/>	전체		(명)	
경력단절 예방이 가능한 근무환경	출산휴가제 및 배우자 출산휴가제 운영	전부운영 <input type="checkbox"/> 일부운영 <input type="checkbox"/> 미운영 <input type="checkbox"/>	전체		(명)	
		여성	(명)			
	육아휴직	전부운영 <input type="checkbox"/> 일부운영 <input type="checkbox"/> 미운영 <input type="checkbox"/>	전체		(명)	
		여성	(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부운영 <input type="checkbox"/> 일부운영 <input type="checkbox"/> 미운영 <input type="checkbox"/>	전체		(명)	
		여성	(명)			

구 분	지 표	점 검 항 목				
	여성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추진 여부(교육기회 부여)	운영 <input type="checkbox"/>		미운영 <input type="checkbox"/>		
	직장밖을 위한 연계협력사업 추진 여부	직장밖 지원센터, 새일센터와의 업무협약		있다 <input type="checkbox"/> 없다 <input type="checkbox"/>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기업문화 및 환경 조성	최근 3년간 유연 근무 제도 운영 현황	시간선택제	운영 <input type="checkbox"/>		미운영 <input type="checkbox"/>	
		시차출퇴근제	운영 <input type="checkbox"/>		미운영 <input type="checkbox"/>	
		선택근무제	운영 <input type="checkbox"/>		미운영 <input type="checkbox"/>	
		재량근무제	운영 <input type="checkbox"/>		미운영 <input type="checkbox"/>	
		재택근무제	운영 <input type="checkbox"/>		미운영 <input type="checkbox"/>	
	근로자의 성별 유연근무제 활용률	유연근무제 이용자 중 남성 비율	%	유연근무제 이용자 중 여성 비율	%	
	가족 문화체육행사, 여가활동 등 지원에 관한 프로그램 운영	운영 <input type="checkbox"/>		미운영 <input type="checkbox"/>		

주*: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주**: 육아휴직 후 복귀자, 새일센터 새일인턴 채용 후 지속고용인 신규채용이나 이전 직장에서 경력단절 유경험자 모두 포함

○ <서식3. 세종형 여성친화기업 인증을 위한 현장실사 평가지표(안)>은 다음 [표 5-5]과 같음

- 현장실사 평가지표는 여성친화도 점검표(안)를 기초로 하되, 실사를 통해 심사자들이 파악할 수 있는 다음의 항목을 추가할 것을 제안함
- 첫째, ‘경력단절 예방이 가능한 근무환경’을 파악하기 위하여, 세종시의 여성친화도시 공공시설 가이드라인을 고려한 근무환경 평가를 실시(10인 이상 사업체만 해당)
- 둘째, 경영진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기업경영 인식도를 살펴보기 위한 경영진 인터뷰 실시
- 세종형 여성친화기업 인증을 위한 현장실사평가표의 경우, 10명 이상 사업체(<서식3-1>)와 10명 미만 사업체(<서식3-2>) 간 차등을 두어 지표와 배점을 선정할 필요가 있음

[표 5-5] <서식3-1. 세종형 여성친화기업 인증 현장실사 평가 지표(10인 이상)>

구 분	항 목	배점
사업체 기본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활동현황: 재직자현황(성별 근로자 및 관리자 현황), 전체근로자 중 여성근로자 비율, 전체여성 근로자 중 정규직 비율 	없음
① 차별 없는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4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임원 유무 20%이상 □ 10%이상 □ 10%미만 □ 	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평등을 위한 사내 운영 규정 유무 	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종시 생활임금 준수 여부 	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간 경력단절 유경험 여성 채용 현황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예방지침 및 교육 시행 	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간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 있음: 5점 - 정규직 전환 여성비율: 50%이상 5점, 40%이상 4점, 30%이상 3점, 20%이상 2점, 20%미만 1점 	10점
② 경력단절 예방이 가능한 근무환경(3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 및 양육지원제도 운영 ① 출산휴가제 및 배우자 출산휴가제 운영 ① 육아휴직 ② 육아기근로시간단축 ③ 그 외 사업체 개별 지원 제도 유무 *①~③의 경우, 대상자 부재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점수 배정하지 않음 	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추진 여부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맘을 위한 연계협력사업 추진 여부 	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친화도시 공공시설 가이드라인을 고려한 근무환경 평가 • 여성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CCTV (CPTED) 설치(3점) • 여성휴게실 설치(3점) • 화장실 내 여성편의시설 및 안심벨 설치(4) 	10점
③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기업문화 및 환경 조성(3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간 유연근무제도 운영현황 ① 시간선택제 ② 시차출퇴근제 ③ 선택근무제 ④ 재량근무제 ⑤ 재택근무제 ⑥ 근로자의 성별 유연근무제 활용률(남녀의 균형있는 유연근무제 활용정도를 평가하여 점수평가) *①~⑤의 경우, 대상자 부재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점수 배정하지 않음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문화체육행사, 여가활동 등 지원에 관한 프로그램 운영 여부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진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기업경영 인식도 	10점

[표 5-6] <서식3-2. 세종형 여성친화기업 인증 현장실사 평가 지표(10인 미만)>

구 분	항 목	배점
사업체 기본현황	■ 경제활동현황: 재직자현황(성별 근로자 및 관리자 현황), 전체근로자 중 여성근로자 비율, 전체여성 근로자 중 정규직 비율	없음
① 차별 없는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40점)	■ 세종시 생활임금 준수 여부	10점
	■ 최근 3년간 경력단절 유경험 여성 채용 현황	10점
	■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예방지침 및 교육 시행	10점
	■ 최근 3년간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 있음: 5점 - 정규직 전환 여성비율: 50%이상 5점, 40%이상 4점, 30%이상 3점, 20%이상 2점, 20%미만 1점	10점
② 경력단절 예방이 가능한 근무환경(30점)	■ 출산 및 양육지원제도 운영 ① 출산휴가제 및 배우자 출산휴가제 운영 ② 육아휴직 ③ 육아기근로시간단축 ④ 그 외 사업체 개별 지원 제도 유무 *①~③의 경우, 대상자 부재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점수 배정하지 않음	5점
	■ 여성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추진 여부	5점
	■ 직장맘을 위한 연계협력사업 추진 여부	10점
③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기업문화 및 환경 조성(30점)	■ 최근 3년간 유연근무제도 운영현황 ① 시간선택제 ② 시차출퇴근제 ③ 선택근무제 ④ 재량근무제 ⑤ 재택근무제 ⑥ 근로자의 성별 유연근무제 활용률(남녀의 균형있는 유연근무제 활용정도를 평가하여 점수평가) *①~⑤의 경우, 대상자 부재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점수 배정하지 않음	10점
	■ 가족 문화체육행사, 여가활동 등 지원에 관한 프로그램 운영 여부	10점
	■ 경영진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기업경영 인식도	10점

- <서식4. 세종형 여성친화기업 인증을 위한 여성친화적 기업문화 및 환경조성을 위한 계획서> 양식은 다음 [표 5-7]과 같음
 - 여성친화기업인증 후 기업환경개선지원금 예산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체의 경우, 계획서와 함께 예산지출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

[표 5-7] <서식4. 세종형 여성친화기업 인증을 위한 여성친화적 기업문화 및 환경조성을 위한 계획서>

여성친화적 기업문화 및 환경조성을 위한 계획서 (○○○○회사)	
1. 세종형 여성친화기업 인증을 위한 기업의 여성친화도 점검표(정량) 결과에 따른 개선 계획	
구 분	진단결과에 따른 개선 계획
① 차별없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진단(문제점) ■
	개선 계획 ■
② 경력단절 예방이 가능한 근무환경	진단(문제점) ■
	개선 계획 ■
③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기업문화 및 환경 조성	진단(문제점) ■
	개선 계획 ■
2. 여성친화기업 인증에 따른 기업문화 및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 계획 또는 물품 설치에 따른 활용계획	
1. 주요사업 내용	
○	
○	
2. 소요사업비: 원 · 견적서 첨부 ※ 자부담 비율: 사업비의 20%이상	
○ 총금액: 원(보조금 원, 자부담 원)	
3.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	

4. 사업대상 사진

사업전 장면	사업전 장면
장소명칭(예:여성화장실)	장소명칭
사업전 장면	사업전 장면
장소명칭	장소명칭

2절 정책 제언

1. 세종시 여성노동시장의 성별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

- 세종시의 지역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성별격차의 특성에 따른 시사점
 - (총평) 양성평등한 일자리 확대, 여성의 경력유지 및 재취업 확보를 위한 세종시의 정책적 의지를 담아낼 정책설계가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됨. 따라서 세종형 여성친화기업인증제 추진의 타당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됨
 - 남성에 비하여 낮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 마련이 요구됨
 - 특히, 성별 임금 격차의 수준이 전국에 비하여 크게 나타나고 있어 성별임금격차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됨
 -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50번.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의 실현을 위하여 단계적인 ‘성별근로공시제’를 내세워 양성평등 일자리 기반 조성을 추진할 계획에 있음
 - 따라서 세종시 차원에서도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세종시의 경력단절여성 비율은 이미 전국 평균 수준을 상회하며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어 여성의 경력유지와 재취업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비율과 여성 집중도를 고려한 정책 과제
 - 세종시의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비율과 여성 집중도를 고려할 때, 소규모 사업체 중심의 여성친화기업인증제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짐. 이러한 운영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시의회와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정책적 관심이 요구됨
 - 세종시 산업분류별 종사자 집중도를 검토한 결과를 보면, 10인 미만의 사업체에 여성이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나타남

□ 산업단지 현황 및 관내 여성기업 현황에 따른 시사점

- 세종시 산업단지 조성 계획 및 지원 정책과의 연계 필요
 - 일반산업단지 중에서도 첨단산업단지의 여성 고용률이 높게 나타난 것은 세종시에 조성 중인 ‘도시첨단산업단지’를 통해 매력적인 여성 일자리 공급의 기회를 준비할 수 있음을 시사함(최성은, 2023)
 - 직업훈련프로그램 마련 시 산업단지 입주 기업이 요구하는 사항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마련이 필요하며, 동시에 일자리 정보 제공을 위한 홍보를 확대·강화할 필요가 있겠음
- 세종시 여성기업 지원 제도와의 연계 강화 필요
 - 법률적 제도 기반이 튼튼한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과 상대적으로 법률적인 제도적 기반이 미약한 여성친화기업인증제의 연계를 도모한다면, 인력난 해소와 여성창업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제도 간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갈 것으로 기대됨
 - 예시: 여성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연계 활성화,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및 연속 고용 시 여성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여성기업의 여성친화기업인증 활성화 추진을 통해 특화된 근무환경(예: 실내 정원 조성) 제공 등
 - 예시: 여성벤처협회 및 여성경제인협회 세종지회 등과의 연계를 통해 여성기업인 간담회 지속 추진, ‘선배’ 여성기업의 ‘후배’ 여성기업 지원이 가능한 사회공헌 기회 제공 등

2. 세종시 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환경 개선 측면

□ 세종시 조례 개정안 제안

-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제11조의2(여성친화기업 인증제 실시) 조문을 추가할 것을 제안함
 - 조례 개정안 예시는 다음의 [표 5-8]과 같음([부록 표 1-4]참고)

[표 5-8] 세종시 여성친화기업인증제 운영을 위한 조례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p>*세종시의 경우, 여성친화기업 인증에 관한 사항은 부재함</p> <p>제11조(여성능력개발의 효율화)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여성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들을 서로 연계하여 생활권별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역량 강화 사업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정 및 직장과 사회교육기관 간 연계를 통한 여성일자리 창출·창업 지원 2. 시설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생활 근접형 교육훈련 지원 3. 사회교육 정보의 제공과 상담 4. 직장인의 학습 기회 확충 5. 여성친화기업의 증대 	<p>좌동</p>
<p>신설</p>	<p>제11조의2(여성친화기업인증제 실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시장은 차별 없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증진하고, 경력단절 예방이 가능한 근무 환경 조성 및 일·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기업문화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여성친화기업 인증제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증된 여성친화기업이 여성친화적인 기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생산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세종시 여성친화기업인증제 운영을 위한 조직·인력 활용 방안

-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성별영향평가제도 등의 운영도 함께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시 직영으로 여성친화기업인증제를 추진할 경우,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세종시의 여성친화기업인증제의 홍보를 활성화하고 추진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사회 네트워크와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함
 - (인력 측면에서의 보충적 자원으로 활용) 세종시 주무부서의 부족한 인력 보완을 위하여 유관 기관 중 중간거점조직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예산 측면에서의 보충적 자원으로 활용) 세종시 여성친화기업인증제 사업예산 편성이 건전재정 기조로 인하여 최소화될 경우, 유관 기관의 사업과 연계 추진을 통해 보완 시도한다면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홍보 및 참여도 제고를 위한 보충적 자원으로 활용) 홍보 및 참여도 제고를 위하여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세종시 여성친화기업인증제 운영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 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종류: 양성평등기금, 일반회계임
- 세종시의 2023년 재정기조를 고려하고, 양성평등기금사업이 이자분에 한하여 공모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반회계를 활용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여겨짐
 - 예산편성액의 수준을 정할 때, 세종시 재정기조 및 경제·산업적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타 지역 사례를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세종형 여성친화기업인증제 신설·운영을 위한 전략적 방향 제시

Cross-SWOT분석을 통한 전략적 방향 제시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width: 45%; text-align: center;"> <h3>외부환경</h3> </div> <div style="width: 45%; text-align: center;"> <h3>내부환경</h3> </div> </div>	<h3>외부위협(Threats)</h3>
<h3>외부기회(Opportunities)</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가족부 지정 여성친화도시 2단계 진원에 따른 시행 조치 • 중앙정부는 양성평등 일자리 기반 조성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정과제 50번,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의 일환으로 단계적인 성별근로공시제 추진을 계획함 • 세종스마트국가산단 조성 등 산업단지 조성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재정 기초가 '간접재정'을 강조하여 세종시 역시, 재정 간접성을 위한 사업예산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 • 가족친화기업인증 등 기존 유사한 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높아, 여성친화기업인증제도의 추진탄력성이 위협받을 수 있음 • 중점 또는 중박성이 높은 인증제도로 인식될 수 있으며, 제도의 취지 등에 따른 혼동으로 인해 기업주의 관심과 참여율이 낮아질 수도 있음
<h3>내부강점(Strength)</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장의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경제활동참여에 대한 강력한 의지: 직장맘지원센터, 설치·운영, 세종여성플라자·설치·운영 • (인력 측면의 강점)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진담 인력 배치로 정책 추진의 전문성과 안정성 제고 • (지역사회 네트워크)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구성점으로 활동 중인 세종여성플라자와 여성친화일촌협약 등 유사 사업을 추진해 온 여성새일센터, 장년센터 등과의 협업 활성화 	<h3>우회전략(ST전략)</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 전략 1. 세 초 여성플라자의 기능 중 교육 기능을 여성친화기업인증제도와 연계하여 여성친화기업인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컨설팅(상담사) 육성 후 여성친화기업 지원을 위한 인력으로 배치 • ST전략2. 여성친화기업인증제도의 홍보를 위해 세종새일센터와 세종여성플라자, 장년센터 등과의 업무협약 체결
<h3>내부약점(Weakness)</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의 경제활동 실태)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경력단절여성 비율과 지속적인 증가세, 생활임금격차, 긴 노동시간 • (경제·산업 특성) 소규모 사업체가 다수를 점함. 여성 종사자의 집중도가 높게 나타나는 사업체는 10인 미만 종사자 규모의 사업체 • (지원업무) 여성친화기업인증을 위한 조문을 포함하여 조제개강 필요 • (인력축면) 시의 진담 인력 1명에 그쳐 여성친화기업인증제도 운영인력 보강 필요 • (예산의 충분성 부족) 세종시의 간접재정 기초로 충분한 사업예산 편성 여력을 전담임 	<h3>방어전략(WT전략)</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T전략1. 여성친화기업인증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경영주에 대한 지역사회 내 공헌활동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WT전략2. 사후관리의 지속성을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민참여단과의 협업체계 마련 • WT전략3. 시의 역점사업(예: 장원도시 산업, 지역농산물 판매 등)과 연계할 수 있는 권·관 인센티브 발굴 - 예시: 인증기업 대상 실내 정원 조성 및 가드닝 서비스 제공 - 예시: 인증기업 대상 지역농산물 간식 제공
<h3>역량강화(WO전략)</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O전략1. '세종특벌'까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여성친화기업인증제도에 대한 제도화 수준을 제고(사후관리 강화 및 인증제도에 대한 공신력 높이기 전략 마련) • WO전략2. 신규 조성된 산업단지 내 사업체의 여성친화기업 인증을 활성화하여, 비경제활동상태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기업홍보 강화 • WO전략3. 여성친화기업인증 대상 기업들을 대상으로 인센티브 수요 조사 실시 	<h3>역량강화(WO전략)</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O전략1. '세종특벌'까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여성친화기업인증제도에 대한 제도화 수준을 제고(사후관리 강화 및 인증제도에 대한 공신력 높이기 전략 마련) • WO전략2. 신규 조성된 산업단지 내 사업체의 여성친화기업 인증을 활성화하여, 비경제활동상태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기업홍보 강화 • WO전략3. 여성친화기업인증 대상 기업들을 대상으로 인센티브 수요 조사 실시

[그림 5-2] 세종형 여성친화기업인증제 신설·운영을 위한 전략적 방향 제시

3. 세종형 여성친화기업인증제 제도화 수준 제고 방안

□ 세종시 여성친화기업인증제 운영의 합목적성 제고 방안

- (가칭) 세종형 여성친화기업인증을 위한 정책포럼 개최를 통해 여성친화도시 세종시의 '여성 경제·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친화기업인증제 필요성에 대한 공론화 계기 만들어야 함
 - 세종시에서 분절되어 추진되고 있는 일·생활균형, 기업인 지원, 직장맘지원 등 유관 사업 추진 단체와 기관과의 '세종형 여성친화기업인증을 위한 정책포럼 개최'를 제안함
- 세종시 여성일자리협의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운영의 합목적성을 높여야 함
 - 세종시 여성일자리협의체는 민관협력 체계로서 지역 현황에 맞는 여성 일자리 발굴을 위한 실효성 있는 논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하고 있음
 - 따라서 여성친화기업인증제 운영에 있어 여성 일자리 협의체를 적극 활용하여 세종시 지역 현황에 필요한 여성 일자리 발굴 활성화 전략을 추진해야 함

□ 세종시 여성친화기업인증제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방안

- (자치법규)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여성친화기업인증제 실시에 필요한 법적 근거 마련
- (조직·인력) 세종시 주무부서의 부족한 인력 보완을 위하여 중간거점조직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
 - 세종새일센터를 중간거점조직으로 선정함과 동시에 사업에 필요한 프로그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세종여성플라자와의 적극적인 연계 방안 마련
 -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한 홍보 방안 모색
- (대상 기업 선정) 제도 시행 초기에는 새일센터의 기존 여성친화일촌협약 체결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정하여 모집 및 선정을 추진해 볼 것을 제안함

- 시의 역점사업(예: 정원도시 산업, 지역농산물 판매 등)과 연계할 수 있는 원-원 인센티브 발굴 필요
 - 예시: 인증기업 대상 실내 정원 조성 및 가드닝 서비스 제공
 - 예시: 인증기업 인센티브로 지역농산물 간식 제공 등

□ 세종시 여성친화기업인증제 운영의 충분성 제고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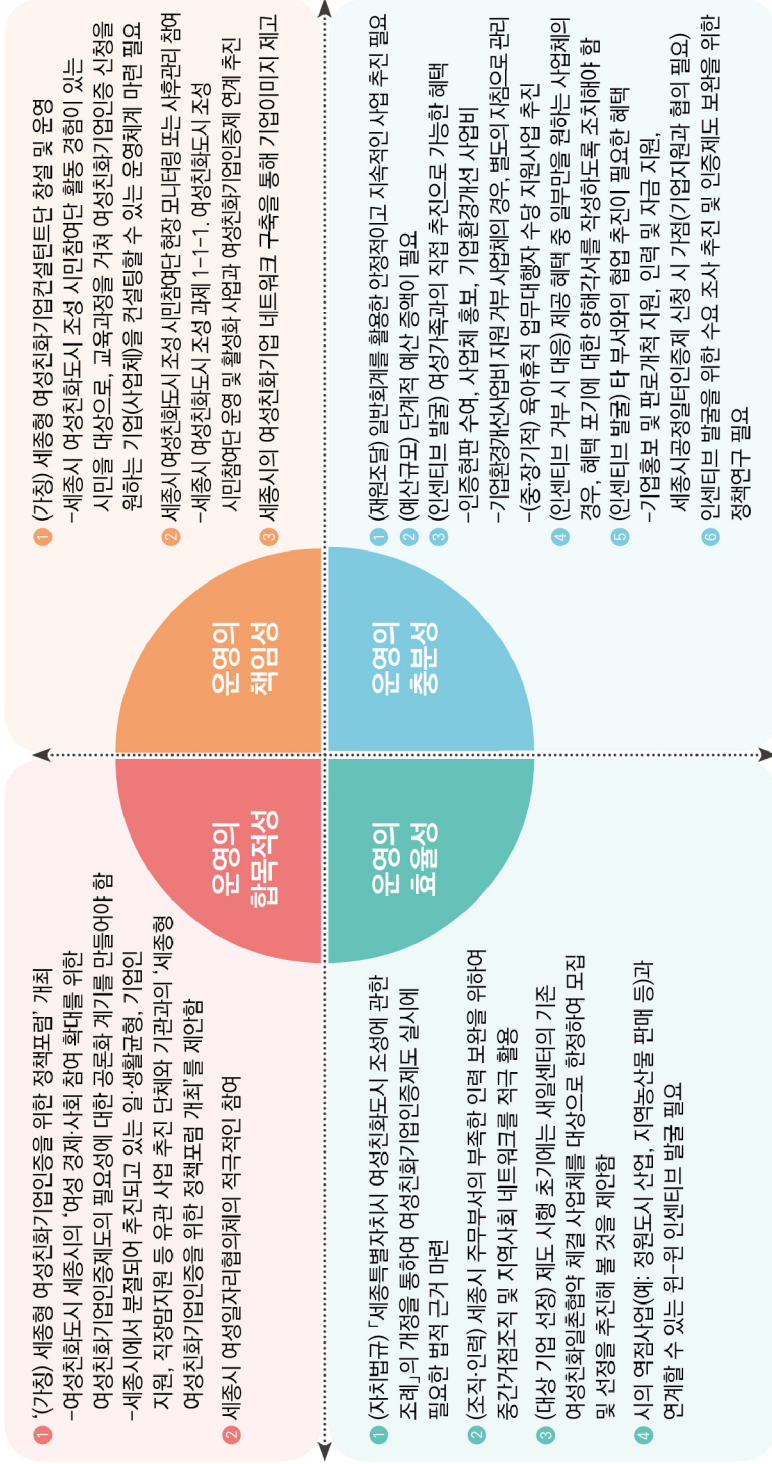
- (재원조달) 일반회계를 활용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 필요
- (예산규모) 단계적 예산 증액이 필요
 - [1단계] 시범사업 단계: 1,600만원
 - [2단계] 안정화 단계: 2,800만원
- (인센티브 발굴) 여성가족과의 직접 추진으로 가능한 혜택
 - 여성친화기업 인증 후 인증현판 수여, 여성친화기업 인증 사업체 홍보, 기업환경개선 사업비(시비 100%, 자부담 20% 이하)
 - 기업환경개선사업비 지원 거부 사업체의 경우, 별도의 지침을 만들어 관리할 필요가 있음
 - 기업환경개선의 범주는 중·장기적으로 다양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음
 - (예시) 복리후생을 위한 물품 및 예술문화 향유 기회 지원, (가칭) 실내형 정원사업 추진을 통해 실내공기정화식물 등을 제공하고, 찾아가는 가드닝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혜택
 - (중·장기적) 육아휴직 업무대행자 수당 지원을 통해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인센티브 체계 마련 필요
- (인센티브 거부 시 대응) 제공 혜택 중 일부만을 원하는 사업체의 경우, 혜택 포기에 대한 양해각서를 작성하도록 조치해야 함
- (인센티브 발굴) 타 부서와의 협업 추진이 필요한 혜택
 - 기업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기업지원과 협의 필요)
 - 인력 지원(기업지원과 협의 필요)
 - 자금 지원(기업지원과 협의 필요)
 - 세종시공정일터인증제 신청 시 가점(기업지원과 협의 필요)

- (인센티브 발굴) 대상 사업체가 원하는 인센티브 발굴을 위한 수요 조사 추진
- (인증제도 보완을 위한 정책연구) 인증제도 운영에 따른 개선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인증 결과와 이행과정에 따른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연구 지원이 필요함

□ **세종시 여성친화기업인증제 운영의 책임성 제고 방안**

- (가칭) 세종형 여성친화기업컨설팅트단 창설 및 운영
 - 세종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민참여단 활동 경험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거쳐 여성친화기업인증 신청을 원하는 기업(사업체)을 컨설팅할 수 있는 운영체계 마련 필요
 - 세종여성플라자의 기능 중 ‘여성의 능력개발, 취·창업 지원을 위한 전문교육 및 컨설팅’, ‘양성평등 교육 및 홍보’에 근거하여 사업을 추진해 볼 것을 제안함
- 세종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민참여단 현장 모니터링 또는 사후관리 참여
 - 세종시 여성친화도시 조성과제 1-1-1.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민참여단 운영 및 활성화 사업과 여성친화기업인증제 연계 추진
 - (추진방법 예시) 세종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대표 성과물 중 하나인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친화도시 공공시설 가이드라인>을 적극 활용한 시민참여단 기업현장 모니터링 추진
 - (추진방법 예시) 인증식 이후 사후관리에 필요한 모니터 활동에 적극 참여
- 세종시의 여성친화기업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기업이미지 제고
 - 인증을 받은 기업들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경영주에 대한 지역사회 내 공헌활동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세종청년센터 등을 통하여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에게 세종시에 여성친화 기업을 홍보하여, 구인-구직 수요 매칭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세종형 여성친화기업인증제 제도화 수준 제고 방안



[그림 5-3] 세종형 여성친화기업인증제 제도화 수준 제고 방안

참고문헌

- 광주광역시 서구(2023), <2021년 기준 사업체 조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내부자료(2022), <2022 여성친화기업 선정 계획>.
- 세종시 경제산업국 기업지원과 노사협력담당 내부자료(2023), <세종형 공정일터 인증제 추진현황>.
- 세종시청 경제산업국 기업지원과 내부자료(2023), <2023년 여성기업 역량강화사업 추진계획(안)> 및 <참고1. 여성기업인 역량강화사업 실적 및 현황>.
- 세종특별자치시 여성가족과 내부자료(2023), <2023년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행계획>.
-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2023), <2023년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지침>.
- 인천광역시 내부자료(2023), <2023년 인천형 여성친화기업 육성지원계획(안)>.
- 최성은 외(2022), <세종시 경력보유 여성을 위한 일자리 대응 정책연구>, 대전세종연구원.
- 최성은(2023), '세종특별자치시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단지 역할과 과제', <지역혁신과 산업단지의 동행: 충청권 편>, 한국산업단지공단.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대전여성인력개발센터 홈페이지(<https://www.djob.or.kr>)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www.ffsb.kr/>)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www.kosis.kr

부 록

■ 총괄 현황 : 지역별 고용조총사 각 연도 하반기 데이터 분석

[부록 표 1-1] 2020년 하반기 성별 경제활동인구 특징(전국 vs. 세종시)

항 목	전 국			세 종		
	합	남	녀	합	남	녀
15세이상인구 (천명)	44,853	22,067	22,785	291	145	146
경제활동인구 (천명)	28,117	16,060	12,056	187	110	77
비경제활동인구 (천명)	16,736	6,007	10,729	104	35	69
경제활동참가율(%)	62.7	72.8	52.9	64.2	75.6	52.8
고용률(%)	60.4	70.0	51.1	63.0	74.3	51.9
실업률(%)	3.7	3.8	3.5	1.8	1.8	1.8

자료: 통계청「지역별고용조사」, 2020~2022년 하반기 시도/성별 경제활동인구 총괄(자료
인출일: 2023년 6월 15일)

[부록 표 1-2] 2021년 하반기 성별 경제활동인구 특징(전국 vs. 세종시)

항 목	전 국			세 종		
	합	남	녀	합	남	녀
15세이상인구 (천명)	45,148	22,226	22,923	299	149	150
경제활동인구 (천명)	28,528	16,187	12,341	191	112	79
비경제활동인구 (천명)	16,620	6,039	10,581	108	37	71
경제활동참가율(%)	63.2	72.8	53.8	63.7	74.9	52.6
고용률(%)	61.4	70.8	52.4	62.9	74.0	52.0
실업률(%)	2.8	2.8	2.7	1.3	1.3	1.2

자료: 통계청「지역별고용조사」, 2020~2022년 하반기 시도/성별 경제활동인구 총괄(자료
인출일: 2023년 6월)

[부록 표 1-3] 2022년 하반기 성별 경제활동인구 특징(전국 vs. 세종시)

항 목	전 국			세 종		
	합	남	녀	합	남	녀
15세이상인구 (천명)	45,302	22,294	23,009	315	156	158
경제활동인구 (천명)	29,110	16,463	12,648	205	120	85
비경제활동인구 (천명)	16,192	5,831	10,361	110	36	74
경제활동참가율(%)	64.3	73.8	55.0	65.1	77.0	53.4
고용률(%)	62.7	72.1	53.7	64.2	75.9	52.5
실업률(%)	2.4	2.4	2.4	1.5	1.4	1.7

자료 : 통계청「지역별고용조사」, 2020~2022년 하반기 시도/성별 경제활동인구 총괄(자료 인출일: 2023년 6월)

- 경제활동참가율: 전국은 2020년부터 2022년 3년간 62.7-63.2-64.3%로 상승 추세, 세종은 64.2-63.7-65.1로 2021년에 감소 후 2022년 상승.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전반적으로 높은 경제활동참가율 보임.
-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추세는 위와 비슷함. 2022년 기준으로 세종은 전국에 비해서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3.2%p 높은 것으로 나타나 최근 3년간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추세는 위와 비슷함. 문제는 전국 평균과의 격차가 벌어진다는 것임, 2020년은 전국 평균에 비해 -0.1%p, 2021년은 -1.2%p, 2022년은 -1.6%p 였음.
- 고용률: 전국은 60.4-61.4-62.7%로 상승 추세, 세종은 63.0-62.9-64.2%로 2022년 들어 상승. 세종시 남성의 고용률은 전국 평균과 비교해서 4.3-3.2-3.8%p 높은 편이나, 여성의 고용률은 2021년에 -0.4%p, 2022년에 -1.2%p 낮았음.
- 실업률: 전국은 3.7-2.8-2.4%로 하락 추세, 세종은 1.8-1.3-1.5%로 2021년에 낮았다가 2022년에 높아졌음. 세종시 남성의 실업률은 전국 평균과 비교해서 -2.0, -1.5, -1.0%p 낮은 편이나, 여성의 실업률은 -1.7, -1.5, -0.7%p 낮았음

[부록 표 1-4] 기초지방자치단체별 여성친화기업에 관한 조례 내용

구 분		조례* 내용
광역시도	기초단체	
서울특별시	강남구	제17조(여성의 취업·창업 활성화) 구청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기업 증대와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마포구	제17조(여성의 취업·창업 활성화) 구청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기업 증대와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서초구	제17조(여성의 취업·창업 활성화) 구청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기업 증대와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동대문구	제16조(여성의 취업·창업 활성화) 구청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기업 증대와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성동구	제16조(여성의 취업·창업 활성화) 구청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기업 확대와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취업, 창업 관련 정보제공과 상담 2. 사회적기업 양성을 통한 창업 지원 3. 여성친화기업 발굴 및 확산
	강동구	제14조(여성의 취업·창업 활성화) 구청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기업 증대와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종로구	제13조(여성의 취업·창업 활성화) 구청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기업 증대와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강북구	제9조(여성의 취업·창업 활성화) 구청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기업 증대와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강서구	제9조(여성의 취업·창업 활성화) 구청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기업 증대와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로구	제9조(여성의 취업·창업 활성화) 구청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기업 증대와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9조(여성능력개발 및 여성 취업·창업 활성화 지원) ① 구청장은 여성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기관과 연계하여 역량 강화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여성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네트워킹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여성인력을 주요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기업 확대 및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서구	제13조(여성능력개발 및 여성 취·창업 활성화 지원) ① 구청장은 여성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기관과 연계하여 역량 강화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다

구 분		조례* 내용
광역사도	기초단체	
		<p>② 구청장은 여성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네트워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③ 구청장은 여성인력을 주요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기업 확대 및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중구	<p>제15조(여성능력개발 및 여성 취·창업 활성화 지원)</p> <p>① 구청장은 여성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기관과 연계하여 역량 강화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다</p> <p>② 구청장은 여성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네트워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③ 구청장은 여성인력을 주요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기업 확대 및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동구	<p>제17조(여성의 취업·창업 활성화)</p> <p>구청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기업 증대와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미추홀구	<p>제18조(여성의 취업·창업 활성화)</p> <p>구청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기업 증대와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경기도	용인시	<p>제19조(여성의 취업·창업 활성화)</p> <p>시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기업 증대와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수원시	<p>제19조(여성의 취업·창업 활성화)</p> <p>시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기업 증대와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이천시	<p>제17조(여성의 취업·창업 활성화)</p> <p>시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기업 확대와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의왕시	<p>제16조(여성의 취업·창업 활성화)</p> <p>시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기업의 확대와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오산시	<p>제16조(여성의 취업·창업 활성화)</p> <p>시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기업 증대와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광주시	<p>제16조(여성의 취업·창업 활성화)</p> <p>시장은 여성 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기업 증대와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안산시	<p>제16조의2(여성의취업·창업활성화)</p> <p>시장은 여성 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성친화기업 증대와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20.></p>
	남양주시	<p>제15조(여성의 취업·창업 활성화)</p> <p>시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기업 증대와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구 분		조례* 내용
광역사도	기초단체	
	양주시	제15조(여성의 취업·창업 활성화) 시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 기업 확대와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취업, 창업 관련 정보제공과 상담 2.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을 통한 창업 지원 3. 여성친화기업 발굴 및 확산
	파주시	제14조(여성의 취업·창업 활성화) 시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가족 친화적 기업 증대와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취업·창업 관련 정보 제공과 상담 2. 여성 사회적경제 조직(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농촌 공동체 회사 등) 양성을 위한 창업 지원 3. 여성친화기업 발굴 및 확산 4. 여성친화적인 복합공간 발굴 및 지원
	부천시	제13조(여성의 취업·창업 활성화) 시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가족 친화적 기업 증대와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취·창업 관련 정보 제공과 상담 2. 여성사회적 경제 기업 양성을 위한 창업 지원 3. 여성친화기업 발굴 및 확산
대전광역시	서구	제18조(여성의 취업·창업 활성화) 구청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 기업 증대와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취업·창업 관련 정보 제공과 상담 2. 사회적기업 창업보육 지원 3. 여성친화기업 발굴 및 확산
	중구	제10조(여성의 취업·창업 활성화) 구청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성친화 기업 증대와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제11조(여성능력개발의 효율화)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여성능력개발 및 취업 지원 기관들을 서로 연계하여 생활권별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역량 강화 사업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가정 및 직장과 사회교육기관 간 연계를 통한 여성일자리 창출·창업 지원 2. 시설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생활 근접형 교육훈련 지원 3. 사회교육 정보의 제공과 상담 4. 직장인의 학습 기회 확충 5. 여성친화기업의 증대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18조(여성의 취업·창업 활성화) 군수는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성친화 기업 증대와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 분		조례* 내용
광역사도	기초단체	
부산광역시	기장군	<p>제12조(여성의 취업·창업 활성화)</p> <p>① 군수는 여성인력을 주요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기업 확대와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취업, 창업 관련 정보제공과 상담 2. 사회적기업 양성을 통한 창업 지원 3. 여성친화기업 발굴 및 확산
강원도	강릉시	<p>제19조(여성의 취업·창업 활성화)</p> <p>시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기업 증대와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춘천시	<p>제13조(여성의 취업·창업 활성화)</p> <p>시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기업 확대와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태백시	<p>제12조(여성의 취업·창업 활성화)</p> <p>시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기업 확대와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충청북도	음성군	<p>제17조의2(여성친화기업 지원)</p> <p>① 군수는 여성의 고용안정과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을 여성친화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p> <p>② 군수는 인증된 여성친화기업이 여성친화적인 기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생산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제외한다.</p>
	제천시	<p>제12조의2(여성친화기업 등)</p> <p>① 시장은 여성의 고용안정, 근무환경개선 등으로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을 여성친화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의거 인증을 받은 기업이 여성친화적인 기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생산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p> <p>③ 시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취업·창업 관련 정보 제공과 상담 2. 사회적 기업 창업보육 지원
	충주시	<p>제9조(여성능력개발 및 여성 취업·창업 활성화)</p> <p>① 시장은 여성능력개발 및 취업지원기관과 연계하여 역량강화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여성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네트워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③ 시장은 여성인력을 주요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기업 확대 및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구 분		조례* 내용
광역사도	기초단체	
		제11조(여성친화기업 지원) ① 시장은 여성의 고용안정, 근무환경 개선 등으로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을 여성친화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거 선정된 여성친화기업이 여성친화적인 기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생산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청주시	제11조의2(여성친화기업 지원) ① 시장은 여성친화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여성친화기업을 인증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증된 여성친화기업이 여성친화적인 기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생산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진천군	제10조(여성의 취업·창업 활성화) 군수는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기업 증대와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아산시	제19조(여성의 취업·창업 활성화) 시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기업 증대와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취업, 창업 관련 정보 제공과 상담 2. 사회적경제조직(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농촌공동체회사 등) 인큐베이팅을 통한 창업 지원 3. 여성친화기업 발굴 및 확산 4. 여성친화적인 복합 공간 발굴 및 지원
	당진시	제16조(여성의 취업, 창업 활성화) 시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기업 증대와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0.> 1. 취업·창업 관련 정보 제공과 상담 <신설 2019.5.30.> 2. 여성친화기업 발굴 및 확산 <신설 2019.5.30.>
	논산시	제16조(여성의 취업·창업 활성화) 시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기업 증대와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취·창업 관련 정보 제공과 상담 2. 사회적 기업 인큐베이팅을 통한 창업 지원 3. 여성친화기업 발굴 및 확산
	서산시	제14조(여성의 취업·창업 활성화) 시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기업 증대와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취업·창업 관련 정보 제공과 상담 2. 사회적 기업 인큐베이팅을 통한 창업 지원 3. 여성친화기업 발굴 및 확산

구 분		조례* 내용
광역시도	기초단체	
	보령시	제14조(여성의 취업, 창업 활성화) 시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기업 증대와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취업·창업 관련 정보 제공과 상담 2. 사회적기업 창업보육 지원 3. 여성친화기업 발굴 및 확산
	부여군	제13조(여성의 취업·창업 활성화) 군수는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기업 증대와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금산군	제13조(여성의 취업·창업 활성화) 군수는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기업 증대와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공주시	제12조(여성의 취업·창업 활성화) 시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기업 증대와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취·창업 관련 정보 제공과 상담 2. 사회적 기업 인큐베이팅을 통한 창업 지원 3. 여성친화기업 발굴 및 확산
전라북도	임실군	제8조(여성의 취업·창업 활성화) 군수는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기업 확대와 여성 창업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라남도	여수시	제19조(여성의 취업·창업 활성화) 시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적기업 증대와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취업·창업 관련 정보 제공과 상담 2. 사회적 기업 인큐베이팅을 통한 창업 지원 3. 여성친화기업 발굴 및 확산
	나주시	제18조(여성의 취업·창업 활성화) 시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기업 증대와 여성일자리를 창출하여야 한다.
	화순군	제18조(여성의 취업·창업 활성화) 군수는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기업 증대와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취·창업 관련 정보 제공과 상담 2. 사회적 기업 인큐베이팅을 통한 창업 지원 3. 여성친화기업 발굴 및 확산
	완도군	제18조(여성의 취업·창업 활성화) 군수는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기업 증대와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1. 취·창업 관련 정보 제공과 상담 2. 사회적 기업 인큐베이팅을 통한 창업 지원 3. 여성친화기업 발굴 및 확산

구 분		조례* 내용
광역사도	기초단체	
경상북도	목포시	제10조(여성의 취업·창업 활성화) 시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적 기업 증대와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취업·창업 관련 정보 제공과 상담 2. 사회적 기업 인큐베이팅을 통한 창업 지원 3. 여성친화기업 발굴 및 확산
	경산시	제15조(여성의 취업·창업 활성화) 시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 기업 증대와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취업, 창업 관련 정보제공과 상담 2.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을 통한 창업 지원 3. 여성친화기업 발굴 및 확산
	구미시	제15조(여성의 취업·창업 활성화) 시장은 여성인력이 주요한 인적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여성친화적인 기업의 증대와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취업, 창업 관련 정보제공과 상담 2.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창업지원 3. 여성친화기업 발굴 및 확산
	김천시	제15조(여성의 취업·창업 활성화) 시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성친화 기업 증대와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포항시	제15조(여성의 취업·창업 활성화) 시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 기업 증대와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취업, 창업 관련 정보제공과 상담 2.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을 통한 창업 지원 3. 여성친화기업 발굴 및 확산
경상남도	칠곡군	제15조(여성의 취업·창업 활성화) 군수는 여성인력이 주요한 인적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여성친화적인 기업의 증대와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취업, 창업 관련 정보제공과 상담 2.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창업지원 3. 여성친화기업 발굴 및 확산
	창원시	제19조(여성의 취업·창업 활성화) 시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성친화 기업 증대와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합천군	제18조(여성의 취업·창업 활성화) 군수는 여성인력을 주요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 기업 증대와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 분		조례* 내용
광역사도	기초단체	
	진주시	제17조(여성의 취업·창업 활성화) 시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 기업 증대와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통영시	제16조(여성일자리 창출 등) 시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 기업 증대와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남해군	제16조(여성의 취업·창업 활성화) 군수는 여성인력을 주요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 기업 증대와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사천시	제10조(여성의 취업·창업 활성화) 시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 기업 증대와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고성군	제10조(여성의 취업·창업 활성화) 군수는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 기업 증대와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주*: 조례는 각 기초단체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임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일 2023년 9월 5일(검색어: 여성친화기업)

[부록 표 1-5] 중소기업 대상 인센티브(195개)

구분	기관명	지원사업	지원내용
중앙부처 제공 (35)	금융위원회(3)	중소기업은행 신용평가	사회기여도 항목 평가 시 반영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	보증료 0.1% 감면
		한국거래소 상장법인 자율공시	가측친화경영정보 관련 사항 포함
	산업통상자원부(1)	지역 특화산업 육성 사업	가산점 부여 2점
		IT·SW융합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가점1점
	법무부(1)	출입국 우대	기업당 1명 우대카드발급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공모사업)	가점 5점
	고용노동부(4)	청년친화강소기업	정보제공, 금융 우대, 중소기업 지원사업 선정 우대 등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심사 시 우대
	병무청(1)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심사	가점5점 이내
		산업기능요원 인력 지원	가점 부여
	조달청(5)	물품구매적격심사	신인도항목가점2점
		계약이행능력 심사	신인도항목가점2점
		일반용역 적격 심사	신인도항목가점2점
		기술용역 적격 심사	신인도항목가점0.4점
우수조달물품 지정		신인도항목가점1점	
국방부(3)	물품구매 적격심사	가점0.4점	
	일반용역 적격심사	가점0.4점	
	기술용역 적격심사	가점0.4점	
문화체육관광부(5)	여가친화기업 선정 지원사업	가점5점 이내	
	예술인 파견 지원사업	예술인파견기업 선정 시 인증기업 우대	

구 분	기 관 명	지 원 사 업	지 원 내 용
지자체 제공 (143)	방위사업청(2)	스포츠용품 해외인증 획득 지원사업	가점3점 이내
		해외전시 지원 사업	가점3점 이내
		독서경영 우수직장 인증 사업	동점 시 우선선정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 이행능력심사	신인도항목 가점0.1점
		물품 제조계약 낙찰 적격심사	신인도항목 가점 0.1점
		해외진출 민간거점 활용 지원사업	가점3점
		국방 절충교역	참여자선정 가점3점
		중소기업자 간 경쟁물품 계약이행능력 심사	가점0.5점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시 융자한도 우대	융자산액한도 및 매출액 한도 예외 적용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가점2점
	중소벤처기업부(10)	수출 역량강화 사업	가점1점
		해외규격 인증 획득 지원사업	가점2점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가점1점
		대·중소기업 생산성 혁신파트너십 지원	가점2점
서울특별시(2)	지역 특화산업 육성 사업	가점2점	
	여성고용 우수기업 특별자금 지원	5억원이내	
	일반용역 적격 심사	가점0.5점	
	중소기업 자금 이차보전 지원	가점2점	
부산광역시(7)	부산청년 파란일자리 사업 지원기업 선정	인건비, 직무교육비 등 지원	
	고용우수기업 선정	가점1점	
	해외마케팅 참가 지원기업 선정	가점5점	
	부산신용보증재단 보증료 감면	보증료 감면	
	가족친화 인증기업 사후관리 컨설팅 제공	무료 컨설팅 지원	

구 분	기 관 명	지 원 사 업	지 원 내 용
대구광역시(8)	대구광역시(8)	부산소재 가족친화 인증기업 현판제작지원	현판제작 지원
		해외마케팅사업 참가기업 선정	참가 부스비 지원 등
		중소기업 경영안전자금 지원	융자한도액 확대
		가족친화인증기업 문화 활동 지원	공연, 영화, 스포츠 관립 지원
		가족친화인증기업 고충 상담 지원	직장 고충 전문 상담지원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3년간 유예(규모별 제한있음)
		대구시 가족친화우수기업 시상	인증기업, 실무자 시장표창
		대구광역시 가족친화인증기업 현판제작	신규인증기업 현판제작비 지원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시설 사용료 50% 감면
		해외마케팅 및 수출인프라 확충지원업체 선정	가점3점 이내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우선지원	가점5점
		인천시시급고(NH농협·신한은행)금융혜택	금리우대, 수수료면제 등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3년간면제
		인천시 '우수기업인등' 선정 시 우대	해외전시회참가, 홍보등우선지원
		인천광역시 가족친화인증 우수기업 시상	
		인천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수수료 감면	신용보증 수수료 0.1% 감면
가족친화인증기업 신규·재인증 기업 현판제작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업 현판 제작 및 수여		
가족친화인증 컨설팅 및 직장교육 지원	기업유형별 맞춤형 컨설팅, 직장교육 지원		
신용보증수수료감면	0.2% 인하		
광주광역시(16)	광주광역시(16)	중소기업 수출마케팅 사업 지원	가점 3점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	가점
		광주테크노파크 신규 입주 선정 평가	가점2점
		광주소재 가족친화인증기업 현판 제작 지원	현판 제작 지원
		가족친화경영 및 인사노무 컨설팅 지원사업	컨설팅 지원

구 분	기 관 명	지 원 사 업	지 원 내 용
		가족친화경영지원금 기업 선정 우대	가족친화경영지원금 지원
		광주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육아휴직업무대행수당 지원	육아휴직 활성화 업무분담금 지원
		중소기업 수출성공패키지 지원	가점 3점
		광주일가정양립지원본부 가족친화프로그램 지원	직장교육 및 가족친화 관련 프로그램 등
		광주시 일반·용역적격 심사 신인도 가점	가점 0.5점
		중소기업 아마존셀러 맞춤형 특화지원	가점 3점
		임산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지원금 신청시 지원우대
		임산부 친화환경 조성지원	신청시 지원우대
		여성근무환경 개선자금	가점 부여
		중소기업 해외 시장개척단 참가지원	가점 3점 부여
		국내 전시·박람회 대상기업 선정 우대	가점2점
		충청권 벤처프라자 참가 시 우선선정	부스설치 및 판로 지원
		해외시장개척단·해외진출참가시우대	가점2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이차보전 우대지원 3%		
유망 중소기업 선정 시 우대	선정 시 우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0.5% 추가지원		
울산시 각종 포상 선정 시우대	선정 심사 시 우대		
기술닥터사업(중기예로기술지원) 지원	기업부담금 감경		
신기술·신제품진시관운영사업선정평가	가점2점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평가	가점1점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요율 인하	0.2% 인하		
경기TP단지 입주 선정평가	가산점 2점		
기술경영 최고위 과정 우대	신청 시 무심사 합격		
한국표준협회경기지부 임회비 면제	200,000원면제		

구 분	기 관 명	지 원 사 업	지 원 내 용
		한국표준협회경기지구 '옴에마크' 신청비면제 및 연간사용료할인	신청비100,000원면제 등
		한국표준협회경기지구 최고경영자 조찬회연회비할인	연회비10%할인
		경기행복삼 임점 지원	가점 2점
		사회적경제 온라인 플랫폼 운영 마케팅 지원	가점 2점
		양평군 온라인 스토어 창업 마케팅 지원	가점 2점
		하남시 쇼펍물창업 마케팅지원 사업	가점 2점
		동해형 기업인턴제 참여기업 지원 우대	10점
		유망 중소기업 선정 → 백년기업·유망 중소기업 선정	가점 부여 → 자율평가항목 가산점 부여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이자보전을 2.5%등
		춘천시 국내해외 마케팅 지원 사업	가점 3~10점 이내
		춘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최대 4년간 2.5~3% 이자보전
		동해시 유망중소기업 선정	가점8점
		동해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추천 및 이자지원 사업	융자한도 5억원이하 3.5%등
		동해시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	정규직 신규채용 시 6개월 간 월 1백만원 지원
		강원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인건비 연 2,400만원 지원 등
	강원도(20)	홍천군 수요자맞춤형 기업지원사업 선정 우대	가점
		철원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보전 지원사업	3년간 3% 이자 지원 및 추가 0.5%이자 지원
		인제군 수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부스임차료, 홍보비, 물류비, 통역 등
		기업경영정책자금 융자추천 심사시 이자보전을 지원	이자보전을 0.5% 가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기업환경개선 지원사업	최대 500만원 한도 내 지원
		태백시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료 감면	가족친화인증 기업 및 기관 사용료 면제
		홍천군 여성회관 사용료 면제	가족친화인증 기업 및 기관 사용료 면제
		홍천군 청소년문화의집 사용료 면제	가족친화인증 기업 및 기관 사용료 면제

구 분	기 관 명	지 원 사 업	지 원 내 용		
		철원군 평생학습관 강당 대관료 면제	가족친화인증 기업 및 기관 사용자 면제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감면	가족친화인증 기업 및 기관 사용자 20% 감면		
		신용보증 수수료 인하	0.2% 감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시 우대	0.5% 우대		
		고용우수기업 선정	가점2점		
		지역특화(주력)산업 육성사업 선정	가점2점		
		TPP단지임주신청평가	가점 3점		
		한국표준협회충북지부 '오피스미크' 신청비면제 및 연건사용료할인	신청비 300,000원 면제 등		
		해외마케팅 참가기업 선정 시 우대	가점부여(2점)		
		청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지원	가점(5점)부여		
		충주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가점1점		
		증평군 지방세 세무조사 우예	3년간 면제		
		진천군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3년간 면제		
		음성군 지방세 세무조사 우예	3년간 우예		
		충청북도 해외 박람회 참가기업 선정시 우대	가점5점		
		해외 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	가점5점		
충청북도(16)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 지원 사업	여성편의시설 개·보수 등 지원		
		한국표준협회 회원가입 시 입회비 면제	입회비 200,000원 면제(연회비 별도)		
		충남 신용보증재단 보증수수료 할인	0.2% 할인		
		고용우수기업 선정 시 가점 부여	가점 4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지원대상 평가 시 우대		
		지역축제 연계 판매전 참가지원	판매시설 등 무상제공		
		충청권 중소·벤처기업 박람회 참가 우대	부스지원, 상담 등 비용지원		
		소셜커머스 임점 지원	임점 우선권 부여		
		충청남도(12)			

구 분	기 관 명	지 원 사 업	지 원 내 용
		충남 유망 중소기업 선정 시 우대	선정 시 우대
		충남 기업인대상 선정 시 가점	가점0.5점
		TP단지입주 선정평가 시 우대	선정 시 우대
		가족친화우수기업 선정 기업 지원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면제
		부여군 여성문화회관 사용료 감면	사용료 전액 감면
		천안시 가족친화 우수기업인상 수상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천안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 보전 우대
		'전라북도 유망중소기업' 선정우대	가점1점이내
		신용보증 수수료 감면	산정보증요율 0.2%감면
		전라북도 선도기업 선정 시 가점 부여	최대1점
		전라북도 도약기업 선정 시 가점 부여	최대1점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선정 시 우대	가점1점이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융자한도 우대 및 이자추가지원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가점 3점 부여		
가족친화경영 컨설팅 지원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		
가족친화프로그램 지원	직장 내 가족친화프로그램 지원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료율 감면	연0.1%감면보증료율 적용		
경북신용보증재단 보증 시 우대 평가	보증심사 시 우대(도청추천)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 지원	기업당 5억원 이내 융자 지원		
가족친화경영을 위한 컨설팅	컨설팅 지원		
가족친화경영을 위한 직장교육	직장교육		
가족친화인증기업 협판 지원	협판 제작지원		
가족친화인증기업 환경개선 지원	휴게실 위생공간 등 개보수 지원 및 물품구입비 지원		
가족친화인증기업 근로자를 위한 가족친화 프로그램	근로자 건강검진 및 휴가비 등 기업 당 300만원 지원		

구 분	기 관 명	지 원 사 업	지 원 내 용
금융기타 기관제공 (12)	경상남도(5)	중소기업 공장이전·확장 등 인허가 비용 우대	중소기업 공장이전·확장 등 인허가 비용 우대
		경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수수료 감면	산정보증요율 0.3%감면
		경상남도 창업보육센터 입주 신청 시 우대	가점5점이내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우대	이자보전우대 2%
		청원시 중소기업 가족친화 우수사업제한 공모전	우선선정
	제주특별자치도(11)	해미마케팅 참가기업 선정 시 우대	가점5점이내
		신용보증 수수료 감면	산정보증요율 0.3%감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우대	이자보전 우대 지원
		성장유망 중소기업 선정 평가시 가점	가점0.5점
		기술 융복합 제품개발 및 제품화 지원 신청 시 우대	가점0.5점
		첨단제조업 제조설비 투자비용 지원 신청 시 우대	가점0.5점
		(제)제주테크노파크제주벤처마루 입주 심사 시 가점	가점1점
금융기타 기관제공 (12)	고용우수기업 인증 평가 시 가점 부여	가점 2점 이내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사업 참여기업 선정	우선 참여 선정	
	가족친화경영 및 인사노무 컨설팅, 직장교육 지원	무료지원 (중소기업 우대)	
	가족친화인증기업 현판 제작 지원	현판제작 지원	
	가족친화 우수기업 표창	도지사 표창 수여(공모를 통한 선정)	
	가족친화인증 중소기업 대상 금리 우대	최고1%금리우대, 재무컨설팅등	
	가족친화인증 중소기업 대상 금리 우대	최고1.5%금리우대, 재무컨설팅등	
	광주 지역 가족친화인증 중소기업 대상 금리 우대	대출금리0.5% 예탁금0.1~0.2%우대 등	
	전남 지역 가족친화인증 중소기업 대상 금리 우대	여신 금리우대(0.5%) 및 기업컨설팅 지원	
	부산지역 가족친화인증기업 대출 금리 우대	1.0%p 금리우대, 재무컨설팅	
신용보증기금(2)	중소기업 보증심사 시 보증한도 우대	30억원까지 보증한도 우대	
	중소기업 보증심사 시 심사 우대	일반보증 한도 적용 우대, 심사 완화 등	

구 분	기 관 명	지 원 사 업	지 원 내 용
	신한은행(1)	가족친화인증 중소기업 대상 금리 우대	0.3% 금리우대
	우리은행(1)	가족친화인증 중소기업 대상 금리 우대	최고1%금리우대, 종합 컨설팅 무료지원
	전북은행(1)	도내 가족친화인증기업 이용 수수료 등 우대	전자금융이용수수료, 환율우대 등
	한국수출입은행(1)	가족친화인증기업 대상 금리 우대	최고0.3%금리우대
	제주은행(1)	도내 가족친화인증 중소기업 대상 금리우대 등	대출금리·예금금리 최고0.5%금리우대
	대구은행(2)	대구시 가족친화인증(중소기업) 대출 금리 우대 경북도 내 가족친화인증 중소기업 금리 우대	0.1~0.2% 우대 (예정) 0.2% 우대
	NH농협은행(3)	대구시 가족친화인증(중소기업) 대출 금리 우대 경북도 내 가족친화인증 중소기업 금리우대 전남지역 가족친화인증 중소기업	0.5% 이하 우대 (예정) 대출 시 금리우대 대출 금리우대(0.5%) 및 경영컨설팅 지원

자료: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www.ffsb.kr/ffim/ffimCertStatus.do>)인증제도 안내, 검색일: 2023년 4월 4일)

[부록 표 1-6] 대기업(중소기업 가능) 대상 인센티브(71개)

구 분	기 관 명	지 원 사 업	지 원 내 용	
중앙부처 제공 (15)	금융위원회(1) 법무부(1)	한국거래소 상장법인 자율공시	가족친화경영정보 관련 사항 포함	
		출입국 우대	기업당1명 우대카드발급	
	국방부(3)	물품구매 적격심사	가점0.4점	
		일반용역 적격심사	가점0.4점	
		기술용역 적격심사	가점0.4점	
	문화체육관광부(5)	여가친화기업 선정 지원사업	가점5점이내	
		스포츠험일 해의인증 획득 지원사업	가점3점이내	
		해외진시 지원 사업	가점3점이내	
		독서경영 우수직장 인증 사업	동점 시 우선선정	
		예술인 파견 지원사업	예술인파견기업 선정시 인증기업 우대	
	고용노동부(2)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심사 시 우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심사	가점5점이내	
	조달청(5)	물품구매적격심사	신인도 항목가점 2점	
		계약이행능력 심사	신인도항목가점2점	
		일반용역 적격 심사	신인도항목가점2점	
기술용역 적격 심사		신인도항목가점0.4점		
우수조달물품 지정		신인도항목가점1점		
방위사업청(1) 과학기술정보통신부(1)	물품 제 조계약 낙찰 적격심사	신인도 항목가점 0.1점		
	IT·SW융합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가점1점		
부산광역시(5)	고용우수기업 선정	가점1점		
	해피미케팅 참가 지원사업 선정	가점5점		
	부산신용보증재단 보증료 감면	보증료 감면		
	가족친화 인증기업 사후관리 컨설팅 제공	무료 컨설팅 지원		
	가족친화 인증기업 현판제작 지원	신규인증기업 현판제작비 지원		

구 분	기 관 명	지 원 사 업	지 원 내 용
인천광역시(7)	인천광역시(7)	인척시시급고(NH농협·신한은행) 금융혜택	금리우대, 수수료면제 등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3년간 면제
		인척시·우수기업인등' 선정 시 우대	해외 전시회 참가, 홍보 등 우선지원
		인천광역시 가족친화인증 우수기업 시상	
		인천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수수로 감면	신용보증 수수료 0.1% 감면
		가족친화인증기업 신규·재인증 기업 현판제작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업 현판 제작 및 수여
		가족친화인증 컨설팅 및 직장교육 지원	기업유형별 맞춤형 컨설팅, 직장교육 지원
		여성근무환경 개선자금	가점 부여
		신규 가족친화인증기업(현) 현판 제작 지원	현판 제작 지원
		가족친화경영 및 인사노무 컨설팅 지원사업	컨설팅 지원
광주광역시(6)	광주광역시(6)	광주일가장양립지원본부 가족친화프로그램 지원	직장교육 및 가족친화 관련 프로그램 등
		광주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육아휴직업무대행수당 지원	육아휴직 활성화 업무분담금 지원
		광주시 일반용역착격 심사 신인도 가점	가점 0.5점
		기술경영 최고위 과정 우대	신청 시 무심사 합격
		한국표준협회경기지부 임회비 면제	200,000원 면제
경기도(4)	경기도(4)	한국표준협회경기지부 '옴이마크' 신청비면제 및 연간사용료할인	신청비 100,000원 면제 등
		한국표준협회경기지부 최고경영자 조찬회연회비할인	연회비 10%할인
		최고경영자 조찬회연회비할인	
		충청북도 해외 박람회 참가기업 선정	가점5점
충청북도(6)	충청북도(6)	해외 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	가점5점
		한국표준협회 충북지부 '옴스상품 인증 신청비 면제	신청비 300,000원 면제
		증평군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3년간 면제
		진천군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3년간 면제
		음성군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3년간 유예

구 분	기 관 명	지 원 사 업	지 원 내 용
충청남도(3)	진라남도(1)	가족친화우수기업 선정 기업 지원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면제
		부여군 여성문화회관 사용료 감면	사용료 전액 감면
		천안시 가족친화우수기업인상 수상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등
	경상남도(2)	가족친화경영 권설령 지원	기업별 맞춤형 권설령 지원
		해의미케팅 참가기업 선정 시 우대	가점5점 이내
	제주특별자치도(4)	고용우수기업 인증 평가 시 가점 부여	가점 최대 2점
		가족친화경영 및 인사노무 권설령, 직장교육 지원	무료지원 (중소기업 우대)
		가족친화인증기업 현판 제작 지원	현판제작 지원
		가족친화 우수기업 표창	도지사 표창 수여(공모를 통한 선정)
	울산광역시(1)	울산시 각종 포상 선정시우대	선정심사시 우대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3년간 유예(규모별 제한있음)	
대구광역시(5)	대구시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 문화활동 지원	가족친화강연, 공연, 행사지원	
	대구시 가족친화우수기업 시상	인증기업 실무자 시장표창	
	대구광역시 가족친화인증기업 현판제작	신규인증기업 현판제작비 지원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시설 사용료 50% 감면	
	동해시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	정규직 신규채용 시 12개월 간 월 1백만원 지원	
강원도(7)	강원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인건비 월 최대 180만원 한도 지원 등	
	태백시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료 감면	가족친화인증 기업 및 기관 사용료 면제	
	홍천군 여성회관 사용료 면제	가족친화인증 기업 및 기관 사용료 면제	
	홍천군 청소년문화의집 사용료 면제	가족친화인증 기업 및 기관 사용료 면제	
	철원군 평생학습관 강당 대관료 면제	가족친화인증 기업 및 기관 사용료 면제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감면	가족친화인증 기업 및 기관 사용료 20% 감면	
	부산은행(1)	부산지역 가족친화인증기업 대출 금리 우대	1.0%p 금리우대, 재무컨설팅

자료: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www.ffsb.kr/ffm/ffmCertStatus.do>)(인증제도 안내, 검색일: 2023년 4월 4일)

[부록 표 1-7] 가족친화인증기업 근로자와 가족을 위한 인센티브(38개)

구 분	기 관 명	지 원 사 업	지 원 내 용	
지자체 제공(38)	제주특별자치도(1)	근로자 문화활동 지원	가족사랑의 날 가족과 영화관람 지원(분기별 1회)	
			간병준 레디스 홍보외과	하지정맥류 초음파 검사비 40% 할인
			이샘병원	비급여 15%, 검진수가 20% 할인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비급여 10%, 검진수가 20% 할인
			WS더블유에스치과	임플란트 최대 30% 할인 등
			누네빛안과	수술비 비급여 할인을 적용(10~30%)
			예쁜미소비타민이치과	치아교정 최대 20% 할인 등
			오성병원	외래 급여 15%, 종합검진 20% 할인
			(주)부산롯데호텔	객실 패키지 5%, 레스토랑 10% 할인
			부산시티투어	이용요금 주말 순환노선 3,000원 할인
	부산광역시(6)	관광 분야 지원	황령산전망승터	제조요금 10%
			태종대유원지	다누비열차 이용요금 30% 할인
			해운대블루리인파크	해변열차 탑승 시 이용요금 10%할인
			부산이쿠아리움	입장요금 30~40% 할인
			영화의 전당	공연 최대 20% 할인 등
			뮤지엄다	입장요금 할인
			서면미술관	입장요금 50% 할인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할인 10~30% 할인
			국립부산과학관	상설 전시관 입장료 50% 할인
			부산영화체험박물관	입장요금 30% 할인 등
부산광역시(6)	체험 분야 지원	삼진어목체험역사관	체험료 10% 할인	
		낙동강생태탐방선	이용요금 50% 할인	
		두루뎀 체험농장	체험료 10% 할인	
		고래시어묵	스마트뎀 쿠팡클래스 할인 등	

구 분	기 관 명	지 원 사 업	지 원 내 용
대구광역시(6)	생활 분야 지원	패션비슬루션(주)	LG전제품 구매 시 할인 등
		빅클럽COOP	레스토랑 10~20% 할인 혜택
		광안리서진관	가족사진 30% 할인 등
		코워크스테이션분야	공유오피스임대 이용료 할인 등
		대구시 여행업체 여행상품 가격할인	5개여행업체, 최고15%할인
		대구시 가족친화 워크숍 참가비 무료	참가비 면제 (매년 9월)
		대구시 가족친화인증기업 가족초청 캠프 개최	가족친화인증기업·관 대상 가족초청 캠프
		가족친화인증기업 가족초청 여가활동 지원	연극, 뮤지컬, 음악, 영화, 스포츠 관람지원
		대구 가족친화인증기업 공연관람료 할인 지원	뮤지컬, 음악 등 기획공연 공연관람료 할인
		관광/숙박 이용료 할인	객실 이용료 및 부대시설 이용료 할인
인천광역시(1)	강원도(1)	문화예술회관 예술단 공연 관람료 할인	관람료 10~40% 할인
		원주시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이용료 50% 감면
충청북도(20)	증평군	조령산 휴양림 숙박시설 우선예약	숙박시설20%이내우선예약
		청남대 입장료 할인	입장료 할인(1천원)
		충주시 라비렌드 이용료 감면	이용료 감면
		충주시 탄금호 물놀이장 이용료 할인	이용료 할인(2천원)
		충주시 수인보 하이스파 이용료 할인	이용료 할인(1천원)
		충주시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 조정체험이용료 할인	이용료 면제
		제천시 청소년수련원 이용료 면제	이용료 면제
		제천시 청풍문화재단지 입장료 면제	입장료 면제
		제천시 바람재 자연휴양림 이용료 감면	30% 감면
		보은군 여성회관 이용료감면	30% 감면
증평군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숙박료 감면	중평군 청소년수련관 이용료 감면	다목적 강당 사용료50%감면
	중평군 문화회관 이용료 감면	중평문화회관 이용료 감면	임직원관람료50%감면
	중평군 최구산 천문대 관람료 감면	중평군 최구산 천문대 관람료 감면	관람료30%감면

구 분	기 관 명	지 원 사 업	지 원 내 용
	진천군	증평군 울리휴양촌 이용료 감면	숙박시설10%감면
		증평군 좌구산 캠프공원 이용료 감면	사용료 10% 감면
		증평군 좌구산 자연휴양림 이용료 감면	(전국) 10% 감면
		증평군 좌구산 출타기 이용료 감면	(전국) 10% 감면
		증평군 좌구산 쉼매장 이용료 감면	(전국) 10% 감면
		증평군 좌구산 숲 명상의 집 이용료 감면	(전국) 10% 감면
		증평군 좌구산 병영하우스 이용료 감면	(전국) 10% 감면
		증평군 제후 제과점 제과제빵 구입액 할인	10% 할인
		진천군 청소년수련원 이용료 감면	50% 감면
		진천군 종벽물관 관람료 할인	관람료 500원 할인
		진천군 생가판화미술관 관람료 할인	관람료50%감면
		진천군 자연휴양림 이용료 감면	10-30% 할인
		메가박스 진천점 영화 관람료 할인	등반3인까지 1~3차원할인
		제후 제과점 제과제빵 구입액 할인	10% 할인
		진천군 제후 카페숍 할인	10% 할인
		진천군 자활기업(생활용품) 구입금액 할인	10% 할인
		진천군 세차장 이용금액 할인	10% 할인
		진천군 자활기업(민반찬) 구입금액 할인	10% 할인
		음성군 청소년수련원 이용료 할인	10% 할인
		괴산군 상불산 자연휴양림 사용료 감면	숙박료 10% 현장할인
괴산군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료 감면	50% 감면		
음성 문화예술회관 이용료 감면	50% 감면		
음성군 여성회관 이용료 감면	50% 감면		
음성군 자연휴양림 이용료 감면	10-30% 감면		
음성군 청소년문화의집 이용료 감면	50% 할인		

자료: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ffsb.kr/ffm/ffm/CertStatus.do>)\인증제도 안내, 검색일: 2023년 4월 4일)

[부록 표 1-8] 세종시 새일센터 여성친화일촌협약 체결 현황

(2023년 4월 23일 기준)

번호	협약일	기관명	업종	종사자수	소재지
1	2022-11-28	서창산업(주)	제조업	30	전의면
2	2022-11-09	세종여성플라자	공공행정	5	새롬동
3	2022-12-07	(주)대양산업	제조업	23	부강면
4	2022-12-12	세종시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공공행정	7	보람동
5	2022-11-28	주식회사 산들본가	제조업	9	전의면
6	2022-11-28	영풍위생방역	시설관리	14	조치원읍
7	2022-11-28	코스모아이앤디(주)	제조업	99	전의면
8	2022-11-28	(주)도광	제조업	9	어진동
9	2022-11-28	하남종합시멘트	제조업	9	금남면
10	2022-10-01	주식회사엔원	교육서비스업	3	보람동
11	2022-10-01	에프에스	응용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25	대전 유성구
12	2022-08-09	세종시실관리공단	공공행정	280	조치원읍
13	2022-08-02	주식회사 세종플랫폼	정보통신업	2	나성동
14	2022-07-01	주.지원건설디자인	제조업	8	조치원읍
15	2022-07-11	한국DIY가구공방협회	기타 협회 및 단체	2	연서면
16	2022-04-25	디자인 텍싱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2	나성동
17	2022-04-19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교육서비스업	622	조치원읍
18	2022-04-19	(주)유클리드소프트	응용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50	대전 서구
19	2022-04-21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공공행정	187	서울 서초구
20	2022-03-18	세종컴퓨터학원	교육서비스업	5	새롬동
21	2022-03-01	세종소담어린이집	보육시설 운영업	43	소담동
22	2022-02-22	심전섭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업	3	나성동
23	2022-03-07	인디자인	실내건축업	2	해밀동
24	2022-02-16	세종해밀요양원	노인요양복지시설 운영업	50	금남면
25	2022-02-01	세종소담음악학원	음악학원	1	소담동
26	2022-02-04	지인노무법인중부지사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업	6	나성동
27	2021-12-01	리분화장품(주)	제조업	85	부강면
28	2021-10-13	나릿재참다운어린이집	보육시설 운영업	8	나성동
29	2021-10-01	포세듀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55	대전 유성구
30	2021-08-26	충남하나센터	기타 협회 및 단체	9	천안시 서북구
31	2021-08-02	힐스누리어린이집	보육시설 운영업	10	도담동
32	2021-07-02	호려올빛어린이집	보육시설 운영업	9	보람동
33	2021-06-30	한국산업인력공단	공공행정	12	나성동
34	2021-05-18	와이팜영농조합법인	제조업	34	연서면
35	2021-05-10	(주)리턴바이	도매업	8	나성동
36	2021-05-03	최옥선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업	2	보람동
37	2021-05-03	행복한주간보호센터	기타 복지 서비스업	15	교운동
38	2021-04-30	중원노무법인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업	2	어진동
39	2021-04-23	정인회계법인	공인회계사업	4	나성동
40	2021-04-20	한국발명진흥회 세종지부	기타 협회 및 단체	5	조치원읍

번호	협약일	기관명	업종	종사자수	소재지
41	2021-04-20	한국여성발명협회	기타 협회 및 단체	10	서울시 강남구
42	2021-04-20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세종충남지회	기타 협회 및 단체	1	천안시 서북구
43	2021-04-20	여성기업융합지원센터 세종충남센터	기타 협회 및 단체	1	천안시 서북구
44	2021-04-20	대전세종충남여성벤처협회	기타 협회 및 단체	3	대전 유성구
45	2021-04-20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기타 협회 및 단체	35	조치원읍
46	2021-04-12	베스트웨스턴호텔세종	호텔업	13	어진동
47	2021-04-05	그로잉마인드	사회복지 서비스업	5	나성동
48	2021-04-01	시니어데이터케어센터주은	사회복지 서비스업	19	나성동
49	2021-03-24	엘리스치과	보건업	16	나성동
50	2021-03-22	EPC KOREA	제조업	50	연서면
51	2021-03-08	메이븐플러스	전자상거래업	2	서울시 노원구
52	2021-02-19	(주)프린터세종세상	사무기기 임대업	6	나성동
53	2021-02-08	세종우리협동조합	기타 복지 서비스업	18	보람동
54	2021-02-01	세종고용센터	공공행정	30	조치원읍
55	2021-01-26	세종도덕노인복지센터	사회복지	60	연서면
56	2021-01-15	주식회사 오라벨	정보통신업	2	어진동
57	2020-11-27	(주)차니기든	응용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2	조치원읍
58	2020-10-26	조치원식품(주)	제조업	13	연서면
59	2020-10-26	(주)에이앤씨엠	제조업	41	연서면
60	2020-09-14	세종새싹병원	보건업	46	보람동
61	2020-09-01	플래타눔세종주야간보호센터	노인요양복지시설 운영업	8	보람동
62	2020-08-26	충청지방통계청 세종사무소	공공행정	50	나성동
63	2020-07-02	주식회사 지성손혜사정	손혜사정업	6	도담동
64	2020-07-02	(주)엑스오컴퍼니	제조업	11	아름동
65	2020-04-24	한국영상대학교	교육서비스업	100	장군면
66	2020-04-20	고려대학교세종캠퍼스	교육서비스업	622	조치원읍
67	2020-03-02	구구아트랩	공연 기획업	1	나성동
68	2020-03-02	기탄사교력 새롬1교실	교육서비스업	1	새롬동
69	2020-01-08	(주)제이비컴	고용 알선업	60	창주시 흥덕구
70	2020-01-03	세종여성오십플러스 협동조합	기타 협회 및 단체	3	나성동
71	2020-01-02	지에스씨넷	고용 알선업	112	창주시 서원구
72	2019-12-27	(사)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세종특별자치시협회	기타 협회 및 단체	3	도담동
73	2019-12-19	세종지식재산센터	기타 협회 및 단체	4	조치원읍
74	2019-12-03	연세요양보호사교육원	교육서비스업	2	나성동
75	2019-12-10	하이코두주식회사	교육서비스업	2	조치원읍
76	2019-12-03	연세간호조무사학원	교육서비스업	2	나성동
77	2019-11-18	레오플건축사사무소	제조업	1	대평동
78	2019-11-21	본디자인	기타 인쇄업	4	보람동
79	2019-11-21	당동세종협동조합	기타 인쇄업	6	보람동
80	2019-11-19	수루배반국어린이집	보육시설 운영업	10	반곡동

번호	협약일	기관명	업종	종사자수	소재지
81	2019-11-19	반곡솔빛어린이집	보육시설 운영업	9	반곡동
82	2019-11-19	수루배숲어린이집	보육시설 운영업	8	반곡동
83	2019-11-19	세종반곡어린이집	보육시설 운영업	5	반곡동
84	2019-11-19	반곡샘어린이집	보육시설 운영업	6	반곡동
85	2019-11-19	다원 어린이집	보육시설 운영업	8	다정동
86	2019-11-19	너랑나랑어린이집	보육시설 운영업	1	다정동
87	2019-11-19	나무아어린이집	보육시설 운영업	11	반곡동
88	2019-11-04	(주)태정산업	제조업	3	청주시 서원구
89	2019-09-16	주식회사 르보아산후조리원	기타 개인 서비스업	11	나성동
90	2019-09-02	세종돌봄 협동조합	기타 개인 서비스업	2	나성동
91	2019-09-16	주식회사 드이자르	기타 개인 서비스업	25	어진동
92	2019-09-16	(주)봄날산후조리원세종점	기타 개인 서비스업	7	고운동
93	2019-06-24	세종성모소아청소년과	보건업	12	보람동
94	2019-06-27	어울림기획	공연 기획업	2	대평동
95	2019-06-13	세종특별자치시청	공공행정	1789	보람동
96	2019-06-13	의료법인 영제의료재단 엔케이세종병원	보건업	100	한솔동
97	2019-06-13	(주)에프에이	제조업	60	연동면
98	2019-06-13	(주)아이빌드 세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15	연동면
99	2019-04-10	주식회사 미소드림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54	보람동
100	2019-04-08	을로게임즈	교육서비스업	2	어진동
101	2019-04-08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세종시회	기타 협회 및 단체	5	어진동
102	2018-12-27	세종건강증진연구회	기타 협회 및 단체	5	아름동
103	2018-12-26	세종문화관광협의회	기타 협회 및 단체	2	아름동
104	2018-12-17	사단법인 세종여성	기타 협회 및 단체	5	보람동
105	2018-11-29	협동조합 드림인	교육서비스업	5	아름동
106	2018-11-26	핑리작은커피	음식점업	2	조치원읍
107	2018-11-26	더쿠킹	음식점업	2	나성동
108	2018-11-09	(주)더이에스티	교육서비스업	3	대전 서구
109	2018-11-09	한국폴리텍대학 홍성캠퍼스	교육서비스업	6	충남 홍성
110	2018-11-08	세종도덕노인복지센터	노인요양복지시설 운영업	60	연서면
111	2018-10-26	(제)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충남센터	기타 협회 및 단체	1	천안시 서북구
112	2018-10-26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세종충남지회	기타 협회 및 단체	1	천안시 서북구
113	2018-10-26	대전세종충남여성벤처협회	기타 협회 및 단체	3	대전 유성구
114	2018-10-26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기타 협회 및 단체	35	조치원읍
115	2018-10-26	한국여성발명협회	기타 협회 및 단체	10	서울시 강남구
116	2018-10-25	(주)워드	기타 인쇄업	1	금남면
117	2018-10-18	세종시니어클럽	기타 협회 및 단체	8	새롬동
118	2018-10-04	세종친환경생활지원센터	기타 협회 및 단체	4	조치원읍
119	2018-06-20	누리이즈	전기 공사업	6	장군면

번호	협약일	기관명	업종	종사자수	소재지
120	2018-06-20	도덕노인복지센터	노인요양복지시설 운영업	43	공주시 의당면
121	2018-04-19	(주)스카우트	경영컨설팅업	400	대전 유성구
122	2018-04-09	남양유업(주)	제조업	450	장군면
123	2018-04-02	주식회사 세화	제조업	190	전의면
124	2018-02-08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기타 협회 및 단체	2	조치원읍
125	2018-02-08	세종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기타 협회 및 단체	9	조치원읍
126	2018-02-08	종촌공립지역아동센터	기타 협회 및 단체	4	종촌동
127	2018-02-08	스마트집센터	기타 협회 및 단체	5	조치원읍
128	2018-02-08	세종시 드림스타트	기타 협회 및 단체	6	아름동
129	2018-02-08	세종시 보건소	보건 및 복지 행정	103	조치원읍
130	2018-02-08	세종시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시설 운영업	22	종촌동
131	2018-02-08	세종YWCA성인권상담센터	기타 협회 및 단체	3	조치원읍
132	2018-01-29	한국유나이티드제약(주)	제조업	302	전동면
133	2018-01-09	고려대학교 세종산학협력단	교육서비스업	26	조치원읍
134	2017-11-17	(주)라이프전장	제조업	40	전동면
135	2017-11-02	삼양새아침주식회사	제조업	250	연서면
136	2017-11-02	에넨노인복지센터	노인요양복지시설 운영업	23	조치원읍
137	2017-11-02	한국충동작심리상담협회	기타 협회 및 단체	2	나성동
138	2017-11-02	마을과복지연구원	기타 협회 및 단체	5	조치원읍
139	2017-11-02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기타 복지 서비스업	5	종촌동
140	2017-11-02	세종재가노인지원센터	노인요양복지시설 운영업	20	조치원읍
141	2017-11-02	에넨노인복지센터	노인요양복지시설 운영업	23	조치원읍
142	2017-11-02	세종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 서비스업	14	조치원읍
143	2017-11-02	세종상담복지협동조합	기타 협회 및 단체	3	조치원읍
144	2017-11-02	세종시 사회복지위원회	기타 협회 및 단체	2	종촌동
145	2017-11-02	세종시마을기업지원기관	기타 협회 및 단체	3	조치원읍
146	2017-11-02	세종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사회복지 서비스업	6	고운동
147	2017-11-02	세종고온간호전문화원	교육서비스업	4	고운동
148	2017-11-02	세종남부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 서비스업	25	도담동
149	2017-11-02	세종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 서비스업	60	조치원읍
150	2017-11-02	노무법인 정음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업	1	조치원읍
151	2017-11-02	홍익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육서비스업	10	조치원읍
152	2017-11-02	세종YWCA 고령자인재은행	기타 협회 및 단체	5	조치원읍
153	2017-11-02	(주)에드민시스템즈	인력공급업	422	서울 송파구
154	2017-09-04	주식회사 나눔뜰	교육서비스업	6	나성동
155	2017-07-11	(주)프린터세종세상	사무기기 임대업	2	어진동
156	2017-06-16	세종기톨릭청형외과의원	보건업	20	종촌동
157	2017-04-14	세종특별자치시 (투자유치과)	공공행정	1789	보람동
158	2017-07-10	주식회사 세종아이시티	정보서비스업	4	조치원읍
159	2017-07-04	(주)맘이랜서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30	서울 송파구
160	2017-06-27	(주)케이에스피테크	제조업	10	부강면
161	2017-06-01	대세코딩연구소	교육서비스업	1	보람동
162	2017-03-07	헬렌&뷰티 아카데미	미용업	4	나성동

번호	협약일	기 관 명	업 종	종사자수	소재지
163	2017-03-09	가락마을8단지관리사무소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5	고운동
164	2017-01-02	충북교육사회적협동조합	교육서비스업	2	청주시
165	2016-12-28	김수현법무사사무소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업	5	조치원읍
166	2016-12-28	신화회계법인	세무사업	7	조치원읍
167	2016-12-20	죽림어린이집	보육시설 운영업	17	조치원읍
168	2016-12-01	365플러스 세종고온호반점	도소매업	2	고운동
169	2016-12-01	한울타리재가방문요양기관	기타 복지 서비스업	43	조치원읍
170	2016-01-07	365PLUS세종해피라움점	도소매업	2	아름동
171	2016-11-17	대전세종충남 여성벤처협회	기타 협회 및 단체	3	대전 유성구
172	2016-11-10	산모피아 세종지사	기타 복지 서비스업	2	조치원읍
173	2016-11-09	(주)영평식품	제조업	5	장군면
174	2016-10-21	리차드프루 헤어세종CGV점	미용업	9	한솔동
175	2016-09-30	세종신호(주)	내부 통신배선 공사업	10	조치원읍
176	2016-09-30	주식회사 동의휴먼연구소	교육서비스업	2	나성동
177	2016-09-27	세종요양병원	요양병원	51	장군면
178	2016-10-05	신세종요양보호사교육원	교육서비스업	2	조치원읍
179	2016-09-06	대성연매(주)	제조업	96	조치원읍
180	2016-09-06	(주)한솔하네스	제조업	38	청주시 흥덕구
181	2016-08-17	세종시자원봉사센터	기타 협회 및 단체	7	조치원읍
182	2016-08-17	조치원YWCA어린이집	보육시설 운영업	17	조치원읍
183	2016-08-17	세종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타 협회 및 단체	103	조치원읍
184	2016-08-17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기타 협회 및 단체	11	조치원읍
185	2016-08-31	피아이테크	제조업	14	연서면
186	2016-08-29	신관자동차운전전문학원	운전학원	23	장군면
187	2016-08-29	주영벽돌	제조업	5	연서면
188	2016-08-25	세종시정신건강증진센터	기타 협회 및 단체	5	조치원읍
189	2016-08-25	큰나무사회적협동조합	교육서비스업	2	청주시 흥덕구
190	2016-08-25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타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270	반곡동
191	2016-08-25	홈플러스(주)	도매 및 상품중개업	101	어진동
192	2016-08-25	세종산모케어	고용알선업	15	조치원읍
193	2016-08-25	(주)케이티씨에스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8102	대전 서구
194	2016-08-25	(주)이마트	대형 마트	172	한솔동
195	2016-08-25	세종프라임치과	보건업	20	어진동
196	2016-08-11	서창산업(주)	제조업	35	전의면
197	2016-08-01	(주)에프에이	제조업	50	연동면
198	2016-07-21	(주)두레마을	청소업	62	조치원읍
199	2016-07-20	아이빌트세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15	연동면
200	2016-07-19	첫마을6단지 입주자대표회의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42	한솔동
201	2016-06-28	(주)에이치알디앤	교육서비스업	7	서울 서초구
202	2016-06-28	즐거운교육연구소	교육서비스업	3	서울 서초구
203	2016-06-10	세종도시재생센터	기타 협회 및 단체	6	조치원읍

번호	협약일	기관명	업종	종사자수	소재지
204	2016-06-10	공립어린어린이집	보육시설 운영업	14	어진동
205	2016-06-03	동원홈푸드	기관구내식당업	14	어진동
206	2016-06-01	제이테크	제조업	7	전의면
207	2016-05-23	세종인쇄	인쇄업	5	연기면
208	2016-05-20	(주)이노컬러	인쇄업	3	청주시 흥덕구
209	2016-05-19	조치원장례식장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7	연서면
210	2016-05-16	(주)에스에이치텍	제조업	10	전동면
211	2016-05-13	아이리더 어린이집	보육시설 운영업	6	보람동
212	2016-04-18	국민연금세종지사	공공행정	20	아름동
213	2016-03-10	(주)아이테크	제조업	60	연서면
214	2016-02-11	조치원식품(주)	제조업	13	조치원읍
215	2015-12-23	365열린연합의원	보건업	3	고운동
216	2015-11-02	크린토포아 홈플러스	가정용 세탁업	2	어진동
217	2015-09-01	세종내과	보건업	4	도담동
218	2015-08-27	누리꽃방	도소매업	2	조치원읍
219	2015-08-26	(주)세종CS	청소업	2	도담동
220	2015-07-29	세종시장애인지립생활센터	기타 협회 및 단체	5	조치원읍
221	2015-07-29	(사)세종시장애인부모회	기타 협회 및 단체	35	조치원읍
222	2015-07-28	세종시 시각장애인연합회	기타 협회 및 단체	5	조치원읍
223	2015-07-28	세종시장애인복지관	기타 협회 및 단체	20	조치원읍
224	2015-07-28	세종시 농아인협회	기타 협회 및 단체	4	조치원읍
225	2015-07-27	세종시 사회복지협의회	기타 협회 및 단체	4	조치원읍
226	2015-07-27	한아름어린이집	보육시설 운영업	7	아름동
227	2015-07-23	세종도덕노인복지센터	노인요양복지시설 운영업	30	연서면
228	2015-07-22	세종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조치원읍
229	2015-07-21	리치드프로헤어	미용업	13	한솔동
230	2015-07-20	세종법무사	법무사업	3	조치원읍
231	2015-04-29	명성산전	제조업	12	부강면
232	2015-03-23	부용어린이집	보육시설 운영업	9	부강면
233	2015-03-13	연동어린이집	보육시설 운영업	12	연동면
234	2015-03-11	해나라어린이집	보육시설 운영업	11	소정면
235	2015-03-10	미동어린이집	보육시설 운영업	12	조치원읍
236	2015-03-10	조치원어린이집	보육시설 운영업	27	조치원읍
237	2015-03-06	조치원근로복지공단어린이집	보육시설 운영업	16	조치원읍
238	2015-03-06	전의 어린이집	보육시설 운영업	12	전의면
239	2015-03-05	산들어린이집	보육시설 운영업	7	연서면
240	2015-03-05	금남어린이집	보육시설 운영업	5	금남면
241	2014-11-18	(주) 화인	제조업	51	조치원읍
242	2014-11-12	세종로	신문 발행업	7	연서면
243	2014-09-12	세종에덴요양병원	보건업	22	조치원읍
244	2014-08-18	조치원노인전문병원	보건업	70	연서면
245	2014-07-24	세종아이콘	광고 대행업	8	조치원읍
246	2014-07-09	대성연마	제조업	98	조치원읍
247	2014-07-04	국일방직	제조업	200	연서면
248	2014-05-22	은혜기독교병원	보건업	20	연서면
249	2014-04-09	세종요양병원	보건업	50	장군면

자료: 세종새일센터 내부자료(2023), <여성친화일촌협약 리스트 2013~2023>. 2023년 4월 12일 기준



34051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로 37(문지동)
TEL. 042-530-3500 FAX. 042-530-3528
www.dsi.re.kr

ISBN 979-11-6075-397-4 93350